연구총서 21-A-08 www.kicj.re.kr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협력방안

The network construc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co-operation for the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related with criminal policy in East-Asia

김경찬 · 이준표 · 신동일 · Amelya Gustina · Tanatthep Tianprasit · Yada Dejchai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과거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엄청난 수의 많은 이들이 생명과 자유를 잃어버렸고 강제노동과 성 착취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일생을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일생을 보내야 했던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4·3 사건이나 거창 사건 및 노근리, 여순 사건은 물론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정부 또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비극도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가슴 아픈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이러한 인권유린의 역사가 발생한 배경 및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과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사유와 형태 및 방식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모습이나 양상을 살펴볼 때 그 예방과 대응 역시 매우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함께 살펴보고 모색하며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일본 역시 19~20세기 낙후한 동아시아 지역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잘못되고 비뚤어진 방식으로 대동아 공영을 도모하다가 오히려 타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음은 물론 일본 스스로에게도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불행하고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에서도 캄보디아 대량 학살과 베트남 전쟁을 포함하여 (강제) 실종, 강제 노동, 강제 이주, 강제 결혼 등 인권침해 사례는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미얀마 사태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건은 – 물론 해당 국가와 정부 스스로 노력하고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 자국 내적인 노력과 개선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국제적인 UN 협력의 어려움도 있음을 일정부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가 정치, 경제, 군사, 안보 등 각 영역에서 서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인권의 영역을 적절히 논의하고 확보하며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공동인식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접근과 함께 상호협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럽지역이 인권의 완벽한 모델은 아닐지라도 지역 인권 체제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지만, -이러한 성과만을 단지 부러워하거나 동아시아 지역의 어려움을 비관만 할 것이 아니라-, 유럽지역의 인권 체제 건립은 역시 다양한 차원의 시도와 노력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 수반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의 특수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인권의 특수성을 배려하고 포용하며 대화로서 손을 잡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권의 특수성을 강조함으로 인해 불편함과 고통을 겪고 있거나 심각한 어려움을 감수하는 이들은 없는지, 인권의 보편성을 과도하게 강요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함께 소통하고 살펴볼 수 있을 때, 인권의 특수성이 주는 인권이해의 폭은 넓어지고 인권의 보편성 가치는 더욱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에서의 인권논의를 위한 토양은 인권교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교육은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이나 법무부, 법원은 물론이고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등·대학교 및 지역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교육이 국내적 관점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적 관점에서의 교육으로 확장된 공동의 역사교육과 함께 요청됩니다.

이러한 인권교육을 통해 –물론 한두 세대를 넘는 시간과 수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지만-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인간존엄을 알고 있는 정치인과 국가기관, 인간의 삶과 행복을 위해 국가 간의 관계를 풀어가는 외교인,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해하는 경제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군인 등을 양성하고 배출하며, 동아시아 지역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이해하는 안보 논의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연구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각국의 사형제도, 마약범죄 대응과 상호협력, (강제)실종과 재외국민 범죄피해, 코로나-19와 안전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하여 시작하였지만, 향후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상호논의와 공동 인식 확대가 요청됩니다.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와 기제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

및 참여가 필요합니다.

인권은 인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이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실현되는 권리이자 또한 누구나 살피고 검토하며 준수하여야 하는 인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협력을 위해 인권·형사·법무프로그램을 구상하고 동아시아 인권교육원 등을 검토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인의 인권 인식을 제고하고 공동의 인식을 확대하며 동아시아 지역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들을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연구에 공동연구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분 이외에도 제주 평화인권연구소 신강협 대표님, 인권실천 시민행동 김승무 대표님, 인권운동 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님, 광주시청 민주 인권과 정경록 팀장님, 유근종 행정사무관님, 울산시청 전진희 인권담당관님, 법무부 김수아 인권정책과장님, 대검찰청 김재하 인권기획담당관님, 인권학회 이주영 회장님, 국가인권위원회 박찬운 상임위원님, 홍성경찰서 이준형 여성·청소년과장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님, 참여연대 황수영 팀장님, 대검찰청 홍완희 마약·조직범죄과장님,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김잔디 교수님,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님, 최기식 변호사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엄은희 선임연구원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봉진 교수님 등을 포함하여 미처 언급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조언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연구위원 **김 경 찬**

목 차

국문요약 ····· 1

제1장 김경찬

서 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 16
제3절 연구의 한계 ····· 18

제2장 신동일

지역적 인권보호와 안전 ····· 25

제1절 기본이해 ····· 27
1. 전쟁론 ····· 29
2. 그로티우스와 교회법 ····· 32
3. 규범주의의 발전과정 ····· 37
가. 미국의 통합 사법관할권 ····· 39
나. 창설조약 ····· 41
다. 유럽연합과 주권론 ····· 43
제2절 보편 사법관할권 계획 ····· 46
1. 이론 ····· 46
가. 통합 거버넌스를 위한 설명 모델 ····· 46
나. 현대 이론 ····· 50
다. 호네트의 승인이론(엄격한 규범주의) ····· 53
라. 요약과 새로운 문제점 ····· 56
2. 동아시아 문제 ····· 58
가. 문제의 근원 ····· 58

나. 협력관계를 위한 상호적 이해 ····· 64
다. 새로운 전략 ····· 69
제3절 동아시아 지역 형사법관련 선행연구 ····· 71

제3장 김경찬·이준표·Amelya Gustina·Tanatthep Tianprasit· Yada Dejchai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보호와 안전의 취약성과 문제점 ····· 75

제1절 동아시아 지역 인권침해와 안전관련 주요 사례와 문제점 ····· 77
1. 동북아 지역 인권침해와 초국가적 범죄, 안전관련 주요 사례 현황과 문제점 ····· 79
가. 19~20세기의 동북아 지역 인권침해와 인권보호의 취약성 ····· 79
나. 한국/북한 ····· 80
(1) 사형제도 ····· 80
(2) 마약범죄 ····· 82
(3) (강제)실종과 재외국민 범죄피해 관련문제 ····· 84
(4) 코로나(Covid-19)와 안전 등 ····· 87
다. 중국 ····· 89
(1) 사형제도 ····· 89
(2) 마약범죄 ····· 90
(가) 중국 마약범죄 입법관련 ····· 91
(나) 중국 마약범죄와 중형주의 형사정책 ····· 93
(다) 중국 마약범죄와 사형제도 ····· 98
(라) 중국 신종 마약범죄의 규제관리 ····· 106
(마) 중국 마약관련 특별법 집행 ····· 108
(바) 중국 인터넷 마약범죄 단속 ····· 109
(사) 중국 마약범죄 대응 국제협력 ····· 110
(아) 중국 마약범죄 현황 보고서 ····· 113
(자) 중국 마약범죄의 처벌과 처우 ····· 113
(차) 중국 마약근절 홍보 및 교육 강화 ····· 114
(카) 중국 마약통제 중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 115
(타) 중국 마약범죄 대응역량의 통합발휘 필요성 ····· 116
(3) 중국 (강제)실종과 인신매매 ····· 116
(가) 중국 인신매매범죄의 개념, 유형 및 대표 사례 ····· 117
(나) 중국 인신매매 단속을 위한 법률 관리 체계 ····· 120
(다) 국제적 측면에서의 다국적 인신매매 단속을 위한 국제협력

126
(라) 지역 간 정부 협력 및 국제기구 협력 ····· 129
(마)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 보호 ····· 131
(바) 중국의 인신매매 방지협력 의지 ····· 134
(4) 코로나-19와 안전 등 ····· 135
라. 일본 ····· 136
(1) 사형제도 ····· 136
(2) 마약범죄 ····· 136
(3) 강제 실종 ····· 137
(4) 코로나-19와 안전 등 ····· 138
마. 몽골 ····· 139
(1) 사형제도 ····· 139
(2) 마약범죄 ····· 140
(3) 재외국민 범죄피해 ····· 141
(4) 코로나-19와 안전 ····· 142
2. 동남아 지역 인권침해 초국가적 범죄, 안전관련 주요 사례 현황과 문제점 ····· 143
가. 19~20세기 동남아 지역 인권침해와 인권보호의 취약성 ····· 143
나. 필리핀 ····· 144
(1) 사형제도 ····· 144
(2) 마약범죄 ····· 144
(3) 재외국민 범죄피해 ····· 146
(4) 코로나-19 ····· 147
다. 인도네시아 ····· 148
(1) 사형제도 ····· 148
(가) 사형규정 법률 ····· 148
(나) 사형집행과 선고 ····· 151
(다) 사형제도 찬반론 ····· 158
(라) 사형제도 분석과 검토 ····· 160
(2) 마약범죄 ····· 162
(가) 마약범죄와 사형 ····· 162
(나) 마약관련 입법 논쟁 ····· 168
(3) 재외국민 범죄피해 ····· 169
(4) 강제실종 ····· 170
(5) 코로나-19 ····· 173
(6)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 174
(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지위 ····· 174

(나) 국가기관으로서의 독립성 관련 ····· 174
(다) 권한부족과 권한분쟁의 잠재성 ····· 175
(7) 정부 내 인권 부서 ····· 177
(8) 아세안(ASEAN)과의 인권보호 협력 ····· 177
(9) 한국과의 인권보호 협력 ····· 178
라. 싱가포르 ····· 179
(1) 사형제도 ····· 179
(2) 마약범죄 ····· 181
(3) 재외국민 범죄피해 ····· 182
(4) 코로나-19 ····· 182
마. 말레이시아 ····· 183
(1) 사형제도 ····· 183
(2) 마약범죄 ····· 184
(3) 재외국민 범죄피해 ····· 185
(4) 코로나-19 ····· 187
바. 브루나이 ····· 188
(1) 사형제도 ····· 188
(2) 마약범죄 ····· 190
(3) 재외국민 범죄피해 ····· 190
사. 베트남 ····· 191
(1) 사형제도 ····· 191
(2) 마약범죄 ····· 193
(3) 재외국민 범죄피해 ····· 193
(4) 코로나-19 ····· 194
아. 미얀마 ····· 195
(1) 사형제도 ····· 195
(2) 마약범죄 ····· 196
(3) 재외국민 범죄피해 ····· 197
(4) 코로나-19 ····· 197
자. 캄보디아 ····· 198
(1) 사형제도 ····· 198
(2) 마약범죄 ····· 199
(3) 재외국민 범죄피해 ····· 200
(4) 코로나-19 ····· 201
차. 라오스 ····· 201
(1) 사형제도 ····· 201
(2) 마약범죄 ····· 202

(3) 재외국민 범죄피해 ····· 203
(4) 코로나-19 ····· 204
카. 태국 ····· 204
(1) 사형제도 ····· 204
(가) 사형규정 법률과 현황 ····· 204
(나) 사형제도 존폐 논쟁 ····· 208
(다) 사형제도와 태국 국가인권위원회(NHRCT) 입장 ····· 209
(라) 사형폐지 계획과 관련법안 ····· 209
(2) 마약범죄 ····· 212
(가) 마약범죄 관련현황 ····· 212
(나) 마약범죄 관련기관과 대응협력 ····· 214
(다) 마약범죄와 형벌 및 처우 ····· 217
(라) 마약범죄 중독치료 등 ····· 219
(3) 재외국민 범죄피해 ····· 220
(4) 인신매매와 피해자 지원정책 ····· 222
(5) (강제)실종 ····· 225
(가) (강제)실종 사례와 현황 ····· 225
(나) 발리 프로세스(Bali Process) 와 총리령 ····· 228
(다) 강제실종 방지관련 법적 대응 ····· 229
(라) 강제실종관련 노력과 정책 ····· 229
(6) 코로나-19 ····· 230
(7)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책무 ····· 233
(8) 정부의 인권보호 활동 ····· 234
(가) 경찰·검찰의 인권보호 역할 ····· 234
(나) 법무부 소속 '권리와 자유보호국' ····· 235
(9) 민간 인권단체의 역할 ····· 236
(10) 아세안과의 협력 ····· 238
(11) 한국과의 인권협력 ····· 241
제2절 동아시아 지역 인권논의, 인권기구, 인권협력의 취약성 등 ····· 243
1. 동북아 지역 인권논의, 인권기구, 인권협력 관련 취약성 ····· 243
가. 동북아 국가 인권논의 취약성 ····· 243
(1) 중국 인권논의의 취약성 ····· 244
(2) 일본 인권논의의 취약성 ····· 247
(3) 북한 인권논의의 취약성 ····· 247
나. 동북아 인권기구의 취약성 ····· 248
다. 인권 시민단체 관련 ····· 249
2. 동남아 지역 인권논의, 인권기구, 인권협력 관련 취약 ····· 250

가. 동남아 인권논의 취약성 ····· 250
나. 동남아 국가 인권기구의 취약성 ····· 254
다. 인권 시민단체 관련 ····· 256
라. 아세안 협력 관련 ····· 258

제4장 김경찬·이준표

동아시아 지역 인권침해 방지와 상호협력 ····· 263

제1절 동아시아 지역 인권침해 방지과제 ····· 265
1. 사형제도 폐지 관련 ····· 265
가. 동북아 지역 국가 ····· 265
나. 동남아 지역 국가 ····· 266
다. 소결 ····· 268
2. 마약범죄 대응 관련 ····· 268
가. 동북아 지역 국가 ····· 268
나. 동남아 지역 국가 ····· 271
3. 재외국민 범죄피해 등 관련 ····· 276
4. 코로나-19 등 안전 관련 ····· 280
가. 동북아 지역 국가 ····· 280
나. 동남아 지역 국가 ····· 281
제2절 동아시아 지역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 285
1. 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 285
가. 동북아 지역 ····· 285
나. 동남아 지역 ····· 286
2. 인권기관과 정부 인권부서의 협력 ····· 287
가. 동북아 지역 ····· 288
나. 동남아 지역 ····· 290
다. 소결 ····· 291
3. 형사사법공조와 상호협력 ····· 292
4. 시민단체의 참여와 역할 ····· 293
가. 동북아 지역 시민단체 ····· 293
나. 동남아 지역 시민단체 ····· 294
5. 기존 동아시아 지역 관련 협력 논의 ····· 296

가. 평화·인권·범죄대응 관련 ····· 296
(1) 제주포럼과 제주인권포럼 ····· 296
(2)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 297
(3)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 ····· 298
(4) 마약퇴치 관련 국제협력 ····· 299
(5)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 (Asia Pacific Parliamentary Forum, APPF) ····· 299
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 301
(1) 아셈(ASEM) 회의 ····· 301
(2) 두만강 포럼 등 ····· 301
다. UN 협력기관 관련 ····· 302
라. 인권기구 관련 ····· 303
6. 동아시아 인권·형사법무 교육·연수 프로그램 ····· 305

제5장 김경찬

동아시아 지역 인권보호를 위한 향후 과제 ····· 313

제1절 동아시아 인권선언 ····· 315
1. 어려움과 아쉬움 ····· 315
2. 다양한 주체의 참여확대 필요성 ····· 316
제2절 동아시아 인권체제 ····· 317
1. 현실적인 어려움 ····· 317
2. 여러 가지 시도들 ····· 318
3. 실천과 방법 ····· 319
4. 우선 가능한 영역범위와 방법으로 ····· 321

제6장 김경찬

결론 ····· 323

참고문헌 ····· 331

Abstract ····· 371

부록 ····· 385

부록1 검찰의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 385

부록2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 ····· 389

부록3 경찰 인권보호 규칙 ····· 393

부록4 인권보호 수사규칙 ····· 408

부록5 아시아 인권헌장 ····· 430

부록6 동아시아 인권·평화 옴부즈퍼슨(Ombudsperson) 회원 가입신청서 ····· 450

표 차례

[표 3-1-1] 2018~2020년 한국 내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 82
[표 3-1-2] 인도네시아에서의 사형규정 ····· 149
[표 3-1-3] 인도네시아에서의 사형의 집행(2007-2021. 6.) ····· 151
[표 3-1-4] 사형 집행 대기 사례 ····· 152
[표 3-1-5] 사형 선고 사례 ····· 154
[표 3-1-6] 사형 선고 및 집행에 대한 개요 ····· 164
[표 3-1-7] 2016년-2020년 인도네시아에서의 신규 사형 선고 건수 ····· 165
[표 3-1-8] 인도네시아에서의 마약범죄율(Rate of Crime on Narcotis In Indonesia) ···· 166
[표 3-1-9] 인도네시아 국민의 마약 사용률(Narcotics Prevalence Rate in Indonesia) ··· 167
[표 3-1-10] 인도네시아에서의 강제실종 사건
(Enforced Disappearance Case in Indonesia) ····· 171
[표 4-1-1] AMMD에서 채택한 문서 ····· 272

그림 차례

[그림 1-3-1]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한글 사용 ····· 22
[그림 4-1-1] 아세안 주요 회의체 ····· 271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인권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형사정책적인 협력방안을 구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취약한 인권보호의 상황을 극복하고 동아시아 각 국가가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을 서로 지켜주고 상호 존중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상호교류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마련되었다.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가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바라보는 관점과 입장이 국가 마다 상이하고 경제적·사회적 조건과 환경의 차이는 물론이고 문화, 종교, 언어, 이념, 법체계, 정부와 국가구성 방식 등의 상이함이 크고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제시되곤 한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적인 인권보호나 인권침해 방지에 비판적이거나 회의적인 의견이나 주장과 결부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국제연합(United State, UN)이 지향하는 보편적 인권은 세계 1·2차 대전을 겪으며 국제사회에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할 기본적 기준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인권이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에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사이의 불편한 관계의 문제점과 국제사회의 국가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나 입장차이로 인한 문제점과 한계가 논의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인권보호 상황이나 조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회의적인 관점을 견지하거나 어려움과 한계에 천착하기 보다는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한계상황들을 인식하고 포용하며 소통하고자 한다. 또한 어려울 수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함께 논의하고 구상하며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는 단지 하나의 네트워크 방식이 아닌 복합적이고 중첩적이며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구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의 경우에도 국가 법제도에서부터 시작하여 관련 국가기관과 정부기

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비영리 기관, 학술단체 및 연구기관,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요청되며 가능한 부분과 영역에서부터 상호협력과 교류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의 과제는 개인적인 과제일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국가적인 과제이며 또한 국가와 시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국가구성방식은 물론이고 정부구성방식의 민주성과 관련성을 가진다. 동아시아 지역 각 국의 정치체제나 국가체제 및 이념체제는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민주성에 대한 어떠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민주성과 관련된 제도와 경험을 나누고 상호교류의 기회와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 어느 국가나 정부가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정책을 만드는 경우는 바람직하고 더 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국가와 정부가 있고 또한 있을 수 있다. 이에 국가와 정부 간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과 상호교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또한 건강한 시민사회의 의견수렴과 전달 및 참여가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가기관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다양한 국가기관이 인권보호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우선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요하고 또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가 항상 최상의 또는 최고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정부가 범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법제도 마련을 위해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 중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있는 국가로는 한국,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미얀마, 홍콩 등이 있는데 각 국의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폐지시도가 있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가가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독립적인 의견을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기관이며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없는 국가에는 이의 설치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일본정부는 자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부기관으로 법무성

내에 인권옹호국을 두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없기에 정부의 목소리와 다른 차원의 인권보호 의견을 제시하는데 취약하다. 이는 과거 일본정부의 위안부 인권침해와 - 1930~1940년대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범죄는 이후 1990년대에 이르러 즉 50~60년 이후에 드러나고 논의되었고 현재에도 지속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1] 일제 강점기의 강제노동과 관련한 인권침해에 대해 정부차원의 입장을 넘어서 국제적인 인권보호 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국가적인 한계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에서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둔 국가들은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를 가지지 못한 국가가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공유하며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상호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며 협력하여 자국 정부가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서로의 경험과 노력 및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가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와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한 사항이다. 다양한 정부기관 모두 넓은 의미에서 해당될 수 있지만 특히 법무부와 검찰 및 경찰은 시민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와 직접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 자체 내에 인권보호를 위한 조직과 부서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가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법무부와 검찰 및 경찰은 – 물론 인권보호를 위한 역할이 아주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 자체적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조직과 부서를 두고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방지관련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과거 검찰과 경찰이 범한 인권침해의 과오사례는 물론이고 현재 검찰과 경찰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검찰과 경찰 내에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조직과 부서를 두지 않은 국가가 다수 있다. 한국 정부 기관의 인권보호와 관련한 경험과 체계가 부족하더라도 인권보호의 취약점과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인권보호 법령과 관련하여서도 공유할 가치가 있다.[2] 이는 동아시아 지역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1)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35면.
2) 검찰의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사건 인권보호관 점검지침, 경찰 인권보호규칙,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 부록에서 관련규정 제시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미·중 인권대화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인권을 정치화·수단화하는 것에 경계를 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되지 못한 국가들의 경제적 예속화의 문제를 포함하여 인권보호와 관련한 이론적인 논거와 관점은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할 가치가 있다.

중국은 경제협력을 위한 유라시아의 일대일로와 인접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위한 접경지역 경제협력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며 관련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인접국가와의 경제협력과 관련하여서도 인권보호문제는 공동논의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중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발생초기에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관련 방역 및 안전과 관련한 조치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국제적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국제적 인권보호 협력을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 국가 인권보호 상호협력은 우선 인권보호에서 이론적 논의와 대화참여, 중국과의 접경지역 경제협력, 코로나-19 방역과 안전, 국가 법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적 협력교류 등과 관련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하거나 상호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몽골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물론 몽골이 국내적으로 사형제도 부활이나 존치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같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폐지하지 못한 국가나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형 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몽골의 경험과 성과는 공유할 가치가 있고 공유가 필요한 좋은 선례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에서 국가의 생명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국가는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 형벌인 사형제도로서 나타나는데 국가가 생명침해를 정당화하고 제도화하는 경우 국가나 정부에 의해 범해지는 대량학살이나 강제실종 등의 대규모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취약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을 정의의 가치를 인질로 삼아 복수를 실현하고 가르치는 모순이 생기기도 한다.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는 대부분 사형 제도를 존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방식과 형태의 인권침해에 취약하거나 둔감할 수 있으며 정부나 국가차원에서의 인권보호의 노력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에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상호협력은 요청되며 지속적인 사형폐지를 위한 상호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몽골은 사형 제도를 국가적으로 이미 폐지하였으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몽골 국가나 몽골정부는 사형제도 폐지관련 협력을 한국과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사형제도 폐지 법안에 찬성한 다수의 국회의원이나 정당 및 사형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변호사 단체, 학술단체와 학자 등과도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역시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변호사 단체, 시민사회 단체, 학술단체나 학자 등이 의견을 수렴하고 사형제도 폐지 및 인권보호 협력을 위한 동아시아 지역 인권보호연대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나 정부차원의 인권보호협력이나 연대가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력과 연대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광주지역과 제주지역, 거창,[3] 산청·함양, 노근리, 여순 지역 등[4]은 국가적인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은 아픈 경험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지방도시의 인권침해 사건과 이후 한국 정부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과 노력, 피해배상과 보상,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령정비와 관련조직 개선 및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포함한 교육정책 등이 내실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과 내용들은 동아시아 전체 인권협력 네트워크 구성과 상호협력 기반마련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으며, 인권협력에서 정부차원의 협력이외에 지방도시 간의 협력에도 일정한 역할과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이 지역 이외에도 역사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군인이나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발굴하며 조사와 검토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각 국가에서 발생하는 국가에 의해 범해지는 다양한 방식의 인권침해는 직접적으로 해당 국가나 정부와의 인권보호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상호협력은 어려울 수 있다. 해당 인권침해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나 해당지역의 시

3) 한인섭, "1951년 거창사건 형사재판의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79면.

4) 그 외에도 현재까지 규명이나 공론화가 되지 않은 대규모 학살사건에 대해서도 지역 시민과 더불어 일정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지역적으로나 전국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역사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할 필요가 있다.

민사회 단체 등과의 상호협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에서 발굴하고 조사하여 마련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국가적으로 인권보호 역량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되고 구성된 내용은 동아시아 지역 인권보호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역시 활용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로는 마약범죄, 보이스 피싱범죄, 부패범죄, (강제)실종, 범죄수익 은닉범죄, 인신매매, 성매매, 테러범죄 등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와 범죄들을 본 연구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연구와 과제에서 세부 주제와 영역별로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마약범죄와 실종 및 재외국민 범죄피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이유로는 마약범죄는 가장 오래되며 근절되지 않는 범죄로서 국제적 조직범죄의 성격을 가지며 문제에 대한 공동인식이 용이하여 국가적인 공동대응과 상호협력이 가장 수용적이고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높다는 점에서 중점적 주제로 하였다, 또한 실종과 재외국민 범죄피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이유로 인구의 이동과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들이 대부분 자국의 국민들이 실종과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국가와 시민의 상호협력이 요청된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안전과 관련하여 최근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나 안전에 위협을 당하고 있다. 안전은 인권보호에 가장 기초가 되며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감염은 지역적으로나 국제적 협력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가짜뉴스나 혐오범죄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며 제도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인권침해 방지협력이 요청된다.

동아시아 지역의 각 국가는 현실적으로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가기구나 정부기관에 인권보호나 인권침해 감독 부서를 적절히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은 취약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시민사회 단체의 다양한 의견표출과 수렴 및 전달도 용이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부 시민사회 단체 사이에서 상호연대가 진행되어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 사이의 상호교류와 상호협력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이 있기도 하지만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며 역시 어려움이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이나 발전이 되지 않은 국가들을 지원하는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프로그램에 동아시아 각 지역 국가 또는 정부에 인권관련 부서 설치나 인권보호 교육 등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물자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현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하면서 지원과 교육이 현지의 상황에 적합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각국의 제도적 상황을 검토 반영하고 한국과의 기존 협력적 상황은 매우 상이하고 다를 수 있기에 이들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개별화함으로써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상호협력의 용이성을 높이고 향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필요할 수 있다.

국가나 정부의 인권보호 기관이나 부서설치, 인권보호 교육, 인권보호 연수 프로그램 운영은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각 국가의 정부기관 관련 업무담당자나 시민사회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에 존재하는 유엔협력기구,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KICJ)을 포함한 관련 연구기관, 정부 각 기관의 인권보호 관련 부서가 일정부분 협력지원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인권보호 협력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언어, 종교, 문화, 인종, 이념, 법제도의 차이와 경제, 정치, 안보, 군사의 목적이나 이해관계의 상이함은 장애로 인식된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의 어려움과 불가능성,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거나 논의하기도 한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권보호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거시적인 차원의 상호협력이나 상호연대가 어떠한 한 번의 노력이나 사업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부분과 영역에서 우선 필요하고 긴급하며 공감이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논의와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오프라인 상의 상호협력과 상호연대는 물론이고 온라인 상의 – 최근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메타버스를 일정부분 활용[5] – 상호협력과 상호연대도 하나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온라인에서의 상호협력과 상호연대는 상호 직접적인 접촉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충분한 친밀감이나 정보교류가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한 인권교육이나 인권보호활동이 형식적으로 치우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나 문제 제기가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들 중 아직 많은 국가들이 인터넷이나 온라인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 보편적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거나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온라인을 활용한 상호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한 장소와 지역 및 대상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이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소외된 장소와 지역 및 대상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인권보호활동과 인권보호 협력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연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즉 온·오프라인의 장점과 단점, 한계를 함께 검토하고 병행하며 문제점을 살피며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인권기구,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구, 유엔협력기관, 시민단체 이외에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회에는 다양한 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인권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에서 인권위원회가 적절히 구성이 될 수 있다면 각 국가 의회의 해당 위원회 의원들은 동아시아 지역적 이슈와 사안들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보다 민주적으로 수렴하는데 유익하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적으로 인권규범의 상호협력 체재나 조직, 협약이나 규범을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동아시아 각 국의 정부기관이 인권관련 부서를 포함하여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 관련 법률이나 규칙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면 이는 역시 인권보호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무적으로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5) 인공지능기술과 메타버스의 활용이 기술력이 낮은 동아시아 각 국의 상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현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혹시나 기업의 사업에만 집중에 되어 있는지 등도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지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함께 참여하며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각 국의 정부기관이 인권관련 부서가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부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관련기관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부록에서 첨부한 한국의 검찰과 경찰의 인권보호 관련규정에 대한 내용도 동아시아 각 국의 정부기관이 소통하면서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하며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정책에서 다소 앞서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국회의 인권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국회 인권위원회는 동아시아 지역 인권보호 상호협력을 위해 필요하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체계와 거버넌스 조직 마련 및 지역성 규범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며 또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 인권선언의 경우도 기존 시민단체 차원의 인권선언에서 더 나아가 – 한 번에 어떠한 완결 본을 제시하기 보다는 - 참여가 가능한 국가, 의회,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변호사 단체, 개인 등 참여가 가능한 주체의 참여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으로는 결의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선언과 헌장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역사적 주요사례와 특수한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제안되며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 인권체제 역시 한 번에 어떠한 완성된 형태의 인권체제를 형성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시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의회, 정부의 법무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외교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변호사 단체, 개인 등이 기존 조약이나 업무협약 등 상호협력 관계를 발전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인권교육, 인권연수, 인권협력관련 프로그램과 인권논의를 위한 포럼을 다양한 온·오프라인 형태로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대다수의 국가나 정부기관, 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기는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수 있지만 가능한 범위와 내용 및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국내적으로 인권보호나 인권정책이 아주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동아

시아 지역 각 국가 중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고 또 많은 논의를 통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와 검찰 및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 국회 (인권위원회의 설치 필요), 광주지역과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지역인권협력 체계 정비필요), 인권평화 관련 시민사회 단체 (국가와 정부 및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에 적극 참여) 등이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 (교육)프로그램과 연수 및 형사·법무포럼 등을 함께 참여하며 내실 있는 내용으로 상호협력하며 구성해 볼 수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KICJ)은 유엔협력기구(UNPNI, UN Program Network Institute)로서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에 소재한 유엔협력기구 태국 TIJ (Thailand Institute of Justice), 중국 북경사범대학교 (Colleage for Criminal Law Science of Beijing Normal University, CCLS), 일본 유나페이 (United Nations Asia and Far East Institute for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UNAFEI)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호주 AIC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미국 NI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스웨덴 라울발렌베리 인권·인권법 연구소 (RAOUL Wallenberg Institute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핀란드 HEUNI (European Institute for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ffiliated with the United Nations) 등과 상호협력하고,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와 검찰 및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대학의 아시아연구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 연구원, 지방자치단체와 인권·평화 시민사회단체, 변호사단체 등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KICJ)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즉 동아시아 지역 각 국의 정부기관과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대학과 다양한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업무협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동아시아 지역 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육에 힘을 쓰며 노력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지역 인권·형사법무 프로그램과 동아시아 인권교육원은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과 중심적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 론

김 경 찬

제1장

서 론

제1절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9세기 이후 세계는 1차·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전쟁의 도가니 속에 휩쓸려 끔찍한 살육과 심각한 인권침해를 경험하였다. 그러한 전쟁과 인권침해 상황에서 수많은 국가들은 인권의 중요성을 공감하였고 인권이 침해되지 않기 위하여 관련 다양한 협력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전 세계를 전쟁과 불안으로 치닫게 한 끔찍한 전쟁과 도발 및 살육이 일부 국가에서 시작되고 도발되었지만 이를 저지하고 또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일은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이나 정책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주변국가나 또는 전 세계적인 협력과 노력[6]이 수반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지역 역시 19세기를 지나 1차·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물론 거기에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과 이유가 있지만- 서구 국가들로부터 또는 동아시아 국가 내부적으로 또는 일부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그 와 관련한 역사적인 인권침해 문제 역시 충분히 또는

6) 세계적으로 유엔(UN), 유엔인권위원회(유엔인권이사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HRC),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은 물론이고, 지역적으로는 유럽지역에서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 1953),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등의 설립 그리고 미주지역에서 미주인권협약(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69), 미주인권재판소(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의 설립 그 외에도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프리카 인권헌장(African [Banjul]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1981), 아프리카 단결기구의 설립, 아프리카 인권/민족권리 법원 등은 그 성과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일정한 인권협력을 위해 노력하며 실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APF, 국제인권 및 국제인권제도-국가인권기구 매뉴얼, 2013, 159면.

적절히 진단되거나 평가 또는 반성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러한 과거와 현재를 일 단락하는 정리조차 시도되거나 진행되지 못하였다.

동북아시아 지역과는 달리 동남아시아 지역은 아세안(ASEAN)의 출범이 있었지만 최근 미얀마 사태나 홍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역시 인권보호협력과 관련한 논의와 실천이 충분히 또는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21세기를 지나가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은 현재도 다양한 국가로부터 정치적·경제적·안보적·군사적·지정학적으로 복합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인권이 소홀이 다루어지는 위태롭고 불안한 관계와 상황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은 마약범죄, 조직범죄, 사이버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인신매매, 성매매, 부패범죄, 해외 범죄수익 은닉범죄 등과 관련 범죄발생과 범죄피해가 초국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형사사법공조는 국가 간 개별적 조약체결을 통하여 진행하는 상호협력의 비효율성과 -국제인터폴을 통한 협력이 일정부분 효과가 있지만- 동아시아 국가에서 다국 간에 걸친 다량의 국제적 범죄 공동대응에는 역부족임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범죄피해관련 인권보호도 취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 중 대부분의 국가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형사사법공조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인권보호에도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형제도의 폐지의 과제도 역시 어느 한 국가의 내부적인 노력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범죄의 발생과 범죄대응 및 범죄피해의 회복, 인권침해의 법제도 개선 모두 역시 어느 한 국가만의 인권보호의 노력과 법제도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외에도 안전과 관련하여 테러범죄, 최근 방역과 관련한 코로나(Covid-19)의 발생과 관련한 사안에서도 국제적인 현상과 국가 간 상호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는데, 공동방역과 백신협력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증오혐오범죄, 가짜 뉴스 등의 문제와 부작용도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 다양한 목적의 외국인 결혼, 난민수용 등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원인과 이유로 인구의 이동이 대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자발적·비자발적 외국인의 이동과 체류 및 정착은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지역 국가적 인권협력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평화와 안전, 인권의 보호는 지역적 협력기재가 부족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과 정책만으로는 인권침해의 적절한 방지와 인권보호는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 각 국가의 국내적으로도 정부와 인권관련 기관, 시민단체 모두가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자기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며 지역적인 상호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이 인권침해 문제와 인권보호 관련 논의와 상호협력의 어려움에는 다양한 원인과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 인권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방안들을 끊임없이 탐색하며 제안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한 조금 더 나은 상호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기 위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인권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구상하고 또한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에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국의 형사사법 기관의 상호간 원활한 협력을 인권보호적인 관점에서 가능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동아시아 지역은 또한 각 국가의 정치·경제·문화·종교·언어의 차이가 있고 또한 인터넷을 포함한 기술력의 차이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법무와 인권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부작용은 인간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공유하고 공감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를 넘어서기 위해 국가와 각 정부기관, 검찰이나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국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대학과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방안이 요청된다.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을 위해 21세기 새롭게 발전하는 인터넷 기술이나 디지털 기술 등의 지역적인 발전의 차이를 포함하여[7] 관련 부작용과 문제점을 포함하여 인권영역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

7) 김익수·곽도원, 『동북아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경쟁과 협력구도』, 아연협동연구 시리즈 1, 아연출판부, 2021, 15면.

제2절 | 연구의 내용과 범위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보호를 위한 네트워크의 구성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협력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제2장에서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또는 안전관련 주요 사례들을 사형제도, 마약범죄, 범죄피해, 코로나-19 등을 중심으로 관련 문제점과 함께 살펴보았다.

범죄의 영역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뿌리 뽑히지 않는 마약범죄, 국가에 의한 또는 다른 형태의 파악하지 못하거나 이해되기 어려운 강제실종, 자국 국가의 보호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범죄피해, 안전과 관련하여 전 세계를 또 다른 형태의 체계로 이끄는 코로나-19, 극악하고 흉악한 범죄에 대한 생명박탈에 대한 국가적 승인제도로서의 사형제도 등은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범죄대응 및 인권침해 방지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협력적 방안논의가 매우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인권문제는 노동, 환경, 평등, 여성과 아동 및 노인 등 약자, 국가권력과 시민 등등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발전된 국가와의 관계성 및 미래세대와 연관성 등 다양한 쟁점과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본 과제는 주로 범죄와 안전 중에서 우선 몇 가지 영역만을 범위와 대상으로 하여 기초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후속 연구와 과제에서 논의를 확대하고 심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인권논의와 인권기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협력의 취약성을 검토한다. 인권논의의 활성화와 더불어 민주적이고 독립적, 개방적이며 폭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한 인권기구의 설립은 인권보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인권기구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본다.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 국가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인근 국가나 강대국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지 못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력이 강한 국가 역시 국내적으로 인권보호에 취약한 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인권영역에서 상호협력은 다차원적인 연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역시 시민단체에서부터 국가와 정부기관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한 범위와 선호되는 영역을 우선으로 하여 확대되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보호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지만 그 중 형사사법의 영역 중 핵심적인 영역인 생명을 다루는 사형제도와 매우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마약범죄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내 범죄피해 공동대응 필요성을 포함하여 한국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최근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안전에 무서운 위협을 가하는 코로나-19 등과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이러한 인권과 밀접한 영역에 있는 형사사법의 과제는 어느 한 국가만의 정책이나 노력만으로 온전히 성취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엔(UN)과의 협력, 동아시아 지역 국가 내 인권기구와 정부기관, 형사사법기관의 상호협력의 한계와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아울러 이러한 상호협력에 아래 저변에서부터 의견을 모으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참여와 역할도 함께 살펴본다.

그 외에도 적절하고 온전한 인권보호와 형사법을 포함한 관련 법제도의 개정과 마련은 단기간에 달성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타국의 법 제도와 관련 문제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온전하고 신속한 형사사법의 협력이나 인권적 형사정책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동아시아 인권 형사정책 포럼을 통하여 각국의 법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권적이고 상호협력적인 동아시아 형사사법협력이 진행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국가 내 형사사법기관, 범죄대응기관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입법기관, 시민단체, 학생들도 폭넓게 참여하여 동아시아 각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인식의 폭을 넓히며 인권보호의 공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동아시아 인권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통하여 인권 토양의 양질화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유무,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인권조직이나 인권부서와 인권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직이나 부서와 인권지향성, 인권관련 시민단체나 민간단체의 활동과 협력, 인권관련 학자나 학술단체, 변호사 단체 등 법률 관련 단체의 인권활동과 상호협력 등은 국가마다 다양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논의가 가능한 영역과 협력이 가능한 조직과 단체부터 상호협력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며 실무적인 여건이나 환경이 어려운 경우 우선적으로 이론적인 논의와 협력을 이끌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원활한 형사사법의 공조는 단지 형사사법기관 간의 상호협력 뿐만 아니라 각 국의 형사법제의 입법과 개정에 대한 공동인식 그리고 초국가적인 범죄예방과 범죄피해회복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민의 의견이 복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는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일정한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과정과 장기간의 노력을 거쳐서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인의 인권선언, 인권협약과 인권법원이 설립 등을 고려하거나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동아시아의 인권선언은 민간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과거 진행된 바 있는데 향후 이를 정부나 국가차원으로의 진행과 협력의 필요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선언이 정부와 국가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우, 상호논의와 협력을 거쳐 향후 인권협약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인권법원과 관련한 어려움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다.

제3절 |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적·인권적 형사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정책연구로서 이에는 몇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

첫째,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인권협력에서 인권의 보편성 추구와 특수성 논의와 관련한 한계와 이에 대한 극복 문제이다.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모두 또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은 현재까지 기본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근본적인 어려움과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우 지난하고 인내심 있으며 포용적인 논의와 토론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으며 보편성에 어긋난다고 무력투입을 진행하기에 앞서[8] 먼저 인권침해를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교육함으로써 이해하고 예방하는 것이 우선

8) 박기갑,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법문사, 1988, 27면.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4가지 주제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데 세계 인권선언에서의 보편성 기준은 동아시아 지역 국가 인권협력 논의에서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특수성 논의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세계 인권선언과 또 다른 보편성 기준이나 더 높은 보편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도전적이고 이상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는 기존 세계인권선언의 보편성 기준부터 점검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더불어 동아시아의 특수성과 취약성이 보편성을 포기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인권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가를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즉각적이고 공식적이며 완성적 형태의 협력체계를 짧은 기간에 구축하여 실무적인 성과가 바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지역 인권체제의 구축이 현재까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남아시아에서의 아세안(ASEAN)의 역할과 한계 역시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점이기도 하다.[9]

동아시아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적 평화와 안전의 확보는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10]이 있는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과 동남아시아 10개국 즉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범죄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관련 인권보호도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다는 점에서 우선 동아시아 각 국가의 범죄 대응과 예방 및 안전, 법체계에 대한 기초적인 상호이해와 공유를 시작으로 하여 관련 문제점과 논의를 점차 확대해 감으로써[11]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과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과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9) 최의철·홍관희·김수암,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1-06, 통일연구원, 2005, 97면.

10) 최의철·홍관희·김수암,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1-06, 통일연구원, 2005, 98면.

11) 유럽협력이나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나 상호협력을 살펴볼 때, 한중일 협력이나 동아시아 지역 협력은 매우 초보적이고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진행남, 갈등해결에 있어서의 공공외교의 역할, 제주평화연구원, 『2013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제도화: 동아시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 활성화 방안』, 오름, 2013, 134면.

셋째,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경제·외교·문화·언어·종교·군사·지정학적 상황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동아시아의 상호협력에 다양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각 국의 다양한 형태의 인구이동에 따라 정치·경제·외교 등의 협력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범죄예방과 범죄대응 및 인권보호의 상호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 역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동아시아 즉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각 국의 각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 상호 공감이 가능한 부분, 긴급한 부분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협력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처음부터 완성적인 형태의 협력방안과 모범적 체계를 제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동아시아 각 국 즉 한국의 좌우 국가 중국과 일본의 경우 범죄대응과 관련 형사법에 대한 기존 연구가 상당부분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동남아시아의 경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국가에 대해서 기존 국내적인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점이 있다. 동남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시아, 브루나이, 태국,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10개국, 각 국 역시 한국과 다양한 형태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과 범죄대응은 물론이고 해당국가의 형사법, 출입국 관련법, 마약관련 법 등을 포함한 법체계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와 검토가 현재까지 상당부분 진행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포함하여 한 두 차례의 연구와 검토로써 동남아시아 각 국에 대한 상세한 정보교류와 원활한 상호협력방안 마련과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를 부인할 수 없으며 향후 후속과제에서 필요한 세부 추가연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다섯째, 동아시아 각 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군사적 이해관계와 지정학적 위치 등 다양한 원인과 이유에서 범죄예방과 범죄대응 및 인권보호 논의 역시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어려움 있고 또한 과도하게 적극적인 협력의 요구나 어떠한 강요가 있을 경우 협력추진과 진행이 어려움이 있거나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권보호가 다른 영역의 쟁점과 더불어 또는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적절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까지는 단기간 또는 한 두세대에 완수되기 곤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역시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 가능성과 해당 국가의 의사를 가급적 존중하며 논의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각 국의 인권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국가와 정부 기관 및 시민단체 등의 협력과 지원이 다차원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형사사법 관련 기관만의 노력과 상호협력만으로도 역시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정부와 시민이 참여하며 연수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문제의 공동인식과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는 일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인권보호와 인권보호협력을 위한 노력과 교육은 장기적으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군사적 분야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도자와 리더를 양성[12]할 수 있는 양질의 토양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13]

여섯째, 동(남)아시아 지역 형사·법무법제와 현지 실태조사 부족의 취약성이다. 한국이 해방이후 급속한 발전을 이어온 것은 이른바 발전된 국가의 법제와 관련 기구에 대한 도입과 연구가 큰 역할을 하였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이 후진국에서 중진국을 넘어 이른바 발전된 국가로 이어지고 또 인근 주변국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한국이 모범모델로 삼았던 이른바 몇몇 발전된 국가의 법제를 단순히 도입하여 연구하는 단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이른바 발전된 국가의 법제에 대한 연구를 중단할 필요는 없겠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른바 발전되지 못한 인근 국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제연구와 조사연구 분야에 대한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경우도 동(남)아시아 지역 관련 연구를 일정부분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의 다양성과 범위를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12)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 인간의 삶과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의미를 아는 지도자와 리더가 다수 배출되는 사회와 국가는 인간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경제·군사·안보적 목적과 이해관계에 반드시 인간의 생명과 삶을 우선하여 고려하며 국가를 넘어서 평화로운 삶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수 있다.

13) 동아시아 지역,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리더들은 어떠했는가를 시대적으로 검토하고 공유해 보는 것도 유익할 수 있다. 김준연 외 5명, 『동아시아 시대의 리더십』,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7~8면.

[그림 1-3-1]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한글 사용[14)]



한편 인도네시아 중 일부 부족은 한글을 자신의 문자로 활용하기도 하는 등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호협력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다양한 분야와 형태에 대해 신뢰와 안정을 기초로 한 형사·법무법제에 대한 협력이 요청되며 이와 관련한 연구와 조사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협력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일곱째,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인권침해 관련 문제와 사건을 포괄적으로 한 번에 다루거나 대응하기에는 역시 한계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미 발생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권침해 사례와 사건들을 현재 또는 짧은 시간에 충분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즉시에 마련하는 것은 역시 커다란 부담이 되고 어려울 수 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과 사례들은 동아시아 각 국이 우선적으로 가능한 충분한 자료와 증거 및 증언들을 수집하고 기록하며 보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며 그렇게 못하거나 상황이 어려운 국가들에게는 다양한 차원의 지원과 협력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여덟째,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 관련기관과의 직접적인 이동이나 교류 및 학술대회 개최나 참여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 직접적인 대면을 통하여 많은 대화와 소통 및 교류가 진행되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대신 온라인

14) 세종충무공 이야기, 서울특별시 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세종대로 지하 175

기술이 발달하여 온라인과 전화통화,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으로 세부 주제와 관련한 자문을 구하고 토론하면서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동아시아 지역 인권네트워크도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협력과 구상이 필요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면적인 접촉이 부족하였다는 점은 일정한 한계임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향후 코로나-19의 상황이 진전이 되는 경우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협력과 소통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범죄와 범죄피해, 안전유지는 물론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한 인권침해 역시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관련 모든 영역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사례와 쟁점을 모두 다루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부패범죄, 보이스피싱 및 신종사기범죄, 범죄수익 환수, 테러범죄, 성매매, 조직범죄, 외국인 이주와 노동관련 범죄, 형사사법 기관 및 형사절차 관련한 문제점 역시 인권보호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범죄대응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은 후속과제나 또는 별도의 과제로의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적 인권보호와 안전

신 동 일

제2장

지역적 인권보호와 안전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인권논의와 인권협력의 과제를 살펴보기 이전에 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인권개념의 성립과 그 역사적 배경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이미 지역 국가적 인권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 국가 인권협력을 위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느 지역이나 국가 모두 역사적으로 발전한 배경과 맥락의 차이를 보일 수 있고 다양한 입장이나 상황에 따른 관계와 관점이 주는 상이함이 있을 수 있지만 타 지역과 타 국가가 일정부분 지향하고 발전 시켜온 성과에서 발생한 시도와 시행착오 그리고 노력의 과정들이 주는 시사점은 향후 동아시아 지역 국가 인권보호와 인권협력에 일정부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 국가적 인권협력과 안전을 위한 협력은 불완전하고 미비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비교검토를 통하여 더 넓은 범위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제1절 | 기본이해

인권은 비교적 최근에 성립된 개념이며, 규범적 보호필요성은 1948년 세계 인권선언의 보편적 승인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존중되지 않았다. 인권이 무시되는 극단적인 예는 전쟁이다. 전쟁 상태는 언제나 현실적인 힘의 관계가 통용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전쟁에서도 지켜야 하는 인권 규범들은 준수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집회나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원칙들은 시위를 진압하는 국가공권력에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전쟁과 같은 복수의 사법권 또는 사법권을 초월한 행위들은 행위자들의 주관적 도덕관에 의존하기 쉽다. 통용되는 전쟁수칙은 비인권적 행위를 금지하기도 한다. 전쟁 상황을 떠올리면 다양한 규범준수에 대한 의견 중 현실주의라고 하는 모델을 떠올리게 된다. 우리는 인간의 규범 준수가 형벌과 같은 행위 후 처벌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처벌가능성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요소들도 있다. 이를 일반화된 도덕이나 윤리 등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법제도에 국한하여 설명한다면, 공유하는 규범관 또는 규범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처벌 두려움과 관계없는 규범 존중 태도는 어떻게 가능한가?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확장을 논의하려면 우선 인권에 대한 존중이 어떻게 규범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규범 존중은 현실주의적으로 설명할 때처럼 위반 또는 부작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강제에 대한 두려움 또는 기대감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특히 법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관할권에서의 규범 존중(또한 '상호 규범승인')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사법관할권을 초월한 규범 존중 또는 보편적 규범주의적 행동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하여 법이론과 역사적 경험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두 가지 모두 문헌적인 연구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지만, 인권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20세기 이후 실질화되고 명문의 조약이나 법률에 구체화되는 과정과 이론적인 설명을 시도해보면 개별 사법권을 넘어서 공통의 규범적 태도(인권존중)가 형성되는 과정을 추상적으로라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실적인 힘의 관계라고 생각되던 규범력이 자발적인 규범준수로 진화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물론 그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될 수 있다.

1. 전쟁론

철학자 왈처(Michael Walzer 1935-)는 전쟁에 대한 입장을 평화주의와 현실주의, 정의적 전쟁주의로 구분하였다.[15] 그는 중세적 전쟁론은 현실적인 전쟁의 비극을 발생했고, 중세 초기 기독교 사상이 보편화되면서 유럽지역에서 종교적 계율에 따른 평화주의가 이론화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점차 현실적인 비극을 제한하는 전쟁 규범이 출현하였다고 한다. 사실적 사태인 전쟁에서 규범 준수 현상으로 변화한 과정을 설명한다. 중세 이후 최근까지 전쟁에 대한 이념은 정의로운 전쟁이다. 대부분 전쟁은 수행하는 측의 정당성을 전제하고 있다. 소위 정의적 전쟁주의'는 로마시대 신학자인 아우구스투스(St Aurelius Augustinus Hipponensis 354-430)가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근거로 전쟁에 대한 일반 규범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 지금의 알제리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한 신학자이다. 그의 이론은 간략하게 신앙과 학문적 태도를 통합하는 것인데, 간략하게는 믿음을 확인하는 지식'(fides quaerens intellectum: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신학은 신앙이나 믿음과 같은 제한적인 분야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문이 기본적 방법론으로 삼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론화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사상은 서양 학문에서 모든 학문의 메타 이념으로 신학을 파악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은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 1224-1274)에 의해 이론적으로 세련화된다. 아퀴나스는 신학에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활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십자군 활동 이후 중세적 기독교 신학은 체계적인 변화를 거치는데, 아퀴나스는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신학에 도입하였다. 11세기부터 활발해진 고전 번역의 중심에는 십자군 활동으로 유럽으로 유입된 아랍권의 풍부한 과학과 정신적 문헌들의 영향이라고 한다. 13세기 교회는 그리스적 자연철학 사상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스 자연철학을 배격하기 시작한다.(1215년 교황의 금지령) 이탈리아 나폴리 귀족 출신인 아퀴나스는 파리대학에서 수업하면서 기독교 신학을 그리스 철학과 융합시키는 작업에 몰두한다. 그의 저서 신학대전은 그 결과물이다. 핵심 내용은 신의 교리와

15) Walzer, Arguing About War, Yale University Press, 2004, 3면 이하

인간의 이성을 구분하여 계시적 진리와 모순되지 않는 이성적 활동을 신학의 보편적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16] 아퀴나스는 당대 신학자인 스코투스(Johannes Duns Scotus 1266-1308)와 대립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들 사상의 편차는 오늘날까지 주지주의와 주의주의로 철학적으로 구분되어 이어지고 있다. 주지주의(주지론)는 의지 활동의 원인을 지성 또는 지성의 대상으로 파악하지만, 주의주의(주의론)은 의지활동의 본질은 의지를 하는 주체 내에 독립되어 있다는 설명이다.[17] 이를 인과론으로 바꾸어 보면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는 주체의 지성에 기반한 의지의 대상이 되는 반면, 스코투스에게는 의지 자체로 파악해야 하는 대상이다. 주지론은 존재하는 신은 지성(원인)의 결론(결과)이지만, 스코투스는 의지적 활동은 단지 조건일 뿐이고 신의 존재에 기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예컨대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를 증명 가능한 것으로 본 반면, 스코투스는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은 불가능하다. 스코투스는 아퀴나스의 주장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원인을 반증할 수 있다는 설명은 비논증적이라고 비판하였다.

김율 교수는 스코투스의 주의론은 실제로는 아퀴나스의 이론을 반박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헨리쿠스(Henricus Gandavensis; Henry of Ghent 1217-1293)의 이론을 계승 발전한 것으로 설명한다.[18] 이는 의지의 원인을 대상에서 찾는 것과 주체에서 발전시키는 것의 차이로 철학 논의에서 계승되고 있다. 후자를 스코투스 주의라고도 하여, 이후에는 윌리엄 오캄(William of Ockham 1280-1349) 등이 이를 발전시켜서 중요한 철학적 관점이 되고 있다. 그 차이는 보편적 생활세계인 정치적 활동을 구체적 규범으로 규율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된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공리인 운동을 일으키는 자(movens)와 운동을 하게 되는 피동자(motum)의 구분[19]에 따르면 의지적 대상과 의지적 주체는 반드시 달라야 하기 때문에 인식대상

16) 자세한 내용은 이경재, "형이상학: 아리스토텔레스 vs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철학』 제6권, 한국중세철학회, 2000, 101-222면.

17) 김율, "의지운동의 원인에 대한 둔스 스코투스의 이론", 『철학사상』 제70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8, 37-61면.

18) 의지와 지성의 인과론적 관계는 스코투스의 문헌을 분석하여 설명한 김율, "둔스 스코투스의 의지이론 (I)", 『철학사상』 제 28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8, 213~241면; "둔스 스코투스의 의지이론 (II)", 『철학』제 98호, 한국철학회, 2009, 51-0면 참조. 간략하게는 위의 글, 40면 이하

19) Aristoteles, Physica VIII 3, 256a2

의 원인성을 필수적인 내용이 되고 만다. 스코투스는 헨리쿠스의 견해를 발전시켜 대상을 인식하는 지식(성)과 의지가 동시에 작용하여 하나의 의지활동을 만든다는 결론을 도출한다.[20] 이러한 논쟁의 결과는 중세에는 결정론과 비결정론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현대에도 그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주의론과 주지론의 대립의 결론보다 이성 또는 의지적 활동이 인간의 기본적 심적 태도에 중심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현상이다. 순수한 현실을 판단하는 주체에서 주체의 주관적 태도가 활성화되는 이성의 본질 역시 (기독교) 계율이나 일상생활의 규범과 같은 의지적 규칙 준수의 결과일 수 있다는 사고가 형성될 수 있었다.

오늘날 "법의 지배"라는 사태가 신학적인 계율 준수 태도에서 발전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다. 중세 법학자인 그로티우스(Hugo de Grotius, 1583-1645)는 저서인 전쟁과 평화의 법(De jure belli ac pacis)[21]을 통해 아퀴나스의 전쟁론을 전쟁에서 지켜야할 계율로 설명했을 뿐 아니라 모든 보편적 현상의 규범화 아이디어로 확장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세적 전쟁론은 단순히 오늘날 국제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법에 대한 복종이라는 초기 법치국가 원칙을 복수의 사법관할권에서 실현시키고 지속적인 규범 존중을 가능하게 만든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22] 전쟁법에 대한 그로티우스의 관점은 영국의 헌법학자 다이시(Albert Venn Dicey 1835-1922)가 이론화한 법의 지배(rule of law)가 근대 사회에서 보편적 규범이 되는 과정의 복수의 관할권에서도 유지되는 믿음으로 확대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

20) 김율, "의지운동의 원인에 대한 둔스 스코투스의 이론", 『철학사상』 제70호, 2018, 51면. 직접 인용된 문장은 oluntas tamen est causa principalior, et 〉natura cognoscens〈 minus principalis, quia voluntas libere movet, ad cuius motionem movet aliud (unde determinat aliud ad agendum); sed natura 〉cognoscens obiectum〈 est naturale agens, quod quantum est ex parte sui agit semper: numquam tamen potest esse sufficiens ad actum eliciendum, nisi concurrente voluntate.(왜냐하면 의지는 자유롭게 운동하고, 자신의 운동을 따라서 다른 것을 운동시키지만(그래서 다른 것을 작용하도록 결정하지만)〉대상을 인식하는 〈 본성은 자연적 작용자라서 그 자신 편에서 기인하는 한 항상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성은 의지가 함께 작용하지 않는다면 활동을 유발하기 에 충분한 원인이 될 수 없지만 말이다.(김율 교수의 번역)

21) Draper, "Grotius' Place in the Development of Legal Ideas about War", in: Bull/Kingsbury/Roberts, Hugo Grotiu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22) 그로티우스의 중요한 저서는 Opera Omnia Theologoca이다. 이는 Canon Law라는 표제로 번역되기도 했는데 이 책에는 교회법의 계율인 착오론(ignorantia juris non exsacusat: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와 같은 사항이 정리되어 있다. 교회법의 계율들이 세속법으로 적용되게 된 계기에서 그로티우스의 역할을 빼놓을 수는 없다.

2. 그로티우스와 교회법

오늘날 국왕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관념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적인 권력관계를 감안하면 이러한 주장은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하기 힘들다고 믿는다. 유럽의 역사에서 볼 때 법의 지배 원칙은 종교적 신앙이라는 기본 이념에 따라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범신론적 신학과 신학적 법이해의 관계성은 이 가설을 더욱 그럴듯하게 만든다. 법학적 관념에서 본다면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신학적 법이론에서 중세와 근대의 전쟁 규칙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지배(규범화)하는 규칙으로 보편화되는 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네덜란드 출신 학자 그로티우스는 흔히 국제법의 아버지로 불리운다. 그러나 그의 법에 대한 기여를 국제법으로 국한하는 것은 그의 업적을 감안하면 부당하다. 비록 그의 연구는 전쟁론으로부터 자유해양론(Mare Liberum 1609)이나 화평론(De Jure Belliac Pacis 1625) 등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을 이론적 모델로 삼아 당시 열악했던 법이론을 풍요롭게 재구성한 학자이다.

여기서 자연법(jus naturalis) 사상이란 세계 제2차 대전 후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된 소위 '자연법 부흥운동'[23]에서 비롯되는 현재의 자연법과는 다르다. 고대 자연법이란 인간의 법과는 다른 순수 자연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로마법상 자연법도 순수 자연법칙을 의미한다. 로마의 실용적이고 현세적인 법은 사람들의 정신을 규율하는 규범이 아니었다. 로마의 실용적 정신세계는 그들의 법이 인간의 의지나 관념을 규율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하지 않았다. 공화정기 로마법의 특성은 비의지적이고 객관적 결과만을 중시하여 시민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단순한 형태였다. 예를 들어 현재 민법의 의사주의와 표시주의(결과주의) 간의 대립은 공화정기 로마시대에는 불가능한 논쟁이다. 예를 들어 로마법 상 사기행위는 행위 자체가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것으로

23) 자연법 부흥 운동이란 나치스 몰락 이후 소위"법을 통한 불법"을 극복하려는 일련의 이론작업으로 볼 수 있다. 자연법은 중세적 이성법 논의를 중심으로 실정법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일조했다. 이러한 운동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쳐서 7-80년대 독일 유학 출신들을 중심으로 이성법(자연법)의 절대적 우위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모순은 독일의 자연법 부흥운동은 법이념이나 이성적 판단 등을 실정법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치에 의해 그 당시 실정법이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자연법 우위라는 명목으로 무시되었던 현상을 극복하고자 소위 올바른 자연법을 설명하려던 흐름이었으나, 정작 국내에서는 모든 실정법을 능가하는 자연법 사상으로 오해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이해되지 않았다. 사기에 의한 계약일 뿐이고, 그 계약에 의한 결과는 당연히 효력이 있었다. 피해자가 이를 사기행위라고 주장할 때 반대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한다. 이를 소권우선원칙이라고 한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사기 계약 결과의 부당성을 소의 권리를 가지고 반소를 제기하면, 사기에 대한 계약 결과를 회복할 수 있는 법효력을 부여하는 형태였다.

세속법은 대체로 정신적인 요소, 즉 주관적 요건을 등한시하였지만, 교회법은 사제들에게 주관적 의사나 욕망 등을 훈육할 것을 명령하여 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공화정기 로마법의 표시주의 의존성은 황제정기 로마법에서 변경된다. 그 결정적인 변화의 원인은 기독교의 공인과 로마의 붕괴 이후 교황청 주도의 정치사는 주관적 신앙이 아닌 객관적 법(교회법)의 주도적 역사를 만들어갔다.[24] 교회법 원리들과 세속법(로마법)은 실질적인 차이점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노예제도[25]나 가부장권, 재산권, 계약원리, 혼인제도 등은 양 법제에서 확연하게 달랐다. 중세시대까지 사제들에게 적용되던 교회법은 특정 시기(십자군 운동)부터 기독교 사상을 상징하는 신성법(Holy law) 개념으로 기능한다. 즉 일종의 교회 내 신앙적 강령처럼 이해되었다. 반면에

---

24) 이러한 관점은 보편적인 이해여서 자세한 문헌들은 제시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문헌은 역시 Berman, Law and Revolution I: The Formation of the Western Legal Tradition; Law and Revolution II: The Impact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s on the Western Legal Tra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reprinted).

25) 로마법상 노예제도는 오늘날 일반인들의 생각처럼 강압적인 형태의 소유관계가 아니라, 가사와 특정 능력(예술이나 학문 등)을 보조하는 형태로 존속하였다. 단지 노예는 법률능력이 없다는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 로마 시대의 문인인 티로(Tiro)나 철학자 호라시우스(Horace)는 노예 신분이었으나, 로마인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로마 중기와 후기 식민지가 확대되면서 노예에 대한 재산적 가치 증가하고, 그로부터 가학적인 노예문화가 발생했다고 설명한다. 중기 이후 노예들에 대한 가혹한 차별은 3차례의 노예반란(135-132; 104-100; 73-71 BC)으로 설명된다. 팍스 로마나(AD 1-2) 시기가 되면서,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한 노예 확보가 불가능해지면서 노예들에 대한 대우나 처분이 달라졌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후 기독교 계율의 영향으로 노예에 대한 법규들도 제안되었다. 유명한 법률은 로마 황제 피우스(Antoninus Pius 138-61)가 제정한 지나치게 잔인하게 노예를 살해한 주인을 처벌(Instit. Just., lib. I, tit. 8; Dig., lib. I, tit. 6, leges 1, 2)하는 법률과 콘스탄티누스 1세의 노예살해를 일반 살해와 동등한 것으로 금지(Cod. Just., lib. IV, tit. 14)하는 법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Justinian I 527-65)의 해방된 노예를 로마시민으로 인정하고 노예에 대한 가혹행위 금지(Cod. Just., lib. VII, tit. 6; Nov., VII, cap. viii; Nov. LVIII, praef. capp. i, iu)한 법률들이다. 중세 유럽에서 파생된 농노 또는 장원제도에 의한 노예제도는 고대 노예제도와 달리 노예를 주인과 계약관계로 변경하였으며, 종교개혁과 계몽시대를 거치면서 아이티 노예혁명이나 미국 노예폭동 등의 실질적인 사건과 산업변화나 경제관계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노예는 해방되었다. May, Ancient Legal Thought. Equity, Justice, and Humaneness from Hammurabi and the Pharaohs to Justinian and the Talmu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중세 자연법은 고전적 자연법[26]과 달리 신의 섭리가 자연현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범신론적 사상의 영향으로 자연=이성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연적 현상은 신의 이성과 긴밀히 연결된다는 사고유형은 유럽사회에서 오랫동안 존속했다.[27] 중세 후기 교회법은 세속법과 융합된다. 중세 교회법은 Jus Antiquum과 Jus Novum, Jus Novissimum으로 구분되는데, 의미는 고대법, 신법, 최신법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대법은 2세기 경 성립된 12 사도 지침(the Apostolic Church-Ordinance: Didascalia)을 근거로 하는 초기 교회법을 말한다. 신법은 다양한 교회법들(Collectio Dionysio-Hadriana, Collectio canonum Dacheriana, Collectio canonum vetus

---

26) 고전적 자연법(jus naturalis)은 이성법의 뜻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로마시대까지 자연법은 단순히 자연의 법칙으로만 여겨졌을 뿐이다. 인간 사회를 둘러싼 자연 환경을 단일한 신의 창조물로 보는 관념도 없었다. 중세 기독교의 관점에서 모든 창조물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신앙이 확대되면서 인간의 의지나 감각, 이성마저도 신의 계획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발생한다.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 간에도 이러한 관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기독교의 분화과정과 중세 초기 활발했던 종교회의들의 역사는 오늘날 기독교 계파가 수없이 분열되던 당시의 상황을 반증한다. 로마시대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예수의 존재에 대해 신이 아닌 인간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으나, 니케아 종교회의(325년)에 와서 강압적인 신의 아들론이 득세하면서 시리아나 요르단 지역 초기 기독교 교파인 아리우스(256-336)는 이단 취급을 받아 탄압받기도 하였다. 실제로 신의 아들(divi filius)라는 명칭은 개념상 비인간계의 신에게 출생하였다는 개념이 아니다. 로마시대 중시부터 훌륭한 업적을 많이 보여준 지도자들에게 이 명칭을 은유적으로 사용했으며, 암살당한 시이저에게 이 명칭이 수여된 이후 로마 황제들에게는 대부분 이 칭호가 사용되었다. 중세 이후 개념에 대한 이해가 희박해지면서 실제로 신의 후손이라는 뜻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소위 역사적 예수 운동을 주도한 쉬바이처(Ludwig Philipp Albert Schweitzer 1875-1965)의 박사학위 논문(Geschichte der Leben-Jesu-Forschung)에서도 잘 설명되고 있다. 또한 근대 신학자인 불트만(Rudolf Karl Bultmann)이나 197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연구 경향에서 확인 가능하다.

27) 초기 기독교 신학은 그리스 철학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를 기반으로 샤머니즘과 창조된 자연을 혼동하고 있어 보인다. 플라톤의 노모스(Nomos) 개념은 인간들이 아닌 여신 네메시스(Nemesis)가 주도하는 관념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관념은 자연(Physis)를 법의 원천으로 파악하게 되는 이데아론을 따르게 되고, 인간 이성이 아닌 자연과 유사한 결정을 이상적인 법적 갈등 해결로 보는 이해를 만든다. 이러한 혼란 자연관에 대한 혼란스러움은 소위 보니파키우스 사건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잉글랜드 출신의 수도사인 보니파키우스(Bonifacius, 영어명 Winfrid)는 720년경 기독교 지역이던 네덜란드의 가톨릭화를 추진하던 중 당시 기독교가 샤마니즘에 따르는 이단적 교리를 신봉한다고 지적하고 지역에서 숭배하던 오딘(Odin) 신의 영적 대상인 토르(Thor) 나무를 사람들 앞에서 베어버리는 활동을 통해 현재 독일어권 지역 내에 남아 있던 아리우스 파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로부터 벌목을 통한 정령신앙 제거가 가톨릭 교단의 이단 투쟁으로 오인되기 시작하고, 그 징표로 벌목한 나무를 집에 놓는 관습이 생겼다. 이로부터 크리스마스 트리가 유래되었다고 한다. Odin은 고대 영어의 Woden와 같으며, Wood의 고전적 형태이다. 보니파키우스는 후에 다른 선교지역에서 강도를 만나 살해되는데, 그의 이미지를 프랑크 왕국의 피핀이나 샤를 대제가 무력적인 선교활동의 상징으로 추대하고, 교황 그레고리 2세가 이를 축성하여 성인으로 지정하면서 프랑크 왕국과 우르바노 2세의 로마 교황청이 주도한 십자군 운동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상세한 설명은 Holland, Dominion. How the Christian Revolution Remade the World, Basic Books, 2019.

Gallica, Collectio canonum Sanbiasiana 등)이 발견되면서 법학은 객관적인 특성에서 주관화되고 복잡한 양태로 변화한다. 현재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 법전은 12세기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확립한 교회법전(Decretum Gratiani)과 1234년 교황 그레고리 9세의 교회법(Decretalia Gregorii Noni)이다. 이를 토대로 중세적 교회법은 실체법과 절차법 을 통합하여 편찬되고, 그보다 진화된 법전은 1580년 경 교황 그레고리 13세 등이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전 체계(판텍텐)에 따라 새롭게 편성한 교회법전(Institutiones juris canonici)이다.

그레고리 7세에 의해 주도된 교황 혁명기[28]를 거치면서 교회법은 점차 세속법보다 체계적이고 세련된 규범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세속법 법원에서도 사건을 심판할 때 교회법의 법리를 추종하는 경향이 생긴다. 그로티우스는 세속법을 신학적 규범주의로 해석하면서, 순수한 세속법 원칙과 다른 원리들을 이성법 또는 자연법으로 개념화한다. 이를 통해 아퀴나스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정전론 사상을 통해 극단적 전쟁을 자연신학적인 규범으로 제한하려 했다. 자연신학(스콜라 철학)이란 인간의 정신 뿐 아니라 모든 자연적 현상도 신의 섭리에 따라 완성된다(gratia non tolit naturam, sed perficit: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다)는 견해이다.[29] 자연적 이성(일반적 이해) 역시 신앙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또한 인간의 모든 행동도 (신학) 규범에 따라 행사될 수 있다. 자연신학은 신앙규범의 보편화를 의미한다. 그로티우스는 이를 통해 신학적 규율을 일상적 생활을 넘어서 전쟁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보편적 규범으로 주장 근거로 적용하였다.

그 후 새로운 법전이나 법이론들은 교회법의 원리들을 통합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 그로티우스나 푸펜도르프(Samuel von Pufendorf 1632-1694)와 같은 학자들의 노력이 포함된다. 교회법의 세속법에 대한 완전한 우위를 구축한 결과는 근대 초기 1804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법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폴레옹 법전은 민법을 중심으로 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형사불법에 대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었다. 1810년 별도로 형사법전이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오늘날 의미의 형법전은 아니다. 처벌의 원인과 절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전(형벌규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civil

28) 버만의 유명한 연구서 Law and Revol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94면 이하는 교황 혁명이 가져온 법학의 신성화와 법치주의 관념의 확대에 대한 가장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29) Summa Theologiae I, I, 8 ad 2

law)이란 용어는 로마시대부터 성문화된 법률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였다. 보통법(common law)이란 용어와 대비되는 이 구분은 법률을 통해 제정된 법과 판례에 의해 형성된 법의 제도상의 차이를 의미한다. 나폴레옹 법전에서 시도한 사실상의 관습의 부정과 법률을 통한 소유권 제도의 확립은 유럽사회에서 당시 시급하게 해결해야 했던 지역마다 다른 비문언적인 원칙들(관습)을 실정법을 통해 일원화하는 역할을 하였다.[30] 나폴레옹 법전의 등장과 이를 모델로 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새로운 법전들이 나오면서, 소위 법률주의 내지 규범주의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법이론적으로 주관적 이해 요소를 새로운 법전에서 다수 차용하고, 객관적 현상을 중심으로 하던 법학적 방법론에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 민사법에서는 의사주의의 경향이 전통적 로마법의 이해인 표시주의를 의사주의가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31] 초기 형사법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즉 고의가 범죄를 구성하고, 이후 발생되지 않은 미수 책임을 인정하는 등 이론 변화가 생긴다. 이러한 법인식의 주관화는 오늘날까지도 법의 중요한 방법론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중세 주지론과 주의론의 논쟁에서 시작한 이성적 의지와 대상의 인식 간의 관계성이 근대 법이론에서 주관주의로 발전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그 규범화 과정은 교회법의 세속화

30) 나폴레옹 법전은 최초의 근대적 법전은 아니었다. 법사학적으로는 1756년 바바리아 법전(Codex Maximilianeus bavaricus civilis)나 1794년 프로이센 독일의 일반란트법(Allgemeines Landrecht), 오스트리아의 서 갈시언 법전(West Galcian Code) 등이 있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혁명전에 이미 다양한 민법개정안이 준비되고 있었다. 1799년 실질적인 권력을 갖게 된 나폴레옹은 당시의 법전들을 참고하여 1801년 작업을 완료하고, 1804년 공포하게 된다. 그 후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 벨기에부터 프로이센까지 점령지가 확대되면서 법전의 영향력이 증가하였고, 1879년 이집트가 부분적으로 새로운 법률체계로 인정하면서 지금의 아랍국가들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후 미국과 식민지 확장을 통한 새로운 법률체계의 표준이 되면서 전통적인 보통법 체계(고전 영미법)와 구분되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이와 별도로 1900년 나폴레옹 법전에 대한 일부 제한적 법원리를 형성한 독일 민법전이 발표되면서 시민법 체계(대륙법 체계)는 프랑스식 법이론과 독일식 법이론으로 갈라지는 계기가 된다.

31) 권영준, "계약관계에서의 신뢰보호",『법학』제52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218면. 사뷔니(Savigny)의 표현에 따르자면 근대적 계약법에 있어서는 의사가 유일하게 중요하고 유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사적 관점은 영국의 폴락(Pollock) 등에 의해 마음의 만남(meeting of the minds)이라는 관념 아래 영국의 계약법에서도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 계약법에도 영향을 미쳤다. 20세기 초 미국의 저명한 계약법학자였던 코헨(Cohen)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국 계약법에 있어서도 의사는 존중되어야 할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것(will is something inherently worthy of respect)이고, 그 의사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계약법의 주된 사명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의사적 관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자신의 의사에 기해 권리의무관계 가 변동되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사상을 잘 대변하여 왔다.

또는 세속법의 교회법화와 함께 법규범에 대한 (비이성적인?) 존중으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그로티우스의 전쟁법은 베스트팔리아 조약에 따라 각 기독교 교파가 세속 국가화되는 시점에 발생된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종교적 규범으로 완화시키려는 시도였다. 수차례의 대형 전쟁과 식민지 정책에 따른 법체계의 국제적 보편화 현상은 오늘날 법의 지배가 지배적인 일반 원칙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3. 규범주의의 발전과정

그러나 법의 지배 사상이 역사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규범을 존중하는 규범주의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비약으로 보인다. 그리스의 전통인 규범주의(nomocracy)가 중세적 법의 지배 개념을 통해 근대에까지 진화된 것으로 이론을 구성하기는 어렵다. 현대적 의미의 법의 지배나 규범주의는 법이론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개별적 사건들의 연쇄일 수도 있다. 다양한 설명이 제시될 수 있지만, 근대적 정치상황과 국가간 교류의 증진, 보편적 교육의 확대 등과 같은 현실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추측은 가능하다.[32] 규칙에 따르는 행위(규범행위)가 보편화되는 현상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생각해도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법의 지배란 언급했듯이 영국 헌법학자 다이시의 개념이다. 그러나 그 뿌리는 보통법 시대 대법관을 지낸 코크(쿡)이다. 그는 유명한 1628년 권리청원의 입안자이며, 제임스 1세와 대립한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613년 킹스 밴치 법원(the Court of King's Bench, 보통법상 의회에 부속한 최상급 형사법원) 법관으로 임명된다. 당시 그의 정적이던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과 제임스 1세의 공동 기획으로 알려져 있다. 왕권에 대한 반대로 유명한 코크 법관을 원래 재직하던 커먼 법원(Court of Common Plea: Common Court, 의회 부속 민사 최고법원)에서 킹스 벤치 법원으로

32) 세계대전과 같은 극단적 상황이 자본시장의 확장과 그에 대한 반동적 경향 때문이라는 관점들은 매우 흔하게 주장된다. 시장이 확대나 관세제도에 대한 불만 등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의 원인을 경제적 요인 하나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제적 문제가 생긴다고 극단적 투쟁을 선언하는 일은 현실에서 더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왈러스틴이나 폴라니와 같은 유명한 학자들의 세계 체계 이론은 좀 더 다양한 분석틀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경제적 이익이라는 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옮기면 그 영향력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임명 후 첫 사건인 피쳠 사건(Peacham's Case)에서부터 코크는 국왕과 다시 대립한다. 이 사건은 개신교 목사인 에드먼드 피쳠이 왕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설교에서 하면서 비롯되었다. 당시 설교 내용은 교회 외부로 전달되거나 글로 출간되지는 않았지만, 피쳠 목사는 반역죄로 기소되었다. 사건을 담당한 코크 법원장은 설교 자체는 반역죄의 요건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다. 국왕은 코크의 판결에 반대하여 피쳠을 다시 고문하여 최종 자백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영국법은 최고 법원의 판결에 국왕은 거부권을 가질 수 있었다.[33] 자백을 받으려고 시도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피쳠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후 2년이 지난 1616년 국왕은 성직록 임시보유 명령(in commendam)[34]을 내리는데, 코크 법관은 이 명령이 불법임을 선고하고, 국왕에게 이와 같은 조치는 모두 법에 반하며, 향후에도 이러한 명령을 법원에 전달하지 말 것을 권고[35]하였다. 결국 제임스 1세는 코크를 킹스 벤치 법원장에서 해임시키고 그의 판결문(stare decisis)의 권위를 부정할 것을 명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높았다. 제임스 1세는 코크 법관을 무력화시키지는 못했다. 코크 대법관은 후에 다시 복권된다. 1628년 제임스 1세의 후계자인 찰스 1세에게 법률이 국왕의 권위보다 우월하다는 권리청원 초안을 작성하는데 코크 대법관이 주요 역할을 하게 된다.

코크 대법관의 일화는 보통법을 계승한 영미법의 중요한 사건이다. 코크 대법관은 대헌장(1215)의 해석론에서도 탁월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그가 주도한 법의 지배란 개념은 오늘날의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코크의 사상은 당시 영국 보통법 체계의 현실에서는 국왕의 지위가 법체계 밖에 존재하였기 때문

33) 사면권의 역사는 보통법상 법원의 판결에 국왕의 거부(Veto)과 함께 시작한다. 시민법 체계에서 국왕(황제)은 정치적 사건에서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가진 반면, 보통법 체계에서는 국왕의 판결 거부권을 제도화시켰다. 보통법 체계는 국왕의 사법관여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는 보통법은 로마 공화정기 방식서 소송원리를, 시민법은 그보다 발전된 특별심리소송 원리를 따랐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34) In commendam은 보통법상의 제도로 결원된 성직자의 지위를 다른 성직자 또는 신자가 임시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피쳠의 결원으로 인한 이익을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35) "명령은 모두 법에 반하며, 우리는 명령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국왕께서는 그에 대하여 확인하시고 앞으로 법을 지키시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in case any letters come unto us contrary to law, we do nothing by such letters, but certify your Majesty thereof, and go forth to do the law notwithstanding the same) Hostettler, 197, 90에서 재인용.

이다. 법의 지배에 국왕을 포함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완전했다. 이론상 1215년 대헌장은 국왕과 봉건 영주들간의 계약이었고, 그 이후 영국의 기본 계약관계는 봉건 영주들과 국왕의 관계만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보통법의 효력범위는 국왕이 아닌 귀족과 일반 시민(자유민)에 국한된다. 이러한 갈등은 시민법체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왕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은 현실적인 법체계를 감안할 때 이념적으로 타당할 뿐 법 논리상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도 영국 여왕은 행정적 서류 대상이 아니어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이 발급되지 않는다.(영국은 정식 주민증제도가 없다)

그렇다면 코크 대법관의 개인적이고 영웅적인 에피소드가 법의 지배를 가능하게 만들었나? 이런 식의 접근은 문학에서 작품을 비평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인물중심의 사건 구성에 익숙한 일반인들에게 설득력은 있지만,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로 보기는 부족하다. 개인적 서사가 아닌 구조적인 원인이 결여되기 때문이다. 이를 보강하려면 실증적 자료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연방 구성과 유럽 연합체계의 구성과정을 살펴보면 어떤 구체적 가능성이 보일 수도 있다.

가. 미국의 통합 사법관할권

미국은 미국혁명기(1775-1783) 이전 통합적 법체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초기 식민지 주들은 이민자 출신의 제도나 별도의 식민지의 독립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유명한 사건들(퀘이커 교도인 Mary Dyer 처형(1659), Salem 마을 마녀사냥(1692), Bacon (1676)과 Shay 폭동(1786-1787)과 남북전쟁의 원인으로도 지적되는 1859년 John Brown 처형 사건 등)은 당시 식민지 내의 불완전한 규범 상황을 잘 말해주는 사건들이다.[36] 식민지 통치를 위한 행정력은 분명히 현실적인 지배 필요성과 가능성이 결합되어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영국인 이주자들은 정치적 박해나 종교적인 이유로 신대륙으로 이주한 비율이 높다. 또한 출신 지역에 따라 정착촌을 형성한 다양한 종파들의 영향도 있었다. 이른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과 지역의 영향력은 오늘날 미국 행정구역의 원천이 되기도 했다.[37]

---

36) Oliver/Hilgenberg, A History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America, 3rd Edition, Carolina Academic Press, 2018, 15면 이하.

오늘날의 미국 사법 제도가 시작된 배경은 미국혁명이다.[38] 그러나 혁명 후 구성된 연방 정부는 당시 독립된 초기 13개 주를 통합할 수 있는 통일적인 법제도를 만들지 못했다. 이전 프랑스 식민지 지역이나 인디언 자치 지역의 관습법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초기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13개주 연맹은 영국 이민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국 보통법 전통이 주도적인 현재의 법제도를 도입한다.[39]

독립 이후 제퍼슨(Thomas Jefferson)과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의 주도로 공화국을 선택하면서 개최된 1777년 대륙회의는 동부 13개 주가 모두 서명한 정부 구성에 합의한다. 1789년 버지니아 안을 제안한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Jr)은 미국을 독립적 주정부의 결합체인 연방국 형태로 확정할 수 있었다. 매디슨은 영국법이 아니라 프랑스 몽테스키외의 사상을 토대로 삼권 분립을 선택한 프랑스식 국가 체계를 선택한다.[40] 초기 연합 정부는 해밀턴의 연방파(the Federalist)와 제퍼슨과 매디슨의 공화파(the Democratic Republican)가 대립하였다.[41]

---

37) 예를 들어 17세기 영국 노팅엄 출신 이주자 폭스(George Fox)는 펠(Margaret Fell) 여사와 함께 성경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종교 단체를 만든다. 퀘이커(Quakesr: 복음주의, 성경만 읽어도 몸이 떨린다는 뜻)라고 부르는 이 집단은 영국 내에서는 지지자가 거의 없었고, 심지어 이단으로 몰리기도 했다. 이들이 정착한 지역에서 이들에게 동화된 부유한 영국인이 영국 유력한 귀족출신 윌리엄 펜(William Penn)이다. 그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퀘이커로 개종하고 퀘이커 식민지를 미국 내 형성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1681년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펜은 당시 국왕 찰스 2세에게 부탁하여 북아메리카 식민지 중 메릴랜드와 뉴욕 지역의 토지를 양도받는다. 이 지역에서 시작한 퀘이커 식민지가 오늘날 펜실바이나(Pennsylvania) 주이다. 북아메리카 영국 식민지는 대체로 초기 체사피크 식민지를 제외하면 정치적 영향(올리버 크롬멜과 왕정복구), 명예혁명 등의 원인으로 형성되고,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종파간의 대립으로 형성된 구분에 따른다. 자세한 내용은 Brinkley(황혜성 등 역),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휴머니스트, 2019, 103면 이하.

38) Chapin, Criminal Justice in Colonial America 1606-1660,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83, 71-75면.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예를 들어 Gobel/Naughton, Law Enforcement in Colonial New York: A Study in Criminal Procedure, 1664-1776면, 1944; Chafee, Colonial Courts and the Common Law, in Essays in the History of Eary American Law 53 D. Flaherty ed. 1969 등은 영국법(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계층과 계급적 이해가 반영되어 식민지 내에서는 영국법의 영향력이 극단적으로 제한되기도 했다고 분석한다.

39) 예를 들면 Karraker, The Seventeenth-Century Sheriff: A Comparative Study of the Sheriff in England and the Chesapeake Colonies, UnivofNorthCarolinaPr, 2018, 1607-1689면, 1930 등은 보안관 제도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연구이다. 이 연구는 당시 독립된 주들이 각기 다른 법제도와 전통, 해석간의 갈등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오늘날까지 프랑스 식민지였던 루이지애나는 다른 주들과 달리 성문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루이지애나의 몇 카운트는 공용어가 프랑스어이기도 하다.

40) Brinkley(황혜성 등 역),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휴머니스트, 2019, 283면.

41) 여기서 말하는 연방파는 현재의 민주당의 전신으로 볼 수 있으나 공화파는 공화당과 관계가

연방파는 각 주보다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중요시했고, 주의 자치권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남부 주를 대표하는 제퍼슨이 농업 중심 경제체계를 가진 남부 주들에 대한 북부 주들이 주도한 연방 은행의 통제에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연방파는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하는 북부 주보다는 금융 부채를 많이 가진 남부 주들의 채권자 보호에 민감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42]

나. 창설조약

이러한 대립은 사법제도 구성에서도 재현되었다. 연방파는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었고, 공화파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주도했다. 당시 대통령인 제퍼슨의 정책은 잦은 사법부의 견제를 받았다. 대표적 사건이 미국 헌법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 1803년 Marbury vs Madison 판결[43]이다.

사건은 제퍼슨의 전임 대통령 애덤스에 의해 지명된 워싱턴 DC 치안판사 윌리엄 마버리(William Marbury)에 대한 임명장과 관련하여 발생했다. 이미 지명과 서명이 끝난 임명장을 차기 행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거부하자 마버리는 법원에게 명령으로 임명장을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새로운 국무장관 매디슨은 마버리가 공화파이기 때문에 판사 임명에 반대했고, 그 방법으로 임명장 전달을 거부한다. 1789년 마버리는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법원조직법)을 인용하여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에게 특정 행위를 명령할 수 있음을 근거로 법원에 임명장 수여를 명령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1796년에는 연방대법원이 법률에 대하여 법률과 행정행위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소위 '사법심사권'(judicial review)을 가졌음을 확인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마버리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했다.[44]

그러나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1787년 법률(법원조직법)은 의회의 월권행위 결과라

없다. 공화당은 1830년 프리메이슨 사태에 대한 반프리메이슨 주의자들이 형성한 GOP(Grand Old Party)가 주축으로 영국의 휘그당(Whig)의 정강정책과 유사한 연방주의자들의 집단이다. 오늘날 공화당은1854년 캔사스-네브라스카 법률을 반대하고, 전통적 자유주의와 경제 개혁을 모토로 설립된 정당이다.

42) 유재수, 『세계를 뒤흔든 경제대통령들』, 삼성경제연구소, 2013, 71면 이하

43) 5 U.S. (1 Cranch) 137 (1803)

44) 미국의 사법심사제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석인선,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에서 사법적 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법학논집』 제19권 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28면; 권태웅, "미국의 입법절차와 사법심사", 법제처, 2007, 59-84면.

고 판단한다. 그리고 사법부는 연방 헌법을 따르지만, 연방 의회 역시 헌법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연방 의회가 제정한 법률은 사법부에게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결정을 한다.[45] 요컨대 의회와 법원은 같은 서열의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각 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간섭할 권한은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미국 사법 역사에서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법원은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존중하지만 다른 헌법상 독립기관인 행정부에게 특정 행위를 강요하지 할 수 없다는 관념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법원은 입법과 행정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46]

실질적인 법원 또는 사법부 독립은 미국의 초기 연합체계에서부터 정상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영국 식민지들인 영연방(Commonwealth)들에서는 이와 같은 사법적인 독립은 사실상 근대 초기에 이루어진다. 2006년까지 영국은 독립된 대법원이 없이 의회의 상원에서 최고법원(대법원)을 운영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을 설치한 호주나 뉴질랜드 등의 다른 연연방 회원국들도 실제로는 자국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영연방의 추밀원(the 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에 다시 상소할 수 있었다. 각 연방 소속 국가의 헌법에 따라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수준은 다르다. (예를 들어 호주는 권고적이지만, 뉴질랜드는 이 결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파기될 수 있다.) 실효적 지배 효력의 범위가 미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실효적 조약이나 협정 형태가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통합적인 법효력이 부정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각 관할권의 양해나 동의가 없다면 기능적인 자동 효력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20세기 유럽연합의 창설조약에 관한 이해는 이러한 역사적 관념을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제적 조약은 실질적 사법효력에서 제한적이라는 관점에 대한 유력한 반론이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강력한 창설조약을 통합 사법관할권 구성의 경우는 미국의 초기 연합체 형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다자간 조약을 근거로 비교적 느슨한 창설조약의 경우는 유럽연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실 두 지역은 지역간 사법권 통합을 위한 소위 메타 이념이 존재했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모두 유사한 종교적인 원인이나 문명공동체의 규율원리가 기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도 정치-경제

45) Lively, Landmark Supreme Court Cases. A Reference Guide, Greenwood, 1999, 3면 이하
46) 이병규, "헌법의 본질, 다양성 그리고 그 가치", 『법학논고』 제33집, 경북대법학연구원, 2010, 333-276면. 특히 360면 이하

적인 필요성으로 출발했지만, 기본적인 제도 이념은 특정 종교 관념과 문화적 이해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 유럽연합과 주권론

유럽연합은 간략하게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와 냉전체계의 시작, 그리고 국제적인 경제 체계의 개편 등의 원인으로 출발하고, 이념적으로는 새로운 공동체주의 정신에 따라 20세기에 잠시 주목할 만한 결실을 맺은 정치-경제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2000년 초반에는 유럽헌법의 구상까지 진행된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으나, 회원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2016년 영국의 연합탈퇴 (Brexit)로 인해 장래가 불투명한 상태에 처했다.

유럽 헌법에 대한 논의와 사라지지 않는 유럽의회의 대표성 논란(직접 대표성이 아니라 간접적인 대표성으로 인한 비민주적 의사결정의 문제)은 통합된 사법권 형성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보여준다. 유럽연합 헌법은 미국 헌법과 달리 성공하지 못했다. 유럽연합 헌법 창설 논의는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공통 헌법을 제정하고, 단일 사법권처럼 연합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합할 근본규범을 형성하는 시도였다. 2000년 유럽연합 헌장이 발표되었고, 2004년 브뤼셀에서 약 2년여 기간 동안 헌법회의를 형성한다. 헌법회의의 결정 초안을 각 회원국의 국민투표로 가결시키려는 계획을 시도한다. 같은 해 로마에서는 각국의 수뇌들이 국민투표안에 서명하면서 실제로 각 회원국들의 국민투표가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각 회원국들의 입장과 해당 국민들의 의견이 너무 달랐고, 국민투표의 효과 논란도 지속되었다.

예를 들어 의회의 결의로 조약 비준을 결정하는 회원국들은 리투아니아, 헝가리, 유럽의회, 슬로베니아, 그리스, 스로바키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라트비아, 키프로스, 몰타,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체코 등이나, 후에 스웨덴과 체코는 이 규약을 취소하였고, 국민투표의 효력을 거부한 스페인과 네덜란드와 력을 인정하는 네덜란드 등으로 구분된다. 가장 적극적인 룩셈부르크와 국민투표 효력을 처음부터 긍정한 프랑스 등이 대립했으며, 그 갈등의 기본적인 원인은 각 회원국들의 국민과 정부 간의 관점 차이와 개별 회원국 간의 유럽헌법을 얻을 수 있는 장단점에 관한 복잡한 이해가 최종적인 승인을 얻어내기에 실질적인 장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창설조약들은

사법권의 통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다.[47]

유럽통합 사법체계를 제안한 학자들[48]도 개별적인 사법권을 존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현실이나 이론 모두 자국의 사법권 존중을 원칙으로 하고, 부분적인 협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이론적으로 소위 '보편적 관할권'이라는 개념이 논의된 바 있다. 이는 "범죄가 행해진 장소, 범죄자의 국적, 희생자의 국적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와 그 어떤 관련성도 없이 오로지 범죄의 성질에 근거하여 발동하는 역외 형사관할권"을 말한다.[49] 그러나 사전적 의미의 보편적 관할권은 지금까지 실현된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다.

역사상 유럽 내 종교갈등을 종식시키고 각 종파 별로 국경을 완성한 18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은 현재의 유럽 국가를 정립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국경을 기준으로 한 관할권 개념은 사법집행 관할권으로 인식되어 무역이나 통상과 같은 다국가법적 갈등은 개별 사법권이 가진 법효력에 대한 역외 적용을 예외적으로 정당한 근거 또는 진정한 연결 등의 원칙으로만 인정하는 관행을 만들었다.[50] 예컨대 유럽연합 창설에 중요한 역할을 한 암스테르담 조약은 유럽연합을 위한 단일 형사사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51]

그러나 최종적으로 유럽 헌법이 실패하면서 기존 리스본 조약만 통일 헌법과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52] 유럽 헌법의 불발로 통합 사법권 논의는 부실해졌다. 결국 개별 국가들의 규범 창설 이외에 통합된 사법권을 위한 근본 규범의 구성은 부정적으

47) Sieber(김한균 등 역), 『세계화의 새로운 도전: 유럽형법의 미래. 유럽형사사법체계의 목표와 모델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전세계적 위험사회에서 복합적 범죄성과 형법. 막스플랑크 외국 및 국제형법 연구소의 연구현황』,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1, 38면 이하.; 김한균/신동일, 『유럽 형사사법 통합정책. 형사사법 지역협력체계구축 비교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5, 21면 이하. 이와 함께 소위 국제형법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개략적인 연구로 Cryer/Friman/Robinson/Wilmshurst,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Procedure, 3r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48) Schünemann(Hg.), Ein Gesamtkonzept fr die europische Strafrechtspflege, Carl Heymanns Verlag, 2006.

49) 박찬운,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 한울, 2009, 23면.

50) 박찬운,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 한울, 2009, 35면. 이를 합리성원칙(reasonableness)이라고 부른다.

51) Kaiafa-Gbandi, "Recent Developments in Criminal Law in the EU and Rule-of-Law deficits", in: Schnemann(Hrsg.), Ein Gesamtkonzept fr die europische Strafrechtspflege, Carl Heymanns Verlag, 2006, 317.

52) BVerfGE 58, 1; BVerfGE 75, 223.

로 평가할 수 있다.[53]

그러나 형사법이나 공법적 협력의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상사법에서는 놀라운 발전이 발견될 수 될 수 있다. 1970년 발생한 Internationale Handelsgesellschaft(mbH) 사건에서 유업연합 법원은 회원국 법원의 사안 심사권을 부정하였다. 그 근거는 개별 회원국 법원들이 심사를 하면 유럽 연합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54] 이론적으로는 유럽연합법원의 결정이 근거 조약의 수권위임 해석에 대한 견해일 뿐이고 실질적인 개별 사법권의 연합법원에로의 위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55]

새롭게 주목할 수 있는 새로운 사례는 통합 사법권을 위한 모델이 유럽연합의 정치적 이념에 의존하는 접근보다 상사법적인 이해관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각 사법권의 권리 주체들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구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이러한 새로운 모델은 이미 가상화폐(Cryptocurrency)에서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주권개념은 정치적 이념에 따른 가치관으로 볼 수 있다. 한 사법권의 정체성을 정할 때 정치적 이념이나 지역 가치관은 자주 같은 공동체 지역의 실질적 이익(경제적 이익)과 대립한다.

주권(Sovereignty) 개념의 발전 단계를 보면 각 사법권의 실질적 영향력과 규범화 과정의 애매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비교적 익숙한 관점은 주권 국가는 근대 민족국가 개념과 함께 발전되었다는 설명이다.[56] 주권 개념은 지역적, 민족적 개념으로 비교적 존재론적 관념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주권을 정의하는 기준들이 대체로 명확하지 않다. 전통 정치이념에 대한 이론과 달리 오늘날 소위 거버넌스(governance)란 개념은 주권 개념과 점차 대비되고 있다. 우리가 미국연방이나 유럽연합 형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57]

---

53) 김용훈, 위의 책, 56면.

54) Weiler, The Community System: the Dual Character of Supernationalism, Yearbook of European Law 267, 1981, 275면 이하

55) 김용훈, 위의 책, 60. 김용훈 교수는 사법심사를 위한 권한 확보를 위하여 최고 법규범의 존재, 독립적인 사법심사 기관의 존재, 민주적 정당성, 법질서의 통일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한다. 시민권의 존부를 평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김은경, "유럽연합 시민권의 법적 개념과 의미", 『유럽연구』 제17권, 한국유럽학회, 2003, 305-326면.

56) 20세기 초반 주권 논쟁은 근대 국가의 주권형성과 그 법적 개념에 대한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다. 당시 정치사회적 분위기나 과세와 지방자치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반영한 논쟁은 오늘날 별로 실익은 없다. 역사적 자료는 Carl Schmitt, Politische Theologie. Vier Kapitel zur Lehre von der Souvernitt, 4.Aufl., Duncker & Humblot(1922), 1985, 42면 이하. 이 글은 칼 쉬미트의 결단주의적 관점을 보여준 글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자유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쉬미트의 글(특히 제2장)로 유명한 책이다.

전통적 주권과 개별 정치집단 거버넌스는 다르다. 거버넌스 개념은 정부와 이익집단의 의사결정과 의사집행에 관하여 기능적인 상황을 설명하는데 유리한 이론 모델[58]이다. 그 중 합리적 제도주의 모델은 사법권에 대한 통합 모델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층적 기능주의에 따른 구성주의적 모델은 개별 사법관할권간의 초정부적 행위와 비정부적인 기구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협력 관계를 무리 없이 설명해준다.(일반화된 공동체적 절차규칙)[59]

제2절 | 보편 사법관할권 계획

1. 이론

가. 통합 거버넌스를 위한 설명 모델

사법권과 지역적 협력에 대한 전통적 이해는 현실주의이다. 현실주의적인 모델이란 현실적인 권력관계에 따라 협력의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의 개념인 죄수의 딜레마 "는 원래 개별 사법관할권을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원리였다. 이 딜레마는 각 참여 주체들은 이성적이다. 그렇다면 각자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막상 협력을 수행할 때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나 배경이 제한(죄수라는 관점)되어 개별적인 주체의 최선의 선택이 아니니 차선 또는 어떨 때는 비이성적 선택도 할 수 있다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해준다. 이에 따르면 개별 사법관할권을 넘는 협력 또는 규범의 창설이란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고, 각 참여 주체들 중 힘을 더 가진 주체들에게

57) Hoohe/Marks, "Multi-Level Governance in the European Union", in: Nelson/Stubb(ed.), The European union. Readings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European Integration, Lynne Rienner Publishers, 2014, 267면 이하

58) 김학노,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의 구성주의적 재구성", 『한국정치연구』 제9권,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999, 456면.

59) 김학노,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의 구성주의적 재구성", 『한국정치연구』 제9권,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999, 457면; 김한균/신동일, 『유럽 형사사법 통합정책. 형사사법 지역협력체계구축 비교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5, 102면.

토론을 요구하는 소극적 기능에 머물게 된다.[60] 최종적인 결론은 죄수의 딜레마 효과로 인해 각 주체들의 이익도 아니고, 결정으로 인한 결과물의 최선도 아닌 어정쩡한 수준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반면 자유주의 모델은 각 주체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협력과 통합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론적으로 자주 선호되는 자유주의 모델은 제도주의와 기능주의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초기 기능주의(functionalism)는 국가들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조직과 기구를 통해 개별 협력 주체의 한계 상황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의 알려진 단점은 합목적적인 행위 결정을 위한 조건은 늘 참여자의 개인적-이성적 능력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서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대표자의 개인적 역량이나 취향에 따르고, 실제로는 합의 내용이 대표국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결과의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주의는 국가 간 협력 필요성만 설명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전통적 현실주의와 같은 결론을 갖는다. 이와 달리 제도주의(institutionalism)는 국가와 정부같은 강성 조직(hard body)보다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와 규범같은 연성 조직(soft body)의 역할을 중시하는 설명이다. 이러한 특성은 극단적 상황인 협력 주체의 무정부 상태에서도 미리 승인된 해당 주체의 제도나 규범에 따라 새로운 협력관계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장점이 있다.[61]

예컨대 국권이 상실된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이전에 결정된 제도나 규범에 따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설명에 따를 때 상호적 협력은 현실상태(단기적 이익)가 아니라 규범이나 제도(장기적 이익)에 따라 행위를 선택할 수 있고, 국제적 조정 기구나 다국적 조직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가능한 모델이다.[62] 두 가지 견해는 메타 차원에서는 모두 국가와 정부를 협력의 중심으로 파악하는 특징을 공유한다.

셋째 구성주의(constructionalism) 모델은 정치 이념상 신기능주의[63]와 결합된 형

60) 서창록, 위의 책, 22면
61) 특히 정치윤리적인 관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로는 Miller, Globalizing Justice. The Ethics of Poverty and Power,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84면 이하
62) 서창록, 위의 책, 29; 김학노,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의 구성주의적 재구성", 『한국정치연구』 제9권,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999, 453면 이하; 하연섭,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진화와 정책연구", 『행정논총』 제44권 제2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6, 217-246면; 염재호, "국가정책과 신제도주의", 『사회비평』 제11권, 나남출판사, 1994, 10-33면.
63) Haas, Beyond the Nation States. Functionalis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Stanford

태로 알려져 있다. 이 모델은 민족이나 경제적 이해관계, 환경적 측면 등 개별적 주체들의 이해관계의 중요성을 존중은 하지만 이를 협력의 고정된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64] 구성주의 이론은 각 주체들의 (존재적) 가치관이나 이념이 아니라 각 참여 주체가 대표하는 다양한 이해집단의 이성과 합리성을 따르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주체들의 학습된 가치들은 있을 수 있지만, 협력을 위한 상호주관적으로 형성되는 이해를 중심으로 새로운 합의가 가능(구성)할 수 있다.[65]

예를 들어 개별 국가의 사법적 특성들보다는 새로운 협력을 위해 얻는 가치나 결과에 대한 합의 가능성과 그 목적을 위한 절차적 설계가 자유롭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국가나 정부처럼 고정된 제도(hard body)와 별개로 개인이나 이익단체, 노조나 NGO 등의 참여가 동등하게 고려될 수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개별 사법권의 고정적 요소인 법률과 절차 등을 협력하려는 목적에 따라 새롭게 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당 협력을 구체화하는 특별 재판소 구성이나 특별한 증거규칙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66]

요컨대 신기능주의에 의거한 구성주의 관점으로 공동 거버넌스로 정치체계를 설명하면,[67] 절대적 주권개념을 벗어나서, 개별 거버넌스들의 통합과 운영을 위한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할 수 있다.[68] 거버넌스 개념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행위자들 간의

University Press, 1964, 26면 이하. 국제노동기구를 분석한 이 책은 신기능주의를 설명하고 초기 구성주의 모델을 제시한 책으로 유명하다.

64) Rawls(장동진 번역),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2016, 116면 이하는 구성주의 특징을 첫째 정의원칙들이 구성절차의 산물로 표현되고, 둘째 구성절차는 본질적으로 칸트의 실천이성에 기초하며, 셋째 복잡한 인간관과 사회관을 반영하고, 넷째 합당성 개념을 구체화하여 그 개념의 다양성을 인간들과 제도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설명한다. 나는 오로지 정치적 구성주의는 적합한 인간관, 사회관, 그리고 정의의 원칙들의 공적인 역할과 실천이성을 결합하는데서 생겨난다고 말했다(133면)

65) Rawls(장동진 번역),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147면 이하와 156면 이하. ...합당한 다원주의는 자유로운 제도들 하에서 공적 문화의 영원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합당성의 개념은 도덕적 진리의 개념보다 입헌정체를 위한 공적 정당화의 토대의 일부분으로서 더욱 적합해진다. 하나의 정치관을 진리인 것으로 주장하고, 그리고 바로 진리라는 이유만으로 공적인 이성의 적합한 하나의 토대로서 주장하는 것은 배타적이고, 심지어 종파적이며, 그리고 정치적인 분열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161면).

66) 서창록, 위의 책, 36면 이하; 법학적인 관점에서는 김한균/신동일, 위의 글, 53면 이하.

67) 거버넌스 개념은 역사적으로 권력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서 일종의 발전적 경향을 가진다. 예를 들어 시민의 역할이 단순한 비교양적 통치집단으로만 평가되던 과거에는 전문관료 조직에 의한 기술적 통치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보편 교육의 도입과 전문관료와 동등한 교양 시민계급의 출현으로 엘리트 관료들의 판단에 의존하는 통치 모델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졌다. 이로부터 수직적 권력관계는 수평적 관계로 이동된다. 거버넌스 모델은 이렇게 교양 시민과 전문관료의 협력적 체계를 전제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68) Vogel, “Die Zukunft der europischen Integration auf dem Gebiet der Strafrechtspflege”, in:

외부 권위나 내부적인 자기조절/자기통제 메커니즘에 의한 조정과 관리“를 의미한다. 기존의 제도화된 국가권력과 구분하여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사이의 네트워크 방식의 수평적 협력체계를 가능하게 해준다. 필수적으로 이념 변화도 포함되어야 한다. 존재론적인 권력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성적 권력합의가 가능한 형태이다. 거버넌스의 속성은 첫째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결정권자가 없는 집합적 행동, 둘째 국가를 벗어나는 정책입안, 셋째 공적 행위자와 민간 행위자의 협력, 넷째 민간의 협조적 자기 조절이란 속성들로 설명할 수 있다.[69]

고전적 사회과학 이론들은 근대 사회의 통합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70] 고전 이론가인 토마스 홉스나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근대 사회의 통합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모델은 오늘날 보면 조야하게 느껴지지만 당시 정보와 지식으로는 그 이전보다 상당한 발전된 모델을 구성한 것은 사실이다. 인간 활동에서 정치“가 전문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토마스 홉스의 자연상태에서 국가상태로의 이전에 대한 설명은 폭력의 포기와 안전의 선택이라는 모형으로 정리하고, 그 관리를 국가(원래는 Commonwealth)에게 위임한다. 반면에 존 로크의 그것은 무지에 의한 평화의 포기와 재협상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자연상태를 위한 관리 주체가 여전히 국가라는 것과 국가를 사람들의 심리를 지배하는 전설의 해수(레비아탄)에 비유하는 설명은 분명히 오늘날 기준에서 과학적인 접근은 아니다.

로크의 관점은 언어라는 기제를 통해 자연상태와 계약적 국가 모델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언어와 인간의 기본 이성적 태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서 역시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고전적 이론 모형들은 각자가 처해진 시대적 상황[71]을 반영하여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근대 국가의 규칙에 따른 공동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Schnemann(Hrsg.), 위의 책, 127면 이하는 911 사태 이후 정보통신분야의 특별정보처리의무와 개별 형사관할권의 미묘한 변화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69)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2; 이명석,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제36권 4호, 한국행정학회, 2002, 321-338면 등 참조.

70) Heitmeyer/Imbusch(Hrsg.), Integrationspotenziale einer modernen Gesellschaft. Analysen zu gesellschaftlicher Integration und Desintegration, 1.Aufl., VS Verlag fr Sozialwissenschaften, 2005, 13면 이하

71) 두 모델 모두 영국의 가톨릭 교회와의 갈등과 대립을 전제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홉스는 가톨릭 교회의 교황무오설(교황은 실수하지 않는다!)을 비판하면서, 성경 욥기에 언급된 해수인 레비아탄을 모티브로 책을 서술하고 있다. 로크의 견해는 홉스와 유사한 시대적 상황에서 비롯되었지만, 그는 홉스와 달리 철학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로크의 인식론은 경험론에 따라 설명되기 때문에 그의 무지의 커튼(veil of ignorance)은 소위 백지서판(tabula rasa)라는 전제에서 시작되어 당시 성행하던 논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만 홉스와 로크의 모델 차이는 고전적 이론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역사적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조건에서만 의미가 있다

나. 현대 이론

최근 이론은 우선 미국 사회학자 파슨스(Talcott Parsons)의 기능주의적 사회 통합 이론이 있다.(AGIL Scheme) 이는 A(Adaptation: Cognitive Symbolization)와 G(Goal Attainment: Expressive Symbolization) 그리고 I(Integration: Moral-evaluative Symbolization) 및 L(Latency: Constitutive Symbolization)의 결합으로 사회적 관계와 행동을 예측할하는 모델이다. 이와 달리 독일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의 체계이론이나 또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구조에 따른 체계통합이론도 비교적 최근에 제안되었다.[72]

고전 이론들과 달리 현대 이론들은 각 공동체의 주체들의 특성과 이해에 더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과거 이론 모형들은 사회적 행위 그룹들을 관찰을 통해 객관화했다면, 현대 이론들은 주체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를 토대로 결합과 분리를 설명하고 있다. 파슨스의 적응이나 목표 등을 통한 통합 모형을 보면 잘 나타난다.

예를 들어 독일 사회학자 뮌히(Richard Mnch 1945-)는 국제적인 공동체 통합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을 주장했다. 뮌히는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 등이 아닌 선택적인 주체들의 통합 목적과 대상을 더 중요시한다. 전통 이론들이 문화적 충돌이나 갈등과 같이 주체들의 (설명할 수 없는) 인지적 과정을 통해 통합을 한다는 설명과 다르다. 예컨대 경제적 통합, 정치적 통합, 문화적 통합, 시민 연대적 통합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73]

그는 국가 간 통합을 낙관하고 있다. 주체인 시민 상호간의 인식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개별적인 경제적 목적의 여행이나 개별 시민단체간 국제적 통합과 연대 필요성이 증가하는 오늘날의 현실은 전통 이론에 제시하는 지역 또는 문화갈등이나 충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오늘날 공동체의 탈중심적-탈규범적 경향은 보편적이다.[74]

---

72) Imbusch/Rucht, "Integration und Desintegration in moderen Gesellschaften", in: Heitmeyer/Imbisch(Hrsg.), 위의 책, 32면 이하

73) Mnch, "Elemente einer Theorie moderner Gesellschaften. Eine Bestandsaufnahme", in: Heitmeyer(Hrsg.), Was hlt die Gesellschaft zusammen?, 1997, 66면 이하

74) Mnch, Nation and Citizenship in the Global Age. From National to Transnational Civil Ties, Palgrave, 2001.

그는 통합을 목적과 대상에 따라 세 단계로 구성한다.[75] 첫째 단계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통합이다. 이 통합은 갈등과 마찰이 적을 수 있는 모델이다. 둘째 단계는 복지국가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통합으로 경제, 민주주의, 법치국가 원칙 등의 개별 제도화된 규정들이 통합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국가내의 경제 불평등이나 인종 갈등이 상호적인 양해와 배려로 조화될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통합은 자유주의와 복지국가, 민족국가를 넘어서 국제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이다.[76]

뮌히에 대한 비판도 많다.[77] 그러나 그의 이론은 적어도 최근 유럽연합이 통합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실제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은 뮌히의 모델에 따라 기획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개방적 경제 체계 확립이나 시민단체의 참여확대, 지속적인 개별 체계 간 비교 등의 전략이 공동체의 주체들에 의해 어떻게 선택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 다원적 네트웍 공동체(Mehrebenennetzwerkgesellschaft)가 발전하는 과정은 경험적으로 더 현실적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이론 모형 중에서 구조-기능적 체계이론은 초국가적 규범공동체를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모델로 보인다.[78]

철학적인 측면에서 공감(Sympathy; Empathy)을 중심으로 인권이나 정의관념을 보편화시키려는 시도는 윤리학자 싱어(Peter A. Singer 1946 -)에 의해 시도되었다.[79] 그는 공리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공리적 차원에서 볼 때 전체 공동체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공리적 태도를 강조한 이론을 제안했다. 사회적 유틸리티(이익)의 증가를 위한 공감적 확장이 핵심이다.[80]

공리주의적 관점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할 승인(인정)이론에서 특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사실 싱어 이론의 가치는 공감을 공동체의 기본 윤리로 설명했다는 것에

---

75) Mnch, Globale Dynamik, lokale Lebenswelten. Der schwierige Weg in die Weltgesellschaft, 1998, 117면

76) Mnch, Offene Rume. Soziale Integration diesseits und jenseits des Nationalstaats, 2001, 25, 154 (Dritte Moderne)

77)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험적인 자유민주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기 까지는 독일지역에서 결코 성행하지 않았다. 제국(Reich)이라는 단어가 말해주듯이 실제로는 프리드리히 2세에서 비스마르크, 루덴도르프, 힌덴부르크로 이어져서 결국 히틀러에서 종말을 맡게 되는 관헌국가(Obrigkeitsstaat)적인 관행은 당시에 보편적이었기 때문이다. 비스마르크가 제국의 적이라고 부르던 사회주의, 자유주의, 가톨릭 교회 등의 목록만 봐도 분명하다.

78) Imbisch/Rucht, 위의 글, 59면

79) Singer, The Expanding Circle. Ethics and Sociobiology, Farrar Strauss and Giroux, 1982; Hacking, On Sympathy: With Other Creatures, Tijdschrift voor Filosofie, 63/2001, 685-717면.

80) Miller, 위의 책, 13면 이하

있지 않다.

오히려 공감의 기능을 공동체의 도덕감정이나 종교적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하여,[81] 객관적 강제에 의한 규칙 따르기가 아닌 특정 공동체의 신뢰 내지 윤리적 감정이 형식적 제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대적으로 제시한 것에 있다. 예를 들어 싱어가 주도한 동물 보호의 관점을 따르면,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객관적 종의 분류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인간이 느끼는 윤리적 감정의 비제도적 이해가 중요할 수 있다. 최근 민법 제98조의2 개정을 통해 나타난 동물에 대한 제도적 접근의 변화를 보면 소위 피조물과의 연대성이라는 종교적 구호보다는 공동체의 비종교적(창조주와 피조물 관계가 아닌) 인식의 규범화가 어떻게 절차화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사법관할권에서 법치주의 원리가 보편적 규범이 되고, 그에 따라 개별 사법권이 상호적으로 승인된 규칙을 준수하는 과정은 거버넌스 개념을 통해 다시 설명할 수 있다.[82] 그동안 관할권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국가 주권의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요소로서 한 국가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물건, 사건 등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83]이었다. 이를 기능적인 장소적 효력으로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등으로 구분한다. 현재 다수 견해인 "주권적 권능설"은 19세기 국제범죄에 대한 개별 국가의 권능을 절대화하면서 비롯된다.[84]

소위 역외적 형사관할과 치외법권과 같은 영토 밖의 관할을 확대하는 일종의 제국주의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주권적 권능설이 각 구성원들에게 존재론적으로 각인될 때 얼마나 현실적 비극을 양산하는지를 보여 준다. 현실적 힘의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관할의 속성은 이를 다시 절대화시킨다, 곧이어 진행된 냉전체계는 그 완화와 상호적 이해 가능성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한동안 비판의 대상이었던 소위 거대이론들[85]은 이처럼 현실적인 폐단과 개별 주체들

81) Singer, "A Utilitarian Defense of Animal Liberation", in: Pojmaned., Environmental Ethics, Stamford, 2001, 33면 이하

82) 중국과 대만의 평화구상에 대한 거버넌스 모델을 통한 분석은 최은석, "중국과 대만의 분단상황 관리법제 분석. 양안관계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통일문제연구』 제59호, 평화문제연구소, 2013, 297-328면, 특히 314면 이하.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거버넌스의 문제는 국제법적으로는 더욱 진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정서용,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국제법』, 박영사, 2011, 23면 이하

83)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 제9개정판, 일조각 2003, 181면.

84) 박찬운, 위의 책, 37면

85) 고전적인 글로는 Popper(이한구 역), 『열린사회와 그 적들』, 민음사, 2006; 이론의 관점에서

의 반성에서 의미를 잃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반성적 성찰의 결과로 역외관할과 보편관할권은 평화유지나 인권, 환경보호와 같이 그 이전에는 주목되지 못한 목적을 위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형사법의 세계주의 경향이란 절대적 지역관할권을 해체하기도 했지만, 인권이나 평화 같은 메타 규범을 위한 보편관할권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추구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86]

다. 호네트의 승인이론(엄격한 규범주의)

하버마스의 후임으로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사회연구소(Institut fr Sozialforschung) 소장이 된 독일 철학자 호네트(Axel Honnet 1949-)는 전통 철학의 입장에서 승인(Anerkennung, 인정) 개념을 설명한다.[87] 이전 연구[88]에서 호네트의 승인설 일부를 법철학적으로 다룬 바 있는데[89] 호네트 교수는 전통적인 승인론의 한계인 주관적 승인에 대한 피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승인이 어떻게 규범준주로 설명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90] 철학적으로 헤겔주의자로 분류되는 그의 이론은 위에서 언급한 싱어의 철학적 관점과 함께 규범주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보인다.

호네트는 유럽 지성사에서 승인의 유형을 프랑스식, 영국식, 독일식으로 분류한다. 그 중 프랑스식 형태는 주체의 권익 일부를 포기하여 타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91] 17세기 프랑스의 모럴리즘을 기원으로 판단하고, 당시 계급사회의 변동과 혁명 이전의 불안정한 정치적 환경은 소위 '부정적 인간학'을 구성한다고 말한다. 부정적 인간학이란 타인의 선한의지보다는 악한 품성을 자연적인 숙명으로 전제하고, 이에 대한 타협, 즉 타인에 의해 동조나 인정을 집착할 때 타인의 판단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철학자 루소가 설명하는 amour de soi(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와

분석하는 Hawking/Mlodinow, The Grand Design, Bentam, 2012.

86) 관할권 개념의 변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박찬운, 위의 책, 52면 이하

87) Honneth(강병호 옮김), 『인정. 하나의 유럽사상사』, 나남, 2021.

88) 김한균/신동일, 『유럽 형사사법 통합정책, 형사사법 지역협력체계구축 비교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5.

89) 김한균/신동일, 위의 글, 주105.

90) Honneth, Kampf um Anerkennung. Zur moralischen Grammatik sozialer Konflikte, Suhrkamp, 1992. 이 글은 한국어로 번역된 인정(주 76)과 내용은 유사하나 상대적으로 이론적인 문헌이다.

91) Honneth(강병호 옮김), 위의 책, 38면 이하

amour propre(타인 판단에 의존하는 관찰)을 대립적으로 적용하고, 자신을 판단하는 관찰자인 제3자의 판단에 기본적으로 부정적 관찰자의 욕구를 전제한다.[92]

이 관념은 근대 이론가인 사르트르(Jean-Paul Sartre 1905-1980)나 라깡(Jacques-Marie mile Lacan 1901-1981)에 이어져 유사하게 전개된다. 그러나 후기의 프랑스 이론가들에 의한 승인이란 루소 식 주체와 관찰자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구조적으로 사회제도에 유약한 한 개인이 스스로 권한을 버리고 순응하는 형태로 진화한다.[93] 이들의 관점의 공통점은 승인에서 언제나 타자와 관계에서 주체의 이익을 희생 또는 소극적으로 순응시키는 형태로 설명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영국 이론가들의 관점이다.[94] 여기서 호네트는 영국 사회는 프랑스와 달리 엘리자베스 시대에 급격한 경제적 체계 변화를 프랑스의 계급변동과 차별화된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95] 그는 토마스 홉스와 같은 불안정한 인격체(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Homo Homini Lupus)를 전제로 하는 관점과 그로티우스와 같이 타인을 도덕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견해를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개인과 불완전하게 통제된 사회라는 구조적 문제[96]에서 흄(David Hume 1711-1776)의 관념이 시작된다. 흄은 주체의 판단은 공동체의 이익과 해악에 대한 고려에서 결정된다는 공리적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97]

여기서 흄은 인간 사이의 공감을 중요 기제로 파악하는데, 후에 이성과 구분되는 공감적 감각은 나중에 칸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98] 프랑스식 승인과 달리 영국식 승인은 타인에게 주체의 권한이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나 공동체의 이익 등의 공적 개념을 사용한다. 이는 승인을 통한 치유적 경향이라고 부를 수 있다.

---

92) Honneth(강병호 옮김), 위의 책, 54면 이하. 이 관점을 루소의 주요 연구자인 카씨러(Ernst Alfred Cassirer 1874-1945)는 루소의 문제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93) Honneth(강병호 옮김), 위의 책, 90면 이하. 여기서 호네트는 알튀세르의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94) Honneth(강병호 옮김), 위의 책, 114면. 이 주제의 확장된 연구는 Honneth(이행남 역), 『비규정성의 고통. 헤겔의 법철학을 되살려내기』, 그린비, 2017.

95) Honneth(강병호 옮김), 위의 책, 98면 이하

96) 주체와 구조에 대한 유명한 연구는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in Ethics and Politics, 1932, reprinted by Westerminster PR, 2013, 45면 이하

97) Hume, "A Treaties of Human Nature,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Norton, The Foundation of Morality in Hume's Treaties", in: Norton/Taylor(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Hum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270-310면.

98) Honneth(강병호 옮김), 위의 책, 164면.

이 견해가 영국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의 국민경제 이론으로 확대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소위 루소와 구분되는 스미스 문제란 시장에서 사적 이윤 욕구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유리/불리 관념에 따라 개인적 욕구를 제한하는 동기로 작용되는 윤리적 경제관념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이기적 욕망을 제어하는 공동체의 원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서 출발한다. 이는 그로티우스의 규범주의와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이 호네트의 분석이다.[99]

개인적 욕망과 공동체의 이해관계가 상호 조정되는 기능을 도덕이나 공리가 아닌 그로티우스적 규범 존중 태도로 설명하면 둘의 관점은 유사해진다. 사회적 승인 또는 인정 욕구의 규범적 보장의 단초가 이론화되는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공리주의자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공동체의 도덕적 조화 압박이라는 관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100] '해악의 원리'(Harm Principle)은 이러한 관념적 토대에서 성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화하는 독일식 승인이론의 전통은 호네트의 헤겔적 결론을 상상할 수 있다. 그는 프랑스어권에서는 인정이 우선적으로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일방적인)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되며, 주체에게 어떤 개인적 속성을 부여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권에서 인정은 호히려 인정을 추구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구성되며, 개별 타자나 전체로서의 사회공동체에 자신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규범적 권위를 시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한다.[101]

문명적 환경이 달랐던 독일의 경우는 통일된 정치적 계급이나 급변하는 경제적 발전도 없었다. 더욱이 독일의 학자들은 프랑스나 영국과 달리 귀족 계급도 아니었다. 독일의 승인 사고는 구체적으로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존중 개념(Achtung; Respect)에서 유형화된다.

그는 도덕철학론[102]을 전개하면서 선험적으로 파악된 고정 범주와 감각적 인상을 구분하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이성 활동 뿐 아니라 윤리나 미학과 같은 보편적 인간 활동에서의 원칙을 구성하려고 시도하였다. 여기서 칸트는 승인의 주체로서의 인간

99) Honneth(강병호 옮김), 위의 책, 121면 이하
100) 이 관점에 대한 주요 연구는 Stemmer, Normalitt: Eine ontologische Untersuchung, De Gruyter, 2008.
101) Honneth(강병호 옮김), 위의 책, 154면.
102) 순수이성비판과 도덕형이상학원론(Prolegomena), 도덕형이상학 등

이성은 관찰자(프랑스)나 주체(영국)이 아니라, 이성 명령에 대한 순응을 전제로 한 주체(독일)로 파악한다. 이로써 독일식 승인이론이란 규범이나 규칙을 전제로 한 이성적 판단 주체라는 기준이 만들어진다.[103] 독일식 인정(승인) 관념을 더욱 발전시킨 사람은 피히테(Johann Gottlieb Richte 1762-1814)이다.[104] 그는 칸트의 이론에 상호주관성이라는 개념을 포함시켜 타인에게 승인을 요구하거나 인정받게 되는 기제로서 타인의 존중 요소를 추가한다.

이러한 관점은 독일 이론에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대표적으로 아펠 Karl-Otto Apel 1922-2017) 호네트가 말하는 독일식 승인론의 마지막 결론은 헤겔이다. 호네트에 의하면 헤겔의 이론은 다른 이론들에 비해 가족 공동체, 사회, 국가라는 제도적 유형을 통해 승인의 단계적 접근을 설명하고 있다.[105]

헤겔에 의할 때 사회 공동체의 승인이란 주체와 타자 간의 사실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그가 승인을 하는 환경의 규범적 또는 제도적 구조에 따라 차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위 개인적 자유의식의 진보라는 관점에서 사회에서 이미 형성된 제도적 규범 존중의 관념틀에서 만나게 되는 개인들은 그 존중의 형식이 전제된 상황에서만 이성적으로 대면할 수 있다.[106]

라. 요약과 새로운 문제점

우리는 현대적 의미의 승인이론을 통해 규범주의적 관점을 통해 현대 사회의 제도적 구조와 개인적 인식의 태도를 파악하고, 이를 응용하여 다른 사법관할권과의 통합을 형성하는 이론적 기초를 제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그에 대한 비판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규범공동체 (다자간 사법관할권)를 제도와 구성원의 관계로 설명하는 이론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직면한다.

우리는 이를"동남아시아 문제"라고 부를 것이다. 그 이유는 유사한 수준에서 도덕관과

---

103) Honneth(강병호 옮김), 위의 책, 163면 이하
104) Honneth(강병호 옮김), 위의 책, 179면 이하
105) Honneth(강병호 옮김), 위의 책, 200면. 호네트는 이를 '제2의 자연'이라고 부르고 헤겔의 법철학을 새로운 사회학적 전환으로 평가한다. 헤겔은 법철학에서 주체적 이성과 구분되는 인륜 영역으로 가족과 시민사회, 국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각 영역에서 규범적 존중이나 상호승인의 방식 또는 강제의 수단 여부가 구분되어 파악될 수 있다.
106) Honneth(강병호 옮김), 위의 책, 205면.

종교관을 공유하는 문화공동체인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통합적인 사법관할권에 대한 이론 모델들이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동북/동남아시아에서 동일하게 적용 가능할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앙아시아와 연계된 동북아시아나 동남아시아(대륙부와 도서부)는 종교 문화적 공통점(불교와 이슬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 내 교황청의 영향력과 비교할 때 불교나 이슬람적 신앙이 이 지역의 실질적인 권력관계로 기능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유사하게 검토될 수 있는 지역은 동북아시아의 일부 국가에 국한된다. 반면에 종교적 정치력이 비교적 느슨한 지역의 환경은 낮은 수준의 통제력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공동체는 중앙아시아의 아랍공동체와 비교할 때 종교적 정치체계(술탄과 칼리프의 관계))의 엄격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즉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영향력과 파키스탄 정부의 관계와 같은 비정부적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는다.[107]

공통되는 도덕적 이념 특성도 발견하기 어렵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일부 구분에 따르면 사회체계보다는 인간중심적인 조직이 강하고, 명확한 언어나 인종과 같은 구분이 불가능하다.[108] 지리적 구분에 따른 동남아시아 대륙부에 속하는 베트남 지역의 경우 중국의 영향으로 과거제도나 유교적 전통도 성행하여 한국이나 일본의 규범주의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으나, 다른 대륙부 지역이나 도서부 지역의 도덕적 판단에 대한 문헌적 연구나 제도적 특성들은 설명이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동남아시아 문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동남아시아의 역사적 분석들에 따를 때

---

107)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볼 때 탈리반 이슬람 세력이 일시적인 정치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지만, 아프가니스탄의 복잡한 인종과 문화를 근거로 파악할 때 탈리반 이슬람의 영향력은 일시적일 수도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탈리반 이슬람의 주요 종교적 성향인 수니파로만 통일되지 못했다. 탈리반의 전신인 무자헤딘은 실제로 시아 무슬림 군사조직인 ISIL(Islam State of the Iran and the Levant)의 파생 조직이라고 자처하는 IS-K(호라손 이슬람정부 무력단체)와 파키스탄에 대한 무력시위를 주도하는 TPP(Tehrik.i.Taliban Pakistan) 등으로 분리되며, 동북부의 산악지역을 장악하는 소수 부족들의 반탈리반 운동도 주목할 수 있다.

108) 현재의 동남아시아 지역 인종 구분은 1911년과 1931년 두 차례 식민지 인종 조사에 따라 시행된 결론이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카렌족, 버마족, 라오족, 타이족 등으로 구분한 결과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전문적 지식이 없고, 무능한 서양 식민통치국 조사관들의 저급한 판단에 따른 오류라는 것이 정설이다. 동남아시아의 특성은 태어날 때 습득한 언어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거나, 특정 그룹에 속해서 구사하는 언어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카렌 족이라는 것은 혈통에 따른 구분이기도 하고, 그의 구사하는 언어에 따른 구분이기도 한 유연한 관계성을 반영한다. 이에 대한 좋은 설명은 Scott(이상국 옮김), 『조미아,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 동남아시아 산악지대 아나키즘의 역사』, 삼천리, 2015, 418면 이하

공통의 규범을 존중할 수 있는 구체적 전제들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공통의 도덕관과 종교적 신념이 각 주체들에게 이성적으로 전제되지 않을 때 제도 형성(조약이나 협의체 또는 국제기구)을 위한 기존의 이론적 접근이 가능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다. 또한 구성주의 관점에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국가형태로서의 약한 그립감 때문에 결속이 약한 지역도 새로운 거버넌스로 파악하게 되는 딜레마가 생긴다.

만일 역사학자들 분석처럼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의 이슬람 개종이 이슬람 가치에 대한 존중(Respect; Achtung)이 아니라, 단지 교역을 통한 근시적 경제 이익에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109] 인간의 자본에 대한 감각적 욕망을 인권 존중을 위한 규범주의적 근거로 보게 되는 오해도 가능하다.

2. 동아시아 문제

가. 문제의 근원

이 문제를 좀 더 상세하게 다루기 위하여 정치이론이나 관념적 철학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험적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기로 하자. 지리상의 발견에 따른 다국적 기업(동인도회사)의 확장은 16세기 이후부터 유럽 국가들은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상업적 권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에 직면했다.[110]

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초기 모델은 유럽의 한자동맹(Hanseatic League: die Hanse)이다. 13세기 형성되어 15세기까지 존속했던 상업동맹은 실제로는 비국가적 경제적 공동체(도시를 중심)일 뿐 아니라 특정 시기에는 군사와 이념적 동맹으로도 기능했다. 1265년 뤼벡 조약(the Law of Lbeck)은 뤼벡과 단치히, 리가가 주도하여 상업동맹 회원들을 군사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적으로 분화되었던 다른 상업동맹들을 흡수하면서 한자동맹은 당시 독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최대 상업동맹으로 발전한다.[111]

---

109) 이에 대해서는 후에 서술

110) 제국주의 경쟁에서 스페인 등에 비해 자본력이 약했던 네덜란드 공화국은 항해자금의 공무와 같은 형식의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제국주의 경영을 위한 자번확충을 위한 주식회사는 오늘날 다국적 기업의 시작이 되었다. 19세기 자본주의 팽창을 위한 제국주의 역시 이와 같은 경제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명한 Diamond, Guns, Germs, and Steel, ; Harari, Sapiens. A Brief History of Humankind, Harper Collins, 2014.

이 동맹의 특성은 개별 주권국가들과 독립적인 운영권이다. 군사적 동맹체[112]이기도 한 한자동맹은 유럽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상업정보와 다양한 부수적 관리 네트워크로 이해할 수 있다. 한자동맹의 경험은 우리에게 다른 가설을 제공해줄 수 있다. 한자동맹은 상업 거래권의 독점과 강제 거래권, 그리고 개별 주권국가의 사법관할권을 초월하는 동맹중심의 규범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오늘날 초월적 국제기구인 유엔이나 유럽연합의 확장된 버전으로 볼 수 있다. 한자동맹의 결성과 운영방식은 어떤 측면에서 고대 상업노선인 실크로드와 닮아 있다.[113]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투스(贈埃剃肇邑乳卽修暢憙 484-425 BC)의 기록에 따르면 실크로드는 초창기에는 1,600마일 정도의 페르시아 상인 공동체의 정보 루트였다. 그 루트는 그리스와 로마, 페르시아에 의해 구축된 단순한 교역로가 아니다. 중앙아시아와 바빌론을 묶는 상업공동체이며 정치적 역사, 문명의 각축장으로 평가된다.[114]

동양과 서양의 문명적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흔적이지만 실크로드의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역사학자 스타(Stephen Frederick Starr 1940-)[115]에 따르면 실크로드의 지배권 변화는 현재 중앙아시아의 낙후된 현실이 원인이라고 한다. 스타는 1,000년대부터 문명의 중심이던 페르시아나 가즈니[116], (셀주크) 투르크, 티무르 왕조가 지배한 중앙아시아는 동양의 중국

111) Dollinger, Die Hanse, Krner, 1966.

112) 군사적 동맹이라는 의미는 다의적이다. 현재와 같은 독립 사법관할권이 형성된 시점에서 본다면, 군사적 기능을 갖춘 상인동맹은 일종의 조직적인 범죄단체와 같은 의미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마약지대(the Golden Triangle)나 중앙아시아의 무슬림 테러조직들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13) 실크로드에 대한 역사와 기능에 대한 최신 문헌은 Frankopan, The Silk Roads. A New History of the World, Bloomsbury, 2016.

114) Frankopan, 위의 글, 3 이하.

115) Starr(이은정 옮김), 『잃어버린 계몽의 시대. 중앙아시아의 황금기, 아랍 정복으로부터 티무르 시대까지』, 길, 2021.

116) 술탄 마흐무드가 지배한 가즈니는 투르크의 노예 출신 통치자로서 특별히 자신의 모든 군대를 노예 출신들로 구성한 독특한 인물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아프가니스탄의 지배자들과 달리 관개사업을 통한 농업이나 실크로드 운용을 통한 교역에 중점을 두지 않고 막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주변을 약탈하는 소위 약탈 경제를 운영하였다고 한다. 이들의 약탈 방식은 또다른 특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점령지역을 초토화시키는 전략이다. 점령지를 운영하는 방식도 과다한 세금과 공납을 물려 피점령지의 원한이 높았다고 한다. 마흐무드는 동쪽으로는 인도의 갠지스 유역까지 점령지를 넓혔고, 서쪽은 지금의 이란 테헤란까지 침입하여 양쪽의 문명을 파괴하는 행동을 주도했다. 마흐무드가 인도의 힌두교도들을 탄압하면서 벌인 극단적 무력을 지금까지도 성전(지하드 Jihad)라고 부른다. 마흐무드의 역할로 중앙아시아가 몰락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하는 학자도 많다. 분명한 것은 가즈니의 마흐무드의 약탈과 점령지 파괴

과 서양의 유럽에 비해 월등한 문화적 업적을 누리고 있었다. 기후변화나 다른 조건들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현재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하는 척박한 현실은 결정적으로는 12세기 몽골의 초토화 전략과 대량 학살의 영향 때문이며, 당시 파괴된 관개시설의 미복구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비참하게 살해된 인구가 다시 증가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117] 몽골의 영향력을 피하기 위해 개척된 바닷길로의 우회 교역은 실크로드의 상업적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아예 말살해버렸다.[118]

여기서 유럽이나 미국연합의 구성과 달리 동북아시아나 동남아시아의 규범적 공동체 또는 연합체의 형성이 발견되지 않은 원인에 대한 소박한 가설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이론(싱어와 호네트)적으로 초월적 관할권의 형성은 단순한 힘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승인적 규범공동체로 발전해야 한다. 그 공통 조건은 도덕과 종교이다. 그렇다면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동남아시아로 가는 연결성의 단절(실크로드의 폐쇄)은 공통의 도덕과 종교적인 특성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었을 수 있다.

전략을 그대로 이어받은 몽골의 징기스칸 전략은 특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마흐무드는 아프가니스탄의 자신 궁궐의 건축에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했고, 가즈니에 대학을 설립하여 학자들을 양성했다. 중앙아시아의 저명한 언어학자들과 문학자들은 이 시기 마흐무드와 그의 아들 마수드에 의해 후원받은 사람들도 많았다. 인도에서 가즈니로 귀화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했다는 당대 최고의 학자 비루니(973-1048)도 이 때 활약한 사람이다. 자세한 내용은 Bosworth, The Ghaznavids. Their Empire in Afghanistan and Estern Iran 994-1040,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63; Nazim, The Life of Times of Sultan Mahmud of Ghaz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117) 유명한 문헌은 Bertold, Turkestan Down tot he Mongol Invasion, 3rd Edition, Bibb Memorial Trust 1977이다. 57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에 따르면 몽골의 침략전 셀주크의 지배하에서 중앙아시아의 가장 번성한 셀주크 왕국 호라즘은 학문이나 예술 모든 면에서 탁월한 지역이었으며, 지배당한 소부족들의 칭찬이 자자했다고 한다. 이들은 타종교와 문화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지원을 했으며, 마흐무드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적 화려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버톨드에 의하면 중국의 청화백자를 복각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과 교역이 실크로드의 봉쇄로 막히면서 오늘날 아랍과 유럽의 도자기들은 호라즘 기술자들이 만든 복각 제품의 유산들이라고 한다. 또한 호라즘 통치시기 수많은 전쟁으로 사람들이 현세보다는 내면의 정신세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져서 수피즘(Sufism)이 성행하는 계기를 만든다. 수피즘은 수니파 이슬람의 경전 중심의 해석이 아니라, 내면에서 신을 구하는 방식의 종교방식을 말한다. 신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라는 말은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의 문장이지만 그는 수피즘을 믿는 작가이기도 했다. 이런 샤마니즘적인 이슬람 계파는 일정 부분 선불교와 같은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Baldick, Animal and Shaman. Ancient Religious of Central Asia,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2.

118) Starr(이은정 옮김), 위의 글, 특히 788면 이하는 몽골의 중앙아시아 지배 정책 중 관계시설의 파괴나 모든 사람에 대한 학살명령 등이 가져 온 충격에 따른 영향이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몽골에게 우호적이던 위구르 지방은 큰 피해가 없었으며, 이러한 몽골의 정책은 중국의 명 왕조가 들어서는 기기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실크로드의 종말은 칭기스칸의 발호부터 예정되었다.

어쩌면 기록에 남지 않은 다른 요소들도 중요한 기능을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 발견할 수 있는 자료들은 실크로드의 구성보다는 실크로드의 종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뿐이다. 실크로드는 1219년 몽골의 침략전쟁 개시 후 지옥의 길(The Road to Hell)로 변한다.[119]

주목할 점은 실크로드의 위기 이후 선택된 대항해의 시대(Age of Discovery)이다. 대항해 시대는 실크로드가 어려움을 겪는 15세기에 시작한다. 그리고 100여 년간 절정을 맞이한다. 이 시기 중요한 교역 대상은 실크로드의 동쪽 끝단인 중국과 조선, 일본이 아니라 베트남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교류 역사는 상당히 길었다. 아시아 화교의 역사만 봐도 이미 중국의 진나라 시대부터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교류의 역사적 증거들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동남아시아의 지역 간 차이점(대륙부와 도서부)와 지리학적으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대항해 시대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연결성을 끊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최병욱 교수의 연구[120]에 따르면 고대 동남아시아의 기록은 종이나 명판으로 남겨진 것이 거의 없고, 극히 일부만 돌에 새겨 둔 석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121] 동남아시아의 습한 기후 때문에 종이나 가죽에 기록된 자료들은 보관이 어려웠다는 것이 설득력 있다. 그에 따라 주로 외국 학자들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사마천(司馬遷 145-86 BC)의 사기는 고대 동남아시아 지역사의 중요한 문헌이다. 해상 교역이 시작되면서 서양인들에 의해 기술된 자료들이 문헌으로 남겨져 있다. 이들 자료들도 매우 제한적이고, 고전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차 증명(고문헌을 중심으로 하는 번역이나 고증의 비판적 수용 방식)이 부족하다는 것도 한계이다.

이들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동남아시아 중심축은 인도 문명이며, 일부 대륙부의 경우 중국의 문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일설에 따르면 인도와 중국의 정변과 전쟁을 피해 남하한 사람들의 새로운 정착지가 동남아시아라는 견해도 있다. 이 지역을 인도차이나(Indochina)로 부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122] 매우 복잡하지만, 가장

119) Frakopan의 표현, 위의 글, 158면.
120) 최병욱, 『동남아시아. 전통시대』, 산인 개정판, 2018(초판은 2006).
121) 최병욱, 위의 글, 44면

중심적인 왕조인 베트남과 캄보디아처럼 상당히 발전했던 문명을 중심으로 버마나 라오스, 말라카 문명(지금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비교적 늦게 성립된 태국 왕조가 중심을 이룬다.

이들은 조미아(Zomia)라는 대륙부 산악문명과 도서로 형성된 해양문명(도서부)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론에 따라서는 13세기 유래된 인도나 중국 문명과 유사한 수준의 문명이 존재했다는 견해[123]도 있다. 고전시대 레 왕조(베트남)와 캄보디아와 아유타야(태국), 빳따니 등의 대륙부와 말라카(말레이시아)와 마자피힛(인도네시아), 부루나이, 발리(인도네시아), 바랑가이(필리핀) 등의 도서부 자료들은 14세기 이후 성행했던 동남아시아 문명을 설명해주고 있다. 기원전 2세기 경 도서부 문명과 교류 내용이 중국의 6세기 경 사서에도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록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유적이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간략하게 보면 고전시대(13-14세기)의 초기 대항해 시대의 동남아시아는 지역간의 끊임없는 전쟁과 상대적으로 풍요로웠던 자본력(특히 음식과 자원의 풍부함)으로 인해 소규모의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124]가 발달했다. 그로 인해 서양인의 교류

---

122) 동남아시아의 문명을 설명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가즈니의 인도 침공과 갠지스 유역까지의 이슬람 전파를 위한 성전 활동을 기억해야 한다. 유럽의 변화와 극단적 간빙기(11-12세기)가 중앙아시아에 발생하면서 오구즈 투르크 또는 오구즈 족들은 자신들이 성지로 생각하던 지금 이란의 북동부 지역 호라산(Khorasan: 태양의 땅이란 뜻)을 가즈니로부터 찾아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오구즈 투르크의 후손으로 부족연맹체를 물려받은 셀주크족은 추위와 자신의 성지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가즈니의 마수르와 단다나칸에서 1040년 5월 전투를 한다. 이 전투에서 참패한 마수르는 인도로 도주하고, 가즈니는 셀주크에 의해 점령당한다. 마수르의 인도 도주와 함께 가즈니의 마흐무드의 잔임함을 경험한 인도의 많은 부족들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통해 도서부까지 밀려 내려왔다는 기록들이 존재한다. 이들을 통해 이슬람과 불교 문명, 인도와 중국의 문화가 동남아시아도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한 문헌은 Paul, The Seljuq Conquests of Nishapur. A Reppraisal, Iranian Studies vol. 38, 2005, 582-85; Vambery, History of Bokhara, Arno Press, 1973(digitalized in 2012 by Cornell University Press)

123) 자세한 설명은 소병국, 『동남아시아사, 창의적인 수용과 융합의 2천년사』, 책과 함께, 2020, 제3장 이하. 고대 그리스의 문헌에서 자주 언급되는 동양의 황금국가(The Land of Gold) 전설이 실제로는 말레이 반도를 지칭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달리 현재의 오스트레일리아와 유럽의 조지아를 말한다는 설도 있다.

124) 미얀마 지역의 버고 산맥 지역은 동남아시아의 고산 지역(해발 1천 5백미터까지)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들을 각 국가나 정부, 또는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모여든 소규모 그룹으로 보는 관점들은 동남아시아의 특징으로 새로운 부락의 형성과 유연한 이주가 일정 부분 지역의 특성일 수 있다고 한다. 통칭하여 조미아라고 부르는 산악지대 거주민들은 국가나 지역적 통제권을 거부하고 탈중심적인 문화공동체로서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예를 들어 이 지역의 먀오족(몽족)은 대부분 중국의 전란을 피해 산악지역으로 모여든 먀오족과 원래 지역에서 정착한 먀오족으로 구분된다. 버고 산맥의 먀오족들은 중국에 동화되어 사라진 먀오족과 달리 반란과 도피의 전통을 유지한다는 특성이 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중세 유럽에서도 흔하게 발생했다.

요구에 국가 구조를 갖추고 있던 중국이 정치적 이유를 근거로 배타적인 입장을 취한 것에 비해 이들은 서양의 교역 요구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고, 또한 기독교 선교에 반감을 가진 일본과 달리 종교적인 선교활동에도 온화한 태도를 보였다.

당시 서양의 제국주의 모토는 3G(Gospel, Glory and Gold) 였는데, 선교를 중심으로 하던 스페인과 경제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던 네덜란드와 영국, 프랑스의 전략적 차이도 동남아시아의 서양과 관계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요소였다. 그런 결과 대륙부는 대부분 지금까지도 불교문화권이지만, 도서부는 대체로 이슬람 문화권으로 구분되고, 교역에 배타적이었던 동북아시아와 비교하여 해상 교역에 능동적인 자세를 취한 동남아시아의 특성이 구분되는 계기이다.

또한 대륙부는 중국 문명과 지속적인 접촉과 교류가 있었으나, 도서부는 상대적으로 대항해 시대 이전부터 인도 남부 지역과 교류를 통해 형성된 교역량이 줄어들고 서구와의 향료(nutmeg) 교역 중심지로 변화되었다.[125]

특히 말라카의 해상교역은 매우 활발했다. 이들은 예전부터 적극적인 해상 교역을 주도했는데 심지어 인도 남부에서 오는 외지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슬람 개종까지 했다고 알려진다. 1,000년경 인도는 가즈니 왕조와 고르 왕조(현 아프가니스탄)의 연이은 침략으로 이슬람 문명권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인도 델리에 정착하여 무굴의 점령까지 북인도 일부(인더스강 지역)를 지배하게 된다.

1700년 영국의 식민화 시절까지 인도는 당시 인구의 50%가 이슬람교를 믿었다. 동남아시아 도서부의 국가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시기는 말라카의 경험에 따르면 인도에서 오는 교역상들에게 유리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126] 동남아시아의 도서부는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6세기 이후 점차 서양의 동남아시아 식민지화 정책이 시작되면서 동북아시아와의 연결성이 희박해지

대표적으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산악으로 숨어든 발도파 기독교인들과 탄압을 피해 신대륙으로 건너간 초기 이주민들이 그것이다. 다만, 동남아시아 지역의 산악민들의 경우 그 규모가 더 작고, 그룹화가 더 유연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Denton/Endicott/Gmes/Hooker, Malaysia and Original People. A Case Study of the Impact of Development on Indigenous Peoples, Cultural Survival Studies in Ethnicity and change, Allyn & Bacon, 1997.

125) 최병욱, 위의 글, 283면 이하

126) 최병욱, 위의 글, 286면. 말라카 문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Chaudhuri(임민자 역), 『유럽 이전의 아시아. 이슬람의 발흥기로부터 1750년까지 인도양의 경제와 문명』, 심산출판사, 2011.

고, 실질적인 서양 식민지화가 진행되는 계기가 된다.

자바와 발리를 포함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말레시아는 영국, 필리핀은 스페인, 베트남은 프랑스 등으로 각각 식민화되고, 유일하게 라마 왕조에 의해 서구 문명으로 개방한 태국만 독립 왕조로 남겨진다. 요약하면 동남아시아의 도서부는 전통적인 종교에 대한 신뢰보다는 개방적인 정책을 위한 탄력적인 개종을 선호한 반면, 대륙부의 국가들은 도서부에 비해 기원전 2세기경 수용한 불교의 영향력이 유지되었다. 이로 인한 내부적 갈등(미얀마 로힝야 이슬람 사태 등)도 많았고, 잦은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식민지화 정책은 아시아 지역에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정치적 지형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나. 협력관계를 위한 상호적 이해

우리는 지금까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 원리가 현실 제도화되는 과정에 대한 이론 모델을 설명해 보았다. 요약하면 어떤 가치를 존중하는 인간의 행위는 객관적 강제로만 확보되기는 어렵다는 것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규범공동체의 구성은 각 공동체가 공유하는 종교적 내지 도덕적 신뢰감에서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역사적 경험을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성립과 그 한계점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었다. 아마도 다른 공동체의 역사란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성립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소비에트 공동체를 분석하는 일은 의미 없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

UN과 다른 영토를 가진 강한 결합체인 미국이나 유럽연합, 또는 다소 느슨한 형태의 공통 사법체계인 영연방(Commonwealth)과 달리 동북아시아 공동체나 동남아시아 공동체는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제(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아-태 공동체)는 1989년 시작되어 참여 인구는 전세계 46%를 넘고 교역량도 전 세계 50%에 육박하는 조직이다. 하위 부서로 사무국(ASEAN)과 태평양 경제협력회의(PECC), 남태평양 사무국(SPF) 등이 있다.

이 체제는 1967년 태평양경제 협력기구(PBEC)가 기원이며, 시기적으로 보면 1951년 유럽연합의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ECSC) 이후 설립된 최대의 경제 협력 공동체이다. 아-태 공동체는 태평양과 접한 국가들이 참가하므로 규모면에서는 최대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다. 주요 활동은 무역자유화와 경제기술협력이지만, 반테러협력과 같은

사회문화적 협력기구도 존재한다. 그런데 경제적 공동체의 역할 이외에 인권이나 공통의 사법관할권 모델의 제안 등은 아-태 공동체의 중요 활동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순한 경제적 교류와 기술협력을 위한 운영방침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태 공동체의 역할이 유럽연합의 예시처럼 정치 문화적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사법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이 될 수 있다.[127] 개별 국가 간의 협력체계는 각 사법관할권의 이익에 따라 체결되고 있지만, 이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 기구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20세기 들어서는 평화정착과 인권개선을 위한 정치적인 협력과 국제적으로 부각된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대처를 위한 개별 국가들의 노력이 형사사법 관할권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있다. 국가의 권한을 초월한 다국적 기업들과 초국가적 경제적 공동체의 활동도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합리적 다층적 신기능주의 이론"은 이러한 변화를 잘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조약들이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이 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힘의 작용이 배제된 채로 새로운 규범의 효력이 발생되는 현상이 발견된다. 국제적 공동체 이념[128]은 이러한 변화를 보는 관점에 적합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지역협력체계의 전제 조건이 다른 것으로 평가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통합을 위한 가능성은 적어도 지금까지의 이론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에 따라 공통의 사법관할권 구성 역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우선 통합 사법관할권[129]의 전제는 법치주의 원칙의 공통 사법관할권내의 실질화

127) 지역 협력 여건에 대한 분석은 이재승 외, 『지역협력의 조건: 초기 유럽통합의 재고찰과 동북아시아에의 함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128) Koskenniemi, The Gentle Civilizer of Nations: The Rise and Fall of International Law 1870-196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이 책에서 코스케니에미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다. 그는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변호사들의 시각은 오직 민족주의적이고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만 법률해석을 했지만, 20세기가 들어서면서 국제적 규범이 점차 확립되고 개별 변호사들은 전과 반대로 국제적 규범을 근거로 자국의 제국주의적이거나 민족주의에 기반한 차별적 법적용과 해석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현실주의는 다차원적 기능적 구성주의로 전환될 수 있었으며 오늘날의 규범준수의 현상이 생겼다고 한다. 이를 그는 배제-포섭 논증으로 부른다.(130)

129) 관할권은 통상적으로 입법관할권, 집행관할권, 재판관할권으로 구분한다. 이는 이분법과 삼분법 등으로 각각 다시 나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구분 없이 관할의 개념을 영미법의 jurisdiction 독일법의 Kompetenz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집행관할권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필요한 경우만 입법관할권과 재판관할권, 집행관한권을 구분하기로 한다.

이다. 법치국가 이론은 법률을 통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원칙이다. 미국 연방법과 유럽 연합의 관할 지휘권은 주 또는 연합 회원국들의 존중을 통해 형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규범 정당성은 완전하지 않다. 연방법원의 결정을 주법원이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대는 그렇다.[130]

로마 조약에 의해 설립된 유럽형사사법 재판소의 기본 정신과 Costa v. Enel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럽통합에 관한 조약들은 일반 조약과 달리 회원국의 법체계를 실질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131] 유럽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이 조약으로부터 생성되어 독립적인 법의 원천이 된다는 것은 그 유일하고 근본적인 특징 때문에 개별 회원국의 법규정에 의해 침해받을 수 없으며, (유럽)공동체 법으로서의 성격을 박탈당하거나 공동체 자신이 스스로 문제 삼기 전에는 별도로 다시 재해석되기도 어렵다."[132]

즉 유럽연합 공동체 조약은 회원국 법과 동등한 지위가 있다.[133] 이에 따라 유럽재판소는 형사법의 몇가지 원칙들을 정립하고 있다.[134] 첫째 유럽연합의 형사사법에 대한 지시권, 둘째 연합법 우위원칙, 셋째 유럽연합법과 합치한 해석 우선주의, 넷째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유럽연합의 가치를 보호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자국 형사법과 행정처벌법을 다른 국가의 법률들과 유사하게 맞춘다는 동화원칙(Assimilierung)이다.

경험적으로 주권 국가의 법률이 국제 조약과 규칙에 따라 변경되는 것을 쉽게 확인 가능하다.[135] 이런 현상은 동남아시아 지역 간에도 성립한다. 주권이나 관할권 개념을

---

130) 사법제도의 역사에서 연방법원 또는 상급법원의 결정은 반드시 하급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한 규범적인 강제에 반대되는 사례는 생각보다는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하급법원에 대한 상급법원의 통제는 조건적인 관계일 뿐이고,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다.

131) 이러한 관점들은 주로 영국 학자들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Dehouss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he Politics of Judicial Integration, MacMillan, 1998; Alter, Establishing the Supremacy of European Law: the Making of an International Rule of Law i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32) ...follows from all these observations that the law stemming from the treaty, an independent source of law, could not, because of its special and original nature, be overridden by domestic legal provisions, however framed, without being deprived of its character as community law and without the legal basis of the community itself being called into question. Costa v. ENEL

133) Williams, The Ethos of Europe. Values, Law and Justice in the EU,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79면

134) 김정환, 위의 글, 499면 이하

135) 이미 저작권법 위반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국제적 규제,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외부적 구칙들은 주권국가의 법률이 존중하려고 하는 기본 가치를 쉽게 무력화시킨다. 자세히는 Sell(남희섭

실질적인 참여 행위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소위 상호적 구성 개념(mutual constitution)이 될 수 있다.[136] 이 설명은 1) 구조적 상태조절, 2) 사회문화적 상호작용, 3) 구조적 동화의 순서로 개별 행위자의 행동이 분석된다. 우리는 앞에서 경제 공동체 구상에서 출발하여 경제-문화-사법 공동체로 발전한 미국 연방과 유럽연합의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박찬운 교수는 이러한 발전의 구성적 규칙을 따라 보편관할권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 ...보편적 관할권은 원래 특정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라도 통상의 관할권 행사요건 없이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개념(허용적 관할권)에서 시작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범죄 관련 조약의 체결 증가로 형성된 aut dedere aut judicare와의 결합으로 의무적 성격으로 변모해가고 있다...라고 한다.[137]

이 말은 국제적으로 문제되는 해적행위,[138] 노예매매,[139] 전쟁범죄,[140] 인도에 반한 죄,[141] 집단살해,[142]통화위조,[143] 위험약물,[144] 테러방지 및 처벌,[145] 무력충돌하에서의 문화재 보호,[146] 항공기 불법납치,[147] 고문방지[148] 등에서 점차 보편적 관할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유럽지역 외에도 동일한 문제 상황은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다자간 규범의 실질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149]

보편적 관할권은 이미 유엔해양법 협약 제105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의 해적행위

옮김), 『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 후마니타스 2003. 이 책은 특히 저작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영토주의를 유지하려던 개별 국가들의 법률들이 국제적 조약 앞에서 무너졌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136) Wendt,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3, 1987, 335-370면.

137) 박찬운, 위의 책, 70면.

138) 1958 Geneva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High Seas, Art.19

139) 1915 Vienna Declaration of the Congress of Vienna.

140) 1949 Geneva Convetions

141) IMT Charter, Art.6(c); ICC Art.7 of Rome Treaty of 1990

142) 1948 집단살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143)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Counterfeitinf Currency of 1929

144)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Illicit Traffic in Dangerous Drugs of 1936

145)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errorism of 1937

146)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of 1954

147)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of 1970

148) Convention against Torture of 1984

149) 박찬운, 위의 책, 155면 이하. 특히 독일의 경우 국내적 연관이 없는 경우도 일부 국제법위반범죄에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어서(국제법위반범죄에 관한 법률 제1조), 2005년 체포영장에 대한 위헌판결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소추권을 정하고 있다. 실체적 규범으로서의 가치와 절차 규범의 통합적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 관할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승인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지역간의 통합 사법권은 분명히 미래적 계획이다.[150]

추가적으로 인권 존중을 위한 형사 법규는 입법 결과로만 성취되기 어려운 특징도 있다. 문언화된 실정법이 구체적인 규범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더 복잡하다. 형법에서 법규정과 규범의 관계를 연구한 빈딩(Karl Ludwig Lorenz Binding 1841-1920)의 견해에 따르면 법률 제개정이라는 의회의 활동과 그 법률의 규범력은 별개의 사태이다. 그는 19세기 법률실증주의와 사회주의적 형법학이 대립하던 시기에 문언화된 법문언(법규 Rechtssatz)과 규범에 대한 심리적 태도 등과 같은 요소로 형법을 해석하는 시도를 했다.[151]

예를 들어 당시 과실범은 1871년 프로이센 형법전에 처음으로 등장한 주의의무위반 범죄유형 중의 하나였다. 과실개념은 로마법 이래로 의무위반으로 보기는 했지만 형법으로 처벌하지는 않았다.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프로이센 제국의 형법은 일반 의무위반을 직접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을 소개한다. 당시의 포이어바하(Paul Johann Anslem von Feuerbach 1775-1833)의 일반 심리강제설이나 리스트(Franz von Liszt 1851-1919)의 사회방위적 형사법의 기능성과 행위자 유형에 따른 처벌의 개별화 등 이해는 일반인들의 심적 태도강화나 사회적 안전필요성 등이 형벌대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빈딩은 이러한 흐름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는 과실개념이 실질적으로 규범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의 결과라고 전제하여 그 근원은 법익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연결된다고 믿었다.[152](fragmentarische Charakter)[153]

규정된 사항만이 불법의 근거(제도)로 전제하는 그의 태도(편면적 성격)는 형법을

150) Frau, Vlkerrechtlich determiniertes Strafrecht. Zur internationalen Dimension deutscher Staatszielbestimmungen, Der Staat 5.3 Bd. Heft 4, 2014, 543면 이하. 제한적인 입장은 Britz, Grundrechtsschutz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den Europischen Gerichtshof, EuGRZ, 2015, 275-281면.

151) Aarnio, Denkweise der Rechtswissenschaft. Einfhrung in die Theorie der rechtswissenschaftlichen Forschung, Springer, 1979, 33면 이하

152) Binding, Normen I, 2.Aufl., 339 이하

153) Binding, Normen I, 2.Aufl., 351.

이념적으로는 형벌 권력과 시민들의 힘의 균형점을 맞추는 기제로 보게 만든다. 프로이센 형법의 보수성은 모든 시민들의 일반 의무를 존재적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일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시민의 책임을 과다하게 부과시키는 장치로 변할 수 있었다. 빈딩에게 과실의무는 증명된 규범위반만으로 국가형벌권을 제한하게 된다.[154] 이러한 관계성에 대한 입증이 없이 입법된 형사법률은 사이비 법익(Scheingter)을 강요하는 정치적 행동일 뿐이다.[155] 형사 규범은 자유로운 시민공동체의 자율적인 선택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156] 이 설명은 앞에서 언급한 호네트의 헤겔적 접근과 닮아 있기도 하다.

다. 새로운 전략

근대적 민주주의 법체계는 규범공동체에게 규범창설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규범공동체는 어떤 면에서는 현재의 주권이나 또는 관할권 개념과는 별도이거나 별개이다. 주권적 관할과 규범창설권한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국경의 의미는 예전과 다르게 인식되고 있고, 국가 간 조약에서 제안된 통합 형사법 구상은 지역내 공동체의 실질적인 민주주의적 성격이나 법치주의 원칙과 갈등을 겪는 것이 아니라 조화될 수도 있다. 이는 개념상 주권이나 또는 관할권의 포기가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공동체 질서를 만들고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인권이라는 규범을 각 주체들(사법관할권)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상호승인하고, 법률로 효력을 보장하게 만드는 기존의 보편관할권 형성 경험은 이 이론과 원칙이 발생한 유럽과 미국의 경험만으로는 설득력 있는 통합 모델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잠정적인 결론이다.

다른 한편으로 동남아시아의 산악지대 집단인 조미아에 대한 분석[157]은 이러한

---

154) Binding, Normen I, 2.Aufl., 22, 51.

155) Binding, Normen I, 2.Aufl., 33.

156) Liszt, Rechtgut und Handlungsbegriff in Bindingschen Handbuche, in: ders., Strafrechtliches Aufstze und Vortrge, 1905, 212면 이하는 빈딩의 이러한 법익개념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빈딩은 소유와 재산을 동시에 법익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서 논리적으로 비약이라는 것이다.(222) 그는 빈딩의 이론에는 추상단계가 생략되어 예컨대 금시계 자체와 금시계에 대한 소유권이 동시에 법익으로 설명되어 결국 죄수론에서 혼란이 야기된다고 지적한다.(237면 이하) 이스트의 제자인 라드브루흐가 헤겔이론의 관점에서 더 진전된 비판을 하기도 했다.(Radbruch, Der handlungsbegriff in seiner Beduetung fr das Strafsystem, 1904, 82면 이하) 자세한 내용을 신동일, 『빈딩의 규범이론』,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52면 이하

157) Scott(이상국 옮김), 위의 글, 260면 이하는 사악으로 도주한 원인을 나열하고 있다. 스콧은 원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조미아 그룹의 형성 원인은 이 집단들의 단순한 탈중심적 경향이라기보다는 이들을 둘러싼 종교와 정치적 환경과 박해가 원인이었다. 또한 동남아시아 왕조들의 종교에 대한 일정한 탄압도 발견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왕조들은 대부분 신적인 존재로 계급화되기를 원했다. 그것 때문에 샤머니즘이나 유입된 불교나 이슬람 세력을 일정 수준으로 통제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탁발승 전통은 종교집단을 정치세력화하지 않으려는 동남아시아 왕조들의 정책적 결론이기도 하다. 이를 소승적 전통의 소박한 삶의 태도로만 보는 것은 오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멘델슨(Michael Mendelson)과 같은 학자들은 미얀마 샨 산악지대로 도주한 승려집단들은 조띠(Zawti, 빛) 분파로서 정통 불교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미얀마의 평지로부터 멀어질 수록 그 독특한 종교적 태도도 함께 강화되었다.[158] 이러한 현상은 미얀마의 불교 통제로 인해 산악지역으로 쫓겨난 불교 승려들이 각 분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동화된 모습이라기보다는 원거리까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이 유지되어 고착된 현상에 대한 외부인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인류학적으로는 변형된 것이 아니라 원형이 유지된 상태가 조미아 그룹의 특징이고, 미얀마 왕조의 통제에 동화된 평원지역의 불교는 정치적으로 변형된 형태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권 규범을 통한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위한 접근 모델은 앞에서 설명한 거대 종교나 공통의 도덕감과 같은 기본 신념을 중심으로 하기 보다는 세분화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여전히 필요한 것은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의 지역을 현재의 국가나 왕권, 거대 문화 집단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지역의 미시적 역사나 샤마니즘을 포함한 미세 종교, 다양한 인종 분포, 언어 공동체, 특정 문화 집단 등 미시적이고 복잡한 유형을 통해 정보를 채집해

인으로 세금과 부역의 과다, 전쟁과 반란, 습격과 노예화, 지역 내 반란과 내전, 도시의 열악한 생태환경, 국가의 수탈과 압력 등이다. 이들의 이주의 빈번함과 시간적 간격 때문에 많은 서구 이론가들은 피상적으로 이들을 아나키스트로, 또는 종교적 이단집단으로 묘사하고는 한다. 그러나 이들의 이주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제국주의적 압력과 특정 계급 집단의 억압과 착취가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 분석은 미국의 유명한 좌파 역사학자의 시각에서 내려진 것이지만 분명히 시사점이 있다. 이와 달리 미얀마의 마약지대(the Golden Triangle)는 중국 공산당에게 몰려 도주한 국민당 출신들이 정착하여 아편개발지로 개발하였다. 그 원인들은 너무 다양하지만 모두 지질학적인 특성을 반영한 문명과 문화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다.

158) Mendelson, Sangha and State in Burma. A Study of Monastic Sectarianism and Leadership, Cornell University Press, 1975.

보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가능한 고정적인 외적 규범관(인권이나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과 유동적인 내적 규범관(인종적 차별성, 자본적 피해의식, 집단의 기회박탈이나 소외집단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문화인류학적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이 지역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문헌적 역사기록이 부족하다는 점과 오랜 식민지 영향과 자원 약탈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정신문화 등이 이 지역의 합리적인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으로 기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3절 | 동아시아 지역 형사법관련 선행연구

동아시아 지역 내 인권 존중을 위한 형사법적 협력체계를 구상하는 본 연구를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 일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기 제출된 선행 연구 중 2012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장준오/이완수/고성혜의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 실태와 보호방안: 필리핀과 태국을 중심으로 "(필리핀/태국) 보고서와 같은 해 출간된 전지연/이진국의"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 베트남 형법 ", 2013년 태국검찰청/승재현의"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 태국 형사법 ", 2014년 장준오/이완수/홍석준/최호림의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피해실태와 보호방안: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베트남/말레이시아) 등은 이 분야에서 많지 않은 중요한 자료들이다.

다만 그 한계점들도 뚜렷하다. 우선 두 번에 걸친 실태 조사인 2012년 필리핀/태국 보고서와 2014년 베트남/말레이시아 보고서는 모두 해당 지역 체류 한국인들의 설문에 따른 범죄피해 조사 수준에서 작성되어 다소 비학문적으로 보이고, 대사관 정보나 해당 국가의 경찰 활동 등 피상적인 수준의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해당 보고서의 결론부는 재외국민의 범죄피해조사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서, 과제 수행의 의미로 제시한"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삶을 위해서 재외국민이 겪고 있는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범죄피해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을 제시"[159]하는 것을 성취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선 조사 방법이 설문 조사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 해당 국가의 실효적 범죄통계나 처리 기록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설문 방식도 특정한 기준없이 나이나 소득수준, 현지에서 느끼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 지수(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직접 당한 피해사례, 신고 방식 등으로 피상적이다.

이 연구는 해당 지역 범죄 환경과 실제 피해자로 구분되어야 하고, 다른 객관적 범죄 통계와 결합하여 표준적인 범죄 원인 내에서 한인 피해율이 추론되어야 했다. 단지 재외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설문에 참여하는 경우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주관적 설명에 따른 결과만 반영될 것이어서 정보 가치가 주관화될 수 있다. 실제로 이 보고서의 191에 나오는 베트남 범죄발생 추세 기록표 역시 베트남 범죄통계자료가 아니라 재외 한국인들이 체크한 응답지를 토대로 작성되어 있다. 유사 연구진들이 수행한 다른 보고서(필리핀/태국) 역시 같은 방식의 설문과 자료 분석이 내용이다.

그나마 자료적인 가치가 높은 것으로는 전지연/이진국의 2012년 베트남 형법 연구와 태국 검찰청/승재현의 태국 형사법 연구, 2014년 장준오/홍석준의"말레이시아 형사법 연구 "라고 할 수 있다. 세 연구는 모두 해당 국가의 형법과 형사법적인 절차에 대한 소개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법의 유래나 이론적 논쟁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실제 처리와 주요 판례에 대한 내용도 없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전지연/이진국의 보고서는 2012년 베트남 형법전의 한국어 번역으로서의 가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은 2014년과 2016년 사이 주요 사회주의 공화국에 대한 침해범죄 부분을 개정한 바 있다. 특히 베트남 형법108조 내지 제122조 전체와 시위에 대한 규제를 정한 제330조 등의 개정이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진다.[160] 해당 형법 개정은 2009년 발생한 환경운동가이자 민주화 운동가 퀸(Nguyen Ngoc Nhu Quynh) 여사에 대한 부당한 체포와 억압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녀는 베트남 정부의 부당한 민주화 운동을 방해와 민주 운동가들에 대한 은밀한 탄압(살해 포함)을 고발하는 운동을 주도했다.

---

159) 장준오 등, 위의 보고서, 23면

160) Vietnam: Reform Criminal Law to Respect Rights, 〈https://www.hrw.org/news/2016/10/18/vietnam-reform-criminal-law-respect-rights〉

특히 그녀의 활동 범위에는 베트남 정부를 지원한 중국에 대한 비판도 포함되어, 2010년 그녀는 헬만 하멧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7년 퀸 여사는 베트남 형법 제88조(개정 제117조) 위반으로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 선고는 기소된 2009년의 형법 제88조가 아니라 2016년 개정된 제117조를 적용하여 법정형의 상한(3년 이상 12년 이하에서 5년 이상 12년 이하로 양형 상향)까지 선고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구 형법 제88조는 블로거나 소셜 미디어 활동에 대한 애매한 적용이 문제되었으나, 개정 제117조 제1항 제1호는 인터넷을 통한 활동이 명시되어 있어, 형법 개정을 기다렸다가 선고한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161] 연구가 수행되던 2011년과 2012년에는 퀸 여사의 문제가 국제적으로 보도되고, 형법 개정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인권문제로 거론되던 때라서 형식적인 내용이라도 언급되었어야 했다.

태국 검찰청/승재현의 연구는 다른 선행 연구에 비해 비교적 수준 높은 자료적 가치를 가진다. 태국 검찰청 소속 검사와 협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태국의 역사와 법학교육, 사법 실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162] 조문의 나열이 아니라 사건별로 정리된 범주적 설명이 정보 습득을 도와준다. 일반적인 범죄 유형의 형법적용과 해석에 대한 코멘트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고 있어서, 향후 이와 유사한 비교법 연구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영문판과 번역판 두 자료가 모두 출간되어 정보 활용도가 높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2014년 장준오/홍석준의 연구는 3 페이지 정도의 말레이시아 형법에 대한 소개 글을 빼면 모두 말레이시아 형법(형사절차법 없음)의 번역서이다. 해외 법령 자료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형법 번역문으로만 평가할 수 있다. 언론에 많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식민지가 되고 1871년 영국 형법을 수용한 이후 1997년과 2010년 이슬람 종교의 영향력을 강화한 형사법대개정을 하였다. 이 개정은 형법상 이슬람 정권의 권위주의적 형사정책을 강화하고, 형사소송법상으로 상소제한이나 증거법상의 불이익을 명시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악명높은 1988년 CMA(Communications and Media Act of

161) Prominent Blogger Nguyen Ngoc Nhu Quynh sentenced to 10 years in prison, 〈https://www.omct.org/en/resources/urgent-interventions/prominent-blogger-nguyen-ngoc-nhu-quynh-sentenced-to-10-years-in-prison〉

162) 보고서 23면 이하

1988)의 구체적 죄형법규도 형법으로 포함되었다는 비판도 있었다.[163] 영국 시민지 시절인 1948년 말레이 독립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개정된 모반죄(Sedious Act of 1948)의 주요 규정도 2010년 개정으로 형법에 포함되었다.[164]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나 분석이 없이 2012년 말레이시아 형법을 단순 번역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연구나마 2014년 이후로는 단절되어 추가적인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손실로 볼 수 있다.

163) Malaysia: Reform or repeal laws that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https://www.article19.org/resources/malaysia-reform-or-repeal-laws-that-restrict-freedom-of-expression/〉

164) 국가 모욕(Sedition)에 대한 처벌은 악명 높던 1606년 설치된 영국의 성실법원(The Star Chamber)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국가에 대한 모욕이나 비판을 처벌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식민지 국가들에 거의 예외 없이 이 법률을 두고 있었다. 정작 본국에서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유지했는데, 1990년 망명한 아랍계 작가인 살만 후시디(Salman Rushdie)의 아랍 문명권에 대한 비판서적인 악마의 시가 영국 내 무슬림단체에 의해 모욕죄로 사적 소송(private prosecution)을 당하자 구법원(Magistrate)에서 기각한 바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독립을 요구하자, 본국에서는 300년 전 폐지된 법률을 1948년 말레이시아에서 부활시킨다. 이 법률은 독립 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었다. 예를 들어 이 법의 제3조 제1항의 제1호는 국가에 대한 모욕행위를 통치자나 정부에 대한 나쁜 영향을 주려는 시도 또는 행위라고 정의한다.('seditious tendency' is a tendencyto bring into hatred or contempt or to excite disaffection against any Ruler or against any Government) 2000년에도 사회운동가 마리나 유소프(Marina Yusoff)를 이 죄목으로 체포했으며1998년에는 야당 지도자 림관응(Lim Guan Eng) 역시 1995년 발생한 말라카 주지사의 소녀 강간사건에 대한 비판 혐의로 기소되어, 그는 국회의원직을 상실 당한다. 이 후 형법 개정으로 특별법이 아닌 형법 규정으로 편입시키고 말았다. 개정 형법 제121조 이하에는 이슬람 술탄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등을 처벌하는 법규들이 포함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보호와 안전의 취약성과 문제점

김경찬·이준표·Amelya Gustina·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제3장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보호와 안전의 취약성과 문제점

제1절 | 동아시아 지역 인권침해와 안전관련 주요 사례와 문제점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보호협력 및 안전과 관련한 문제와 쟁점은 매우 다양하고 수많은 사건과 사례가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전쟁과 대량학살, 강제노동과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현대사회에서도 기아, 테러, 인신매매, 보이스피싱, 부패범죄, 아동 학대와 노인 학대, 대형 안전사고 등 매우 다양한 형태와 범위의 인권침해 관련 사건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형제도, 마약범죄, 재외국민 범죄피해, 코로나-19 방역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취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사형제도는 인권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모든 인권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이다. 인간의 생명보호를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또는 지역 국가 협력적으로 기초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인권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인권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토대이자 연결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생명보호와 생명가치를 법적으로 가장 뚜렷하게 표현하거나 쟁점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사형제도이며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보호와 인권보호협력 논의에서 이를 빠뜨리고 인권논의를 시작하거나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협력은 동아시아 지역의 생명 안전벨트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국가별 인권협력에서 영역별 선호에 대한 고려를 넘어서는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약범죄의 경우 가장 오래되고 뿌리 깊은 범죄이고 국내적으로나 국제적 범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강력하고 대응하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범죄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 양산되고 있기에 상호논의가 매우 요청되는 범죄이다. 또한 마약범죄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까닭에 처벌도 사형이나 중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인권보호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마약범죄를 충실히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과 마약범죄에 대해 사형으로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교육과 치료로 예방과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인권보호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강제)실종을 포함하여 재외국민 범죄피해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여행이나 거주, 노동과 결혼 등 인구의 이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자신의 국가를 벗어나 다른 국가의 주권 하에서 동아시아 어느 국가에서든 외국인은 누구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의 보호에 취약하며 온전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보호와 상호협력과 논의가 절실히 요청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안전과 관련한 영역으로 세계 어느 곳에나 다양한 형태의 전염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서도 초국가적 협력과 안전을 위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최근 가장 뚜렷하게 요청되고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인간의 삶의 형태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부작용과 문제 및 범죄대응을 위해 국내적으로나 지역 국가적으로 협력논의와 검토가 이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우선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상호협력을 살펴보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이외에도 다양한 차원의 인권침해 형태와 유형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후 후속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와 검토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인권·형사법무 교류프로그램에서 관련 협력과 형사법제 및 법무법제의 소개와 교류는 향후 상호협력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체계와 연관된 사법시스템과 사법의 독립성 정도 등과 관련한 심층적인 비교연구도 동아시아 각국의 상호협력을 위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동북아 지역 인권침해와 초국가적 범죄, 안전관련 주요 사례 현황과 문제점

가. 19~20세기의 동북아 지역 인권침해와 인권보호의 취약성

19~20세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발생된 인권침해와 문제를 간략한 정도라도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사형제도, 마약범죄, 강제실종, 재외국민 범죄피해, 코로나-19와 안전 등이 많은 부분이 국가의 법과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고 또한 인접국가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는 국가에 의해서 또는 외국이나 인접국에 의해 가하여졌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각국의 정부와 국가기관의 정책과 역할 및 상호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 즉 한국, 중국, 일본 등 각 국가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19~20세기의 사건과 사례들은 사실상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의 동북아 지역 각 국가들은 국가 내적으로는 민주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시기로 왕정과 신분제를 유지하면서 각 국에 속해 있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 평등과 인권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국가 외적으로는 국가 간 힘겨루기의 청·일 전쟁(1894) 등 전쟁과 살육, 세력 확장을 위한 제국주의와 침탈로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의 동북아 지역도 19세기와 마찬가지로 전쟁과 혼란의 시기였고 1·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으며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고 피해가 극심하였다. 러·일 전쟁(1904), 중·일 전쟁(1937), 한국전쟁(1950~1953) 등 전쟁과 혼란, 이념과 투쟁의 시기였다. 일본의 한국 국권침탈(1910~1945)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노역이나 위안부로 끌려갔으며 중국에서 발생한 일본의 난징대학살(1937)도 약 30만 명이나 무참히 희생되는 등[165] 당시의 동북아 지역 각 국의 상황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인권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실현할 수 있는 논의나 관련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

165) 시사저널 1650호, 2021.5.29.“,‘위안부’ 이어 ‘난징대학살’도 부정하는 일본”,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658〉(최종검색일:2021.5.31.)

이렇듯 19세기와 20세기는 전쟁과 살육, 탐욕과 약탈, 폭력과 억압, 국권침탈과 제국주의 등으로 동북아시아 각국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보호는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를 위해 각 국가의 내적인 인식이나 실천은 물론이고 한·중·일 각국이 서로 논의하며 개선을 위한 협력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와 상황에 대한 상호논의와 협력적 실천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동북아시아의 21세기 역시 취약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이에 각 국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 프로그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나. 한국/북한

(1) 사형제도

한국은 현재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사실상 사형집행 폐지국'으로 인정받고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있다. 한국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이래로[166] 노무현 정부, 한 때 이명박 정부 때 사형집행의 시도가 있기도 하였지만[167]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2020년 유엔 제75차 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Moratorium)[168]'결의안에 찬성 표결을 하였다.[169]

한국에서 사형제도가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권력기관에 의해서 헌법적으로 위헌 결정이 나거나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입법부에서 입법적으로 폐지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사형이 언제든지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흉악범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거나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정당이 집권하는 경우는 그 집행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형의 집행여부가 불확정하거나 명확히 폐지되지 않은 경우에 사형집행은 언제든지 다시금 재기될 수 있으며 심지어 사형이 폐지된 국가에서도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하거나 사형제도 부활의 논의가 재기되기도 한다.

---

166) 한겨레21, 2009.8.27.,"사형은 민주주의 기초에 반하는 행동", 김대중 정부시절 외국인 사형수 2명에 대해서 광복절 특사 때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여 형을 집행정지하고 국외 추방으로 하여 파키스탄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5625.html〉(최종검색일:2021.6.1.)

167) 이명박 정부 당시 한 때 사형집행의 시도가 있기도 하였지만 외교통상부가 사형을 집행할 경우 외교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음의 의견을 전달하여 사형집행에 반대한 바 있다.

168)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이행을 일정기간 연기 또는 유예하는 것

169) 법무부 보도자료, 2020.11.18.

필리핀의 경우 1987년에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가 1993년에 살인, 납치, 미성년자 강간 등에 대해 사형제도가 부활하였으며 2006년도에 다시 폐지되기도 하였지만 2017년 이후 다시금 사형제도 부활 법안이 제출되어[170] 최근에도 다시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171] 몽골의 경우 2012년도 사형폐지를 약속하는 국제조약인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 선택 의정서(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비준한 이후[172] 2016년도에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는데,[173] 살인, 아동 성폭행 등과 관련한 흉악한 범죄의 증가로 다시금 사형제도의 재개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174] 필리핀이나 몽골의 예처럼 한국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형의 시행이 재검토될 수 있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국내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경우 언제든지 다시 재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권보호와 관련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은 일정부분 도움이 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도 사형제도의 존치국으로서 사형집행의 공식적인 통계를 파악하거나 공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 한 단체에서는 북한이 세계 제3위의 사형 집행국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175] 탈북인 증언 등을 통하여 북한의 사형 집행사례를 이해해 볼 수 있으며 총살을 주로 하지만 총알이 아까워 타살로 처형하기도 하는데 북한은 공식적으로 2019년 5월 UPR에서 공개처형을 합리화하기도 한 바 있다.[176]

---

170) 연합뉴스, 2019.07.23.,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사형제 부활 추진…국회 통과할 듯",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3086200084〉(최종검색일:2021.6.1.)

171) 연합뉴스, 2020.07.28.,"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사형제 부활 재추진",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8080900084〉 (최종검색일:2021.6.1.)

172) 라지브 나라얀 박사. 아순따 비보 까바에르, 사형제 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 2018.4.26.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파리원칙 25주년 기념 자료집, 2018, 175면.

173)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2015.12.08. "몽골: 역사적인 표결 통해 마침내 사형제도 폐지" https://amnesty.or.kr/12152/〉(최종검색일:2021.6.1.)

174) Д.ЖАРГАЛСАЙХАН, 2018.1.3., "사형 제도 재개에 대하여", 〈https://jargaldefacto.com/article/%EC%82%AC%ED%98%95-%EC%A0%9C%EB%8F%84-%EC%9E%AC%EA%B0%9C%EC%97%90-%EB%8C%80%ED%95%98%EC%97%AC〉 (최종검색일:2021.6.1.)

175)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북한 세계 3위 사형집행국", 〈https://www.voakorea.com/archive/death-sentences-report-118785524〉(최종검색일:2021.6.1.)

176)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2021.04.30., "잔혹성과 불공정성 – 북한의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https://amnesty.or.kr/41133/〉(최종검색일:2021.6.1.)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북한 역시 모두 현재로서는 사형 제도를 모두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생명존중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국민적으로 또는 정부차원에서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평화를 유지하며 생명보호를 위한 노력이 훼손되기 쉬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북한은 사형제도의 필요성 및 생명보호와 관련한 논의와 토론을 함께 시작할 필요가 있다.

(2) 마약범죄

한국은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관련 범죄대응과 퇴치활동으로 밀매조직이 거의 사라져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나 외국으로부터 반입되거나 한국이 마약 경유지로 활용 또는 한국인이 마약운반책의 역할을 하는 등 마약관련 범죄가 다시금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존 한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인식은 변화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177]

[표 3-1-1] 2018~2020년 한국 내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178]

	2018	2019	2020
합계	12,613 (100%)	16,044 (100%)	18,050 (100%)
대마	1,727 (12.2%)	2,629 (16.4%)	3,212 (17.8%)
마약	1,475 (10.4%)	1,804 (11.2%)	2,198 (12.2%)
향정	10,921 (77.3%)	11,611 (72.4%)	12,640 (70%)

2018~2020년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2018년 1만 2천여 건, 2019년 1만 6천여 건, 2020년 1만 8천여 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대마의 경우 2018년 1천 7백여 건, 2019년 2천 6백여 건, 2020년 3천 2백여 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고 마약의 경우 2018년 1천 4백여 건, 2019년 1천 8백여 건, 2020년 2천 1백여 건 등으로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향정의 경우도 2018년 1만 여건, 2019년 1만 1천여 건, 2020년 1만 2천여 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등 대마, 마약, 향정 모두

177) 2019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20, 359면
178) 2018, 2019, 2020년 마약류 월간동향,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s://www.spo.go.kr/site/spo/ex/board/View.do〉 (최종검색일:2021.6.2.)

매년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 내 마약 투약인구가 추정치이지만 50만에 이를 수 있고 비대면 온라인, 다크웹, 항공우편, 항구 등 유통경로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한편 대마의 경우 캐나다, 미국 일리노이,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등 16개 주에서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하였고[179] 아시아에서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을 포함하여 세계 45개국이 의료용 대마를 역시 합법화하기도 하였으며[180] 중국과 일본은 합법화는 아니지만 관련 산업을 지원하거나 대마의 일종인 헴프의 생산과 수입이 가능하고[181] 인도네시아의 경우 대마가 불법이지만 일부 주에서는 합법화 법안 발의가 있기도 하였다.[182]

한국의 경우도 2018년 12월 합법화는 진행되었지만[183] 그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184] 이러한 대마의 생산과 유통, 의료용 사용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문제와 부작용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 국가의 입장에 대한 상호이해와 함께 통제의 방식이나 유해성 여부[185] 등과 관련하여 공동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마약과 관련한 공식적인 통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주민의 마약을 사용하는 주민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탈북민의 증언[186]이나 북·중 접경지대 즉 길림성이나 연변 조선족자치주, 신의주, 단동 등지에서 발생하는 마약 관련

---

179) 연합뉴스, 2021.05.30.,"미국 곳곳 대마 합법화…마약탐지견 줄줄이 '실직'",〈https://www.yna.co.kr/view/AKR20210530008300009?input=1195m〉(최종검색일:2021.6.2.)

180) 국민일보, 2021.05.30.,"의료용 대마 연구·개발 팔 걷은 농진청, 수입산 대체 목표로 작년에 착수, 2025년 세계 시장 62조 규모 예상",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3927&code=11151400&cp=nv〉 (최종검색일:2021.6.2.)

181) 전라일보, 2020.12.16., "대마 규제가 풀려야 한다",〈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15363〉 (최종검색일:2021.6.2.)

182) 아시아경제, 2020.2.11.,"마약 팔면 사형인 나라에서…대마커피는 합법?, 마리화나 재배 통제 불능상태, 인니 아체주서 합법화 법안 발의, 커피 해외수출법안도 함께 마련",,〈https://www.asiae.co.kr/article/20200211111350746942〉(최종검색일:2021.6.2.)

18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939호, 2018. 12. 11., 일부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제3조제7호·제10호가목,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184) 한국일보, 2020.6.26.,"2020 마약리포트,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해 달라" 합법화 요구 높지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62514400000004〉(최종검색일:2021.6.2.)

185) 이준일, 『인권법』, 홍문사, 2019, 116면.

186) 동아일보, 2019.5.25.,"마약에 빠진 북한… '동네마다 얼음 파는 집'",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525/95690028/1〉(최종검색일:2021.6.2.)

범죄[187]로 중국과 북한이 원료공급, 생산, 유통 등의 분업이 이루어지고 동남아시아로 유통되거나 직·간접적으로 한국으로 다시금 밀반입 되는 등[188] 북한 관련 마약범죄가 만연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3) (강제)실종과 재외국민 범죄피해 관련문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2017년 등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서명·비준·가입을 권고·재권고[189]한 바 있으며 최근 정부는 본 협약의 가입을 추진 중에 있다.[190]

강제실종은 억압적인 정부나 국가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로서 체포영장이나 어떠한 혐의 또는 기소 없이 사람을 사라지게 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피해자는 고문의 위협이나 조용히 집행되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는 구금이나 또는 적법절차 위반 집행과는 구별되는 범죄로 강제실종자의 가족은 희망과 환멸 속에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191]

강제실종 보통 비민주적 또는 독재 정권이나 국가에 의해 범해진다는 점에서 다른 어떠한 범죄인이나 범죄단체가 범하는 실종이나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실종 또는 그 외에 어떠한 범죄에 의하지 않은 실종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는데 강제실종뿐만 아니라 일반실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한국의 범죄통계는 강제실종은 일반 전체실종에서 구별하여 별도로 파악하거나 처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강제실종과 일반 실종과의 구별이 명백히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 있다. 명백히 알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경우 또는 어떠한 범죄인이나 범죄단체의 혐의나 관련성을 알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외 지적장애인이나 치매 등으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어느 정도 일정한 추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187) MBC, 2016.10.27.,"[단독] 북중 접경 지역 밀무역 기승 "마약도 거래"" https://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149323_30244.html〉(최종검색일:2021.6.2.)
188) 노컷뉴스, 2011.10.14.,"북-중 접경지역…"북한산 마약 밀매 성행"", 〈https://www.nocutnews.co.kr/news/883539〉(최종검색일:2021.6.2.)
189)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의견표명 및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8.1.8
190) 경향신문, 2020.12.13.,"정부,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추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131712011〉(최종검색일:2021.6.3.)
191) WHAT IS ENFORCED DISAPPEARANCE?, 〈https://trialinternational.org/topics-post/enforced-disappearance/〉(최종검색일:2021.8.30.)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정부 또는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하게 구별하거나 단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일반 실종에서 강제실종을 구별하여[192] 별로도 관리하고 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북한과 관련한 구금과 납치 및 강제실종 문제가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가 개설되기도 하였는데, 여기에 1950년 6·25에서부터 2016년까지 한국군 포로와 민간인 납북자가 2만 여명이 수록되어 있고 입력대기 중인 사람이 7만 여명에 이른다.[193]

한편 한국은 일반적으로 실종과 관련하여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노인들의 실종사건 신고는 2018년 42,992건, 2019년 42,390건 등으로 매년 4만 2천여건의 신고가 있었고 미발견이 2018년 25건, 2019년 196건이 있었다. 성인의 실종 사건 신고는 물론 이에는 자발적인 가출 신고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보다 많은 경우 2018년 75,592건, 2019년 75,432건 등으로 7만 5천여건으로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노인 실종 신고보다 대략 170% 정도 많은 수에 해당하며, 미발견의 경우도 2018년 809건, 2019년 1,436건 등[194]으로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노인 미발견 건수에 비하여 대략 10배 정도로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안전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발송되는 문자에 실종 경보문자를 통하여 초등학생[195]과 치매노인을 조기 발견하여[196] 귀가시킨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역시 경찰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이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 범죄피해 중 납치와 행방불명 사건의 경우도 2018년 각각 118건, 489건 2019년 각각 74건, 766건, 2020년 각각 45건, 569건 등이 발생하였으며 매년 600~800

192) 사이드뷰, 2021.1.27.," '쓱' 사라지는 사람들… 실종자 향한 대책 시급", 〈https://www.sid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05〉(최종검색일:2021.9.1.)
193) 보아코리아, 2021.1.28.,"북한 자의적 구금·납치·강제실종 DB' 구축...한국·스위스 인권단체들 참여",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social-issues/nk-abductee-database〉(최종검색일:2021.6.3.)
194) 2019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2020, 102면.
195) 국민일보, 2021.7.13.,"빠른 조치로 실종 초등생 찾았다…대전경찰 대응 눈길", 〈http://m.kmib.co.kr/view.asp?arcid=0016050166〉(최종검색일:2021.8.30.)
196) 동아일보, 2021.6.28.,"실종 경보' 메시지 15분 만에…70대 치매 노인 찾았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28/107679321/1〉 (최종검색일:2021.8.30.)

여건으로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행방불명의 사유는 다양한 원인과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이후에도 관련 정보와 원인이 분석될 필요가 있으며 행방불명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해외의 현지 형사사법기관과 출입국 업무기관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관련된 정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되고 검토될 수 있는 협력적 방안이 요청된다.

한편 한국은 2010년 7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에 도움을 얻고자 디엔에에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본 법에서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는 수형자, 일정 범죄에 대한 구속피의자, 범죄 현장으로부터의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실종자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효율적인 실종자 확인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현재 아동, 지적장애인,[197] 치매와 관련된 실종과 성인 가출을 포함한 실종을 별도로 다루고 있는 점, 신원불상 변사자, 무연고자 사망, 실종자, 실종자 가족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연동적, 또는 통합적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198]

호주와 영국은 살인, 강간, 테러범죄 등과 관련하여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로 효과적인 초국가적 범죄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 캐나다 등지로 확대를 살펴보고 있다.[199]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경우 실종자 확인과 관련하여 공동협력이 일정부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 간 협의를 통하여 가능한 정보공유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 범죄피해의 경우 외교부가 해외 각국 영사관을 통하여 관련 범죄피해의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재외국민 범죄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

197) 비마이너, 2018.1.5.,"실종 후 사망한 장애인, 신원 감식결과 나오기도 전에 화장돼, 대구 동부경찰서와 동구청, 사망자 외삼촌과 연락도 했지만 '무연고자'로 화장처리, DNA 감식 결과 확인 열흘 앞두고 시신 발견 2주 만에 진행...비판 거세",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47〉 (최종검색일:2021.6.4.)

198) 조선펍, 2018.6.1.,"성인 실종자 통합관리 시급하다, 국과수 보관 3600건 신원불상 DNA의 주인은?",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nNewsNumb=20180629166&nidx=29167〉(최종검색일:2021.6.4.)

199) Australian and British police to share their DNA databases, This article is more than 6 years old, Deal will bypass Interpol and might be extended to include US and Canadian forces,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14/nov/06/australian-and-british-police-to-share-their-dna-databases〉 (최종검색일:2021.6.4.)

고 있는데,[200] 2019년 재외국민 범죄피해의 경우 일본이 1,363건으로 8.3%, 중국이 1,317건으로 8.1%, 미국이 1,344건으로 8.2% 등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201] 기타 국가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도 주요 국가 못지않게 8,462건으로 51.8%를 차지하고 있어 범죄피해의 과반을 넘고 있다.[202]

우선 국가별로 범죄유형별로 세부적인 사항이 파악되지 않으면 그에 적합한 대응과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인접한 동남아시아 각 국에 대해서도 국가별 범죄피해 유형과 수에 대해 적절히 파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국의 경찰이나 검찰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범죄대응 협력을 구축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외교부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길 희망한다.

(4) 코로나(Covid-19)와 안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가 2020년 1월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중국 35세 여성이 처음 확진자로 확정되어[203]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방역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은 지역과 국가, 동물과 사람을 넘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으며 이에 개인과 직장, 마을과 도시 단위는 물론 국가와 그 국가가 속한 지역에서 독자적인 노력은 물론 상호협력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방역·보건협력체를 제안한 바 있으며 남북관계도 전쟁을 허용하지 않고 상호안전을 보장하며 공동번영을 추구라는 원칙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협력체로서 남북이 서로 협력하고 동아시아가 상생하며 평화를 지키는 기회를 형성한다[204]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동아시아 상생과 평화유지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인 신뢰형성을 위한 사전적인 교육과 함께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협력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요청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가짜뉴스, 인종혐오 및 증오범죄 등 관련범죄가

200) 연합뉴스, 2021.5.25.,""재외국민 범죄피해 4년새 곱절…보호관련 법안 개선 시급",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5138300371〉 (최종검색일:2021.8.23.)
201) 법무연수원, 2020 범죄백서, 2021, 221면.
202) 법무연수원, 2020 범죄백서, 2021, 222면.
203) 의협신문, 2020.1.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첫 확진자 발생",〈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009〉(최종검색일:2021.6.8.)
204) 뉴스1, 2021.3.1.,"[전문]문대통령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日참여 검토…北 참여 기대"〈https://www.news1.kr/articles/?4226325〉 (최종검색일:2021.6.8.)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전화로 백신비용 납부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백신이 DNA를 변형시키거나 뇌를 조종하며 유발한다는 뉴스,[205] 가짜 백신이나 가짜 마스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백신접종 증명서를 위조 및 판매하는 행위[206] 등 이러한 문제와 범죄 역시 국내적인 대응[207]과 대처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와 범죄가 국가를 넘어 정보가 확산되거나 물건이 유통되는 문제 등[208]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경고와 확인이 필요하지만 한편 가짜 뉴스에 대한 검증이나 확인이 될 수 있는 절차와 방안이 협력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가짜 뉴스에 대한 검증과 확인절차가 적절히 진행되지 않거나 이루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일방적이고 전체적인 과도한 제재와 가중된 처벌[209] 또는 검열은 오히려 표현이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 방지를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자정활동의 활성화[210]를 포함하여 촘촘하고 중립적인 검토 및 검증을 통해 형사법상의 처벌도 있지만 우선 가벼운 제제 및 처벌과 함께 일정부분 예방 가이드라인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만들며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가짜 뉴스는 또한 어느 지역 사람에 대한 포괄적인 혐오나 증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211]는 점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공동인식과 대응이 요청되며 관련 범죄와 문제는 범죄예방에 취약한 지역이나 장소 및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관련

---

205) 노컷뉴스, 2021.3.3.,""백신이 뇌 조종·치매 유발"…정부, 가짜뉴스 대응키로",〈https://www.nocutnews.co.kr/news/5509329〉(최종검색일:2021.6.8.)

206) 연합뉴스, 2021.3.4., "경찰,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집중 단속",〈https://www.yna.co.kr/view/AKR20210304069700004?input=1195m〉(최종검색일:2021.6.8.)

207) 조선비즈, 2020.8.25.,"방통위 "코로나 가짜뉴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5/2020082501662.html?form=MY01SV&OCID=MY01SV〉(최종검색일:2021.6.8.)

208) 나우뉴스, 2021.5.24.,"인터폴 "중국 등지서 생산된 '가짜 백신' 전 세계 유통 우려"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24601009&wlog_tag3=naver#csidx1aec058cbcde3bf839129e1c8376af1〉(최종검색일:2021.6.8.)

209) 이문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와 그 헌법적 한계", 『한양법학』, 제75집, 한양대학교, 2021, 34면

210) 이문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와 그 헌법적 한계", 『한양법학』, 제75집, 한양대학교, 2021, 36면

211) 매일경제, 2021.6.2.,"아시아계 경찰까지 공격당했다…美 혐오범죄 극성",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6/530300/〉(최종검색일:2021.6.8.)

예방교육과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인접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는[212]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기존에 대응체계 형식이 대면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비대면 방식은 국제적인 논의와 협력을 위한 방식에서의 변화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비대면 방식의 전환으로 인한 온라인 회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의참여자 확인인증 문제,[213] 해킹 문제, 회의방해 행위 등과 관련한 보안과 대응이 함께 요청된다.

사이버 범죄가 국경을 초월하여 다차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국내적 범죄대응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 사이버 범죄대응 역량강화 교육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중국

(1) 사형제도

중국은 최대 사형집행국가로서 이란,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등을 포함하여 사형집행국 TOP 5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사형집행과 관련하여 비공식적인 통계를 제외하고 공식적인 통계는 불투명한 상태이다.[214]

중국은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2050년에 사형을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을 일부 논의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형법 전에서 비인신침해범죄, 경제범죄, 비폭력성 범죄 등에 대해 사형을 삭제하거나 삭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2011년 8차 개정형법에서 비폭력성 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13개 항목에 대해 우선 사형을 없앴고,[215] 2014년 9차 개정형법에서는 비치명적 폭력범죄에 대한 사형도 폐지하는 등 9개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216]하였다.

---

212) 外國人の受入れと日本社會, 高宅 茂·瀧川修吾,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 平成20年, p.208.
213) 뉴스핌, 2021.3.9.,"비대면 인증수요 커지는데…본인확인기관 지정, 시작부터 '삐끗'",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309000977〉 (최종검색일:2021.6.8.)
214) 전 세계 사형 현황, 〈https://amnesty.or.kr/campaign/2020-death-sentences-executions/〉 (최종검색일:2021.6.1.)
215) 허일태, "동아시아의 사형제도 현실과 미래,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58-3호, 한국법학원, 2017, 785면.

중국은 사형제도의 유지 또는 폐지 역시 중국의 경제적 발전 및 수준과 일정부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며 일부 견해에서는 한국의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 또는 '사형제도는 유지하되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혹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보해 두는 상황'이 오히려 중국과 같은 큰 대륙에서 적합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이 제시되기도 하는데,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유엔의 국제규약에 가까이 하고 그 적용에서 엄격함과 신중함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217]

이렇듯 사형제도가 어느 한 국가의 국내적인 제도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인 경향과 상황에 서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사형제도 존폐여부는 동아시아 인근 국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사형제도 폐지에 조금 더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마약범죄

중국은 마약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218] 한국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2014년에 한국 외교부가 한국인 마약범죄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몇 차례 집행한 바 있는데[219] 중국은 마약범죄에 대해서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단호한 입장에 있으며 2014년 마약범죄의 경우 북한, 중국, 한국의 경로 거쳐 마약을 밀수·판매한 사건에 해당한다.[220]

마약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식의 변화는 국가마다 상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사형인 극형을 적용하기 보다는 무거운 형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전적 예방과 점검 및 다양한 방식의 치료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전적 예방과 점검 및 치료에서도 마약범죄는 국내적 대응만으로는 일정한 어려움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

216) 허일태, "동아시아의 사형제도 현실과 미래,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58-3호, 한국법학원, 2017, 786면.

217) 허일태, "동아시아의 사형제도 현실과 미래,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58-3호, 한국법학원, 2017, 795~796면.

218) 중국 형법 제347조 마약 밀수, 판매, 운송, 제조죄, 제349조 마약범죄비호와 마약범죄자비호의 중한 경우, 제350조 마약제조물밀수죄 등

219) 조선일보, 2015.1.6., "한국인 마약범 1명… 中, 또 사형집행",〈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06/2015010600260.html〉(최종검색일:2021.5.31.)

220) 조선일보, 2015.1.6.,"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정부당국 인도조치 요구…中 '불가능하다'", 〈http://www.mediapen.com/news/view/43541〉 (최종검색일:2021.6.8.)

중국의 경우 장기적이기는 하지만 점차적인 사형제도 폐지를 구상하고 있고 사형집행유예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마약범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형집행유예제도나 무기징역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중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에 대한 교류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마약금지 사업은 국가 안보, 민족의 흥망성쇠, 인민의 안녕과 직결되어 있어, 마약을 근절하지 않는 한 마약과의 싸움을 한시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줄곧 가혹한 형벌, 엄격한 금지라는 중형주의적 형사정책을 고수하여, 대대적으로 각종 형벌을 강력히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마약범죄 확산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국제마약범죄 퇴치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221]

(가) 중국 마약범죄 입법관련

아편이 수입된 시점부터 아편전쟁에 이르기까지, 북양정부(北洋政府)의 '금연벌금'과 장개석(蒋介石)의 '마약금지 2년, 금연 6년'이라는 구호를 실시하여, 일찍이 청나라 말 중화민국 초기에 "금연"은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222] 신중국 출범 초기, 중국의 마약금지 상황은 매우 심각하여, 당과 국가는 엄격한 마약금지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에 1950년《아편 흡연 금지에 관한 통령(关于严禁鸦片烟毒的通令)》, 1952년《중화인민공화국 마약범죄 처벌에 관한 조례(초안)(中华人民共和国惩治毒犯条例(草案)》 등의 통령 및 단행법규를 공포함으로써 3년(1950년~1953년)에 걸쳐 "마약숙청"을 실현하였다. 그 당시 중국은 이미 처벌과 교육의 결합, 엄격한 단속, 엄중한 마약금지 방침을 구현하였다. 예를 들어,《아편 흡연 금지에 관한 통령(关于严禁鸦片烟毒的通令)》에는 "아편을 흡연하는 인민은 기한 내에 등록(도시는 공안국, 시골은 인민정부)해야 하고, 정한 기한 내에 금연해야 한다" 등의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명시되어 있다. 1953년 중국은 이미 '마약 청정국'이 되었다고 선언했다.[223] 그 이후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은 더 이상의 대대적인 마약금지운동을 하지 않았으며, 마약범죄 정책

221)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2면

222) 赵翠生.清末和民国时期禁毒政策考略[J].北京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02, 13-15면

223) 胡江,于浩洋.新中国70年来毒品犯罪刑事政策的变迁与完善——从"打击"走向"治理"[J].广西社会科学, 2019, 109-115면

도 도입하지도 않았다.[224]

개혁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 내수시장은 점차 개방되었고, 전 세계 약물 판매가 중국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마약문제는 다시 되살아났다. 당시 상황을 반영하여, 1979년 형법 제171조는 약물 제조, 매매 및 운반죄를 신설하고, 약물 제조, 매매 및 운반 행위에 대해 별도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아울러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면, 재산을 몰수한다...라는 일관 또는 다수에 처한다"라고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는 약물 제조, 매매 및 운반 행위에 대한 형벌의 폭이 매우 크지만, 무기징역 및 사형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 마약범죄는 개혁개방 이후에 마약 단속이 시급하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단일 범죄와 부정확한 형량 규정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국은 마약 통제에 대한 시급하고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여, 1982년《경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범죄의 엄중한 처벌에 관한 결정(关于严惩严重破坏经济的犯罪的决定)》, 1988년《밀수 범죄 처벌에 관한 부칙(关于惩治走私罪的补充规定)》, 1990년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의《마약금지에 관한 결정(关于禁毒的决定)》등을 연이어 공포하였고, 마약 밀수, 밀매, 운반 및 제조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1997년 형법이 공포된 이후, 마약범죄의 죄명을 12건으로 확대하여 현행 마약범죄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였고, 이후《형법개정법률안 제9항(刑法修正案(九))》에서 관련 죄명을 추가 개정하였다.[225]

마약금지 특별법은 2007년에 공포되어 2008년에 발효된《중화인민공화국 마약금지법(中华人民共和国禁毒法)》으로 약물 규제, 퇴치, 국제협력 및 법적 책임에 대한 종합적인 조항이 담겨있다. 중국 마약금지에 관한 중앙법규 문서에는 2011년 국무원에서 공포한《계독조례(戒毒条例)》, 공안부의 공식적인 개입 및 제정한《약물 투약 검사 절차에 관한 규정(吸毒检测程序规定)》,《약물 중독 식별 방법(吸毒成瘾认定办法)》,《마약법 위반 및 범죄 신고 장려방법(毒品违法犯罪举报奖励办法)》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 중국 국가마약금지위원회는 매년 중국 마약범죄 현황, 마약관리 성과 등을 요약한《중국 마약 실태 보고서(中国毒品形势报告)》를 발간하고 있다. 일부

224)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2면
225)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3면

지방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지역단위의 《금독조례(禁毒条例)》를 발표하고 있다.[226]

종합적으로 중국은 마약범죄에 있어서 《마약금지법(禁毒法)》을 핵심으로 형법을 뒷받침으로 하고, 국가 부(部) 위원회 및 지자체에서 제정한 법률/법규를 보완책으로 하여, 엄격한 단속 및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체계를 형성하고 있다.[227]

(나) 중국 마약범죄와 중형주의 형사정책

중국에서는 형사정책 목적에 관한 두 가지 학설로 범죄예방이론과 범죄 대응론을 언급하고 있다. 전자는 형사정책체계에 "예방조치, 처벌조치 및 교정조치의 3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근본적인 목적은 범죄 예방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228] 후자는 형사정책이 "범죄 예방 및 통제를 위한 반범죄 투쟁을 실천하려면 전략적 조율과 적용 방향에 전념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229] 이 두 가지 관점은 완전히 상충되는 것은 아니며, 모두 예방, 처벌 및 규제의 각 부분이 형사정책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즉, 마약범죄는 규제 근원, 형사처벌 및 행동 교정이라는 일련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마약금지 전략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약금지의 긴급성", "마약금지의 엄격성" 및 "마약관리의 중형처벌"은 관련 연구과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휘로, 이러한 엄중한 형사정책은 입법, 사법 등 다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230]

〈형사 입법 정책〉

입법은 범죄 퇴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범죄 행위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형법의 안정성 요구는 신형 범죄에 대한 형법의 적응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므로 입법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입법관념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형법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이유이다.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중국은 중형주의적 형사정책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여 이 이념을 구현하고 있다.[231]

---

226)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3면.
227)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3면.
228) 陈兴良.刑事法治视野中的刑事政策[J].江苏社会科学,2004, 117-132면.
229) 梁根林.刑事一体化视野中的刑事政策学[J].法学, 2004, 112-120면.
230)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4면.
231)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4면.

첫 번째로는, 혐의가 포괄적이며, 처벌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1979년 형법에 약물 밀수, 밀매 및 운반 범죄만을 규정했으나, 1997년 형법에서는 마약범죄를 12개 범죄로 확대하여, 마약 및 마약류 식물의 거래 및 소지 등의 행위를 포함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생산류, 유통류, 소비류, 소지류 및 국가기관의 마약단속 방해류라는 5가지 범주로 요약하였다.[232] 오늘날 중국은 비교적 포괄적인 마약범죄시스템을 구축하여 완전한 마약범죄 범죄권(犯罪圈)을 형성하고, 마약범죄에 대한 엄중한 단속, 엄벌, 엄격한 통제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중형주의적 입법정책은 줄곧 형법의 구속성(刑法谦抑性)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이 존재한다. 한편, 광범위한 범죄권(犯罪圈)은 정교한 양형체계로 보완되지 않아, "경범죄와 중형"으로 이어진다. 밀수, 밀매, 운반, 제조의 마약범죄를 예로 들면, 해당 범죄에는 4가지 유형의 행위가 있는데, 여기서 마약운반의 사회적 해악성은 밀수, 밀매 및 제조 행위보다 가볍지만, 동일한 죄명 내에서 가장 높은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인식과는 명백히 상충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적 관행에서 매매의 목적을 입증할 수 없을 시 종종 "불법마약소지죄"로 유죄판결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 마약범죄에 대한 엄중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해당 범죄는 본질적으로 마약범죄 중의 "예외조항(兜底性条款)"이 된다.[233]

두 번째로는, 마약범죄에 대한 엄중한 형벌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로 세 가지 측면으로 구현되는데, 하나는 마약 밀수, 제조 및 운반 행위에 대한 사형, 두 번째는 많은 마약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세 번째는 마약의 유형과 수량을 기준으로 형량이 정해지고, 일부 범행은 유죄로 인정될 때에 수량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234]

첫째, 마약범죄의 사형과 관련하여 중국은 약물 밀수, 밀매, 운반, 제조의 마약범죄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사형으로 적용받는 상황은 약물 밀수, 밀매, 운반 및 제조 등 4가지 행위로 제한하고 있다. 사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世界人权宣言)》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시민권리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公民权利及政治权利国际公约)》에서는 "최악의 범죄[235]"의 경우에만 사형이

232) 转引自赵国玲,刘灿华.毒品犯罪刑事政策实证分析[J].法学杂志, 2011, 50-55면.
233) 曾军,熊姿. 坚持罪刑均衡 破解毒品犯罪"轻罪重罚"[N]. 检察日报, 2021.
234)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5면.
235)《公民权利及政治权利国际公约（1996）》, 第六条。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국제사회의 여러 국가들과 학자들은 마약범죄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사형에 대해 유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에, 마약범죄에 대해 엄격한 형사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 밀수, 밀매, 운송 및 제조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는 중형화된 마약범죄에 대한 중국의 입법정책을 반영하고 있다.[236]

둘째, 형법 제356조 규정에서는 마약범죄의 재범에 대해 엄벌하고, 미성년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중징계하도록 규정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37] 최고인민법원의 《관엄상제 형사정책 관철에 관한 몇 가지의 견(关于贯彻宽严相济刑事政策的若干意见)》에서도 마약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일부 평론가들은 "관엄상제 형사정책의 본연의 정신에 어긋난다"[238]라고 지적하면서, 형법 설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39]

셋째, 마약의 수량은 중국 마약범죄의 형량을 결정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약물을 밀수·밀매·운반·제조하는 행위에는 마약의 수량과 관계없이 모두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즉, 약물 밀수·밀매·운반·제조 범죄는 마약의 수량과 관계없이 해당된다. 해당 범죄는 3단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마약의 종류와 수량으로 구분하고 있다. 마약운반과 같은 위해성이 비교적 적은 마약범죄의 경우, 예를 들어 아편의 양이 1,000g 이상, 헤로인이나 필로폰이 50g 이상이면 악행이 비교적 덜하더라도 사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마약범죄가 심각한 상황에서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마약범죄를 "숙청"하는 궁긍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여전히 입법 상 개선의 여지가 있다.[240]

〈형사 사법 정책〉

중형주의적 형사정책은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관행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236)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5면.
237) 예를 들어, 제 347조는 "약물 밀수, 밀매, 운반 및 제조하는데에 미성년자를 이용 및 교사할 경우 또는 미성년자에게 약물을 판매할 경우 엄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제 353조에서 "미성년자에게 약물을 복용 또는 주사하도록 유인, 교사, 사기 및 강요하는 경우, 엄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38) 任娇娇.我国禁毒刑事政策重刑化之反思与重构[J].长江论坛, 2019, 71-76면.
239)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5면.
240)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5면.

형사정책은 통상적으로 형사입법정책, 형사사법정책 및 형사집행정책이 포함된다. 그 중 형법입법정책은 죄형관계에 대한 해답, 형사집행정책은 범죄와 형벌의 관계에 대한 정의이며, 형사처형정책은 행위에 대한 처벌과 범죄자의 교정을 강조하는 것이고, 형사사법정책은 사건재판을 통해 법률위반 행위 및 이에 따른 결과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형사사법정책의 핵심이다.[241] 마약범죄가 사회적 위해의 심각성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중국은 엄격한 형사사법정책을 채택하였으며, 특히 형벌 중형화가 두드러진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저장(浙江)성 법원은 총 4,309건의 1심 마약 사건과 4,815명의 사람을 판결했다. 그 중 738명이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중징계율은 약 15.3%로 타 범죄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광저우 중원(广州中院)은 마약범죄로 171명에게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하였으며, 중징계율은 91.1%에 달했다.[242] 사법에서 중형적의적 형사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243]

- 약물 수량 인정 조건 마약은 독성, 중독성, 의존성 및 불법사용성이라는 4 가지 요건에 반드시 해당되어야 한다.[244] 중국 형법에 아편, 헤로인, 필로폰, 모르핀, 마리화나, 코카인 외에 국가규정통제에 속하는 기타성분으로는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마취제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국가통제"는 주로《마취제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조례(麻醉药品和精神药品管理条例)》,《비약물 마취제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非药用类麻醉药品和精神药品列管办法)》 및 관련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마약류 인정 시, 위의 규정에 따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실제로는 반제품(半成品)도 마약류로 인정하고 있다.《중국전국 일부법원에서의 마약범죄사건 심리 업무 좌담회 연설(全国部分法院审理毒品犯罪案件工作座谈会上的讲话)》에서는 조제약물이나 반제품을 마약으로 인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엄격한 마약금지의 형사정책에서도 엿볼 수 있다.[245]

---

241) 温建辉.唯物史观下的刑事政策范式[J].新疆社会科学, 2021, 90-101+169.
242) 黄歆尧等.中国铁腕禁毒打击新型合成毒品[EB/OL]., 〈https://baijiahao.baidu.com/s?id=1670304141897432563&wfr=spider&for=pc,〉2020-06-23/2021-08-16.
243)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6면.
244) 广东省人民检察院课题组.毒品的司法认定[J].中国检察官, 2021, 33-41면.
245)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6면.

- 범죄 행위 인정 조건 범죄에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유죄 선고 시 범죄의 기수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마약범죄 영역에서 범죄 형태에 대한 인정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다. 마약밀수죄를 예로 들면, 이론적으로는 범죄 기수 여부를 계약설, 거래설, 운반설 등의 3 가지 기준으로 판단[246]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견해와 관계없이 마약범죄의 미수 및 기수 상태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엄격한 마약금지의 형사정책으로 인해, 범죄 미수 및 기수의 경계가 모호하여 가중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중국전국 일부법원 마약범죄사건 심리 업무 좌담회 요록(全国部分法院审理毒品犯罪案件工作座谈会纪要)》에서는 "조제 약물 또는 반제품을 이미 제조한 자는 마약제조죄로 기수 처분"에 대해 "마약제조 설비 및 원재료를 구입하여 마약제조를 착수하였으나, 조제약물 또는 반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자"는 마약제조 미수죄로 처벌한다고 언급하고 있다.[247]
- 수사 방법 마약범죄는 비교적 은폐성이 강하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종종 특별 수사나 유인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전자는 "수사기관의 제제를 받는 자들에게 단서나 정보를 수사기관이 제공하고, 수사관들의 증거수집 및 사건해결에 비밀리에 협조하는 수사방식"을 가리킨다.[248] 후자는 "수사관 또는 배정된 스파이를 수사대상자에게 보내는 유인수단으로 사용하여, 현장에서 범행를 적발하고 체포하기 위해 수사관 또는 스파이를 수사대상자에게 미끼로 유인하는 수사방식"[249]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수사방식은 유사점이 있으나, 이는 범행을 유인하는 행위가 다수 존재하여 법치주의 이념과 어긋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중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마약사건 수사 중 이 두 가지 수사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마약범죄 분야에서 예외로 보여준다.[250]

---

246) 梅传强,张喆锐.论贩卖毒品罪既遂标准的模糊化认定[J].河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44 (03), 2019, 148-152면.
247) 刘岚.最高人民法院印发《全国部分法院审理毒品犯罪案件工作座谈会纪要》[EB/OL],〈https://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08/12/id/337664.shtml〉, 2008-12-22/2021-08-16.
248) 王天民.毒品犯罪案件中特情侦查的程序控制——以4322件案例为样本的分析[J].政法论坛, 39(02), 2021, 103-117면.
249) 程雷.诱惑侦查的程序控制[J].法学研究, 37(01):2015, 154-169면.
250)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6면.

(다) 중국 마약범죄와 사형제도

중국 마약범죄의 중형화 현황은 마약범죄를 단속하고 통제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가혹한 형벌과 엄격하게 통제하는 형사정책이 지속하는 것은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요건이다. 그러나 형사정책의 수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제약을 받고 있다. 중형화된 마약범죄 형사정책 하에서 중형 경범죄의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형제도이다. 사형은 생명권을 박탈하는데, 생명권은 형사 기타 권리의 기초이며,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따라서, 중형화 형사정책 발전의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마약범죄의 법정형 규정을 조정하고, 사형제도 폐지를 염두에 두고, 죄책형(罪责刑)을 통일시키는 것을 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마약 및 마약 수량 인정기준을 규범화하고, 마약범죄 수사 방식을 규제해야 한다.[251]

〈마약범죄에 대한 사형제도 존폐논의〉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로서, 사형제도 폐지는 줄곧 실무계와 학술계의 주요 논쟁점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대중의 강한 인식과 중국법문화의 영향으로, 사형제도의 적용을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2011년 《형법개정안(8) (刑法修正案(八))》은 13개 죄명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였고, 2015년 《형법개정안(9) (刑法修正案(九))》은 9개 죄명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입법자들은 마약 범죄에 대한 사형을 유보하였다. 현재 중국은 마약 밀수, 밀매, 운반 및 제조 범죄에 대해 사형을 보류하고 있다.[252]

〈중국의 마약범죄에 대한 사형제도 적용현황〉

중국에서는 협의적 개념의 사형은 사형이 즉시 집행되는 것을 의미하고, 법률상의 사형은 사형을 즉시 집행하는 것과 2년의 사형집행유예를 모두 포함한다. 전자는 판결 후 반드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되는 것이고, 후자는 이와 다른 법적 결과를 초래한다. 규정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받아야 할 범죄자를 즉시 사형 집행해야 하는

251)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7면.
252)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7면.

것이 아니라면, 사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년 만료 후,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 및 유기징역 25년으로 감형과 제한감형(限制减刑) 등의 법적결과를 초래한다.[253]

실제로 중국은 사형 적용을 제한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형집행 재심리를 하고 있다. 사형집행 재심리권이란 사형판결과 재정에 대해 재심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사형집행 재심리권은 최고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이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규정이 1954년《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254] 이후 몇 차례 우여곡절 끝에, 사형집행 재심리권은 한때 고등인민법원에 위임되었으나, 결국에는 2007년에 환수되어, 그 이후 최고인민법원이 일괄적으로 행사하였다. 사형집행 재심리권 회수는 인권 보장에 있어 중대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사형에 대한 중국의 신중한 태도와 인권에 대한 존중 및 보장을 강조한다.[255]

아편전쟁 이후, 중국인들은 마약을 극도로 싫어하였다. 마약은 약물 복용자와 그 가족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2017년 이후, 중국 전국의 마약단속 공안 33명이 희생되고, 근무 중 마약단속 공안 64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나, 여전히 공안간부의 엄격한 단속 하에 마약범죄는 제지되었다. 2020년 한 해에만 중국 전국에서 적발된 인터넷 마약범죄는 4,709건으로 8,506명을 검거하였으며, 약 860kg의 마약을 압수하였다.[256] 엄중한 상황에서 마약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형사정책 상, 사형 집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마약관련 사건에 대해 사형선고를 받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현재는 마약밀수, 밀매, 운반 및 제조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해당 범죄는 몇 가지 상황에 따라 사형선고가 적용된다. 이는 마약조직의 주범, 조사/구류/체포에 대한 무력충돌 및 폭력적인 저항이 심각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제 마약밀매조직에 해당되거나 혹은 아편 1,000g 이상, 헤로인 또는 필로폰 50g 이상 혹은 기타마약류 대량을 밀수, 밀매, 운반, 제조할 경우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실제로 조제품과 반제품 모두 마약으로

253)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7면.
254)《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第11条。
255)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8면.
256) 通报全国公安机关禁毒工作新成效[EB/OL]. 〈https://www.mps.gov.cn/n2254536/n2254544/n2254552/n7946755/index.html〉,2021-06-24/2021-08-16.

간주되어, 마약 수량 요건이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257]

판결서 인터넷열람시스템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258],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1일까지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마약 밀수, 밀매, 운반, 제조죄에 대한 사형판결 재심리 판결서는 총 24건으로, 그 중에는 국적 불명자 2명[259]과 대만인 1명[260]이 있었다. 2014년까지 중국에서 마약관련 범죄로 체포된 일본인은 총 44명으로, 이 중에 5명은 즉시 사형집행을 선고 받았고, 6명은 사형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61]

중형화 형사정책 하에, 마약범죄에 대한 사형은 비교적 폭넓게 적용되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중국에서 마약과 관련하여 사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은 드문 일이 아니나, 미얀마 국적의 나오칸(糯康) 사건, 2006년 일본인 아카노 미쓰노부(赤野光信) 마약 밀수 사건, 2007년 영국인 아크말 샤이크(阿克毛)의 마약 밀수 사건 등이 있다. 게다가, 2015년에 한국인 김모씨는 마약 5kg을 밀수한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 받았다. 2021년 8월 10일, 랴오닝성(辽宁省) 고등인민법원은 캐나다 국적의 피고인 로버트 셸런버그(罗伯特·劳埃德·谢伦伯格)의 마약 밀수 사건에 대해 2심 공개재판을 열어 해당 사건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고, 법에 의거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요청했다.[262]

〈밀수, 밀매, 운반, 제조 등 마약범죄 사형집행〉

사형은 피고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형벌로 불가역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각국은 사형 판결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시민권리 및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협약(公民权利及政治权利国际公约)》 제6조에서는 사형이 "최악의 범죄"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형법 제48조에서도 사형은 죄질이 지극히

257)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8면.
258) 중국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시스템 상에 마약밀수, 밀매, 운반, 제조죄에 대한 사건으로, 법원 등급은 최고인민법원, 사건유형은 형사사건, 문서유형은 판결서, 판결일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1일까지로 설정하였고, 전문 키워드는 "사형"으로 검색한 결과, 총 24건의 사형 재심리 판결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259) 大爬와 岩温龙의 고의적 살인, 마약 밀수 및 밀매에 대한 사형 재심리의 형사판결서
260) 张耻之의 마약 밀매에 대한 사형 재심리의 형사 판결서
261) 中国已判处多名外国罪犯死刑 , 罪有应得[EB/OL], 〈https://www.163.com/dy/article/GH9O8EJU05128EJD.html〉, 2021-08-13/2021-08-16.
262)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8면.

무거운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약범죄가 "극악무도한 범죄"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마약범죄가 "부패형 범죄로...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을 빼앗기 위함이 아닌,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263]

범죄가 사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등성과 필요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한의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와 "사형선고를 하는 것이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수단"인 경우에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264] 따라서, "피해자 없는 범죄"와 "비폭력 범죄"와 같은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중국 국내법의 "극악무도한 범죄" 기준 및 국제인권협약의 "최악의 범죄"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265] 입법 중, 《형법개정안(8) (刑法修正案(八))》과 《형법개정안(9) (刑法修正案(九))》에서는 대량의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였으나, 마약밀수, 밀매, 운반, 제조죄에 대한 사형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266]

밀수, 밀매, 운반, 제조 등의 마약범죄는 완전히 다른 4가지 범행행위의 유형을 포함하는 선택형 죄목(选择性罪名)으로, 법률에서도 범행행위의 유형에 따라 처벌을 차등화하지 않고 있다. 마약범죄에 대한 사형폐지 논의에는 두 단계가 있다. 첫 단계는 마약범죄의 사형폐지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로서, 마약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4가지 범행 유형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마약범죄"라는 큰 개념에만 집중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적 정서와 마약범죄의 심각성 등의 여러 상황들로 인해, 마약범죄에 대한 모든 사형을 바로 폐지하는 것이 어려워, 마약운반죄에 대한 사형제도 폐지 쪽으로 연구의 초점이 세분화되기 시작했다.[267]

〈마약운반행위와 마약밀수·밀매·제조 행위의 구분〉

법익침해는 형법 개입의 핵심 요건으로 사실적 차원에서 사회적 유해성이 있는

263) 梅传强,徐艳.毒品犯罪的刑罚适用问题思考——兼论毒品犯罪限制适用死刑[J].甘肃政法学院学报, 2006(03), 2006, 93-98면.
264) 袁林,王力理.毒品犯罪死刑配置的理性思考[J].东岳论丛,2010,31(02):171-177면.
265) 赵秉志,阴建峰.论中国毒品犯罪死刑的逐步废止[J].法学杂志,2013,34(05), 2013, 1-12면.
266)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9면.
267)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9면.

개념이며, 법익침해의 판단 및 경중에 따라, 죄와 형량을 결정한다.[268] 마약범죄의 경우, 총 12개의 죄명으로 각 죄목의 형벌은 상이하지만, 마약밀수, 밀매, 운반, 제조죄에서만 사형제도가 존재한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마약류 원료식물 불법 재배와 같은 행위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회인식 및 사회질서 파괴 관점에서 살펴보면, 마약 운반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은 마약밀수, 제조 및 거래행위 보다 훨씬 적다.[269]

행위가 전체 과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비추어 볼 때, 마약 운반행위는 보조적인 역할로 사회적 유해성이 적다. 마약시장에서 제조, 운반, 거래 및 매매는 일련의 과정으로, 마약제조는 근원적인 부분을 담당, 마약거래는 마약이 시장에 유입되는 중요한 절차, 국가세관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마약밀수는 다국적 마약범죄의 핵심인 반면, 마약운반은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다. 거래자와 제조자가 대부분 마약운반의 역할을 겸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거래자는 제조자와 직접 소통하기도 한다.[270]

사회인식으로는 마약범죄가 악질적 범죄이나, 사회의 일반적인 사회가치 판단으로는 마약 생산자도 마약 판매자도 아닌, 마약 운반자로서 마약운반 행위는 부차적인 역할이다. 단순 마약 운반자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발원권과 이득이 적은 편이다. 일부 학자들은 마약운반 행위가 "마약 피해범위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고, 대체 가능성이 있어...사회적 유해성이 비교적 적다"라고 지적했다.[271]

즉, 마약운반죄에 사형을 적용하는 것은 등가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법원 마약범죄 심리업무 좌담회 요록(全国法院毒品犯罪审判工作座谈会纪要)》에서 마약운반죄의 사형 적용을 제한하되, 주범, 재범, 무장운송, 마약운반 등을 제외하고는 법에 의거하여 사형 선고를 받을 사람은 법대로 단호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기타 운반자에 대해서는 마약수량, 범죄건수, 주도성, 주관악행(主观恶性)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된 처우와 신중한 적용"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272]

---

268) 参见陈雨禾：《论犯罪化过程的阶层化构造——从社会危害性到法益侵害性的进阶》，载《犯罪研究》2014，2-9면 및 19면.
269)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9면.
270)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0면.
271) 参见童德华,任般浩.基于毒品犯罪行为方式的死刑限制——兼论选择性罪名中的行为关系[J].警学研究, 2020(01), 2020, 78-89면.
272)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0면.

〈마약운반죄에 대한 사형폐지의 필요성〉

마약운반죄에 대한 사형폐지는 사형 적용을 제한하고 죄책에 상응한 형량을 처벌하는 것이며, 이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 이행의 형사책임과 처벌에 대한 사형 적용 제한의 적응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 이행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1998년 중국은 사형을 보류하는 가운데, "최악의 범죄"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협약에 따라 사형폐지를 이행한다고 《시민권리와 정치권리의 국제협약(公民权利与政治权利国际公约)》에 공식적으로 서명하였다. 마약운반죄 행위의 유해성, 사형폐지에 관한 사회인식 및 관엄상제(宽严相济) 형사정책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마약운반죄에 대한 사형집행 폐지는 타당성이 있다.[273]

첫째, 마약운반은 죄질이 지극히 무겁지 않다. 마약범죄에 대한 사형폐지론자의 큰 논점 중 하나는 마약범죄는 피해자 없는 범죄와 비폭력성 범죄에 속하다는 것이다. 마약범죄의 가장 큰 피해는 약물 복용자의 건강과 가정을 파멸시키는데에 있다. 이런 범죄는 대부분은 약물 복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마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여 쌍방 간의 거래에 강압이나 위협은 없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강요하는 등의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하도록 복용, 유혹, 교사,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한 규제가 있다.

마약과 연관된 행위가 종신형(生命刑)을 선고받는 것에 대한 여부는 본질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마약운반 행위는 마약밀수, 밀매, 제조 행위와 다르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고, 폭력이 수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과정에서 대체가 가능하고, 이익도 적다라는 점이다. 중국에서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죄명은 주로 국가안보위협죄로 공안안전위협죄, 국민신변권리와 민주권리 침해죄, 군인직책위반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파괴죄, 재산침해죄, 사회관리질서 교란죄, 국방이익위협죄, 뇌물횡령죄에 대한 사형 유지죄는 비교적 적다. 사형 유지죄는 대부분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사회적 유해성 측면에서 마약운반죄는 이러한 범죄와 대등하지 않다.

게다가, 마약운반죄의 피해 객체는 국가마약관리제도에 더욱 편향되어 있어, 비종신형(非生命刑)을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행동 예방과 교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273)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0면.

마약운반죄는 중국의 "지극히 무거운 죄질"에 적용되는 사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권리 및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협약(公民权利和政治权利国际公约)》의 "최악의 범죄"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에, 마약운반죄의 사형 폐지는 합리적이다.[274]

둘째, 사형폐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오늘날 중국에서 사형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수용성이 낮기 때문이다. 중국 전통문화에서 "사람을 죽이면 목숨으로 보상받는다"라는 관념은 예로부터 존재하였다. 그러나 인권이념의 확산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다"라는 관념이 점차 사라지면서, 사형폐지에 대한 사상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법개정안(8) (刑法修正案(八))》과 《형법개정안(9) (刑法修正案(九))》 발의로 사형이 점차 폐지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범죄의 사형폐지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이 높아졌다. 마약범죄의 경우, 근대 이후 중국은 마약 남용으로부터 고통을 받아, 마약제조, 밀수, 복용 행위에 대해 대중은 극도로 혐오하였다. 하지만 대중의 인식에서는 통상적으로 마약제조 및 밀수 행위가 더 악질이고, 마약운반 행위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마약운반죄에 대한 사형 폐지는 사회적 관념에 어긋나지 않고, 사회적 수용도가 높다.[275]

셋째, 죄책형(罪责刑)에 걸맞게 관엄상제(宽严相济) 형사정책의 필수요건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 일부 학자들은 《국가법원 마약범죄 심리 업무 좌담회 요록(全国法院毒品犯罪审判工作座谈会纪要)》 공포된 이후, 2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122건의 마약 관련 사건을 분석한 결과, 150명의 사형수 중 92명(61.33%)이 마약운반죄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고, 마약운반죄에만 해당되는 범죄는 25.33%로 였다.[276] 《국가법원 마약범죄 심리 업무 좌담회 요록(全国法院毒品犯罪审判工作座谈会纪要)》은 마약운반죄에 대한 사형을 신중하게 적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범죄 입죄 문턱은 낮다. 게다가 마약을 운반할 때, 비용을 절감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통 일정량의 마약을 모은 후 운반을 하는 경우가 많아, 마약운반죄 사형에 대한 양적 기준에 부합하기가 쉽다. 일반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 행위는 생명·건강 등 법익에 직접적인 심각

274)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1면.
275)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1면.
276) 梅传强,伍晋.毒品犯罪死刑控制的教义学展开——基于122份二审死刑判决书的实证研究[J].现代法学,2019,41(05), 2019, 195-209면.

한 침해를 초래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마약운송은 마약시장의 부차적인 역할로 유해성이 적고, 마약제조와 거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에서 마약운반죄에 대한 형벌은 그 행위의 유해성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마약운반죄 사형 선고를 취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죄책형(罪责刑)에 상응하는 것으로, 관엄상제(宽严相济) 형사정책의 필수요건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277]

넷째,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촉진해야 한다. 사형 불인도 원칙은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사형 적용에 대한 국가 간 다양한 입장으로 인해, 국제형사사법공조상 사형을 적용하는 문제가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형존치국은 사형제도의 일부를 점차 폐지하기 시작하였고, 사형 공약을 통해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 중 하나다. 현재는 사형 불인도 원칙이 오히려 사형 폐지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 사법주권에 위배되는 것으로, 한 국가의 사형이 점차 폐지된다 하더라도 사형 불인도 원칙이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권을 보호하고 죄책형(罪责刑) 실현에 상응하는 필요에 따라, 불필요한 사형폐지는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촉진시키는데 필연적인 요구사항이다. 마약운반죄는 마약밀수·밀매·제조죄에 비해 사회적 유해성이 낮기 때문에, 마약운반죄의 사형을 폐지하는 것은 범죄 피의자를 인도하고 형사사법공조를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마약범죄에 대한 사형을 점차 폐지한다는 중국의 장기적 목표하에, 마약운반죄부터 점차 폐지하는 것은 민심에 부합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를 실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278]

〈마약운반죄 사형폐지 패러다임〉

향후 개정안에서는 마약운수죄를 마약밀수·밀매·제조죄와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가능한 “15년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라는 상황에서는 “아편 1000g이상, 헤로인 또는 필로폰 50g이상 혹은 기타 대량의 마약을 밀수·밀매·운반·제조하는 자” 중의 “운반” 행위는 삭제하고, 마약운반조직의 주범, 마약운반을 무장 엄호한 자, 폭력 저항, 국제마약밀매에 참여한 운반자에 한해서

277)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2면.
278)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2면.

만 사형을 집행하고, 점차적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사형폐지를 실현한다.[279]

(라) 중국 신종 마약범죄의 규제관리

약물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기에는 주로 아편, 헤로인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의약기술의 발전과 함께 합성마약이 증가하면서 신종마약이라는 개념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스머프(蓝精灵)", "코뿔소액(犀牛液)", "잔가지(小树枝)", "0호 캡슐(0号胶囊)" 등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신종마약"은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기존 마약과 달리 새롭게 등장하는 마약으로, "신종마약"의 종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신종마약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져, 일반적인 법 집행 과정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약물 효과 때문에 마약관련 사건에서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하이 징안구(静安区) 인민검찰원의 신종마약 범죄의 전형적인 사례 백서에서는 2018년~2020년까지 관할구역 내 신종마약 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전체 마약범죄 형사사건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280]

신종마약의 전형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그 행동 패턴은 기존의 약물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고, 그 차이점은 신종마약 개발과 보급에 있다. 쓰촨성(四川) 왕 OO씨의 마약밀매 및 제조 사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감마부티로락톤(γ-丁内酯)을 구입하여 향신료 혼합제와 섞어 "향신료 CD123(香精CD123)"을 만들고, 이 향신료가 담긴 음료를 유흥업소에서 판매하였다. 처음에 공안기관은 유독·유해식품 생산·판매죄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결국 마약밀매·제조죄로 법에 따라 기소되어 15년 유기징역과 개인 재산 몰수를 선고 받았다.[281]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신종마약의 예방·치료의 중점은 마약의 성분 및 제조, 보급 경로를 차단하는 것에 있으며, 중국 사법에서도 신종마약에 대한 근본적인 통제와 엄격한 처벌 위주의 형사정책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82]

---

279)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 12면.
280) 王烨捷. 新型毒品种类和数量呈上升趋势[N]. 中国青年报, 2021-07-14(004).
281) 检察机关依法惩治新型毒品犯罪典型案例[N]. 检察日报, 2021-06-26(002).
282)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3면.

〈중국 마약목록〉

마약에는 많은 중독성 약물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은 마약 식별을 위해 열거형식(列管式)을 채택하고 있다. 열거형식(列管式)이란 상세하게 열거하여 마약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인데, 등재되지 않은 신종마약의 경우, 사법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접근의 장점으로는 마약범죄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지만, 단점은 지연되는 특성이 있다.

2015년 10월《비약용류 마취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 열관방법(非药用类麻醉药品和精神药品列管办法)》를 공포하여, 116종의 새로운 향정신성 물질을 추가하고, 목록 체제와 표준을 조정하였다. 이《방법(办法)》은 등재된 비약용류 마취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전문위원회의 위해성 평가와 열관 논증을 거쳐야 하며, 그 기간은 최장 3개월로 정하였다.

불소급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 피의자가 특정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할 시, 해당 제품이 목록에 등재된 제품이 아닐 경우, 마약으로 인정되지 않아,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2017년 우한(武汉)에서 발생한 "3,4-메틸렌디옥시메스암페타민(3,4-亚甲二氧基甲卡西酮)"사건을 살펴보면, 해당 성분이 2014년도에 등재되어 규제하고 있었는데, 2014년 이전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었다.[283]

《유엔의 마취약품 및 향정신성의약품 불법밀매 금지 협약(联合国禁止非法贩运麻醉药品和精神药物公约)》은 협약을 체결한 국가는 특정 향정신성 약물 및 마취 약물을 불법 제조, 운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종마약범죄를 단속하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새롭게 등장하는 중독성 제품에 대해 열관 논증을 거쳐, 그 즉시 규제 목록상에 등록하는 것이다. 올해 중국은 목록에 48종의 신종마약을 추가하고, 펜타밀류와 합성대마류에 대해 목록상에 분류하였으며, 7월 1일 이후 중국에 등록되어 있는 마약 종류는 총 449종에 이른다.[284]

---

283) 教授制贩丧尸药："3,4-亚甲二氧基甲卡西酮" [EB/OL]. 〈https://www.xianjichina.com/news/details_32627.html〉, 2017-04-14/2021-08-16.

284)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3면.

〈중국 마약수량 인정〉

신종마약은 즉시 목록에 등재되면, 국경 검사부서와 공안 법 집행기관은 신속하게 마약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는 형법 제357조 규정에 따르면, 형사법에서의 마약은 아편, 헤로인,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모르핀, 대마, 코카인 및 국가 규정 목록상의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기타 마취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한다. 즉, 신종마약은 반드시 국가 규정 목록에 포함되어야만 밀수, 밀매, 운반, 제조 행위를 마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2006년《신종마약 사건의 양형 결정에 관한 지침(关于审理若干新型毒品案件定罪量刑的指导意见)》에서 케타민(氯胺酮) 등의 신종마약의 양형 결정을 위한 양적 기준을 규정하고 환산법칙(折算公式)을 도출하였다. 신종마약에 대한 사형 적용 대상은 주로 "제조, 밀수 등의 근원 범죄에 연루된 주범과 기타 주범"이며, 중간 단계에 연루된 범죄자에 한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지침(指导意见)》에는 헤로인을 기준으로 신종마약의 유죄수량(定罪数量)을 결정하고, 통제와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참고할 정도로 그 가치가 높다. 2007년에《마약범죄 사건 처리의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의견(办理毒品犯罪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意见)》은 신종 마약 약물인 케타민(氯胺酮)에 관한 양형을 규정하였고, "대량", "중량" 및 "소량" 인정을 규범화하여 사법실천을 지도하고 있다.[285]

(마) 중국 마약관련 특별법 집행

일반적인 법 집행에서는 특수강령(专项行动)은 통상적으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범죄에 관해 진행된다. 2018년부터 중국 국가금독위원회에서는 공안부와 연합하여 "정변(净边)"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이 운동의 취지는 "청원단류(清源斷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중국 시난(西南) 국경의 마약생산 부분에 중점을 둔 원천통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2020년까지 특수강령을 통해 총 64,000건 이상의 마약범죄를 적발하였고, 92,000명의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55.4톤의 마약을 압수하였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의 배경 하에, 국경의 마약밀수를 효과적으로 제압하였다.[286]

285)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4면.
286) 大力实施"清源断流"战略 深入推进"净边"专项行动 [EB/OL].〈https://baijiahao.baidu.com/s?id

이외, 중국 국가금독위원회는 2019년에 "코드명 902"라는 "펜타닐류 등 신종마약 집중 단속에 대한 특수강령"을 착수하여, 2020년 11월까지 총 130 여건 이상의 신종마약범죄를 적발, 280여명의 피의자를 검거, 220kg의 마약을 압수하여 신종마약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제지하였다.[287] 특별법 집행 강령은 높은 기동성, 집중 단속 및 뛰어난 효과가 특징이다. 신종마약 등과 같이 은폐의 정도가 심하고, 연쇄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며, 원천 통제를 추진할 수 있다.[288]

(바) 중국 인터넷 마약범죄 단속

최근 몇 년 간, 인터넷 마약범죄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저장성(浙江省) 고등인민법원에서 발표한 마약범죄 사법 빅데이터에 따르면, 오프라인 상의 마약 거래와 인터넷 마약 거래를 혼용하는 것이 현재 마약범죄의 주요 수법이다. 예를 들면, 사 OO씨와 예 OO씨의 인터넷 마약 밀수 사건을 살펴보면, 두 사람은 국외에 조직을 형성하여, 브로커와의 마약 거래, 유통을 통한 거래, 비트코인 결제 등 전체 범행을 온라인 거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289]

인터넷 마약범죄는 정보교환, 지불방식, 전달방법, 범죄 장소 등의 측면 에서 구현되고 있어, 사건수사에 지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에서 공범 인정, 기수 인정 등에도 어려움이 있다. 신종마약과 인터넷 마약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는 지속적인 법률 개선을 통해 규제되어야 한다. 형법의 안정성은 형사사법해석이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단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는《신종마약범죄 사건의 양형 판결 문제에 관한 지침(关于审理新型毒品犯罪案件定罪量刑问题的指导意见)》,《정보통신망 불법 이용 및 정보통신망 범죄 활용 등 형사사건 양형 판결 문제에 관한 지침(关于办理非法利用信息网络、帮助信息网络犯罪活动等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을 제외하고,《신종마약범죄 사건의 양형 판결 문제에 관한 지침(关于审理新型毒品犯罪案件定罪量刑问题的指导意见)》 등 지방

=16896574291949654 69&wfr=spider&for=pc〉, 2021-01-23/2021-08-16.

287) 国家禁毒委召开深入推进"902"专项行动视频会议 坚决打击芬太尼类物质等新型毒品犯罪[J].上海化工, 2020,45(06):56.

288)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4면.

289) 浙江高院发布毒品犯罪司法大数据 [EB/OL].〈https://www.163.com/dy/article/GH98OOL4051497V6.html〉, 2021-01-23/2021-08-16.

고등법원에서 발표한 지침 이외에, 인터넷 마약범죄를 중점으로 한 포괄적인 법률 법규가 아직 부족하다. 이 때문에, 신종마약 및 인터넷마약범죄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하며, 이러한 범죄를 다룬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290]

(사) 중국 마약범죄 대응 국제협력

마약범죄는 심각한 국제범죄로서, 중국 국내마약통제 강령을 본격화 해야하는 동시에, 다국적 마약범죄 단속을 통해 국경 수출입 경로를 차단하고, 대내외를 겸비한 마약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국 마약범죄에 대한 국제협력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추진된다.

1961년《마취품단일협약(麻醉品单一公约)》, 1971년《향정신성약물협약(精神药物公约)》, 1988년《유엔의 마취약품 및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거래 금지 협약(联合国禁止非法贩运麻醉药品和精神药物公约)》은 3대 마약 금지 국제협약으로 불리며, 중국에서는 1985년과 1989년에 중국은 3대 협약에 가입하였다.《유엔의 마취약품 및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거래 금지 협약(联合国禁止非法贩运麻醉药品和精神药物公约)》은 당사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다국적 마약범죄를 단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관할권 및 인도(引渡)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통제 하에 위임(控制下交付)"을 강조하고 있다. 이 협약은 당사국 간에 "양자간 및 다자간 조약, 협정 혹은 약정을 체결하여, 본 조항에 따른 국제공조의 유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약국 중 하나인 중국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다자간 및 양자간 조약,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지역 협력 측면에서, 중국은 메콩강 지역(湄公河次区域)의 마약 금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013년 중국·라오스·미얀마·태국·캄보디아·베트남을 포함한 6개국이《동아시아지역 마약금지 협약 양해각서(东亚次区域禁毒合作谅解备忘录)》(MOU)를 체결하고,《동아시아지역 마약금지 행동계획(东亚次区域禁毒行动计划)》을 수립하였다. 동아시아지역 마약금지 협약기구를 설립하여, 지역 마약 단속을 위한 법 집행 및 정보 공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90)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5면.

양자 간 협력 측면에서, 중국은 다른 국가와 마약금지에 관한 양자 간 양해각서 및 의정서를 적극적으로 체결하였다. 현재 중국은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및 기타 국가와 마약금지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페루 및 기타 국가와는 마약금지 협력 강화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중국은 20개 이상의 국가 혹은 국가동맹(예. ASEAN)과 정부 간의 마약금지 협력 문서에 서명하였으며, 여러 국가의 마약통제기관과 기관 간의 마약금지 협력 문서에 서명하였다.

중국은 마침내 국제 협약을 핵심으로, 지역 협력 협정과 양자간 협력 협정이 뒷받침되는 다국적 마약범죄 법률 체계를 확립하였다.[291]

〈중국 마약범죄 대응 경찰 협력〉

마약금지법 집행과 협력 측면에서, 중국은 중국·라오스·미얀마·태국·캄보디아·베트남의 "평안항로(平安航道)", 중국-베트남 수사, 중국-호주의 "화염(火焰)" 등 마약 퇴치 연합 작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800여건 이상의 다국적 국제 마약사건을 적발하였다.[292] 중국은 다국적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협력으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개별 안건에 대한 협력 수사를 위주로 한다. 1999년 중국-미얀마 협력으로 "7.28" 사건을, 2012년 중국-호주 연합 하에 "11·30" 사건을, 2013년 중국-라오스 협력으로 "7·28" 사건 등을 적발하였으며, 모두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전형적인 개별 안건에 대한 협력 사례이다. 국가 간의 관계는 정치, 경제와 같은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중국은 여러 국가와 범죄인 인도, 형사사법 협조 조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국가와는 관련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여전히 사법 협력에 지장을 받고 있다. 안건별 협력 수사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중점을 두고, 국가 간 조약에 근거할 필요가 없으며, 유연하고 변경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는 중국 마약범죄에 대한 국제 경찰 협력의 중요한 방법이다.[293]

둘째, 주변국과 지역을 주요 협력 대상으로 한다. 오랫동안 중국에 인접한 골든

291)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5면.
292) 走中国特色毒品问题治理之路打赢新时代禁毒人民战争 [EB/OL].〈https://baijiahao.baidu.com/s?id=1645886323089996608&wfr=spider&for=pc〉, 2019-09-28/2021-08-16.
293)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6면.

트라이앵글(金三角)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약의 원산지였다. 이 지역은 중국의 주요 마약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중국을 경유하여 유럽과 미국까지 운반되었다. 지난 세기 말부터 중국은 골든 트라이앵글(金三角) 지역의 마약범죄 통제에 주력하였다. 경제발전의 정체,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이 지역의 마약 통제는 한 당안 추진되기가 어려웠다. 중국은 주변국의 마약금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미얀마, 라오스 등 마약통제 관련 기관에 4,500만 위안에 달하는 마약단속 설비를 지원하였고, 게다가 이들 지역에 양귀비 대체 재배 및 원격탐지를 실시하였다.[294] 주변 거점 국가와 마약금지 협약을 추진하고, 마약금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경의 "마약숙청(除冰肃毒)"사업을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295]

〈중국 마약범죄 대응 정보 공유〉

중국은 이미 10여 개국과 연례 마약통제 회의기구를 설치하여, 인접 국가들과 국경 마약통제 연락 사무소를 설립했다. 예를 들어, 중국·라오스·베트남이 윈난(雲南)성 장청(江城)에 설립한 3개국 국경마약통제 연락 사무소와 내몽골자치구 얼롄하오터시(二连浩特市)에 위치한 중국-몽골 국경마약통제 연락 사무소가 있다. 사실 상, 국경마약통제 연락 사무소의 설립은 유엔 마약범죄부가 담당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프로젝트로, 국가 공동으로 국경지역의 마약범죄 활동을 단속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경마약통제 연락 사무소를 설립한 이후, 양국의 국경 관리체제를 원활하게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단속 법 집행, 수사 및 증거 수집, 정보 공유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이면서, 마약 연루자들의 마약 밀수와 해외 도피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다.[296]

중국은 또한 "일대일로(一带一路)"를 통해, 주요 국가들과 마약금지 협력을 추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의 국가들과 마약금지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과 미국의 마약금지정보교류회는 9차 마약금지 정보 교류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94) 致敬缉毒英雄们，愿天下无"毒"！ [EB/OL].〈https://new.qq.com/omn/20200627/20200627A08U9P00.html〉, 2021-08-16.
295)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6면.
296)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7면.

2005년에는 마약 단속 협력에 관한 의향서에 서명하였다. 상하이의 "비단잉어(锦鲤鱼)" 사건과 광동지역의 "0303" 사건은 모두 양자간 협력으로 이루어진 주요 마약밀수 사건이다. 또 다른 예로, 2019년 중국-러시아 마약금지 업무회의에서 양측은 열관목록(列管清单)을 교환하고, 상호 관련 단서 통보 및 사건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297]

(아) 중국 마약범죄 현황 보고서

《2020년 중국 마약 현황 보고서(2020中国毒品形势报告)》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중국 전국의 마약 복용자는 180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1% 감소하였으며, 약 300만명의 사람들이 3년간의 금단 후에도 재발하지 않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18.4% 증가한 수치이다. 새롭게 발견된 마약 복용자는 15만 5,000명으로 30.6%가 감소하였다.[298] 마약시장은 매매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형법에서는 마약 판매자 측을 처벌하고, 마약 구매자 측은 홍보 교육, 치안 관리 처벌 및 재범방지 정책을 통해 구현해야 한다.

(자) 중국 마약범죄의 처벌과 처우

국제적으로 마약을 복용하는 행위에 대해 범죄화, 합법화, 행정 위법화 및 처벌 대신 치료 등을 포함한 유형이 있다. 마약 중독과 도박은 유사하고, 가해자의 자해에 속한다. 이에 중국 법률에서는 마약 중독자와 도박꾼은 마약과 도박으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자발적으로 부담하고, 이러한 손해는 그 행위를 처벌하기에 충분하여 형법 개입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형법에 관련 죄명을 두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금독법(中华人民共和国禁毒法)》과 《치안관리처벌법(治安管理处罚法)》에 근거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금독법(中华人民共和国禁毒法)》 제4장에서는 강제적인 약물재활과 지역사회 약물재활을 포함한 약물재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

297)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7면.
298) 2020中国毒品形势报告（全文） [EB/OL].〈https://mp.weixin.qq.com/s/-7n5RqCN7_3iQgUe_owF6w?〉, 2020-07-18/2021-08-16.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에서도 치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실제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행정처벌과 약물치료를 동시에 강조하는 마약 근절 정책이다.

마약복용 행위의 처벌은 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반영하지만, 처벌은 마약복용 행위에 대한 부차적인 처벌의 목적이며,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한편, 치안관리처벌은 장기적이지 않지만, 마약복용 행위에 적발된 초범에 한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치안관리처벌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마약을 끊는 것은 단숨에 성공할 수가 없는데, 이는 지극히 마약복용자의 의지와 주변 환경의 강압적인 제지에 크게 좌우된다. 노동교육제도가 폐지되기 전에는 노동 교육이 약물 재활의 주요 방법 중 하나였다. 2012년에 전국 노동 교육 대상자는 26만 명이었으며, 마약 중독자는 20만 명이었다.[299] 노동교육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는 강제적 계독(戒毒)체계를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중국은 지역사회와 함께 2가지의 마약근절 정책을 수립하였다.[300]

(차) 중국 마약근절 홍보 및 교육 강화

당대 형법에서는 예방적 경향은 사회구조 변화에 직면한 형법의 결과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형사정책은 형법의 예방적 효과를 구현하도록 돕는데 그 책임을 진다.[301] 세계화 과정에서 문화 충돌 역시 이념적 변화를 가져왔고, 일부 하위문화의 등장과 함께, 중국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 하위문화가 확산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푸젠성(福建省)의 마약 중독자 3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83.1%가 집단단체를 통해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302] 마약의 원천 통제로는 마약생산, 제조 과정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마약 구매자의 의사를 억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마약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두 가지의 근원지를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위한 "6.27 프로젝트"의 추진과 《국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계획(2016-2018) (全国青少年毒品预防教育规划)》의 도입은 국가 차원의 결의를

299) 董玉庭,黄大威.吸毒刑事立法政策研究[J].贵州民族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15(06): 2015, 135-143면.
300)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7면.
301) 参见劳东燕.刑事政策与功能主义的刑法体系[J].中国法学,2020(01):2020, 126-148면.
302) 参见林晓萍.毒品亚文化与福建省青少年群体性吸毒行为及其预防教育对策[J].福建论坛(人文社会科学版),2016(11):2016, 202-206면.

보여주었다. 또한, 중국은 적극적으로 마약금지 홍보 교육 활동을 추진하였는데, 주로 "마약의 금지의 날 홍보(禁毒日宣传)"과 캠퍼스 테마 행사 등을 중심으로 휴대폰 문자 메시지, 옥외 스크린 홍보 영상 등을 함께 진행하였다. 이후에는 지침 문서(가이드라인)를 핵심으로 특별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마약금지교육을 상시화하여 장기간에 걸쳐 확대해야 하며,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의 마약금지교육 상시화 역할에 중시해야 한다.[303]

(카) 중국 마약통제 중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마약 복용은 주변 사람들의 유혹, 호기심, 마약 하위문화, 개인생활의 절망, 타인의 강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요소를 제거하는 하는 것은 형사입법, 사법 및 법 집행으로는 어려운 일로, 주로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관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지역사회의 위법 및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과 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중국은 인구가 많고, 도시구조가 조밀하며, 지역사회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마약 금독과 건강재활 시스템은 여전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는 금독과 재활에 동참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통합해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커뮤니티 활동 및 일상적인 홍보를 통해 관할 지역사람들의 마약 예방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약 중독자들의 사회 복귀가 어려운 것은 재발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역사회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재활자들의 사회복귀를 적극적으로 도와 고용기회를 창출함과 대중들이 재활자를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또한 행정부처와 적시에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 채널을 형성해야 하며, 지역사회 내 인구의 이동 및 인원 구성을 파악해야 한다. 이 밖에, 신고/보고 체계를 원활히 하여 제보자 개인 신상정보 보안을 보장하고, 보상체계를 보조로 하여 대중들이 관학지역 내의 마약 연루 사건을 신고하게 하고, 적시에 마약숙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04]

---

303)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8면.
304)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8면.

(타) 중국 마약범죄 대응역량의 통합발휘 필요성

마약범죄는 사회 골칫거리로 간주되어, 가혹한 처벌과 징계가 기본이다. 현재 중국은 이미 형사정책을 바탕으로 실제 중점 통치와 결합한 통치 경로를 형성하고 있다. 다국적 마약범죄, 신종 마약범죄, 온라인 마약범죄는 모두 통치관리의 핵심이며, 엄격한 통치관리의 이념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범죄통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스려야 하고, 죄책형(罪责刑)에 상응하는 원칙과 관엄상제(宽严相济)의 형사정책을 고수하여, 범죄 척결과 인권 보장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마약범죄는 구매시장과 판매시장 모두 동시에 병행하여 다스려야 하는데, 즉 마약 생산과 판매를 원천적으로 통제하면서 이와 동시에 마약금지교육 및 마약금단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은 마약범죄를 통치하는데 있어 중형화(重刑化) 통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이외에도, 형법 구성을 조정하고, 마약운반죄 사형에 대해 즉각적인 폐지를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마약범죄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공안부서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안 통제관리와 지역사회 교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른 국가 간 관련 조약의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마약범죄에 대한 경찰 협력, 형사사법 협조 채널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마약범죄를 통제하는 길은 어렵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통합하여 발휘해야만 진정으로 "악성종양을 제거(肃清毒瘤)"할 수 있다.[305]

(3) 중국 (강제)실종과 인신매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4,580만 명의 노예가 있으며, 여기에는 1,000만 명의 어린이, 1,540만 명의 강제 결혼 및 480만 명의 성 착취의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306] 이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사건의 약 0.04% 생존자만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는 피해자의 사망 등의 다양한 이유로 알 수 없다고 나타났다.[307]

---

305) 阴建峰·侯撼岳, 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9면.

306) WHAT IS HUMAN TRAFFICKING [EB/OL].〈http://www.notforsalecampaign.org/what-is-human-trafficking/?gclid=EAIaIQobChMIh5TOlKSw8gIVgVVgCh18KwC6EAAYASAAEgL9OvD_BwE,/〉, 2021-08-16.

현재 중국에는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중국 국내 통계가 있는데, "중국 실종아동 경보 시스템(CCSER, 中国儿童失踪预警平)"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1,355건의 실종아동 기록이 있었고, 2015년 시스템 상에 보고된 데이터만 1,330건이 있었다.[308] 20~30년 간 집중 단속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으나, 인신매매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2013-2020년 인신매매 방지 행동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후, 《중국 인신매매 방지 행동계획(中国反对拐卖人口行动计划(2021~2030年))》을 발간하였다. 중국은 장기간에 걸쳐, 인신매매 문제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인신매매 범죄 처벌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309]

(가) 중국 인신매매범죄의 개념, 유형 및 대표 사례

인구는 경제학에서 중요한 연구주제로, 인구 규모는 경제 발전과 직결된다. 생산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고대 사회에서, 통치자는 인구를 일종의 사회자원으로 여겨, 노동을 통한 가치를 창출하였다.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에 따라, 생산력은 끊임없이 발전하였고, "인간"의 가치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인간을 물질화하고 착취하는 사건은 여전히 사라지고 있지 않았고, 지난 2세기 동안에 인신매매는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였다. 성 착취 및 강제 노동은 인신매매의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인신매매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납치/유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회계층과 관련된 심각한 중범죄이다. 인신매매는 실종과 다르다. 실종이란, 개인의 행방을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자발적 실종, 피동적 실종, 무의식 실종의 3 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310] 그 중 범죄와 관련된 피동적 실종이 연구의 초점이다. 피동적 실종이란, 그 배후의 산업체인으로는 대개 인신매매로, 강간, 강제매춘, 강제 노동 등의 범죄가

307) 11 FACTS ABOUT HUMAN TRAFFICKING[EB/OL]. 〈https://www.dosomething.org/us/facts/11-facts-about-human-trafficking#fn3,/〉, 2021-08-16.

308) 李钢,薛淑艳,马雪瑶,周俊俊,徐婷婷,王皎贝.中国失踪人口的时空格局演变与形成机制[J]. 地理学报,2021,76(02):2021, 310-325면.

309)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2면.

310) 裘树祥,马跃忠."失踪"本质及失踪人口的公安治理[J].中国人民公安大学学报(社会科学版),2015,31(05):2015, 143-149면.

수반되며, 피해자들은 보통 폭력과 불법 구금을 당해 스스로 구제하기가 어렵다.[311]

이와 관련된 또 다른 개념은 "강제실종" 이다. 강제실종이란, "국가 대리인이나 국가의 허가, 지원, 묵인 하에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체포, 감금, 납치 또는 기타 어떠한 형태로 자유가 박탈되는 행위이며, 그에 이어서 자유 박탈의 시인을 거부하거나, 실종자의 운명이나 소재를 은폐함으로써, 실종자를 법의 비호 밖에 두는 것"을 말한다.[312]

강제실종은 국제형법 상의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정치 등의 기타 목적을 포함한다. 2006년 12월 20일, 유엔 총회에서는《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保护所有人免遭强迫失踪国际公约)》이 통과되면서, 국제 인권 보장은 또 다른 진전을 이루었다. 강제실종 역시 피동적 실종의 일종이지만, 인신매매와는 달리 전자는 착취의 목적이 없고, 후자는 대개 착취를 목적으로 한다.[313]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처벌에 관한 의정서(关于预防禁止和惩治贩运人口特别是妇女和儿童行为的补充议定书)》에 근거하면,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납치, 사기, 기만, 직권남용 또는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을 위해 금전적 보상이나 이익을 수수하여, 개인을 모집, 이송, 운송, 이전,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국 형법 상, 이는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해당 범죄는 행위 패턴 및 행위 대상의 측면에서 국제 인신매매 개념과 다르다. 국제 인신매매는 일반적으로 목적에 따라, 성 착취, 강제노동, 채무노예, 일반적으로 성적 착취, 강제 노동, 채무 노동, 소년병(童军) 등으로 구분되며, 처음 2가지가 매우 중요한 유형이다.[314]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서 발표한 2009년《국제인신매매보고서(全球人口贩运问题报告)》에서는 성적 착취가 인신매매의 가장 흔한 유형으로, 피해자의 약 79%가 성

311)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2면.
312) 转引自张爱宁.论强迫失踪罪——兼评《保护所有人免遭强迫失踪国际公约》[J].环球法律评论,2009,31(02):2009, 143-151면.
313)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3면.
314)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3면.

착취를 당했으며, 강제노동은 18%라고 언급했다.[315]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은 인신매매에서 강간 및 추행 사건은 흔한 일이다.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많은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사건은 여러 강간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샤오창셩(邵长胜)의 여성 인신매매 사건을 예로 들면, 피고인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한족 여성을 속인 후 강간 및 성추행을 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316] 이러한 사건은 엄격한 처벌을 위해 형법 제240조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범죄 규정에 의거하여, 납치·매도한 여성을 간음한 자, 납치·매도한 여성을 유인 또는 강제 성매매를 하거나 납치·매도한 여성을 타인에게 매매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자에 적용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317]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국제적으로 인신매매는 현대판 노예제도와 관련이 있다. 현대판 노예제도는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상업적 목적에 기초하여 타인을 심각하게 착취하는 것으로, 성매매 이외 노동력 착취는 인신매매의 전형적인 목적이기도 하다.[318] 강제노동은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한 처벌의 위협 하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한 강제적 노동 및 서비스를 말하며,[319] 이러한 강제적 노동은 농업, 광업, 가공업 심지어는 성매매 분야에까지 관련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4,000 만 명의 남성, 여성 및 아동은 현대판 노예의 피해자로 약 2,490만 명이 강제노동을 하고 있으며, 약 1,600만 명이 민간 경제시장에서 일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320]

개혁개방 이전, 중국은 계획경제를 시행하여, 강제노동은 극히 드물었다.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일부 외진 지역에서는 강제노동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헤이좐야오(黑砖窑) 사건이다. 이는 2007년경 중국 산시(山西)

---

315)《全球人口贩运问题报告内容提要》(2009) , [EB/OL]〈https://www.unodc.org/documents/human-trafficking/Executive_summary_chinese.pdf〉, 2021-08-16.

316) 最高人民法院关于拐卖妇女儿童犯罪案件的三起典型案例 [EB/OL]. 〈https://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11/12/id/893.shtml〉,2011-03-24/2021-08-16.

317)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3면.

318) What is modern slavery?[EB/OL]. 〈https://www.antislavery.org/slavery-today/modern-slavery/〉, 2021-08-16.

319)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320) Modern Slavery [EB/OL].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big-issues/labour-rights/modern-slavery/〉, 2021-08-16.

지역에서 일어난 불법구금 및 강제노동과 관련된 사건이다. 일부 벽돌공장 책임자들은 이주노동자, 아동 및 지적발달장애인을 납치하여 벽돌 공장에서 일하게 하는 등 그 기간 동안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강도 높은 육체노동(하루 16시간 근무)을 요구하였다. 게다가 임금지급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매우 심각한 폭력을 가했다. 결국 359명의 노동자를 구출하였고, 80명에 가까운 사람이 기소 당했다.[321]

〈채무 등을 목적으로 한 기타 인신매매 유형〉

강간이나 성매매와 관련된 성 착취, 강제노동 이외에도, 채무, 전쟁 등으로 인해 인신매매와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면, 아동을 매매하여 소년병(童子军)으로 충당하거나 빚을 갚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에게 노역을 시키게 하는데, 이러한 노예 취급은 인권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노동의 가치는 빚보다 훨씬 크다. 이러한 인신매매 목적은 극히 일부이며, 특정 지역과 특정 국가에만 존재한다.[322]

(나) 중국 인신매매 단속을 위한 법률 관리 체계

인신매매 범죄의 규제는 주로 형사정책과 공안관제라는 두 가지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형사정책은 이런 사건에 대한 죄와 형을 확정 및 집행하는 것으로 징벌적 성격이 뚜렷하지만, 후자는 범죄 예방과 교정에 중점을 두는 예방적 성격이 더 강하다.[323]

〈형사정책과 입법·사법〉

인신매매 범죄의 사회적 유해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일반적으로 고의적 상해, 강간 등의 심각한 범죄행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국가에서 범죄로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유엔의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처벌에 관한 의정서의 국제조직범죄 방지 협약(打击跨国有组织犯罪公约关于预防、禁止和惩治贩运人口特别是妇女和儿童行为的补充议定书)》에서는 이러한 범죄 행위를 조직범죄라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일찍이 1979년 형법 제141조에 인신매매

321)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4면.
322)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4면.
323)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4면.

범죄를 설정하였다. 1997년에는 형법에 강제노동죄를 추가하였고, 형법개정안을 개정한 뒤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범죄, 강제노동죄 등의 죄목이 최종 확정되어, 완전한 인신매매 죄명의 체계를 형성하였다.[324]

〈입법관련〉

죄명 설정에 있어, 중국은 형법에 '여성과 아동을 납치·인신매매 범죄(제240조), 납치한 여성과 아동을 인신매수죄(제241조), 인신매매 여성과 아동의 구조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죄(제242조), 강제노동죄(제244조), 성매매 조직, 강요, 유인, 수용, 알선죄(제358조~359조) 등의 여러 죄명을 규정하고 있다. 입죄(入罪) 관점에서, 중국은 여성과 아동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성인 남성에 대한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특정 죄명이 없어 불법 구금, 강제 노동죄 등으로만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제법상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보호 대상과 일치 하지 않는다.[325]

납치된 사람들 중 특히 아동들은 매수한 가족과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조 후에도 매수 가족과 계속 함께 살기를 선택한다. 이 때문에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납치된 여성과 아이들을 매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사적 책임도 추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형법개정안(9)》은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매수와 매도가 동일한 죄라는 매매동죄(买卖同罪)의 정책정신을 확립하였다. 이후, 납치된 여성과 아동을 매수하는 행위에 예외 없이 형사적 책임을 묻게 하였다. 엄격한 형사정책 지도하에, 해당 개정안은 상습적인 "매도죄, 매수죄"의 상황을 해결하였고, "매매가 없으면, 피해도 없다"를 실현하기 위해 인신매매의"시장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326]

이 밖에, 형법 규정이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점을 감안하여, 재판 심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법률과 사법적 해석이 끊임없이 도입되었다. 전자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공포한 《여성·아동의 납치 및 인신매매 범죄자 처벌에 관한 결정(关于严惩拐卖、绑架妇女、儿童的犯罪分子的决定)》이 있으며, 후자에는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범죄 사건의 구체적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해석(关于审理拐

324)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5면.
325)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5면.
326)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5면.

卖妇女儿童犯罪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여성·아동의 인신매매 범죄 처벌에 관한 의견(关于依法惩治拐卖妇女儿童犯罪的意见)》 등이 있다. 이와 동시에,《미성년자보호법》,《노동법》,《여성권익보호법》 등의 법률에서도 인신매매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다.[327]

형벌 측면에서는 범죄 단속과 인권보장의 이중 목적을 위해, 행위 방식에 따라 다른 형사정책을 채택하였다. 여성·아동 인신매매 범죄, 강제노동죄와 성매매 조직·강요·유인·수용·알선죄 등의 죄명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혹한 형벌이 설치되었다. 여성·아동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3단 법정형으로는 최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함께 벌금형에 처하며, 최고형으로는 사형 및 재산몰수에 처한다. 강제노동죄는 최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으며, 성매매 조직·강요·유인·수용·알선죄는 최고 무기징역에까지 받을 수 있다.[328] 여성·아동을 납치한 범죄자에게 여성·아동을 매수한 죄는 비교적 가벼운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속 또는 보호관찰(管制)을 받는다.[329]

〈사법관련〉

사법 재판과 법 집행 활동에서 중국은 가혹하게 처벌하는 형사정책을 시행하였다.《여성·아동 인신매매 범죄의 법적 처벌에 관한 의견(关于依法惩治拐卖妇女、儿童犯罪的意见)》에서는 "사회 통합과 안정을 위해 법에 따라 단속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정신은 관련 사법문서 및 사법실천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2015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중국 전국법원에서는 1심에서 2,806건의 여성·아동 인신매매 범죄 사건을 판결하였다.[330]

《관엄상제 형사정책 구현과 관련한 몇 가지 의견(关于贯彻宽严相济刑事政策的若干意见)》에서는 "여성·아동 인신매매 등 인민의 건강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에 중점에 두고,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형화

327)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5면.
328) 1997년 형법전(刑法典)에서는 성매매 조직 및 성매매 강요죄에 사형을 배치하였으며, 2015년《형법개정안(9)》에서는 두 가지 죄명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였다.
329)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5면.
330) 罗沙.全国法院三年多来一审审结拐卖妇女儿童案件超2800件[EB/OL]. 〈https://baijiahao.baidu.com/s?id=1620794957557575875&wfr=spider&for=pc,〉, 2018-12-25/2021-08-16.

형사사법정책 하에서,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의 중형률도 매우 높다. 이미 2009년 대법원에서는 "아동 인신매매 범죄자에 대한 중형률은 60%를 넘는다"고 밝혔다.[331] 여성·아동 인신매매 및 이와 연관된 사건에서 여성·아동을 납치하는 것은 범죄사슬의 시작에 속하기 때문에, 중죄이자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는 통제관리의 초점이 된다.[332]

《여성·아동 인신매매 범죄의 법적 처벌에 관한 의견(关于依法惩治拐卖妇女、儿童犯罪的意见)》에서는 "관엄상제 형사정책과 죄책형(罪责刑)에 상응하는 형법 기본원칙에 따라, 공범범행에서 범죄자의 지위와 역할과 신변의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에 따라 형량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매매죄와 매수죄가 동일한 죄라는 매매동죄(买卖同罪)"라고 하나, 매수행위와 매도행위에 대한 사회적 유해성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사정책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여 서로 사법정책을 달리 하고 있다. 납치된 여성·아동의 매수죄는 최고 법정형이 3년 유기징역으로 여성·아동의 납치 및 매도죄에 대한 최고 법정형인 무기징역과는 차이가 큰 경범죄임에 분명하다. 사실, 이것이 바로 관엄상제 형사정책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소위"매매동죄(买卖同罪)"는 입죄측면에서 볼 때 더 많다. 그러나, 사법관행에서는 매수자의 입죄율과 형량이 그다지 높지 않다. 그 이유는 중국의 혈연문화 영향이 남아있어 실제로 엄격하게 추궁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여성·아동 인신매매 범죄의 법적 처벌에 관한 의견(关于依法惩治拐卖妇女、儿童犯罪的意见)》제20조에 납치된 여성·아동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매수하는 경우는 7가지 상황 중의 하나로, 납치된 여성·아동을 매수한죄의 처벌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동시에 기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죄병벌(数罪并罚)에 따라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잇다. 이 의견은 제21조~제27조까지 공범과 수죄(数罪)에 대한 특별 규정도 다루고 있다.[333]

〈중국 공안관리체제〉

통제관리의 본질적 특징은 "국가권력과 시민권리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공안통제관리는 정부의 명령, 통제와 규칙을 위주로 행정관, 제도관, 책임관을 강조"하는

331) 最高人民法院：拐卖儿童犯罪分子重刑率高于60%[EB/OL]. 〈http://www.chinadaily.com.cn/dfpd/2009-11/27/content_9061970.html〉, 2009-11-27/2021-08-16.
332)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6면.
333)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6면.

중요한 유형이다.[334] 형사법은 피고인의 죄와 형을 확정하기 위해 재판을 거치는 방식이며, 일상적인 예방, 모니터링, 추적 등은 공안의 경무활동으로 공안기관의 규정과 비상시의 통제를 통해 사건 발결관 수사, 피해자 구조, 정보수집 등을 실현한다. 따라서, 공안 통제관리는 인신매매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제공되는 일종의 중요한 공권력 구제 방식이다.[335]

규범화 측면에서, 《중국 전국 실종자 정보관리 업무규정(全国失踪人员信息管理工作规定)》과 《공안기관의 침해·의심 실종자 수사 정보 업무규정(公安机关查找疑似被侵害失踪人员信息工作规定(试行))》이 잇따라 공포되면서, 공안기관의 실종사건에 대한 공안기관의 대응체제가 더욱 규범화 되었다. 2007년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공안부 주도로 《중국 여성·아동 인신매매 방지 행동 계획(2008~2012)(中国反对拐卖妇女儿童行动计划》을 발표하였고, 이후 공안부 등 31개 부처와 부서로 구성된 국무원 인신매매 방지 인신매매 방지부 연합회의가 정식으로 설립되었으며, 인신매매 방지 사업은 전 사회의 참여와 종합 통제관리의 좋은 국면을 형성하였다.[336]

사건 입건 (立案)와 관련하여, 중국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에 앞서 입건(立案) 절차를 수립하여, 실종사건은 형사수사에 앞서 사건을 입건해야만 한다. 공안기관의 경찰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수사기관은 심사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피동적 실종의 경우, 해당 사건이 자발적, 피동적, 무의식적 실종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지원할 수 있는 실종 단서는 매우 제한적이다.[337]

이 때문에 실제로 일부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사건 접수 방식을 채택하여 골든타임을 미루거나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안부는 2009년 11월 4일 "아동실종사건은 예외 없이 형사사건으로 정한다"라고 밝혔다. 당시 인신매매 관련 사건 입건의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여성·아동 인신매매 범죄의 법적 처벌에 관한 의견(关于依法惩治拐卖妇女儿童犯罪的意见)》 제8조에서는 8개 유형의 공안기관(八类安机关)이 즉시 형사사건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38]

---

334) 张子荣.国家治理现代化视野下的公安治理探析[J].中国行政管理,2016(05):3026, 115-118면.
335)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7면.
336)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7면.
337)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7면.
338) 《여성·아동 인신매매 범죄의 법적 처벌에 관한 의견(关于依法惩治拐卖妇女儿童犯罪的意见)》제

인신매매 사건이 신고된 후, 일단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즉시 제기가 되면, 공안기관은 무조건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339]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실종자 DNA 및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신매매 사건 수사의 가장 큰 난관은 납치된 사람을 수색하는데 있다. 중국은 국토면적이 넓어, 납치당한 여성과 아동들은 성(省)을 넘어선 인신매매되는 경우가 많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 구조된 후에도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신원을 파악하기가 어렵다.[340]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민정부, 전국여성연맹 등의 기관들은 "2016년 중국 전국 인신매매 방지 회의(2016年度全国反拐打拐会议)"에서 네트워크 데이터는 인신매매 방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는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수사협력 시스템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인터넷+인신매매 방지" 모델을 형성하여, 인신매매 사건의 수사를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341]

공안부는 2009년 5월 19일 "인신매매/실종 아동 수사를 위한 국가 공안기관 정보시스템"과 "인신매매/실종아동 수사를 위한 국가 공안기관 DNA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가동하였다. 구체적으로, 친족의 DNA 샘플은 지역 기관에 의해 수집되며, 이와 동시에 거리에서 배회·구걸 및 불법·범죄 활동 조직에 있는 미성년자와 구조된 신원 미상의 납치 당한사람들을 대상도 예외 없이 DNA 표본을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한 DNA는 전국에 동일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입력하여 비교 대조하게 된다. 이 방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비교대조하여, 피해자 구조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세계 최초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광시(广西) "4·26" 인신매매 사건에서 구조된 피해자 20명 10명이 DNA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해

8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관할 규정에 부합하면 공안기관은 즉시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여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
1)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에 대한 신고, 고소 및 보고를 접수 받은 경우 ;
(2) 아동 실종 또는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 실종 신고를 접수 받은 경우 ;
(3) 만 18세 이상의 여성이 실종되어 인신매매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은 경우 ;
(4) 배회, 구걸 아동이 인신매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
(5) 납치된 여성 및 아동을 매수한 행위를 발견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
(6)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타 상황의 경우"

339)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7면.
340)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8면.
341) 李凛. "互联网＋反拐"助力全国"打拐"专项行动[EB/OL]. 〈http://www.chinadaily.com.cn/dfpd/2009-11/27/content_9061970.html〉, 2016-04-15/2021-08-16.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돌아갔다. 이 밖에, 공안부는 인터넷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알리바바 그룹과 연합하여, 2015년 5월에 실종아동 정보 긴급 발표 플랫폼인 "재회(团圆)"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본격화하였다. 2021년 3월 기준, 이 시스템은 4,722건의 실종아동 정보를 게시하였으며, 귀가율 98.1%를 기록했다.[342]

(다) 국제적 측면에서의 다국적 인신매매 단속을 위한 국제협력

인신매매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제에서도 교차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수출국으로 수출되어지는데, 하나에서 많게는 여러 경유국을 거쳐 최종 수입국에 도착한다. 이 과정은 인신매매와 타 국가 간의 국경 관리 모두 연관되어 있다. 다국적 범죄조직은 글로벌 조직범죄로서, 각 국가 간 국내법의 차이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경찰과 사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은《유엔조직범죄방지협약(联合国打击有组织犯罪公约)》의 조약국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여러 반국가적 인신매매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다국적 인신매매와의 싸움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343]

〈다국적 인신매매 단속을 위한 중국의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

국내법과의 차이로 인해, 다국적 범죄와 관련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여러 장애요인이 있어, 각국은 일반적으로 양자 간 또는 다자간의 조약을 협력의 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 중국 주변지역에도 심각한 인신매매 문제가 있다.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태국을 포함한 메콩강유역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인신매매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간의 "신부 매매"와 같은 문제들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저역에서 유출, 유입 또는 경유되어 왔다. 국경 간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타 국가와 여러 협약, 조약 및 협력 의정서를 적극적으로 체결하였으며, 특히, 반국가적 인신매매 분야에서는 주변국과의 협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344]

---

342) 公安部：儿童失踪信息紧急发布平台"团圆系统"找回率达98.1%[EB/OL]. 〈https://baijiahao.baidu.com/s?id=1694267691702434607&wfr=spider&for=pc,〉, 2016-04-15/2021-08-16.
343)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8면.
344)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9면.

〈양국 간 측면〉

인신매매 방지는 주로 국가 간 범죄인 인도, 사법공조 조약, 인신매매에 대한 양해각서와 관련이 있다. 2020년 11월 기준, 중국은 이미 81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 사법공조조약 등 총 169건을 체결했다. 인신매매 방지 협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메콩강유역에서는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와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은 이미 발효되었으며, 베트남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은 발효되지 않았고, 미얀마와는 아직 체결하지 않았다.[345]

형사사법조약과 관련하여 중국은 라오스, 태국 및 베트남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밖에, 중국은 메콩강유역의 기타 5개국과 별도로 인신매매 방지에 관한 협력문건에 서명하였다. 예를 들면,《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태국 정부의 인신매매 예방 및 억제에 관한 양해각서(中华人民共和国政府与泰王国政府关于合作预防和遏制拐卖人口的谅解备忘录)》,《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미얀마 연방 정부의 인신매매범죄 퇴치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缅甸联邦政府关于加强打击拐卖人口犯罪合作谅解备忘录)》등의 양해각서가 있으며,《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의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越南社会主义共和国政府关于加强预防和打击拐卖人口合作的协定)》등의 협력협정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양국 간의 조약, 협력협정 및 양해 각서의 서명은 해당 지역에서의 다국적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모든 인신매매 방지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346]

이민 문제는 인신매매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이민자들이 피해자로 이용하기가 쉽다.[347] 중국은 이민자와 노동자 고용에 관한 타 국가와의 양자 협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하였다. 예를 들면, 2013년 중국과 러시아는 2013년에《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의 불법 이민 활동 방지를 위한 협력협정(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俄罗斯联邦政府关于合作打击非法移民活动的协议)》, 중국와 영국은 2004년에《중화인민

345)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9면.
346)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9면.
347) Weitzer R. Human trafficking and contemporary slavery[J]. Annual review of sociology, 2015, 41: 2015, 223-242면.

공화국 정부와 영국 정부의 합법적인 인적 교류 촉진 및 불법 이민활동 방지에 관한 양해각서(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不列颠及北爱尔兰联合王国政府关于便利人员合法往来和打击非法移民活动谅解备忘录)》, 중국과 한국은《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와 대한민국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도 하에 한국에 파견된 노동자에 관한 양해각서(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和大韩民国雇佣劳动部关于雇佣许可制下输韩劳务人员的谅解备忘录)》,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와 대한민국정부 노동부의 고용허가제도 하의 노동협력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和大韩民国劳动部关于启动雇佣许可制劳务合作的谅解备忘录)》 등을 체결하였다.[348]

범죄인 인도 조약, 형사사법공조 조약, 인신매매 방지 양해각서 및 협력협정의 서명은 다국적 법 집행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인신매매 예방 및 단속을 추진하여 적시에 피해자를 구출하고 초국가적 법 집행 협력을 강화하고, 인신매매를 공동으로 예방 및 퇴치하며, 적시에 희생자를 구출하고 송환하는데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관련된 다방면의 협력문건에 서명하여, 다국적 인신매매 퇴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349]

〈다국가 간 측면〉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 법률 문서는 주로《유엔조직범죄방지협약의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처벌에 관한 의정서(联合国打击跨国有组织犯罪公约关于预防、禁止和惩治贩运人口特别是妇女和儿童行为的补充议定书)》(이하 "의정서")로, 이는 국제인신매매 방지에 중요한 국제 법적 문서이다. 중국은 2009년에 결의안에 가입하고, 2010년 공식적으로 유엔에 제출함으로써, 중국은 다국적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350]

실제 중국은 2000년 6월 유엔기구 간 메콩강유역의 인신매매 방지 프로젝트(UNIAP)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 유엔 회원국 기구, 정부, 비정부 조직 등이 동참하였다. 게다가, 중국은 유엔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정부와《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메콩강유역지역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湄公河次区域反对拐卖人口合作谅解备忘录)》를 체결하여, 이 지역의 인신매매를 공동으로 대처하도록 촉구

348)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9면.
349)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0면.
350)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0면.

했다. 이 양해각서는 인신매매에 관한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 적발, 피해자 지원, 국가 정책, 지역 사회 참여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해당지역의 모니터링 및 예방부터 처벌 및 관리, 인명구조에 이르기까지의 전 프로세스, 연쇄적이고 체계적인 인신매매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있다.[351]

2004년부터 메콩강유역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장관급 협력 이니셔티브(COMMIT)는 일련의 행동 계획을 승인했으며, 2007년 6개국 장관은 《메콩강유역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협력 프로세스에 관한 공동 성명(湄公河次区域合作反对拐卖人口进程联合宣言)》에 서명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6개국의 지역 인신매매 방지 협력체계는 아동, 여성 등의 피해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인신매매와 착취를 방지하고, 지역 경찰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인신매매 방지 활동에 대한 원활한 진행을 촉진하는 것이다.[352]

또한, 2002년에는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공동 주최한 발리 프로세스(Bali Process)가 공식 출범하여, 국가 간 인신매매 방지 정책 대화, 정보 공유 및 실질적인 협력을 실현하였다. 2016년 3월, 《인신밀수, 인신매매와 관련된 다국적 범죄에 관한 성명(이하, 발리 프로세스 선언)(关于人口走私、贩运和相关跨国犯罪宣言)》이 채택됐다. 이 성명이 체결된 중요한 배경에는 이 지역의 비전통적인 안보 통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로힝야족의 문제였다.[353] 발리 프로세스는 밀입국, 인신매매 및 관련 다국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협력 및 대화 장이며, 중국은 49개 회원국 중 하나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를 지원함으로써 밀입국 및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도록 관련 국가들을 격려하고 지원하였다.[354]

(라) 지역 간 정부 협력 및 국제기구 협력

《메콩강유역의 인신매매 방지 협조에 관한 양해각서(湄公河次区域反对拐卖人口合作谅解备忘录)》는 국가 내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반대하는 국가행동계획 수립",

351)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0면.
352)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0면.
353) 参见陈宇.东南亚非法移民治理中的"安全化"问题——以"巴厘进程"为中心的研究[J].学术论坛,2020,43(06):2020, 96-105면.
354)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0면.

"지역 인신매매 방지 협력 강화" 및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정부, 국제기구 및 비정부 조직 간의 협력"을 촉구했다. 중국은 2013년에 《중국 인신매매 방지 행동 계획(2013-2020)》, 2021년 《중국 인신매매 방지 행동 계획(2021-2030)》을 발표하였다. 인신매매 방지 행동 계획에서는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기구 및 지역 정부 간 인신매매 방지 협력을 심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355]

지역 간 정부 협력은 주로 공안부 간의 협력을 의미한다. 2004년 중국과 베트남은 "중국과 베트남 인신매매 방지법 집행에 관한 공동 교육과정" 진행하였으고, 잇따라 베트남 형사경찰 대표단은 중국을 방문하여 양 국가는 다국적 조직범죄에 대한 협력, 정보공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중국-라오스, 중국-미얀마, 중국-베트남은 모두 국경에 여러 인신매매 범죄 퇴치를 위한 연락 사무소를 공동으로 설립하였고, 여러 피해자를 성공적으로 구출하였다.

국가 간 경찰 협력으로 사건수사, 피해자 구출 등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예컨대, 2018년 안후이성 벙부시(安徽省蚌埠市) 공안기관이 적발한 웨이시펀(韦氏粉)등 베트남 국적 여성의 인신매매 사건, 쿤밍(昆明) 철도공안기관이 적발한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사건 일명 "2018.5.4" 및 "2018.8.14"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아르바이트, 여행, 결혼 알선을 명목으로 사기 또는 폭력을 행사하여 납치한 외국인 여성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켰다.[356]

국제기구와의협력 지난 세기 말, 공안부와 국가여성연맹은 유니세프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및 폭력 반대"라는 협력을 시작하였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국가연성연맹(ACWF)은 윈난성(云南)에서 실시한 국제노동기구의 "메콩강유역의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반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014년 유엔은 베이징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유엔 협력 행동(UN-ACT)을 개시하였고, 이 프로젝트는 5년간 진행되었다. 해당 프로젝트 기간 동안, 메콩강유역의 6개국과 유엔 관련기관들은 학술 토론, 정책 수립 및 경찰법 집행 방면에서 효율적으로 협력하였다. 국제기구의 가입은 국가 간 입법, 사법 및 법 집행의 격차를 조율하고, 자원을 통합하는데 효과적이다. 이 외, 중국은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355)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1면.
356)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1면.

2021년,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노동기구의 《1930년 강제노동협약(제29호)(1930年强迫劳动公约(第29号))》과 《1930년 강제노동협약에 관한 2014년 의정서(1930年强迫劳动公约的2014年议定书)》 세미나에서, 중국의 협약 가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357]

〈다국적 인신매매 단속을 위한 중국의 국제협력제계 개선방향〉

현재 국가 간의 협력은 주로 양국 간과 다국가 간 조약·협정 및 경찰 협력에 통해 이루어진다. 중국은 앞으로도 이런 측면에서 더 깊이 있게 다뤄야 하는데, 양자간 및 다자간의 조약을 적극 체결하고, 국가 간 법 제도의 협력을 강화하여 법률 체계의 격차로 인한 법 집행에서의 장애요인을 제거거함으로써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원활한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경찰 협력으로는 우선 일상적인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여, 상시적인 협력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경 연락 사무소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 간 경찰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는 정보공유 플랫폼이 주로 오프라인 협력과 만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공유 플랫폼 보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Win-Win 구조의 경찰협력 핫라인이나 플랫폼을 개발하여, 효율적이고 민첩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제인권기구, 국제노동기구(ILO), 유니세프 등과 협력을 확대하고, 중간에서 조정하고 자원을 통합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 조직 하에서 국가 간 및 지역 간 인신매매 방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358]

(마)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 보호

인신매매 피해자는 종종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중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으며, 구출된 후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기가 쉬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헤이좐야오(黑砖窑) 사건의 경우, 많은 피해자들은 본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강제노동 중에 폭력을 당하여 신체적 장애를 입게 되었다. 인신매매 사건의

357)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1면.
358)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2면.

경우, 여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 압박, 강간, 상해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와 가정 및 사회로의 융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회복적 사법을 구현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현재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규정하는 특별법이 없다.[359]

〈개인정보 보호〉

중국《형사소송법》제64조에서는 국가안전위해죄, 테러활동범죄, 흑사회성질의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의 사건에 대해, 경우에 따라 증인, 감정인, 피해자 및 근친족의 개인정보, 용모, 주소 등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60] 제64조 제1항에서는 4가지 유형의 특수범죄에 한해 적용되며, 제2항에서는 사건 유형에 예외는 없으나, 적용 가능한 상황을 제한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증인이 된 후 피해자와 근친족의 신변안전이 위험할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인신매매, 강제노동, 성매매 등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4가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꺼려할 경우에는 특별보호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 범죄행위의 유형에 따라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이러한 방식에는 명백한 결함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와 그 친족이 법정에서 증언할 의지를 어느 정도 감소하게 한다. 또한,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등의 사건에서 가해자의 주관적인 악의를 그 행동의 유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인신매매 사건에서는, 무차별 살해 및 강간을 당한 많은 피해자들이 있으며, 게다가 대부분 인신매매 사건의 피해자가 상당히 많아 수십 수백만 가정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당 범죄의 위해성은 국가안전위해죄, 테러활동범죄, 흑사회성질의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지 않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국은 이 분야에 대한 입법 상의 결함이 크다.[361]

---

359)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2면.

360)《중국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제64조 규정 : "국가안전위해죄, 테러활동범죄, 흑사회성질의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들이 소송 중 증언으로 인해, 본인 또는 그 근친족의 신변안전이 위험에 처할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실명, 주소 및 직장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2) 외모, 실제 목소리 등을 밝히지 않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조치를 취한다; (3) 특정인이 증인, 감정인, 피해자 및 그 근친족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한다; (4) 개인 및 주택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한다; (5) 기타 필요한 보호조치

361)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2면.

〈권리 보호〉

중국의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와 그 근친족은 입건, 수사,심사 및 기소, 재판 단계에서 특정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소권, 피해자 및 법정 대리인의 회피신청권 등이 있는데, 그 중 부대민사소송(附带民事诉讼)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가장 특별하다. 형사 부대민사소송은 형사소송 절차 중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근친족)등이 제기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병합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전면적인 처벌, 권리 실현 및 회복의 기능"[362]이라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인신매매 사건의 피해자와 그 근친족에게 부대민사소송이란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 밖에도, 최근 몇 년간 인죄인벌관대처리제도(认罪认罚从宽制度)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대처리(从宽)"는 실체 관대처리가 구현될 뿐만 아니라 절차의 간소화와 관련되어 있어, 피해자의 권리까지 제한 및 축소된다.[363]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제도를 마련하였으나, 피해자의 법률지원에 관해서는《법률지원조례》의 사용 대상의 확대를 통해 구현된다. 제11조는 "공소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족은 사건이 송치된 날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자"는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64]

〈피해자의 정착〉

인신매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종종 가정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데, 특히 일부 부녀자들이 그러하다. 인신매매를 당한 이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본래 가정이나 거주지로 돌려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다음 단계의 정착 계획은 없다.《중국 인신매매 방지 행동계획(中国反对拐卖人口行动计划(2021~2030年))》에서는 피해자의 구조와 정착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사생활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362) 杨立新, 刘洪林.刑事附带民事诉讼的基础理论问题[J].国家检察官学院学报,2013,21(06):2013, 149-157면.
363)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3면.
364)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3면.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피해자는 사고무친(举目无亲) 상태에 놓일 수 있으며, 복지시설에 들어가더라도 심리적 트라우마가 지속될 수 있다;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는 본래의 가정으로 결합할 수 없거나,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중국 피해자의 정착은 주로 민정부 및 사회복지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관과 지정의료기관을 도입하여, 피해자에게 사후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산시성(陕西省)이 발행한 《산시성에 실제 적용가능한 〈중국 인신매매 방지 행동계획(中国反对拐卖人口行动计划(2021~2030年))〉 시행규칙》에서는 "조건에 부합한 인신매매 피해자를 사회구조대상에 포함하고, 빈곤층의 인신매매 피해자에게는 기초생활보장 및 입학 지원을 제공한다"라고 밝혔다.[365] 2016년에는 형사사건의 피해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중국 전국 최초로 형사피해자 지원기금이 설립되었다.[366]

피해자 보호는 회복적 사법의 중요한 일환이다. 현재 중국의 피해자 보호는 주로 민정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형사법에서는 피해자의 일부 권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산재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입법을 고려할 수 있다. 동시에, 형사소송법 내 증인 보호 조항의 개정 여부와 같은 현행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예컨대, 본래의 국가안전위해죄·테러활동범죄·흑사회성질의 조직범죄·마약범죄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건의 유형, 특정 형량으로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예: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선고받을 가능성) 등이 있다. 이 밖에, 고용지도·심리상담 등의 제공과 쾌적한 재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가 피해자의 상황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367]

(바) 중국의 인신매매 방지협력 의지

인신매매는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선 이동도 발생한다. 인신매매 문제를 다룰 때, 국내 통제관리와 해외협력의 2가지를 병행하는

365) 陕西：将符合条件的被拐卖受害人纳入社会救助范围[EB/OL]. 〈https://www.sanqin.com/2021-08/04/content_9166603.html〉, 2021-08-04/2021-08-16.
366)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4면.
367)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4면.

것은 근본적인 통제와 전면적인 예방 및 제어를 실현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인신매매의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피해자와 그 가정에 대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개인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을 물건이나 자원으로 삼아 거래하고 노예로 여기는 인신매매는 현대사회의 인권 이념과 민주국가를 유린하는 것이다. 국가 간 적극적인 협력,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참여, 국내의 가혹한 처벌 등의 다각적인 접근은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368]

(4) 코로나-19와 안전 등

2019년 12월 중국 우한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원지인지 여부가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바 있으며 2021년 10월에도 WHO는 다시금 조사를 하고 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369] 라오스 박쥐에서 코로나-19와 비슷한 바이러스의 발견이 있기도[370] 하였다. 중국은 타국의 백신수입보다는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확산방지를 위하여 국경통제를 하고 있으며 일정부분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중국은'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을 수정을 통하여 가짜뉴스에 처벌을 강화를 하고 있으며[371] 대만 역시 가짜뉴스에 대해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372]등을 통하여 강력한 처벌[373]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 등과 관련하여 국가적인 또는 국제적인 이해관계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가 배포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방지와 안전을 위해 단편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통한

368) 阴建峰·侯撼岳, "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 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 2021, 14면.
369) 뉴시스, 2021.10.14.,"WHO, 코로나 기원 조사 새 자문단 구성…"마지막 기회"",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4_0001613144&cID=10101&pID=10100〉(최종검색일:2021.10.18.)
370) 머니투데이, 2021.10.16., ""中 우한이 아니라고?"…라오스 박쥐서 코로나-19 유사 바이러스 발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1601083765099〉 (최종검색일:2021.10.18.)
371) MBN뉴스, 2021.1.9.,"중국 "'코로나 가짜뉴스' 유포하면 벌금 최대 8천만 원", 〈https://www.mbn.co.kr/news/world/4394236〉 (최종검색일:2021.10.18.)
372) 국민일보, 2021.2.21.,"대만, 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자에게 '징역 3년 이하' 추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266475&code=61131811&cp=nv〉 (최종검색일:2021.10.18.)
373) 한국일보, 2021.5.24.,"코로나 '가짜뉴스'에 벌금 1억2000만 원...中 맞선 대만의 반격",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2410200001627?did=NA〉(최종검색일:2021.10.18.)

대응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이보다는 가짜뉴스의 진원지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공동조사 방식과 체계를 구성하여 최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파악이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인 관계에서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안전에 조사와 규명에 대한 일정한 협의와 합의가 기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라. 일본

(1) 사형제도

일본은 정부나 국가차원에서 사형폐지를 위한 정책이나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며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사형제도 찬성의 목소리가 높다.[374] 사형제도를 이미 폐지한 국가에서도 여론조사는 사형제도 찬성의 목소리가 높았다는 점에서[375]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여론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의 목소리는 사형제도를 존치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일본 변호사협회는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요청서(死刑制度の廃止を求める要請書)」를 법무대신에게 제출한 바 있으며,[376] 앰네스티 인터네셔날 제팬도 시민사회 단체로서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일본변호사 협회와 앰네스티 인터네셔날 제팬 (Amesty International Japan)[377]을 포함하여 일본의 인권보호 관련 학자들과의 교류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에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마약범죄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약물남용대책에 관한 기획이나 입안 그리고 총합조정을 담당

374) 내각부(内閣府), 기본적 법제도에 관한 여론 조사(「基本的法制度に関する世論調査」(図２)〈https://survey.gov-online.go.jp/r01/r01-houseido/zh/z02.html〉(최종검색일: 2021. 7 .19)

375) Mariko NAKAMURA, "일본의 인권보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인권침해방지 협력, -사형, 마약범죄, 강제실종, 코로나-19 등을 중심으로-", 자문서, 1면, The Cooperation of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East Asia, 2021.8.20. Zoom 화상회의

376) 일본변호사연합회, 「死刑制度の廃止を求める要請書」〈https://www.nichibenren.or.jp/library/pdf/document/opinion/2020/opinion_201023.pdf〉(최종검색일:2021. 7 .19.)

377) Amesty International Japan, 〈https://www.amnesty.or.jp/en/〉(최종검색일:2021.9.1.)

하는 관청으로 2018년 8월 3일 결정한 바 있으며 그 기본 방침에 기초해서 관계 성청(省廳)이 대책을 세우고 있다. 「제5차 약물 난용(亂用) 방지 5개년 전략」에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국제연대, 국제협력을 통한 약물 난용 방지가 목표로서 제시되고 있다.[378]

일본 경찰청은 1995년 창설한 아태지역 약물단속회의(Asia-Pacific Operational Drug Enforcement Conference, ADEC)로 2019년 제24차 회의에서 일본은 황금삼각지대(Golden Triangle)와 관련하여 일본의 야쿠자가 태국과 중국 등으로 메트암페타민의 밀반입이 증가하는 상황과 함께 중국,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베트남 등 6개국의 다국적 단속 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도[379] 하였다.

일본은 국제연합 마약위원회(CND), 아시아태평양약물단속회의(ADEC), 제42회기 아시아태평양약물단속기관장회의(HONLEA), 제28회 국제협력약물정보담당자회의(ADLOMICO), G7로마·리옹그룹 등과 마약관련 동향파악과 정보교류 및 의견교환 등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380]

마약범죄 대응에 일본의 법령이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약물사용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형의 일부집행유예에 관한 법률(薬物使用等の罪を犯した者に対する刑の一部の執行猶予に関する法律)에서 약물범죄에 대해 형의 일부집행유예를 마련한 점과 보호관찰과 사회내처우를 확대한 것은 참고할 만하다.[381]

(3) 강제 실종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강제실종 또는 강제 납치되는 경우가 주로 문제되고 있는데, 2018년 10월 현재 일본 정부는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로서 17명을 인정하고

---

378) 약물난용대책추진회의 「제5차 약물 난용 방지 5개년 전략」(薬物乱用対策推進会議「第五次薬物乱用防止五か年戦略」, 2018년, 25면 이하, 〈https://www.mhlw.go.jp/content/11120000/000339984.pdf〉 (최종검색일: 2021. 7. 19.)

379) 2019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20, 332면.

380) 약물난용대책추진회의, 「제5차 약물 난용 방지 5개년 전략」(薬物乱用対策推進会議, 「『第五次薬物乱用防止五か年戦略』follow up 」, 2019년, 37면 이하, 25면 이하, 〈https://www.mhlw.go.jp/content/11120000/000544239.pdf〉(최종검색일:2021.9.1.)

381) Mariko NAKAMURA, "일본의 인권보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인권침해방지 협력, -사형, 마약범죄, 강제실종, 코로나-19 등을 중심으로-", 자문서, 6~8면, The Cooperation of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East Asia, 2021.8.20. Zoom 화상회의

있고, 북한에 의한 납치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자 883명에 관해서 국내외로부터 정보 수집이나 수사,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382]

2013년 1월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에 대한 대응을 협의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략적 조사 및 총합적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全) 국무대신이 참여하여 성립한 새로운 납치문제대책본부를 설치하였고,[383] 납치 문제,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拉致問題その他北朝鮮当局による人権侵害問題への対処に関する法律, 平成 18년 법률 제96호)이 제정되기도 하였다.[384]

일본은 국제조약인'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2007년 2월 6일에 서명하고 2009년 7월 23일에 비준한 바 있는데[385] 한국이 이 조약에 가입하게 될 경우 한국과의 관계에서 역사적으로 발생한 강제노동을 위해 동원된 실종된 사람에 대한[386] 공동조사를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코로나-19와 안전 등

일본의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체되고 미흡한 대응이 언론에 보도[387]된 바 있다. 일본은 2020년 9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에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더불어 참여하고 있으며 외교부, 보건부, 주한대사관,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하고 있다.[388]

일본은 가짜 뉴스로서는 화장지가 공급되고 있지 않다는 정보가 SNS에서 확산되어

---

382) 외무성(外務省),「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정부가 인정한 납치 피해자(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問題―政府認定の拉致被害者」, 〈https://www.mofa.go.jp/mofaj/a_o/na/kp/page1w_000081. html〉(최종검색일: 2021.7.19.)

383) 외무성(外務省),「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국내에서의 대응(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問題―国内における取組)」, 〈https://www.mofa.go.jp/mofaj/a_o/na/kp/page1w_000084.html〉(최종검색일: 2021.7.19.)

384) Mariko NAKAMURA, "일본의 인권보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인권침해방지 협력, -사형, 마약범죄, 강제실종, 코로나-19 등을 중심으로-", 자문서, 8면, The Cooperation of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East Asia, 2021.8.20. Zoom 화상회의

385) Ratification Status for Japan,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reaty.aspx?CountryID=87&Lang=EN〉(최종검색일: 2021.9.1.)

386) 매일경제, 2020.12.13.,"형제복지원 한 풀리나…법무부, 강제실종협약 가입 위한 법 개정작업 본격화",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2/1278074/〉(최종검색일:2021.9.1.)

387) 연합뉴스, 2020.4.5.,""콜센터 연결에 이틀·6일 걸려 검사"…일본 코로나-19 대응 허술",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5021300073〉(최종검색일:2021.9.1.)

388) 뉴스1, 2021.9.1.,"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4차 화상회의 개최…"코로나-19 협력 강화"", 〈https://www.news1.kr/articles/?4420651〉(최종검색일:2021.9.1.)

점포에서 화장지가 소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389] 일본에 여행을 가면 벌금을 내야한다든가 일본차에 대해 테러를 하였다 또는 일본의 수출 통제 전략물자가 수출이 금지되었다는 등[390]의 가짜 뉴스는 한일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가짜뉴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떠한 외국인에 대한 혐오범죄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혐한 문화와 관련된 혐한 가짜뉴스[391]는 어떠한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니터링과 기사삭제 등 협력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마. 몽골

(1) 사형제도

몽골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2008년 사형집행을 마지막을 시행하였고 2012년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조약인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 의정서(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비준한 이후[392] 2016년 새로운 형법이 효력을 발휘하면서[393] 사형제도가 폐지된 바 있다.

몽골의 경우도 사형제도가 폐지되기는 하였지만 흉악한 범죄가 발생하거나 중대범죄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역시 사형제도 부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며 범죄피해자와 범죄로 인한 사망자의 인권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논의가 이어진 바 있다.[394]

---

389) 매일경제, 2020.2.28.,“코로나 공포에 휩싸인 日…가짜뉴스에 놀라 화장지 사재기”,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2/210744/〉 (최종검색일:2021.9.1.)

390) JTBC, 2019.8.13., “한·일 갈등에 늘어나는 가짜뉴스의 악순환…'돈'과도 연결”,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65131〉(최종검색일:2021.9.1.)

391) 탑데일리, 2021.8.5.,“日, 한국이 의도적으로 경기 방해?...사실은 혐한 가짜뉴스”,〈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112698〉 (최종검색일:2021.9.1.)

392) 라지브 나라얀 박사. 아순따 비보 까바에르, “사형제 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 2018.4.26.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파리원칙 25주년 기념 자료집, 2018, 175면.

393) ADPAN welcomes Mongolia's decision abolish death penalty in law 〈https://worldcoalition.org/2015/12/18/adpan-welcomes-mongolias-decision-abolish-death-penalty-in-law/〉 (최종검색일: 2021.8.23.)

394) 사형 제도 재개에 대하여, ON REINSTATING THE DEATH PENALTY, 〈https://jargaldefacto.com/article/%EC%82%AC%ED%98%95-%EC%A0%9C%EB%8F%84-%EC%9E%AC%EA%B0%9C%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의 경우에도 사형제도 부활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예방정책과 범죄대응이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형제도 부활을 지지하는 대통령과 의회의원의 다수가 선출될 경우 사형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라고 하더라도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될 가능성을 존재하며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범죄예방정책과 범죄대응정책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기관, 비정부 기관,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관련 참여 프로그램과 다양한 형태의 가능한 지원교류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몽골의 경우 동아시아에서 선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은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몽골과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하여 협력을 추진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마약범죄

몽골의 경우 마약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마약물질에 대한 명확한 증명과 파악이 이루어지 않은 채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며,[395] 몽골로 유입되는 마약은 대부분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중국으로부터는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이 러시아로부터는 Andante 약물이 많은데,[396] 시골지역에서 마약류 식물이 별다른 통제 없이 자라는 등 마약류 식물이 있는 면적이 1만 5천 헥타르에 이른다.[397]

한국 대검찰청은 2017년 몽골 경찰청에 마약 수사관 2명을 보내어 마약퇴치 지원사업을 수행한 바 있으며 수사와 마약감식 장비를 지원하였고[398] 마약퇴치 캠페인과 몽골 경찰관 대상 마약수사 강의를 실시하기도 한 것[399]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몽골 지역 사회에 마약식물이 만연한 것은 마약범죄

EC%97%90-%EB%8C%80%ED%95%98%EC%97%AC〉(최종검색일: 2021.8.23.)

395) 바트체첵, 『몽골의 마약류범죄의 실태와 통제방안』,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18면.
396) 바트체첵, 『몽골의 마약류범죄의 실태와 통제방안』,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20면.
397) 바트체첵, 『몽골의 마약류범죄의 실태와 통제방안』,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21면.
398) 대검찰청, 2020 마약류 범죄백서, 2021, 416면.
399) 2020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21, 417면.

대응이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협력과 공동 대응 및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이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다.

몽골 지역사회가 일정한 대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 역량배양을 몽골 경찰과 검찰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국의 코이카(KOICA)나 한국 대검찰청과 경찰청 및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이 함께 협력하여 몽골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대응협력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도 일정부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일반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몽골 지역에서 제시하는 어려운 점과 필요수요를 가능한 반영하여[400] 진행해 줄 필요가 있다.

(3) 재외국민 범죄피해

재외국민 범죄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강도, 살인, 납치 감금 등 범죄피해가 2015년 8,298건에서 2019년 16,335건으로 최근 4년간 두 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401] 또한 재외국민 범죄피해 관련 내용은 외교부의 관련정보 제공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며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402] 현재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호주 등과 같은 비교적 큰 국가를 중심으로 한 재외국민 범죄피해현황은 범죄백서에서 관련현황의 파악이 쉽게 가능할 수 있고 비교적 큰 국가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가 국가규모에 비례할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에도 관련 세부 내용현황이 파악될 필요가 있는데, 몽골이나 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 국가별 범죄유형별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

2020년 전체 범죄피해건수 16,335건에서 일본이나 중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호주를 제외한 기타국가에서 발생한 범죄피해 건수는 8,462건으로 51.8%에 이르는데,[403] 주 몽골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절도 등 범죄피해에 대한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있기는 하지만[404] 몽골을 포함한 기타국가에서 발생한 범죄피

400) 오주현, “민관협력사업과 시민사회(CSO)의 참여: 몽골사례에서의 시사점”, 『국제개발협력』2012권 1호, 한국국제협력, 2012. 169면.
401) 2020 범죄백서, 법무부, 2021, 221면.
402) 연합뉴스, 2021.5.25.,“외국민 범죄피해 4년새 곱절…보호관련 법안 개선 시급”,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5138300371〉 (최종검색일:2021.10.19.)
403) 2020 범죄백서, 법무부, 2021, 222면.
404)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절도 등 범죄피해 유의 안내, 공지사항, 2020.9.7.“실제 최근 들어, 울란바타르 바양골구에서 2인조 절도범이 중국인의 주택을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사건

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현황과 내용에 대한 파악을 통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주요 국가 이외에 기타 국가와 관련하여 범죄발생 방지 및 대응과 범죄피해 지원 및 대응책 마련과 관련하여 기초적인 관련 현황정보로서 국가별 범죄유형별 범죄피해 현황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코로나-19와 안전

몽골은 한국,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6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와 보건 안보 협력체 참가국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공동교육훈련 사업협력을 함께하고 있으며,[405] 몽골은 중국 정부에 양 3만 마리, 러시아에 100만 달러상당의 육류와 가공품, 미국에 100만 달러 상당의 방역보호복 기부 등을 하기도[406] 하는 등 다양한 국제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2021년 8월 한국은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시범사업으로 몽골에 코로나-19 진단키트 30만달러 상당을 지원하기도 하였다.[407]

몽골의 경우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데 이동제한 위반과 재난의 가능한 위험성과 관련하여 가짜뉴스를 확산시킨 사람은 15만MNT[408]의 벌금에 처하고 관련조직은 1백 5십만MNT[409]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410] 별도로 형법에 따라서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트린 사람은 45만MNT[411]에서 1백 3십만MNT의 벌금 또는 240~720시간의 사회봉사와 1~3개월의 구금에 처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ㅇ 평소 주거지의 문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주시고, 혼잡한 장소(대형마트, 시장, 상점 등)를 방문할 경우 개인 소지품 관리에 신경 쓰는 등 범죄피해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05) 연합뉴스, 2021.10.19.,"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코로나-19 대응인력 공동훈련 논의",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9122800530〉 (최종검색일: 2021.10.19.)

406) 이평래, "코로나 19가 몽골의 사회 및 경제에 미친 영향", TURKIC-ALTAIC ECONOMIC BELT /ISSUE PAPER, AUGUST 2020, 56면.

40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8.18.,"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시동…몽골에 진단키트 지원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지원체제 사업 일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1770〉(최종검색일:2021.10.19.)

408) 한화 약 6만1천원

409) 한화 약 61만원

410) news.mn, 2020.3.30., "Mongolia punishes fake news spreaders by Criminal Law", 〈https://news.mn/en/791544/〉 (최종검색일:2021.10.19.)

411) 한화 약 18만 4천원

2. 동남아 지역 인권침해 초국가적 범죄, 안전관련 주요 사례 현황과 문제점

가. 19~20세기 동남아 지역 인권침해와 인권보호의 취약성

19~20세기 동남아시아 지역도 동북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쟁과 학살로 인하여 끔찍한 인권침해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불행한 역사를 안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하나의 금기어가 되기도 한 '1965년 대학살'은 체재와 이념 차이로 공산당원, 교사, 청년, 농민, 노동자, 여성운동가 등이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 수는 25~50만명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혹은 30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등 현재에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20세기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 중의 하나로 알려지기도 하였다.[412]

캄보디아도 1970년대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 군부가 양민을 학살한 것으로 당시 캄보디아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200만명이 사망한 사건이며 잔혹한 고문과 학대가 이루어진 인권침해 사건으로 40여년이 지난 최근 2018년 급진주의 공산주의정권 크메르루즈 지도자 2명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기도 하였다.[413]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은 베트남에서 전쟁물자 보급을 위한 조치로 북베트남인들에게 쌀이 공급되지 않아 100만명이 아사하기도 하였고,[414] 필리핀을 점령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여 수십만의 필리핀인이 학살되거나 투옥되었고 일본의 군수품 조달을 위해 경제적 약탈은 물론 일본 위성 정부를 통한 지배와 사상교육 등을 시행하였다.[415]

동남아시아에서의 이념의 차이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대량적으로 학살되는 사건의 발생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을 저지할 수 있는 기재나 예방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은 동남아시아에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1세기 현재에도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412) 한겨레21, 2017.7.12.,"인도네시아의 반세기 금기어 '1965년 대학살'",〈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43848.html〉 (최종검색일:2021.6.9.)
413) BBC News Korea, 2018.11.17. "킬링필드: 캄보디아 전범재판소, '킬링필드' 집단학살 인정", 〈https://www.bbc.com/korean/news-46241935〉 (최종검색일:2021.6.23.)
414) 조너선 닐, 『미국의 베트남 전쟁: 미국은 어떻게 베트남에서 패배했는가』, 책갈피, 1992, 40면
415) 권오신, 『필리핀』, 동남아학 총서 5,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8, 59면

나. 필리핀

(1) 사형제도

필리핀은 1987년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1993년 살인, 미성년자 강간, 납치 관련 범행으로 한정해 사형제도를 부활시켰고, 2000년에 다시 폐지하였다가 2003년에 재도입 하는 등 도입과 폐지를 반복하였다. 이후 2006년, '사형폐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필리핀에서 사형제도는 전면 폐지되었다. 현재 법정 최고형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 필리핀이 2006년 이후 사형 폐지국가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은 변화된 여론의 영향도 있었으나 정치권력의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사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법살인(judicial murder)의 형식을 띤 국가폭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비합법적이면서 비사법적인 살해(extrajudicial killing)가 오히려 조장되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416]

필리핀 정부는 2020년 사형제 복원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2020년 7월 국정연설에서 마약사범에서 치명적 주사에 의한 사형제 요구를 언급한 이후 의회 내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417]

(2) 마약범죄

필리핀에서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필리핀 당국의 공식 통계로도 6,000명을 초과하였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마약과의 유혈 전쟁이 벌어지면서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예비조사에 들어가자, 필리핀 정부는 즉각 국제형사재판소(ICC) 탈퇴를 선언하였고, 2019년 3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ICC)를 공식 탈퇴했다. 이로써 필리핀은 브룬디에 이어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탈퇴한 두 번째 국가가 되었다.[418]

---

416) 이덕인, "동남아시아의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제24권 제4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3, 118-119면

417) Human Rights Watch, Philippines: Events of 2020, 2021.,〈https://www.hrw.org/world-report/2021/country-chapters/philippines〉(최종검색일: 2021.5.1.)

418) 연합뉴스, 2021.1.31.,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 공식 사망자만 6천 명 초과", 〈https://www.yn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된 살인 사건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극히 일부 사건만 검찰에 의한 참여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020년 9월 국가 공무원들에게 마약 밀매상들은 죽여도 된다고 말하는 등 살해 촉구를 지속하고 있다. 그는 또한 '마약과의 전쟁'을 비판하는 단체들을 향해 인권을 무기화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비난하고 있다.[419]

국제앰네스티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살인적인 마약 퇴치 작전으로 발생한 경찰의 살인 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그들은 그저 죽일 뿐':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자행되는 비사법적 처형 및 그 밖의 인권침해〉에 의하면 필리핀 경찰들은 어떠한 법적 절차도 없이 작성된 마약 감시 대상 명단을 바탕으로 빈곤층을 살해하고, 처벌은 전혀 받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를 통해 총 27명이 사망한 20건의 사례를 확인했으며, 사망자 중 대부분이 비사법적 처형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살인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 사이 불라칸(Bulacan) 지역 곳곳에서 벌어졌다.[420] 유엔인권이사회도 2019년 7월 11일, 필리핀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조사 대상 인권 문제에는 '마약과의 전쟁'을 이유로 한 불법적인 살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국제형사재판소(ICC)도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폭행·살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421]

한편 필리핀 정부는 형사처벌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아이들이 즉결 처형의 위험에 노출됐다는 우려에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필리핀 하원은 2019년 1월 28일, 15세에서 12세로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으며, 상원은 법안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필리핀 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12~18세 사이의 미성년을 소년원에 구금할 수 있다. 최대 형량은 12년으로

---

a.co.kr/view/AKR20210131028100084〉 (최종검색일: 2021.5.1.)

419) Human Rights Watch, Philippines: Events of 2020, 2021, 〈https://www.hrw.org/world-report/2021/country-chapters/philippines〉 (최종검색일: 2021.5.1.)

420) Amnesty, 2019.7.8.,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의 살인적인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유엔의 조사가 시급하다", 〈https://amnesty.or.kr/29490/〉 (최종검색일: 2021.8.10.)

421) 문화일보, 2021.6.15.,"ICC, 두테르테 '마약전쟁 살인' 조사착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61501071239308001〉 (최종검색일: 2021.8.10.)

성인보다는 짧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해당 법안 통과를 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미성년자가 필리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면, 이들이 범죄행위에 가담해도 강력하게 처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 어린이 보호단체, 야당 정치인 등은 이 법에 반대해왔다.[422] 이미 범죄자들이 아이들을 부당하게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시행되면 아이들이 더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아이들이 16세가 되기 전까지 충동억제를 어려워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필리핀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3) 재외국민 범죄피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기 등으로 필리핀에서 살해된 한국인은 모두 53명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6년 6월 취임한 후, 강력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나라와 현지 경찰이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 처리하는 '코리안 데스크'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으로 그나마 2017년부터 피해사례가 많이 줄었다. 필리핀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9~12명의 한국인이 피살됐고,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2명과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8-2020)은 총 6건의 우리 국민 피살사건이 있었다(2018년: 3건, 2019년: 3건, 2020년: 0건). 살인 사건의 대부분은 불법 총기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필리핀에서 강력사건이 속출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허술한 총기관리가 우선 꼽힌다. 2017년 기준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총기 370만정 가운데 200만정이 불법이라는 비공식적인 통계가 있을 정도다. 현지 경찰의 취약한 수사력도 범죄 빈발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첨단 수사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강력사건이 발생해도 신속한 범인 검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교민 간의 갈등이나 돈 문제가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423]

살인 사건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경우로는 사업차 필리핀을 방문하여 현지인 가이드를 고용하고 현지 여성과 관계를 가지는 등 현지인들과 돌아다니다가

422) 머니투데이, 2019.1.30., "'마약과의 전쟁' 필리핀, 12세부터 형사처벌 추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13014171668545〉 (최종검색일: 2021.5.1.)

423) 연합뉴스, 2019.6.21., "필리핀서 끊이지 않는 한인 피살사건 이유와 대책은",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1139600084〉 (최종검색일: 2021.5.1.)

납치 살해되는 경우, 카지노 등 유흥 오락을 목적으로 방문했다가 살해되는 경우, 카지노 에이전트가 카지노 안내 및 호텔 숙박, 금전 대여 등 호의를 베푼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는 경우, 현지에서 사업을 하다, 동업자와 공동투자 관계에서 이권 다툼을 벌이다 동업자에 의해 살해되거나, 또는 '꼭두각시 금지법(Anti-dummy Law)'에 의해 현지인 바지사장(꼭두각시: Dummy)을 내세워 사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다 현지인 꼭두각시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 치정 문제로 연적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 현지 직원들(메이드, 운전기사 등 포함)을 절도 등 각종 문제로 해고하게 되면 원한 감정이 쌓이게 되고, 이후 이들 해고된 사람들이 보복 목적으로 살해하는 경우, 권총 강도, 택시 강도 후 살해 및 사체 유기 등이 있다.[424]

(4) 코로나-19

필리핀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은 전직 장성과 군경이 지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 제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격리와 봉쇄조치를 취하였는데, 일부지역에서는 통금 위반자들을 개 우리에 가두거나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 세워두거나 심지어 통금 시간 이후 체포된 두 아동은 관 속에 들어가 있어야 했다. 코로나-19 규제 위반으로 체포된 수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과밀 구금시설에 수용되었다.[425]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이 2020년 3월 서명한 코로나-19 관련 비상사태법은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최대 2개월의 징역형과 100만 페소(약19,600달러)의 벌금 부과 조항을 포함해 이를 범죄화 했다. 이 조항은 언론인이나 소셜미디어 사용자를 상대로 정부 대응을 비판하거나 심지어 조롱하는 경우에, 자유로운 발언에 대한 검열로 사용되었다.[426]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한 대학신문사 편집장은 최근 코로나-19 봉쇄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소환돼 정부로부터 형사처벌 가능성을 통보 받았다. 경찰 역시 비판 보도를 반복할 경우 체포를 예고하는 등 정부와 보조를 맞췄다. 앞서 세부의 한 대학신문

424)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가/지역별 정보: 필리핀 사건·사고.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252〉 (최종검색일: 2021.5.1.)
425) Human Rights Watch, Philippines: Events of 2020, 2021., 〈https://www.hrw.org/world-report/2021/country-chapters/philippines〉 (최종검색일: 2021.5.1.)
426) Human Rights Watch, Philippines: Events of 2020, 2021., 〈https://www.hrw.org/world-report/2021/country-chapters/philippines〉, (최종검색일: 2021.5.1.)

기자도 비슷한 이유로 당국에 불려가 공개 사과 요구를 받았다. 필리핀 대학 신문들은 언론법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이 별도로 명시될 만큼 중요한 권력 감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필리핀 비상사태법 내 언론통제 조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해 악용 소지가 높다.[427]

다. 인도네시아

(1) 사형제도

(가) 사형규정 법률

인도네시아는 서구식 형법이 도입된 네덜란드 식민지 시기부터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법체계에 있어서 사형제도의 기본적 내용은 인도네시아 형법(the Criminal Code,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KUHP) 제10조에서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유형의 형벌로 구성되어 있다.: 주형과 부가형이다. 주형은 ① 사형, ② 징역형(imprisoment), ③ 금고형(confinement), ④ 벌금형으로 구성되고, 부가형은 ① 특정 권리의 박탈, 정지 ② 특정 재산의 몰수, ③ 판사 결정의 고지(announcement of judge decision)로 구성되어 있다. 주형부터 이야기하면 사형을 먼저 설명해야 할 것 같다. 한편 행형 실무에서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에 의해 부과되는 사형의 집행 절차에 관한 법(Law No. 2/PNPS/1964 on Procedures on the Death Penalty Execution Imposed by Court under General and Military Court System)에서 규정된 사형의 집행은 여전히 오늘날까지 적용되고 있다. 아래의 표는 여전히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법규이다.[428]

427) 한국일보, 2020.4.7., "코로나-19 혼란 악용해 언론탄압 나선 미얀마·필리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071520329629〉, (최종검색일: 2021.5.1.)

428)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1면.

[표 3-1-2] 인도네시아에서의 사형규정[429)]

No	법과 법규(Laws and Regulations)	조항(Articles)
1.	형법[The Criminal Code (KUHP)]	Article 104, Article 111 (2), Article 124 (3), Article 140, Article 340, Article 365 (4), Article 444, Article 368 (2)
2.	군형법[Military Criminal Code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 Militer – "KUHPM")]	Article 64, Article 65, Article 67, Article 68, Article 73 1st, 2nd, 3rd and 4th, Article 74 1st and 2nd, Article 76 (1), Article 82, Article 89 1st and 2nd, Article 109 1st and 2nd, Article 114 (1), Article 133 (1) and (2), Article 135 (1) 1st and 2nd, (2), Article 137 (1) and (2), Article 138 (1) and (2), and Article 142 (2)
3.	화기법(Law No. 12/Drt/1951 on Firearms)	Article 1 (1)
4.	식량 매점매석으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들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련한 1959년 대통령 결정/검찰총장 부서/군검찰총장 부서(Presidential Determination No. 5 Tahun 1959 tentang Authority of Attorney General / Military Attorney General in regards to Aggravate Punishment towards Crimes that Causing Danger to Food Stocks)	Article 2
5	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1959년 대통령규제법 (Government Regulation in Lieu of Law No. 21 of 1959 on Aggravate Punishment Towards Economic Crimes)	Article 1 (1) and (2)
6	1964년 핵력에 관한 기본법 (Law No. 31/PNPS/1964 on Basic Provisions on Nuclear Power)	Article 23
7	1976년 항공 운항과 항공 운항 시설과 관련해서 규정의 적용 확장과 관련한 수개의 규정 수정과 추가 법률 (Law No. 4 of 1976 on Amendment and Addition of Several Articles under KUHP in relation to the Extension of the Applicability of Provisions regarding Crimes related to Aviation and Aviation Facilities)	Article 479k (2) Article 479o (2)
8	1997년 향정신성약물법 (Law No. 5 of 1997 on Psychotropic)	Article 59 (2)
9	1999년 반부패법 (Law No. 31 of 1999 on Corruption)	Article 2 (2)

429) 인도네시아 검찰청 자료와 법률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가공 (Processed from various sources)

No	법과 법규(Laws and Regulations)	조항(Articles)
10	2000년 인권법원법 (Law No. 26 of 2000 on Human Rights Court)	Article 36, Article 37, Article 41, Article 42 (3)
11	2003년 테러범죄근절법 (Law No. 15 of 2003 on Eradication of Terrorism)	Article 6, Article 8, Article 9, Article 10, Article 14, Article 15, Article 16
12	2009년 마약단속법 (Law No. 35 of 2009 on Narcotic)	Article 74, Article 113 ayat (2), Article 114 (2), Article 119 (2), 118 (2), Article 119 (2), 121 (2), Article 132 (3), Article 133 (1), Article 144 (2)
13	아동 보호와 관련한 정부규제법 (Government Regulation in Lieu of Law No. 1 of 2016 on Second Amendment to Law No. 23 of 2002 on Child Protection (later issued as Law No. 17 of 2016 on Determination of Government Regulation in Lieu of Law No. 1 of 2016 on Second Amendment to Law No. 23 of 2002 as a Law))	Article 81 (5)

필요적 사형선고와 관련한 규정은 없으나 대통령이나 부통령에 대한 생명,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의 시도(인도네시아 형법 제104조), 외환행위의 음모(동법 제111조),[430] 이적행위(동법 제123조, 124조), 전시군수물자의 납품사기행위(동법 제127조), 중상해를 야기한 조직절도행위(동법 제365조) 등과 항공기에 대한 파괴를 계획하거나 선동한 경우(인도네시아 대테러법 제6조, 제9조, 제14조 등), 마약의 제조와 밀매 그리고 음모 또는 이러한 행위에 관련된 범죄조직에 참여하거나(인도네시아 마약법 제80조, 제82조),[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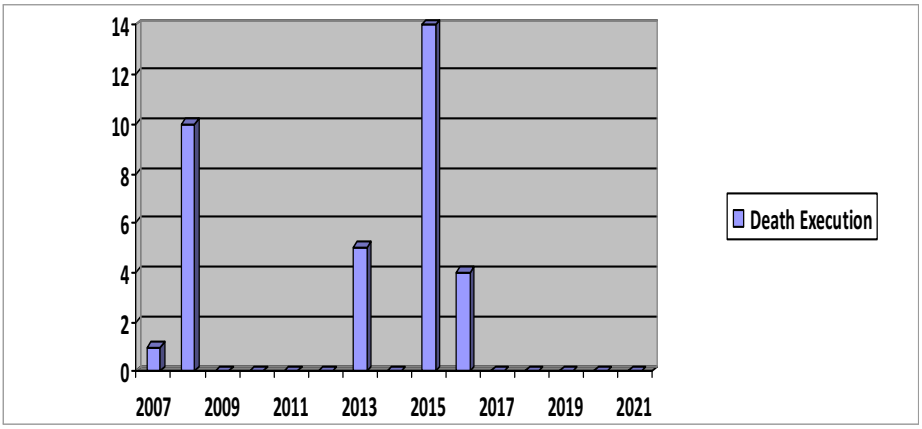
아동을 마약의 생산, 밀매 또는 사용에 동원한 경우(인도네시아 아동보호법 제89조), 향정신성 약물을 조직적으로 소지하거나 또는 남용한 경우(인도네시아 향정신성 약물법 제59조), 국가경제나 또는 금융에 유해한 부정부패 중 일부행위(인도네시아 부정부패법 제2조) 등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범행당시 18세 미만이거나(인도네시아 형법 제78조 제1항), 임신부와 정신질환 또는 정신박약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4조).[432]

430) 이덕인, 앞의 논문, 129면
431) 이덕인, 앞의 논문, 129면
432) 이덕인, 앞의 논문, 129면.

(나) 사형집행과 선고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인도네시아에서의 사형 집행은 2007년에 1명, 2008년에 10명, 2013년에 5명, 2015년에 14명, 2016년에 4명이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사형 집행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증가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상황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현재 인도네시아는 마약범죄와 관련해서 비상 상황에 처해 있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2015-2016년 조코 위도의 초기 집권당시 18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433]

[표 3-1-3] 인도네시아에서의 사형의 집행(2007-2021. 6.)[434]



아래 표로부터 집행 대기 중인 15명의 사형 확정자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사형 확정에 대해 다툴 더 이상의 법적 대응 수단이 없기 때문이며, 사법적 심사와 감형 청구가 기각되었다. 15명의 사형 확정자 가운데 6명은 외국인으로 인디아, 중국, 프랑스 인이고, 나머지 9명은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 절도 범행 중 사람을 치사한 경우, 계획적 살인(모살)을 저지른 경우였다.[435]

433)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3면.
434) 인도네시아 검찰청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가공했음
435)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4면.

[표 3-1-4] 사형 집행 대기 사례[436)]

NO	사형수 이름 (Convict's Name)	국적 (Nationality)	위반 법률 (Criminal Act)	District/ High Prosecutor General	Explanation
1.	2.	3.	4.	5.	6.
1.	GURDIP SINGH Als. VISHAL	INDIA	마약 (단속)법 (Narcotics) (Heroin)	Tangerang (KT. Banten)	사법심사와 감형청구 기각(Judicial Review and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2.	CHEN HONGXIN	CHINA	향정신성약물 (단속)법(Psychotropic)	Tangerang (KT. Banten)	Judicial Review and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3.	GAN CHUNYI	CHINA	Psychotropic	Tangerang (KT. Banten)	Judicial Review and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4.	JIANG YUXIN	CHINA	Psychotropic	Tangerang (KT. Banten)	Judicial Review and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5.	ZHU XU XHIONG	CHINA	Psychotropic	Tangerang (KT. Banten)	Judicial Review and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6.	SERGIE ARESKI ATLAOUI	PERANCIS	Psychotropic	Tangerang (KT. Banten)	Judicial Review and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7.	A YAM	INDONESIA	Psychotropic (Ekstasy)	Karimun (KT Kepri)	Judicial Review and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8.	JUN HAO Als. VASS LIEM Als. AHENG	INDONESIA	Psychotropic (Ekstasy)	Karimun (KT Kepri)	Judicial Review and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9.	BENNY SUDRAJAT Als. BENNY OEY Als. TANDI WINARDI	INDONESIA	Psychotropic	Tangerang (KT. Banten)	Judicial Review and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436) 인도네시아 검찰청 자료

NO	사형수 이름 (Convict's Name)	국적 (Nationality)	위반 법률 (Criminal Act)	District/ High Prosecutor General	Explanation
1.	2.	3.	4.	5.	6.
10.	HARUN Bin AZIZ	INDONESIA	가중절도 (사망 야 기) Weighted Theft (cause death)	Merangin (KT. Jambi)	Judicial Review and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11.	SARGAWI Als. AWI Bin SANUSI	INDONESIA	Weighted Theft (cause death)	Merangin (KT. Jambi)	Judicial Review and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12.	SYOFIAL Als. IYEN Bin AZWAR	INDONESIA	Weighted Theft (cause death)	Merangin (KT. Jambi)	Judicial Review and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13.	SARIDI Als. RIDI Bin RATMAN	INDONESIA	모살 (Premeditated Murder)	Purbalingga (KT. Jateng)	Judicial Review and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14.	BAMBANG PONCO KARNO Als. POPONG Bin SUDARTO DAUD EFFENDI	INDONESIA	모살 (Premeditated Murder)	Banjarmasin (KT. Kalsel)	Judicial Review and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15.	I PUTU SUAKAAls. KETEG	INDONESIA	모살 (Premeditated Murder)	Karangasem (KT. Bali)	Judicial Review and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아래 표로부터 34명의 사형수가 몇 가지 이유에서 아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와 다른 미결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거나, 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거나, 사법심사(judicial review) 절차에서 아직 사법심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감형선고절차에서 아직 감형 선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아래 표에서 법익을 침해한 범죄행위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즉 마약범죄 7건, 향정신성의약품범죄 2건, 계획적인 살인(모살) 25건이다. 34건의 사형 선고 범죄자 가운데 단지 4명만이 필리핀인과 나이지리아 인인 외국인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이고, 30명은 인도네시아 인이 저지른 범죄이다.[437]

437)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표 3-1-5] 사형 선고 사례[438)]

1.	MARY JANE FIESTA VELOSO	PHILIPINA	Narcotics (Heroin)	Sleman (KT. DIY)	사법심사와 감형 청구 기각 (Judicial Review and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사형선고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 사건 재판 진행 중 (the convict has links to other cases)
2.	PUJO LESTARI Bin KATENO	INDONESIA	Psychotropic (Ekstasy)	Batam (KT Kepri)	Judicial Review and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 (the convict has links to other cases)
3	AGUS HADI Als. OKI	INDONESIA	Psychotropic (Ekstasy)	Batam (KT Kepri)	Judicial Review and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 (the convict has links to other cases)
4.	SUGIANTO Als. SUGIK	INDONESIA	Premeditated Murder	Surabaya (KT. Jatim)	Judicial Review and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suspected mental illness)
5.	RUBEN PATA SAMBO Als. NE'PATA	INDONESIA	Premeditated Murder	Tana Toraja (KT. Sulsel)	Judicial Review and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 (the convict has links to other cases)
6	PUTU ANITA SUKRA DEWI	INDONESIA	Premeditated Murder	Denpasar (KT. Bali)	Judicial Review and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 (the convict has links to other cases)
7.	SAKAK Bin JUMAK	INDONESIA	Premeditated Murder	Tembilahan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158/G/Tahun 2000). – Haven't submitted Judicial Review

438) 인도네시아 검찰청 자료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8면

8.	KUSDARMANTO Bin NGATMAN	INDONESIA	Premeditated Murder	Kab. Magelang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 Haven't submitted Judicial Review
9.	RAMADHAN GUMILAR ALIAS GUGUM BIN (ALM) SAIMIN	INDONESIA	Premeditated Murder	Tangerang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Haven't submitted Judicial Review.
10.	YADI MULYADI Als BULE Bin DADANG,	INDONESIA	Premeditated Murder	Sukabumi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 Haven't submitted Judicial Review
11.	RAMADHAN GUMILAR ALIAS GUGUM BIN (ALM) SAIMIN	INDONESIA	Premeditated Murder	Tangerang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Haven't submitted Judicial Review.
12.	TAN JONI Als. ASENG	INDONESIA	Premeditated Murder	Tanjung Balai Karimun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Haven't submitted Judicial Review
13.	WALUYO Bin RESOSENTONO	INDONESIA	Premeditated Murder	Lampung Barat (KT Lampung)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 Haven't submitted Judicial Review
14.	YULIANTO BIN WIRO SENTONO	INDONESIA	Premeditated Murder	Sukoharjo (KT Jateng)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 Haven't submitted Judicial Review
15.	SAMSUL BAHRI alias EDI bin ASKARIK	INDONESIA	Premeditated Murder	Kab. Magelang (KT Jateng)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 Haven't submitted Judicial Review
16.	ARIS SETYAWAN	INDONESIA	Premeditated Murder	Tg. Perak (KT Jatim)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 Haven't submitted Judicial Review
17.	MIARTO bin PAININ	INDONESIA	Premeditated Murder	Probolinggo (KT Jatim)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 Haven't submitted Judicial Review
18.	RUDI SISWANTO ALIAS LODEK BIN SUWANDI	INDONESIA	Premeditated Murder	Kn. Banjar Baru (KT. Kalsel)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 Judicial Review on process.

19.	MARLIN JIDAN BIN JIDAN	INDONESIA	Premeditated Murder	Kn. Palangkarya (KT. Kalteng)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 Haven't submitted Judicial Review
20.	YADI MULYADI Als BULE Bin DADANG,	INDONESIA	Premeditated Murder	Sukabumi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 Have not applied for Judicial Review
21.	MUHAMMAD VERY MAULANA HIDAYATULLLOH ALS. VERY BIN UNTUNG SUJADI	INDONESIA	Premeditated Murder	Purwakarta	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 Haven't submitted Judicial Review
22.	SAMSUL ALAMSYAH KASTAM ALIAS ALAM	INDONESIA	Premeditated Murder	KN. Halmahera Barat (KT. Malut)	감형 청구 기각, 사법심사 청구 포기(Commutation of Sentence Rejected – Haven't submitted Judicial Review)
23.	SUCIPTO Pgl. CIPTO	INDONESIA	Premeditated Murder	Payakumbuh	Judicial ReviewRejected – Have not applied for Commutation of Sentence.
24.	H. NUR HASAN YOGI MAHENDRA BIN H. ABDUL JONI	INDONESIA	Premeditated Murder	KN. Lamongan	Judicial ReviewRejected – in Commutation of Sentence process
25.	GAUNDENSIUS RESING ALIAS DENSI	INDONESIA	Premeditated Murder	KN. Maumere	Judicial ReviewRejected 감형절차 진행 중 (in Commutation of Sentence process)
26.	AGUSTINUS SAMBO Als. AGUS Als. MARKUS Als. HERMAN	INDONESIA	Premeditated Murder	Tana Toraja	Judicial ReviewRejected – in Commutation of Sentence process
27.	MARKUS PATA SAMBO Als. MARKUS	INDONESIA	Premeditated Murder	Tana Toraja	Judicial ReviewRejected –Have not applied for Commutation of Sentence
28.	HERU HENDRIYANTO ALIAS E'EN ALIAS KOMANG	INDONESIA	Premeditated Murder	Denpasar	Judicial ReviewRejected –Have not applied for Commutation of Sentence

29.	OKONKWO NONSO KONGLEYS	NIGERIA	Narcotics (Heroin)	Medan	Judicial ReviewRejected –Have not applied for Commutation of Sentence
30.	FEDERIKK LUTTAR	NIGERIA	Narcotics (Heroin)	Jakarta	사법심사청구 기각 (Judicial ReviewRejected) 감형청구 포기 (Have not applied for Commutation of Sentence)
31.	EUGENE APE	NIGERIA	Narcotics (Heroin)	Jakarta	Judicial ReviewRejected – Have not applied for Commutation of Sentence
32.	OBINNA NWAJGU	NIGERIA	Narcotics (Heroin)	Tangerang	Judicial ReviewRejected – Have not applied for Commutation of Sentence
33.	OZIAS SIBANDA Bin EDMOND	NIGERIA	Narcotics (Heroin)	Tangerang	Judicial ReviewRejected – Have not applied for Commutation of Sentence
34.	ENRIZAL Als. BUYUNG bin SULTAN MARUH	INDONESIA	Narcotics (Heroin)	Lampung	Judicial ReviewRejected – Have not applied for Commutation of Sentence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2012년 6월 18일에는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사형수 2명이 자신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된 인도네시아 형법 제354조 등에 대한 위헌 여부 검토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해당 조문들은 2인 이상의 공모를 하여 절도를 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9월 27일,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마약관련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해당범죄를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세계 인권선언 제3조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헌법 제28(A)조에서 규정된 인간의 살 권리에 반한다는 것을 파기이유로 하였다.[439]

439) 이덕인, 앞의 논문, 130면.

〈불안정한 사형집행〉

2008년 이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 2013년에 들어 집행을 재개하였다. 법무부는 처음에 최소한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포함된 사형수 12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예고하기도 하였다. 2013년 3월 14일에는 마약거래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말라위 국적의 외국인 사형수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후, 사법장관은 연내에 최소한 9명을 더 처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그 중 3명은 마약과 관련 혐의로, 그 외 나머지 6명은 계획적인 살인혐의로 하여 사형을 판결 받았다. 그와 관련한 대상자 성명, 처형일자와 관련한 구체적 정보는 없었다. 또한 그들의 상소는 모두 기각되었다.[440]

사형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다른 관점이 이중적으로 존재한다. 자국 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집행은 거리낌이 없으면서 자국민이 외국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형집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해외에 사형수로 있는 인도네시아 자국민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서 특별전담반을 만들기도 하였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자국민이 해외에서 많이 정착하여 노동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는 사형수 석방을 요청하기도 하였다.[441]

2019년 새로 임명된 검찰총장은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통계를 보면 복역 중인 인도네시아 사형수는 2018년 말 기준으로 308명이다. 2020년 상반기에만 약 100명의 마약사범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과 2016년 외국인 등 마약사범 18명의 사형을 집행한 뒤 4년째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442][443]

(다) 사형제도 찬반론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는 법규의 존재에 대하여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는데, 특히 인권운동가와 인권단체들은 범죄자에 대하여 사형을 형

440) 이덕인, 앞의 논문, 131면.
441) 이덕인, 앞의 논문, 131면.
442) KBS NEWS, 2019.10.29., "글로벌24 현장: 인도네시아, 사형집행 재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12692〉 (최종검색일: 2021.5.2.)
443) 연합뉴스, 2020.7.3., "인도네시아 마약사범 100명 사형선고…경찰청장 "속히 집행되길",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3081800104〉 (최종검색일: 2021.5.2.)

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사형반대론자들은 사형의 집행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왔다. 사형 반대론자 그룹은 사형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고문, 기타 잔인하고 반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우 또는 처벌에 반대하는 조약(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와 같은 인도네시아가 비준한 국제조약이나 국제법적 수단, 인도네시아 헌법과 1999년 인권법률 제39호(Law No. 39 on Human Rights)와는 모순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고려를 반영한다면 사형은 인도네시아 국내법 체계에서 형벌로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사형 찬성론자 그룹은 사형제도의 운용은 범죄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사형 집행의 위하효과를 통해서 잠재적인 범죄자인 사회 일반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심어준다고 한다. 사형은 명백하게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사형 찬성론자들도 사형은 아주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선택적,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보복을 위한 형벌로서 입법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444]

헌법과의 관계에서 오늘날까지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MK")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몇 건의 사형 관련 사건들이 있다. 사형과 관련해서 적어도 두 건 이상의 사법심사의 적용 사례가 있었는데 1945년 헌법(the 1945 Constitution)에 대한 1997년 마약법률 제22호(Law No. 22 of 1997 on Narcotic)에 대한 사법심사와 함께 대법원법(the Supreme Court Law), 사법권법(the Judicial Power Law), 사면법(the Pardon Law)에 의해 규율되는 대통령에 의한 사면의 고려와 관련한 규정에 대한 사법심사가 그것들이다.[445]

나아가 인도네시아 형법개정안(the Indonesia Draft Bill on Criminal Code, "RKUHP")은 사형 규정이 선택적이고 제한적이라도 여전히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15개 조항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형에 관련된 또 하나의 주제는 정직하고 공정한 재판의 문제인데, 법원의 형사절차 진행이 정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가에 대

444) For instance, the opinion from Edward OS Hiariej and Marcus Priyo Gunarto from the Faculty of Law of Gadjah Mada University.

445)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9면.

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446]

(라) 사형제도 분석과 검토

첫 번째로, 생명권은 인도네시아 헌법에서 인정되고 있는데, 특히 1945년 인도네시아 헌법 제28I(1)조에서 생명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불가침적 권리로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헌법상의 생명권 관련 규정은 많은 국제규범과도 합치하는데,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국제규약(ICCPR)과도 같은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생명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다는 "생명권(the right to life)"에 대한 해석은 1945년 헌법 제28J(2)조에tj 규정된 것처럼 침해될수 있고, 제한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of Indonesia, Mahkamah Koctitusi)의 결정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사형의 실행을 강화하는 입법은 생명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될수 없다는 권리 보장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447]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법규들이 식민지배 시기와 신질서(New Order)인 독립 초기에서의 법률과 같이 여전히 사형을 규정하여 운용해오고 있었고, 지금까지 적절하게 시정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대한 심사와 통제, 시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것이 기대할만 하다.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많은 법규들은 국제적 인권규범의 발전과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수용으로 그 법적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사형 조항의 법적 정당성을 의심받는 법률로는 형법, 군형법, 1976년 민간항공법률 제4호(Law No. 4 of 1976 on Civil Aviation), 1976년 마약법률 제9호(Law No. 9 of 1976 on Narcotic), 1997년 향정신성의약품법률 제5호(Law No. 5 of 1997 on Psychotropic) 등이 있다. 이들 법률에서의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쟁의 근거는 인권을 중시하는 인도네시아의 태도와 합치하게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도록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448]

세 번째로, 1998년 이래의 인도네시아의 개혁기(the Rformasi period)에 인도네시아

446)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2021, 9면.
447)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9면.
448)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10면

에서는 인권의 존중과 보호, 실현, 증진을 위해서 확실한 논의 없이 사형을 규정하고 운용하는 더욱 많은 수의 법률 또는 법 조항이 도입되었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국제적 인권규범의 발전,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가 비준했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국제규약(ICCPR)은 인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내법의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국제적 인권규범에 의해 사형의 윤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는 것을 방기하는 것에서 명백한데, 국제적 인권규범의 요구 조건이 인도네시아의 입법자로 하여금 사형이 형벌로 적용되는 범죄목록에 대해서 적절하게 고려하도록 이끌지는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9년 부패범죄척결법률 제31호 Law No. 31 of 1999 on the Eradication of the Crime of Corruption), 2000년 인권법원법률 제26호(Law No. 26 of 2000 on Human Rights Court), 2003년 테러박멸법률 제15호(Law No. 15 of 2003 on Eradication of the Crime of Terrorism), 그리고 2009년 마약법률 제35호(Law No. 35 of 2009 on Narcotic) 등의 법률이 이 상황을 잘 보여준다.[449]

네 번째로, 인도네시아에서 사형과 관련된 규정들의 내용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사형이 적용되는 다양한 범죄들에 대해 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정도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아직도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못하고 형벌로 운용하는 국가들에서는 가장 중대한 범죄들에 대해서만 사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ICCPR 제6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의 사형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것은 그렇게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지 않는 범죄들, 예를 들면 2009년 마약 및 향신정의약품에 관한 법률 제35호(Law No. 35 of 2009 on Narcotic and Psychotropic)의 사형과 관련된 규정들에서 명백히 알 수 있다. 비슷한 상황은 국제규범의 발전과 국제적 형사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범죄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량학살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갖는 2000년 인권법원법률 제26호(Law No. 26 of 2000 on Human Rights Court)에서 사형이 적용되는 범죄로 기소되지 않는 것에서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반면 국제법에 의하면, 특히 1998년 국제형사법원에 관한 로마조약(the Rome Statute o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서는 테러범죄는 가장 중대한 범좌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450]

---

449)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10면.
450)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다섯 번째로, 그때그때의 비상 상황을 이유로, 예를 들면 마약과의 전쟁 상황, 성범죄와의 전쟁 상황 등에서 사형법안과 사형법률이 양산된다. 한편 비상 상황과 관련된 법규정에 대해 ICCPR 재4조는 비상 상황으로 보아야 할 구체적인 이유, 비상수단을 사용해야 할 정형적 이유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예를 들면 마약범죄와 관련한 비상 상황은 사형 판결과 그 집행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비슷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야기되는 비상 상황을 극복한다는 이유로 마련된 법률, 2016년 정부규제법률 제17호, 2016년 제2개정법률 제1호와 같은 정부규제법률과 2002년 아동보호법률 제23호 등의 새로운 규제로부터도 볼 수 있다.[451]

(2) 마약범죄

(가) 마약범죄와 사형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와 관련한 논의는 상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고려되는 입법화 과정에 있는 많은 법안에 대한 논쟁을 포함한다. 그러한 논쟁은 사형을 설정한 법률 규정에서 왜 사형이 그 죄형 규정에서 정당화되는가에 대한 논쟁임을 보여준다. 사형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은 그러한 범죄가 가장 중대한 범죄로서 사형을 규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정당화되는 것은 단지 수개의 법률에서만 발견된다.[452]

한편 2009년 마약법률 제35호에서는 사형이 마약 남용자, 마약 상용자, 불법 마약 유통자에 대한 억지 효과 설정의 일부로서 규정되었다. 불법 마약 유통자에 대한 사형규정의 설정은 마약의 유통이 국민의 생활 및 건강과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광범위한 위험을 초래하고, 종국에는 국가의 안전과 안정에 대한 회복력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453] 정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 규정은 인간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황폐화시킬 것을 의도하는 반인간적 범죄로서 간주되기 때문에 필요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10면.

451)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11면.

452)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11면.

453) Indonesia, Law No. 35 of 2009 on Narcotic, General Elucidation

하다고 주장한다.[454] 이러한 몇 가지 이유가 마약 관련 범죄들에 대한 사형 설정의 근거가 되었지만 이것은 더 이상 마약밀매를 중대한 범죄로 분류하지 않고 따라서 사형이 부과될 수 없다는 국제법규의 발전과는 부합하지 않는다.[455]

개혁기(Reformasi period) 이후에 1997년 마약법률 제22호(Law No. 22 of 1997 on Narcotic)에 대한 개선 주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 법률에 대한 대한 가장 주목할 만 한 개정 움직임의 하나는 마약범죄와 전(前) 단계 마약범죄를 조사, 수사하는 부처급 정부기관이 아닌(non-ministry government institution, Lembaga Pemerintah Non Kementerian-"LPNK") 기관인 국가마약국(the National Narcotic Agency)의 지위 승격이다. 2009년 마약법률 제35호에 의하면 사형은 마약남용자, 마약유통자, 전 단계 마약물 범죄자에 대한 억지 효과를 얻기 위한 노력의 한 부분으로서 규정된 것이었다. 1997년 마약법률 제35호와 부합하게 마약범죄에 대한 사형, 특히 마약유통자에 대한 사형은 마약 유통 행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광범위한 손상과 위협을 초래하고, 종국에는 국가의 안전과 안정에 대한 회복력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456]

마약범죄에 대한 사형 규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마약범죄가 인간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킬 의도를 가진 반인간적 범죄로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마약범죄에 의해 인간의 모든 지능과 마음은 개인적, 집단적 욕구와 이익을 위해 광범위하게 손상을 입는다.[457] 그리고 나서 정부는 마약범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더 이상 문명과 문화에 대한 건설자 또는 창조자로서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속적으로 생명 질서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458] 따라서 마약범죄는 언제나 사형을 포함한 엄혹한 형벌로 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459]

인도네시아의 마약 소지 및 투약에 관한 처벌은 마약군과 중량에 따라 다소 상이하

454)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No. 2/PUU-V/2007, pg. 131.
455)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11면.
456) Indonesia, Law No. 35 of 2009 on Narcotic, General Elucidation
457) Indonesia Constitutional Court, Case Decision No. 2/PUU-V/2007, pg. 131.
458) Ibid
459)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12면.

나 「마약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9년 제35호」에 따라 최장 12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80억 루피아(한화 약 6억 8,32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최장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의 1/3까지 가중할 수 있다.[460] 인도네시아에서 사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마약범죄자와 향정신성약물범죄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다.

[표 3-1-6] 사형 선고 및 집행에 대한 개요[461]

No.	Criminal Act	Number
1	2	3
1	마약범죄(Narcotics)/향정신성약물(Psychotropics)	107
2	살인(Murder)	105
3	테러(Terrorism)	4
Total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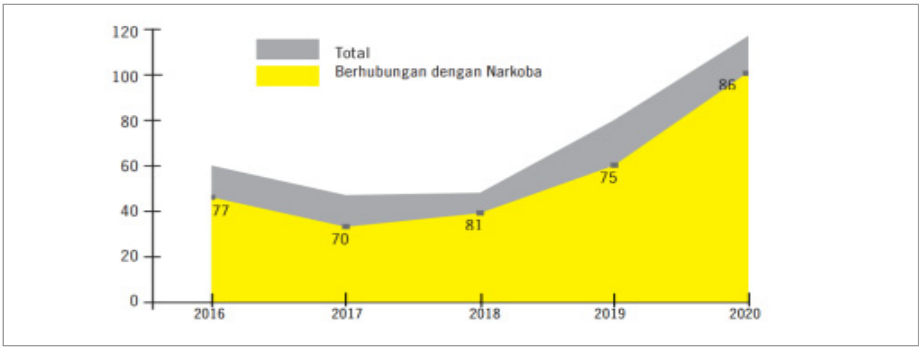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검찰청의 자료는 전체 사형수 가운데 마약범죄와 향정신성약물범죄가 종국적 법적 물리력으로서의 사형을 선고, 집행받은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107명의 범죄자가 마역 또는 향정신성 의약물 관련 범죄로 사형을 부과받았고, 두 번째로 살인범죄로 105명의 범죄자가 사형을 부과받았으며, 세 번째는 테러범죄로 4명의 범죄자가 사형을 부과받았다.[462]

460) 세계법제정보센터, 법제동향: 마약 범죄에 대한 국가별 처벌, 2019.8.28.,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pageIndex=undefined&CTS_SEQ=48385&AST_SEQ=3891&ETC=1〉 (최종검색일: 2021.5.2.)

461) 인도네시아공화국 검찰청 자료

462)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13면.

[표 3-1-7] 2016년-2020년 인도네시아에서의 신규 사형 선고 건수[463]



인도네시아에서 2020년 상반기에만 약 100명의 마약사범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464] 인도네시아는 마약류 소지만으로도 최장 20년형에 처하며,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종종 사형을 선고한다. 이 때문에 발리섬 등 휴양지에서 마약에 손댔다가 중형을 선고받고 탈옥을 시도한 외국인도 잇따랐다. 2018년 마약을 들여오다 롬복섬에서 체포된 프랑스인은 경찰을 매수해 쇠톱으로 유치장 창살을 잘라내고 탈옥했다가 열흘 만에 숲에서 체포됐고, 징역 19년형을 선고받은 뒤 쇳조각으로 감옥 벽에 구멍을 파다 발각돼 독방으로 옮겨졌다. 2019년 4월 발리섬에서 신종마약을 국제우편으로 받았다가 체포된 러시아인은 유치장 화장실 창문으로 탈주했다가 이틀 뒤 한 가정집 정원 배수로에서 체포됐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2015년과 2016년 외국인 등 마약사범 18명의 사형을 집행한 뒤 4년째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2019년 10월 취임한 검찰총장이 '사형 집행 재개' 방침을 내놓아 사형수들이 떨고 있으나 현재까지 집행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인도네시아 형사사법개혁연구소(ICJR)에 따르면 수감자 가운데 274명이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가운데 60명은 10년 이상 복역 중이다. 20년 이상 복역자도 5명이 포함돼 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판사들이 2018년 48명, 지난해 80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대부분 마약사

463)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2020

464)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연말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누적 사형수는 113명으로 절반 이상이 마약밀매와 관련되었고, 그 대부분은 외국인들이다. 그러나 2011년 12월, 자국의 한 인권변호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그해 사형집행이 없었음을 감안할 때 국제사면위원회의 통계를 훨씬 상회하여 160~17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12년 10월까지 725명의 피고인이 하급심의 사형판결에 대하여 항소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덕인, 앞의 논문, 128면)

범이다.[465]

2021년 인도네시아에는 경찰에 의해 사살된 마약밀매 용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사망자 수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웃 국가 필리핀의 살인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모방하는 시도일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경찰에 사살된 마약밀매 용의자 수는 60명 이상이다. 인도네시아 국립마약청(BNN)에서 파견된 인원도 이러한 강경 단속에 동참했다. 2016년 한 해, 총 사살자가 18명이었던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466]

인도네시아공화국 검찰청 자료는 또한 전체 사형수 가운데 마약과 향정신성약물 관련 범죄들에 대한 사형 선고 건수(노란색 영역)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자료와도 일치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마약범죄와 향정신성약물범죄에 대한 사형 선고의 증가 경향이 있어 왔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의 법과 사법이 여전히 마약류와 향정신성약물에 대한 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467]

[표 3-1-8] 인도네시아에서의 마약범죄율(Rate of Crime on Narcotis In Indonesia)[468]

No	기관(Institution)	연도(Year)	기소 건수 (Number of Cases)	혐의 건수 (Number of suspects)
1	2	3	4	5
1.	국가마약단속국(BNN)-지방[National Anti-Narcotics Agency Province/ Badan Narkotika Nasional (BNN) Province]	2018	964	1.352
		2019	797	1.151
2.	국가마약단속국(BNN)-중앙[National Anti-Narcotics Agency Center/ Badan Narkotika Nasional (BNN) Center]	2018	78	204
		2019	70	160

465) 연합뉴스, 2020.7.3.,"인도네시아 마약사범 100명 사형선고…경찰청장 "속히 집행되길",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3081800104〉 (최종검색일: 2021.5.2.)

466) 국제앰네스티, 2017.8.22.,"인도네시아: 경찰에 사살된 마약범죄 용의자 최소 60명 이상으로 급증", 〈https://amnesty.or.kr/22196/〉 (최종검색일: 2021.5.2.)

467)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13면.

468) 국가마약단속국(BNN) [National Anti-Narcotics Agency/ Badan Narkotika Nasional (BNN)]

2018년에 80건의 사형 선고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60건은 마약범죄였고(75%), 그 60건 가운데 52건은 인도네시아 국민(WNI), 8건은 외국인이 저질렀다. 앞의 80건 가운데 18건은 살인범죄자였고, 1건은 아동강간범죄이었으며, 1건은 테러범죄였다. 사형 선고 건수의 이러한 증가는 마약 남용 건수나 마약 밀매 건수의 증가에 기인한다기보다는 마약범죄를 비상적이며 매우 중대한 범죄로 재판한 법관들의 엄중한 형벌 부과에 기인한다. 적어도 이것은 범죄의 중대성의 문제(질의 문제)이지 범죄율의 문제(양의 문제)는 아니다.[469]

양의 문제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에서 마약 관련 범죄 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형 선고 건수가 증가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방국가마약국(the Provincial National Narcotics Agency, BNN)은 2018년 마약범죄 혐의 건수 1352건에 기소 건수 964건에서 2019년에는 혐의 건수 1151건에 기소 건수 797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중앙국가마약국(Central BNN)의 자료도 2018년의 마약범죄 혐의 건수 204건에 기소 건수 78건에서 2019년에는 혐의 건수 160건에 기소 건수 70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470]

[표 3-1-9] 인도네시아 국민의 마약 사용률(Narcotics Prevalence Rate in Indonesia)[471]

No	연도(Year)	마약사용률(Prevalence Rate)
1.	2011	2,23%
2.	2014	2,18%
3.	2017	1,77%
4.	2019	1,80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마약범죄의 경향은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마약을 사용해 온 사람들이 마약을 끊고 더 이상 마역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2019년 말에 국가마약국(BNN)은 마약범죄자가 기존의 435만 명(2.40%)에서 0.6% 감소한 341먼 명(1.80%)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국가마약국(BNN)은 거의 1백여만 명

469)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14면.
470)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14면.
471) National Anti-Narcotics Agency/ Badan Narkotika Nasional (BNN)

의 인도네시아인이 마약으로부터 구제되었다고 밝혔다.[472]

(나) 마약관련 입법 논쟁

1961년 조약 스케줄 Ⅳ(Schedule Ⅳ of the 1961 Convention)에서 칸나비스(Cannabis)와 칸나비스 수지(Cannabis Resin)를 빼서 1961년 조약 스케줄 Ⅰ에 두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따르기 위한 국제연합 마약위원회의 결정, 마약위원회(the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CND)의 결정은 국제사회,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모순이 되고 있다.[473]

많은 수의 인도네시아 보건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는 세계보건기수(WHO)의 권고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칸나비스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언급된 칸나비스와 칸나비스 수지는 향정신성(사람의 기분을 변화시키거나 인지 기능을 왜곡하는 작용)이 없고, 의존의 가능성이 없으며, 특정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THC(tetrahydrocannabinol).CBD라기보다는 높은 CBD 비율을 가진 것이다. 의료용 칸나비스 식물은 THC 레벨보다는 CBD 레벨을 더 높인 식물을 얻기 위해 유전적으로 조작된 칸나비스 식물이다. 유감스럽게도 인도네시아(동남아시아) 산 마리화나는 다른 나라들에서 생산되는 마리화나에 비해 낮은 함량의 CBD와 높은 함량의 THC를 보유하고 있다.[474]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칸나비스와 칸나비스 수지를 2급마약이나 3급마약으로 국제마약위원회(CND)의 결정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결정 태도는 오락 목적의 칸나비스와 칸나비스 수지의 사용은 향정신작용을 야기하고, 다른 마약류 남용의 계기가 된다고 주장한 KK Pharmacokimia ITB School of Pharmacy의 Rahmana Emran Kartasasmita 박사에 의해 제출된 답변서에 의해 더 강화되었다. BNN Cooperation 대표 Achmad Djatmiko 박사는 인도네시아에서의 마약 남용 및 불법매매상황과 조건에서 마약 문제를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도적 부문으로서 BNN

472)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15면.
473)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15면.
474)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15면.

에 의해 취해지는 확고한 입장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특히 마리화나는 광범위하게 유통, 사용되고 있고, 마리화나를 불법마약으로 입법화하려는 노력은 2009년 마약법률 제35호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475]

(3) 재외국민 범죄피해

인도네시아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유형에는 절도 피해와 사기 피해 등이 있다. 절도 피해와 관련하여는 관광지에서 외국인이 차량좌석에 소지품을 내려놓고 관광하는 사이 차량 유리를 파손하고 절취해가는 사례, 차량 서행 지역에 날카로운 쇠붙이를 뿌려놓고 타이어 펑크가 나면 외국인이 하차하여 타이어를 교체하는 사이,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차량 문 열고 소지품을 훔쳐가는 사례, 외국인이 호텔 체크인 와중에 소지품을 로비 탁자에 두고 깜빡 잊고 투숙한 경우, 소지인을 사칭한 사람이 프론트 데스크에 전화를 해 자신의 소지품을 로비에 두고 왔다고 한 다음 다른 사람을 보내 유유히 찾아간 절취 사례, 외국인이 현지 식당에서 식사하며 탁자 위에 짐들을 올려놓고 TV 보며 한눈파는 사이 현지인이 지나가며 집어 들고 가는 사례, 쇼핑몰 커피숍에서 소지품을 탁자 밑에 놓고 외국인끼리 대화하는 사이 현지인 2-3명이 지나가며 일행 중 일부는 소지인의 시야를 가리고 다른 일행이 소지품을 들고 사라지는 사례, 쇼핑몰 제과점에서 외국인이 주문하는 사이 탁자 위에 놓인 소지품을 절취 도주하는 사례, 버스 안에 앉아 있는 외국인 좌석으로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는 시늉을 하는 현지인을 부추기는 사이 따른 현지인 일행이 동 외국인의 핸드백을 열고 지갑을 절취한 후 하차 도주한 사례, 도보로 출근하는 외국인을 오토바이로 뒤따라가다가 손에든 소지품을 낚아채 달아나는 사람, 현지 로컬 인도네시아 여성들과의 결혼, 특히 나이 60이상 넘은 한국인들의 경우 결혼 생활을 하다 적지 않은 의문사 또는 각종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 등이 있다.[476]

사기 피해와 관련하여는 수출입자간 이메일을 해킹한 자가 프랑스 소재 수출회사 내부 사정을 가장하여 수입업자인 타국인에게 이메일을 보내도록 하여 복사기 수입대

475)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16면.
476)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가/지역별 정보: 필리핀 사건·사고.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181〉 (최종검색일: 2021.5.2.)

금을 인도네시아 소재 은행 계자로 송금하도록 유인 사취한 사례, 자카르타 소재 UNHCR 직원을 사칭한자가 유엔난민을 위한 한국 이주 프로그램이 있다며 송금하도록 이메일 사기 시도한 사례, 인도네시아 소재 항공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현지인에게 속아 교육비 등을 사취 당한 사례, 인도네시아 현지 여행사 가이드가 본인 돈으로 이미 지불했다며 이메일 보내준 위조된 숙박 및 현지 여행예약 영수증에 속아 비용을 사전에 송금하여 사취 당한 사례, 영국 거주 시한부 암환자를 사칭한 여성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자신인 재산을 기부하겠다며 인도네시아 소재 변호사에게 일임했으니 동 변호사와 연락하라며 이메일 등 연락처 제공, 동 변호사는 우선 기부금 송금 수수료로 수백 달러를 요구하는 등 사기시도 사례, 수년전 나이지리아 공사 대금 중 미불된 수백 만 달러를 인도네시아 계좌로 송금할 테니 송금비용을 우선 지급하라는 이메일에 속아 수천 달러 송금하여 사취 당한 사례, 뱀가죽 원단 수출업자를 사칭하는 인도네시아 현지인 이메일에 속아 원단 선적대금 선불하여 사취 당한 사례, 호주, 영국, 아프리카 등에서 메일이나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 행운의 복권이나 로또에 당첨 됐다고 수속 수수료 선불 입금한 사례 등이 있다.[477]

(4) 강제실종

강제실종은 늘 인권운동가들의 큰 관심을 끌어온 문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Kontras Institute for Community Studies and Advocy(ELSAM)을 포함하여 강제실종 사건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몇 개의 비정부기구(민간단체)가 있다. 인도네시아 역사에 있어서 강제실종 사례는 종종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곤 하였다. 수하르토(Soeharto) 대통령 집권 기간에 강제실종은 독재의 틀 속에서의 정치적 안정과 (구심점이 없는) 부동적(浮動的) 대중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강제실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적 우산은 납치범죄와 함께 형법에서 규율되었다. 그러나 개혁 후에 1999년 인권과 관련한 법률 제39호(Law No. 39 of 1999 concerning Human Rights)과 2000년 인권법원과 관련한 법률 제26호(Law No. 26 of 2000 concerning Human Rights Courts)에 의해 강제실종에 대한 법적 규제가 틀이 잡히게 되었다.[478]

---

477) 장준오,·이완수·최호림·홍석준,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피해실태와 보호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4, 55-56면.

478)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표 3-1-10] 인도네시아에서의 강제실종 사건(Enforced Disappearance Case in Indonesia)[479]

No	사건(Case)	연도(Year)	실종자 수 (Number of People)
1	2	3	4
1.	1965년-1966년 상의 비극 (Tragedy 1965-1966)	1965-1966	32.774
2	의문의 살인=Mysterious murder (Petrus)	1982-1985	23
3.	탄중 프리옥 대량학살 (Tanjung Priok massacres)	1984	15
4.	탈랑사리 사건 (Talangsari Incident)	1989	235
5.	운동가들 납치 사건 (Activists were kidnapped)	1997-1998	13
6.	아체 지역 갈등 (The conflict in Aceh)	1989-1998	1.935
7.	동티모르 사건 (East Timor Incident)	1975-1999	18.600
8.	파푸아에서의 군사작전지역(Military Operations Area (DOM) in Papua)	1965-2001	알려지지 않음 (not known for sure)

구질서기(Old Order era, 1965-1966 Tragedy)의 권위주의 통치 기간에 3만2774명이 강제실종의 희생자가 되었다. 신질서기(New Order era)인 1982년-1985년 사이에 의문의 발포 사건(Petrus)으로 23명이 강제실종의 희생자가 되었으며, 1984년 Tanjung Priok 대량학살 사건으로 15명이 또한 강제실종의 의생자가 되었고, 1989년에는 사건의 경위와 내막이 잘 알려지지 않는 Talangsari 사건으로 235병이 죽거나 행방불명되었으며, 1997년-1998년 사이에는 23명의 운동가들이 납치되었는데 이를 가운데 13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숫자에는 1989년-1998년 사이의 아체(Aceh) 지역 갈등 사건에서 1만8600명의 사람들이 실종된 사례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파푸아 지역의 갈등으로 인한 군사작전지역(Military Operation Area, DOM)에서는 오늘날까지도 강제실종 사건이 적잖이 일어나고 있다.[480]

수많은 강제실종 사건 가운데 정부는 단지 한 건의 강제실종 사건인 1997년-1998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16면.

479) 인도네시아 검찰청 자료 등 다양한 자료에서 가공

480)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17면.

년 사이의 운동가들의 강제실종 사례에 대한 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f Human Rights, Komnas HAM) 내에 Komnas HAM 조사팀을 발족시켜 수행하게 하였다.[481] 이 조사팀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Abdul Hakim Nusantara의 지휘를 받으며 2005년 10월 1일에서 2006년 10월 30일까지 활종했다. 이 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강제실종된 사람들 가운데 피살된 자는 1명이고, 고문을 당한 자는 11명, 강제실종된 자는 23명, 자의적으로 육체적 자유를 박탈당한 자는 19명으로 집계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1997년-1998년 사이의 운동가들의 강제실종 사건에서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었다는 충분한 선도적 증거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사실 규명에 기초해서 대검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규명한 사실을 이어받아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로부터 요청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Soe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1997년-1998년 사이의 운동가들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해 조사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한 의회 하원(the House of Represntatives)에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가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사건 조사팀에게 돌려보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분명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482]

2009년에 인도네시아공화국 의회 하원(the House of Represntatives)은 1997년-1998년 사이의 운동가들의 강제실종 사건을 해결할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후 하원의 특별위원회는 Susilo Bambang Yudoyono 대통령에게 4개의 권고안을 제시했다.[483]

1. 첫째,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이 수시인권법원을 설치할 것을 권고
2. 둘째,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기관, 대통령, 관련 당사자가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는 13명의 운동가들의 행방과 소재를 알아보도록 권고
3. 셋째,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을 하고 생계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

---

481)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17면.
482)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18면.
483)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18면.

4. 넷째,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에서의 강제실종 행태가 중단되는 것을 지원하고, 강제실종 행태의 중단을 이행하는 모습으로서 반강제실종조약(the Convention against Enforced Disappearance)을 비준할 것을 권고[484]

위 4개의 권고사항 가운데 두 번째 권고사항에 대해 강제실종 피해자의 가족들은 거의 모두 익명으로 두 번째 권고사항의 이행을 요구했다. 즉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기관과 관련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는 13명의 행방과 소재를 알아볼 것을 촉구하였다.[485] 인도네시아는 강제실종의 행태를 중지하고, 피해자를 송환하며, 피해자를 찾고 발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과거에 강제실종에 관여한 인권 침해 사범이나 그 혐의자를 기소하고 현직에서 패임, 파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강제실종조약(the Convention against Enforced Disappearance)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강제실종범죄로부터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the Crime of Enforced Disappearance)에 대한 비준 여부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486]

인도네시아는 초국가적 범죄와 관련한 국제형사법원에 관한 로마조약(the 1998 Rome Statute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5) 코로나-19

2021년 1월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가짜 음성 확인서를 여객기, 기차 탑승용으로 유통한 일당이 잇따라 적발되었다. 자카르타 경찰청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위조·유통한 일당 8명을 체포했다. 피의자들은 20~30대 남성 5명과 여성 3명으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70만~90만 루피아(5만5,000원~7만원)를 받고 코로나-19 항원 신속검사 음성 결과지를 위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6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487]

---

484)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18면.
485)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18면.
486)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19면.
487) 서울경제, 2021.1.27., “인도네시아, 코로나 '가짜 확인서'유통에 몸살 ..."5만 5,000~7만원에

(6)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지위

인도네시아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수하르토(Suharto) 대통령 집권기에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of No. 50 of 1993)에 근거해서 발족하였고, 얼마 후에 국제연합 인권위원회(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결의 1993/97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한 심각한 인권 침해 혐의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후 개력기(the reform era)에 국가인권위원회(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의 존재는 1999년 인권 관련 법률 제39호(Law No. 39 of 1999 concerning Human Rights)에 의해 규율되며, 그 지위가 훨씬 강화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의 존재는 그 설립기에는 정부의 간섭에 쉽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독립성을 의심받았다.[488]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그 기관 설계와 관련해서 인권 침해 관련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아주 낙관적이지 못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99년 인권 관련 법률 제39호에 근거해서 설치되었고,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지도 않고 일반법의 부분으로 된다. 나아가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the 1945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이 인권규범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을지라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이 헌법에 의해 규율되지도 않는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에서 다른 국가기관과의 기관 관계라는 맥락에서 담당 임무와 기능의 수행과 관련한 타 국가기관과의 헌법적 권한에 대한 쟁송에서 신청인이든 피신청인이든 당사자 일방이 될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489]

(나) 국가기관으로서의 독립성 관련

1999년 인권 관련 법률 제39호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천명

판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F2QRKWO〉 (최종검색일: 2021.5.2.)

488)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19면.

489)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19면.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그 독립성을 침해받고 간섭받을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첫째,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의 위원의 임명과 관련해서 적합하고 적절한 검증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의회 하원(the House of Represntatives)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있어서 정치적 간섭을 받기 쉬운 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드러낸다.[490]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 체계는 사무총장(Secretariat General, Secratary General)에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갖는 그의 참모에 지휘되는 비서진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구성이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기초하고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서진을 구성하는 국가공무원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관여 정도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자문에 응하거나 그 업무를 보좌하며 통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신분이 국가공무원인 사무총장 이하 비서진의 존재가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정부의 간섭을 쉽게 받을 것이 우려되고 있다.[491]

셋째,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낳는다. 1999년 인권 관련 법률 제39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의 수준에서(at the level of state institution)"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표현에 대해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이라는 견해와 두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명확성의 결여는 인도네시아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불명확한 지위와 국가 행정의 불명확성에서 기인한다.[492]

(다) 권한부족과 권한분쟁의 잠재성

첫째,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2000년 인권법원과 관련한 법률 제26호(Law

490)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20면.
491)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492)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No. 26 of 2000 concerning Human Rights Courts)에 근거해 방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은 법적으로 연결된 힘 또는 법적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관계 기관에 권고하는 단계에 그치기 때문에 여전히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를 주도한다는 맥락에서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에 의해 조사되어 온 많은 사건들이 대검찰청의 후속 조사 및 수사로 연결되지 않고 검찰청에 의해 그 조사 또는 수사가 저지되거나 방해되었다. 이 문제는 전(前) 사법기관으로서의 조사자인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와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자로서의 대검찰청 사이에 2000년 인권법원과 관련한 법률 제26호에 의해 설정된 기관 간 관계에서 기인한다.[493]

둘째, 수시인권법원(Ad hoc Human Rights Court)의 설치의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에 의해 주도된 인권 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가 수시인권법원의 조사와 해결의 실질적 기초 또는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해서 의회 하원(House of Represntatives)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무시될 가능성도 있다.[494]

셋째, 또 하나의 문제는 하원의 제안으로 수시인권법원의 발족에 관한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을 규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관련된 것이다. 의회 하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후에 대통령을 발령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에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495]

인도네시아공화국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의 독립성 및 권한과 관련해서 사법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현재의 정부는 정무장관(Coordinating Minister for Politics, Law and Security, Mahfud MD)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업무에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에 의해 지휘되는 정부 권력의 일부가 아니다. 정부에 의해 마련되는 인권의 실현과 강화 프로그램도 또한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에 이전될 수 없다. Mahfud의 성명은 그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를 수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강조한다. 정부는 법

493) Ifdhal Kasim, 2022, Komnas HAM dan Tantangannya Dewasa Ini, Jurnal HAM Digitas: HA M dan Realitas Transisional, Elsam, Jakarta, 81면.
494)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21면.
495)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21면.

이 정한 절타와 권한에 부합하게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의 모든 권고안을 수용하고, 그 조사 결과를 승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496]

(7) 정부 내 인권 부서

인도네시아 정부 내 인권부서로는 첫째, 정무장관(Coordinating Minister for Political, Legal and Security Affair) (법과 인권 분쟁 조정국=Deputy of Law and Human Rights Coordination Sector) 둘째, 법과 인권부(The 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인권국장=Directorate General of Human Rights) 셋째, 특정 형사사건을 위한 검찰차장(Assistant Attorney General's for Specific Criminal Case) (중대인권침해대책국=Directorate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넷째, 인도네시아 국립경찰(Indonesian National Police) (법무팀=Legal Division-법무지원실=Legal Aid Bureau-인권과=Human Rights Department) 등이 있다.[497]

(8) 아세안(ASEAN)과의 인권보호 협력

아세안의 원칙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적 수준의 인권 조직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인권조직(Human Rights Agency)의 설치와 함께 ASEAN 역내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들은 지역적 수준에서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게 됐다. 이것은 ASEAN 인권국(Human Rights Agency)의 존재로 인해 인권 침해 사범들이 법적 조치를 받지 않을 수 없도록 기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해 온 나라이며, 정부간인권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sion on Human Rights, AICHR)의 발족에 주도적 역할을 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인권 상황을 보면 인권 침해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문제들과는 별도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체계의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해 왔다.[498]

---

496)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21면.
497)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22면.
498)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22면.

동남아시아 지역의 강력한 인권기관인 정부간인권위원회(AICHR)의 강화를 위한 관여에서 인도네시아에 의해 이뤄진 노력들은 ASEAN 공동체가 아래의 사항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499]

첫째, ASEAN에서 인권에 관한 회담을 주도

둘째, 정부간인권위원회(AICHR)에 의한 업무 수행을 재평가하고, ASEAN 인권기구에 대한 변화를 위한 권고를 하며, 인도네시아는 ASEAN 인권기구의 변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500]

a. ASEAN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정부간 인권위원회의 규정이 있다. ASEAN 인권기구(Human Rights Institute)의 회원국들인 ASEAN 구성국들에 대하여 감시하거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제안은 강화되었다.
b. 보다 엄격하게 인권을 감시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민간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교류를 증진한다.
c. 인권 침해 사례를 해결함에 있어서 다양한 ASEAN 구성국들에서 발견되는 지역적 지혜를 투입하고 최대화한다.
d. 인권 침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각국 정부 기관(위원회)와 조화를 이룬다.
e. ASEAN 인권기구(Human Rights Institute)에 의해 마련된 모든 정책들은 모용성, 투명성, 예측가능성들이 우선화되어야 한다.
f. ASEAN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규정의 개정은 그것이 국제인권기구의 규정이나 ASEAN 각 회원국의 규율과 부합하지 않을 때는 필요하다.[501]

(9) 한국과의 인권보호 협력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협력의 형태로서 양자간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 인도네시아는 인권 관련 회담이나 협의에 관여해 왔다. 2019년까지

499)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22면.
500) Apa Guna Deklarasi HAM ASEAN?", 〈http://www.setarainstitute.org/id/content/apa-guna-deklarasi-ham-asean, dapat dilihat di:〉, 〈http://www.alumni.unair.ac.id〉 (최종검색일: 2021.8.30.)
501)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23면.

인도네시아는 노르웨이, 유럽연합, 러시아, 이란, 스웨덴, 캐나다와 각각 양자 간 회담 또는 협의를 해 왔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사이의 관계 강화를 위해 장래에 인권을 주제로 한 회담이나 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502]

인권 분야에서의 외교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항상 협력과 대화의 원칙을 우선시하였는데, 이것은 인권을 한층 보호하고 증진하는 나라의 역량을 강화함을 목표로 하였고, 인권 분야에서의 국제적 의무 준수와 이행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와 회담 또는 협의 상대국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한층 강화된 기초를 제공한다. 인권 회담과 협의는 호혜와 평등, 파트너십의 공유 정신에 입각해서 개방적이고 건설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503]

라. 싱가포르

(1) 사형제도

1990년초 이후에서부터 2003년까지는 싱가포르는 인구 10만 명당 사형의 집행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였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최근 과거에 비하여 사형집행이 감소되는 경향이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싱가포르에서 장기집권 한 리콴유 전 총리가 권력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리콴유는 자신이 변호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해 강력한 정책을 취함으로써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의 위상을 정립하고 새롭게 다시 발전을 도모한 것이었으며 이는 아시아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유교적 철학과 '아시아적 권위주의'[504]에 기반하여 사형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2008년 헌법은 사형제도가 합헌일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는 개인생명을 박탈 전에는 정당한 법적 절차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싱가포르 헌법 제9조 제1항). 2010년 5월 14일, 싱가포르의 항소법원은 마약 헤로인 밀매

502)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23면.
503)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23면.
504) 이덕인, 앞의 논문, 141면.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말레이시아 국적을 가진 용브이콩(Yong Vui Kong)의 필요적 사형선고에 대한 부당성으로 제기한 위헌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싱가포르 법원은 한편 싱가포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생명권이 비인도적인 형벌금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505]

또한 필요적 사형선고에도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논리와 설득력이 부족함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생명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입장과 반대되는 사법적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 9일에는 사형수인 라마링감 라빈스란(Ramalingam Ravinthran) 역시 자신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또한 같은 사건의 다른 피의자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사형선고는 부당하고 위헌이라는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2012년 1월 12일에 기각된 바 있다. [506]

싱가포르에서는 국가원수는 상징적으로 이러한 대통령에게는 사면에 대한 독자적인 재량권이 없고 내각의 권고로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사면과 감형 또는 사형집행에 대해서는 유예할 수 있지만(싱가포르 헌법 제22(P)조),[507] 사형수에 대한 사면과 관련하여서는 말레이시아로부터 1965년 독립한 이후 6차례만 오직 허용되었다. 싱가포르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위주로 한 정책에 근거하여 싱가포르의 범죄발생률이 낮다는 것을 장점으로 하여[508]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는 역시 전근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2012년 7월 3일, 싱가포르 정부는 사형을 필요적으로 선고하도록 되어 있던 형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년 11월 14일, 관련 법률의 개정이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양형상 재량권이 부여되어 피고인이 살인을 저지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사형은 회피될 수 있다.[509] 국제앰네스티가 2019년 4월 발표한 '2018 사형선고와 집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싱가포르에서는 13건의 사형이 집행돼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사형집행 건수를 기록했다.[510]

---

505) 이덕인, 앞의 논문, 140면.
506) 이덕인, 앞의 논문, 140면.
507) 이덕인, 앞의 논문, 140면.
508) 이덕인, 앞의 논문, 140면.
509) 이덕인, 앞의 논문, 139면.
510) 연합뉴스, 2019.7.15., "말레이인 사형수만 '표적집행' 논란…싱가포르 "동등한 법 적용"", 〈htt

(2) 마약범죄

마약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은 다른 ASEAN 회원국들과 동일하게 일정량 이상의 마약을 제조하거나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는 물론하고 마약 단순소지행위(싱가포르 마약남용방지법 제33조)가 적발되더라도 엄격하게 사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마약범죄에 대해서 형사재판의 특징 중의 하나는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두고 있기에 마약소지죄와 관련하여 마약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이 증명하여야 한다(싱가포르 마약남용방지법 제15조-제33(A)조). 주로 마약과 관련한 범죄로 사형 선고가 된 외국인에 대한 사형집행도 싱가포르는 무심하게 외교적 마찰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집행한다.[511]

2011년 5월 6일에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와 관련하여 필요적 사형선고재검토와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의 즉각적인 선언뿐만 아니라 ICCPR규약 그리고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 그 외에도 과거 사형이 집행되었거나 또는 법원이 선고한 사형에 대한 자료공개, 필요적 사형선고조항 폐지와 관련한 형법, 마약남용방지법 개정 권고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사형제도에 관한 국제적 합의가 없고 사형은 중한 범죄에만 선고하고 있으며, 적법절차 준수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였다.[512]

싱가포르 마약남용방지법은 통제된 약물의 제조, 소지, 소비, 밀거래, 수·출입 등 포함한 일련의 위법행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관련 처벌은 동법 제2부칙에서 유형별로 자세히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이외의 지역에서 통제된 약물을 소비하는 싱가포르 국민 또는 영주권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513]

2020년 싱가포르는 화상회의 서비스인 줌(Zoom)으로 재판으로 열어 마약사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실시된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은 나이지리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말레이시아 국적 피고인에게 2011년 마약 밀매를 공모했다며 교수형을 선고했다. 그는 택배 기사 두 명과 협력

---

ps://www.yna.co.kr/view/AKR20190715076000076〉 (최종검색일: 2021.5.3.)

511) 이덕인, 앞의 논문, 141면.

512) 이덕인, 앞의 논문, 141면.

513) 세계법제정보센터, 2019.8.28. , 법제동향: 마약 범죄에 대한 국가별 처벌,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pageIndex=undefined&CTS_SEQ=48385&AST_SEQ=3891&ETC=1〉, (최종검색일: 2021.7.9.)

해 최소 28.5 g의 헤로인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싱가포르에서 원격으로 사형이 선고된 첫 형사 사건이다. 싱가포르는 마약 관련 범죄에 사형을 선고하는 세계 4개 국가 중 하나다.[514]

(3) 재외국민 범죄피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성관련 범죄는 싱가포르 치안당국의 3대 관심 범죄 중 하나로, 쇼핑몰·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휴대폰 등 이용 촬영이나, 유흥가에서 성추행 및 성폭행 등 관련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515] 2011년에는 버스터미널이나 전철역 등에서 현지인과 시비가 붙어 한국인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부키파토 역, 클라키 지역 등).[516]

(4) 코로나-19

정부에 막강한 단속 권한을 부여한 싱가포르의 이른바 '가짜뉴스 법'이 2019년 10월 2일 발효되었다.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가짜뉴스법에 따르면 싱가포르 장관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IT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거짓으로 판단한 인터넷상 뉴스에 대해 기사를 삭제토록 명령하거나 그 기사와 나란히 정정 기사를 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장관들은 또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는 계정들을 막을 것을 이들 업체에 지시할 수도 있다. 이 법을 따르지 않는 IT 업체들은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7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개인의 경우, 최장 징역 10년이나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천7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517]

이와 함께 디지털 광고와 인터넷 중개인으로 지정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위챗

514) 동아일보, 2020.5.21., "싱가포르, 화상서비스 '줌'으로 마약사범에 교수형 선고",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521/101154300/1〉 (최종검색일: 2021.5.3.)
515)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가/지역별 정보: 싱가포르 사건·사고.,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134〉 (최종검색일: 2021.5.3.)
516) 주싱가포르대사관, 2011.1.11., 새소식: 한국인 폭행 피해 유의 당부,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11934/view.do?seq=1149622&srchFr=&amp%3Bsr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 (최종검색일: 2021.5.3.)
517) 연합뉴스, 2019.10.2., "정부 막강권한 싱가포르 '가짜뉴스법' 발효…언론자유 위축 우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2086700076〉 (최종검색일: 2021.5.3.)

등 IT 업체들은 정부가 요구할 경우, 정치 광고 등 정치 관련 내용물을 게시하길 원하는 이들의 신원을 밝혀내야 한다. 이 법에 대해 인권단체는 물론 IT 업체들도 언론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50년 이상 장기 집권 중인 인민행동당(PAP)은 글로벌 금융 중심지라는 상황과, 인종·종교가 뒤섞인 인구 분포 그리고 광범위한 인터넷 사용 등을 고려할 때 싱가포르는 가짜뉴스에 취약하다면서 입법을 강행했다.[518]

마. 말레이시아

(1) 사형제도

말레이시아 헌법(1957)은 법률에 따르지 않고서는 어떤 인간의 생명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말레이시아 헌법 제5조 제1항). 사형 선고는 마약관련 범죄에서 다른 범죄보다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살인이 그 뒤를 잇고 있으나 실제적인 사형 집행은 첫 번째가 마약매매 두 번째가 총기관련 범죄 세번째가 살인의 순이다. 1980~2005년까지 말레이시아 내국민의 사형집행은 중국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에 비하여 외국인 사형집행은 전체 20%를 넘어서고 있다.[519]

범행당시 연령이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다.(말레이시아 소년법 제97조 제1항) 형의 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임신여성에 대해서는 최고형을 20년까지로 한정하여 제한하고 있다(말레이시아 형사소송법 제275조). 더불어 행위의 본질이나 또는 위법성 여부를 알 수 없는 자가 범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은 적용되지 않는다(말레이시아 형법 제84조). 그러나 생명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보안구역 안에서 불법무기 소지, 불법무기 공급이나 제공하는 경우(말레이시아 국가보안법 제57조 제1항, 제59조), 총기 사용으로 강도, 절도, 약취유인 및 체포에 저항하거나 또는 탈주하여 살인미수나 또는 상해미수를 저지른 경우(말레이시아 총기법 제3조 (A)항), 마약밀매(말레이시아 위험약물법 제39조 (B)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사형을 선고한다.[520]

---

518) 연합뉴스, 2019.10.2., "정부 막강권한 싱가포르 '가짜뉴스법' 발효…언론자유 위축 우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2086700076〉 (최종검색일: 2021.5.3.)
519) 이덕인, 앞의 논문, 125면.

사형수에 대한 사면이나 또는 감형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원수인 술탄이 자동적으로 사형확정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받은 이후 다른 형벌로 감형하거나 또는 사면할 수 있다. 또한 사형집행 장소, 시간설정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무기한 사형집행 유예가 가능하다(말레이시아 형사소송법 제281조). 라마단 기간에 해당하는 2012년 7월 19일에는 30년 이상 구금된 사형수 2명이 사면 석방, 4명에 대해서는 종신형으로 감형되기도 하였다. 이는 마약범죄를 막는데 사형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2012년 1월, 국가법무정책 총괄하는 공직자가 사형폐지운동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표명하기도 하였지만 2개월 만에 사형이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신중한 검토 후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521]

그러나 과거와 비교할 때 두드러질 만큼 사형집행이 감소되고 있으며 사형폐지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2006년, 말레이시아변호사협회는 21명이 기권하고 105대 2의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말레이시아인권위원회(SUHAKAM) 역시 2010년 연간보고서를 통하여 사형폐지를 요구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말레이시아변호사회 소속 인권위원회(BCHRC), EU대표단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유를 위한 변호사들, 국제앰네스티 말레이시아지부, 시민권위원회(Civil Rights Committee), 그리고 사형과 고문을 반대하는 말레이시아인들(MADPET)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형반대 캠페인이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다.[522]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8년 살인과 마약 관련 범죄 등 중범죄에 적용되던 사형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남은 쟁점은 사형을 기다리던 죄수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여부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재 1,200여명이 살인과 마약 밀수, 반역 및 테러 행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다.[523]

(2) 마약범죄

말레이시아 국회는 2017년, 11월 마약 범죄에 대한 의무 사형제를 철회하고, 법관

520) 이덕인, 앞의 논문, 127면.
521) 이덕인, 앞의 논문, 127면.
522) 이덕인, 앞의 논문, 128면.
523) 글로벌비즈, 2019.1.6.,"말레이시아 사형폐지 검토…김정남 암살범 2명 공판 등 영향 미칠 듯",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90106082547563 39ecba8d8b8_1/article.html?md=20190106083829_R〉 (최종검색일: 2021.5.4.)

에게 마약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인구의 약 60% 이상이 이슬람 신자인 말레이시아는 마약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50g 이상의 마약을 소지한 자의 경우 마약밀매자로 규정되며 마약의 양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러한 마약 사범에 대한 강제 형량이 임의 처벌로 전환되는데 약 34년이 걸린 것이다. 다수결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기존의 의무 사형제를 폐지하고 유죄가 확정된 마약사범에 대해 양형을 할 때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를 더 많이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번 법 개정은 검찰의 착오 등 모든 오류로부터 피고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재판부에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개정법에 따라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항소할 수 있으므로, 유죄 판결 후 즉시 교수형 및 종신형에 처해지지 않고 범죄 사실을 다시 한 번 검토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524]

말레이시아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70만 2,319명이 인신매매 및 마약 소지 혐의로 구류된 등 아직도 많은 사례의 마약 관련 범죄들이 경찰 보고되고 있다. 같은 기간 말레이시아에서는 유해의약품법(1952)의 제39조 (B)항에 의거하여 총 2만 1,371명이 체포되었으며, 법정에 선 1만 878건을 포함 1만 3,036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체포된 2만여 명 중에는 1,743명의 초중고 학생 및 1,953명의 대학생 등이 포함된 등 마약 등 약물 오남용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525]

(3) 재외국민 범죄피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범죄 피해 사건 유형에는 오토바이 날치기, 절도, 사기도박, 무역송금 사기, 국제송금 사기, 택시 강도 등이 있다. 오토바이 날치기 관련, 대로를 지나는 여성을 상대로 어깨에 메고 있는 핸드백을 채 달아나는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 오토바이 날치기범들은 작게는 2인조에서 많게는 20명씩 떼를 이루어 범행을 자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항

524) [말레이시아] 마약사범에 대한 의무 사형 철회한다, 〈https://blog.naver.com/shua1525/221161959027〉 (최종검색일: 2021.7.25.)

525) 코리안프레스, 2017.12.11., "말레이시아, 마약사범에 대한 의무사형 철회한다", 〈http://www.koreanpress.net/detail.php?number=3229&thread=22r13〉 (최종검색일: 2021.5.4.)

능력이 부족한 여성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쇼핑몰, 백화점 등의 푸드코트와 같이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서 핸드백, 가방, 지갑, 노트북 등을 절도당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이러한 장소에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때 같은 테이블의 옆자리 의자 위에 소지품을 놓아두고 동행인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순식간에 가방을 들고 도주하는 것이다. 사기도박의 경우, 혼자 여행하는 여행객에게 한국을 아주 잘 아는 체하거나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다면서 접근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곧 한국에 갈 예정이라면서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묻다가 자기 집에 가서 차나 식사를 대접한다고 유인한 후 데리고 간 집에서 사기도박에 빠지게 하여 소지하고 있던 현금은 물론 추가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현지화까지 모두 잃게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526]

한편 Alibaba.com 등과 같은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알게 된 무역상과 수출입거래 계약을 맺고 대금을 송금했으나 물품은 한국으로 송부되지 않고 현지 무역상(가명, 허위 여권번호, 허위 주소, 허위 사업자등록번호)은 전화 연락은 되나 끝내 찾을 수도, 변제받을 수도 없는 사례가 매우 흔하다. 택시 강도의 경우, 택시를 타자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흉기로 위협하면서 금품 강탈하거나 택시를 타자 주유소에 들러야 한다며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범인 일행을 동승시킨 후 피해자를 흉기로 제압하여 금품 강탈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527]

말레이시아 체류하는 한국인은 2007년부터 2012년 동안 1년 평균 111명이 범죄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국인의 범죄피해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2012년에는 2007년에 비해 1.6배 증가하여 147명의 한국인이 범죄피해를 경험하였다. 절도와 교통사고, 행방불명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으로 미루어보아 가장 많이 피해를 경험하는 절도가 전체 한국인 피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강·절도 및 사기 피해는 전체 범죄피해의 91.0%로 말레이시아 체류하는 한국인은 재산관련 범죄피해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체류하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겪는 범죄피해는 절도이다. 절도 피해는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526)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가/지역별 정보: 말레이시아 사건·사고.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56〉 (최종검색일: 2021.5.4.)
527)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가/지역별 정보: 말레이시아 사건·사고,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56〉 (최종검색일: 2021.5.4.)

그 다음으로는 연평균 24명이 피해를 경험한 강도 피해이다. 강도 피해자수는 200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2012년에는 단 한 명도 강도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안전사고 사망, 사기, 행방불명, 교통사고, 폭행·상해의 순으로 한국인이 범죄피해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공지사항에는 최근 강도와 절도 피해를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올라와있다. 말레이시아 관광지 페낭에서 외국인 여행객들이 날치기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이 발생한 곳은 저렴한 숙박업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한국인 관광객도 자주 방문하는 지역이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서 경찰관으로 가장한 강도들이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불심검문을 하면서 지갑 확인을 요청한 후 현금을 가로채 달아나는 사례가 발생했다.[528]

(4) 코로나-19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과 인종간의 적대감을 부추기는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들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에 나서고 있다. 현지 경찰과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는 2020년 2월 28일 슬랑오르 주 지역에서 34세의 남성을 체포한 데 이어서, 29일 말라카, 크다, 파항에서 4명을 추가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 유포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파트타임 강사, 약국 보조직원, 대학생 등 일반인으로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하여 허위 정보를 마치 공식 발표된 뉴스인 것처럼 게시하고 공유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휴대전화 4대와 SIM 카드 5대, 메모리 카드 2개를 압수하고, '통신 멀티미디어법 1998' 제233조에 의거하여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일 유죄로 판결될 경우, 피의자들은 최대 5만 링깃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유죄 판결 후에도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리면 추가로 1천 링깃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당시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는 앞서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지 말 것을 경고한 바 있다.[529]

528) 장준오·이완수·최호림·홍석준,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피해 실태와 보호방안 -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4, 166-167면.

529) 코리안프레스, 2020.2.6., "말레이시아, 코로나바이러스 가짜뉴스 유포자 5명 체포", 〈http://koreanpress.net/detail.php?number=3706&thread=22r01〉 (최종검색일: 2021.5.5.)

말레이시아 정부가 코로나에 관한 '가짜뉴스' 유포자에게 최장 징역 3년형으로 처벌하는 비상법을 2021년 3월 12일 발효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관보에 게재해 발효된 가짜뉴스 관련법은 비상사태 기간에 나온 '비상법(emergency ordinance)'으로,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 없다. 이 법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나 비상사태와 관련해 전체 또는 부분적인 허위 내용을 출판하거나 복제할 경우 최고 10만 링깃(2천753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 3년형에 처한다. 또한 가짜뉴스 발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한 경우 최고 50만 링깃(1억3천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 6년형에 처한다. 이 법은 말레이시아의 내외국인은 물론이고 해외에 있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법률 내용은 지난 2019년 말레이시아 의회가 폐지한 '가짜뉴스 방지법'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2018년 제정된 가짜뉴스 방지법은 넘쳐나는 가짜뉴스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를 50만 링깃 이하 벌금이나 6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못 내게 한다는 논란이 일어 2019년 하반기에 폐지되었다. 가짜뉴스 비상법이 발표되자 무히딘 야신 정부가 비상사태를 틈타 '가짜뉴스 방지법'을 다시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을 공고히 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였다.[530]

바. 브루나이

(1) 사형제도

1957년 이후로 50년 이상에 걸쳐 사형집행을 유예하고 있는 브루나이는 사법부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형사재판이 실질적으로 전제절대군주인 술탄에게 있는 형태이다. 브루나이 헌법(2008)은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위헌법률에 대한 심사도 금지되어 있다(브루나이 헌법 제84조 제3항). 그런데 헌법적인 효력이 있는 '승계와 섭정에 관한 헌법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절대군주가 사형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범행당시 18세 미만자에 대해서 사형을 할지 여부는 술탄의 의지에 맞추어 결정되는데(브루나이 형사소송법 제238조) 임신 중인 여성(동법 제246조)에게는 사형이 회피된다. 그러나 심신상실의 경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사형을 적용할

530) 연합뉴스, 2021.3.12., "말레이 "코로나 가짜뉴스 유포자 징역 3년"…비상법 발효",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2080100104〉 (최종검색일: 2021.5.5.)

수 있는 있는 범죄의 경우, 예를 들면 살인을 범한 경우 사형은 회피될 수 있지만 전면적인 형사책임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브루나이 형법 제303조).[531]

과거 1962년의 국가비상사태선언이 현재까지도 유효한데 브루나이는 반역행위(동법 제121조), 살인이 매개된 반란선동행위(동법 제132조), 무고행위로 사형선고를 야기한 경우(동법 제194조)와 살인죄(동법 제302조), 자살방조죄(동법 제305조), 약취유인살인죄(동법 제364조), 강도살인죄(동법 제396조), 방화살인 및 치사죄(동법 제435조 제1항), 무기 또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테러관련 범죄(동법 제435조 제1항)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형사특별법으로 보안영역이나 또는 특별지역 내에서 불법무기소지행위(브루나이 국가보안법 제40조 제41조), 밀매를 목적으로 한 마약소지(브루나이 마약남용법 제3a조), 그 수출입과 마약 제조행위와 이에 관련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동법 제3조, 제5조, 제15조, 제16조)를 필요적 사형에 처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재량권을 행사할 재량이 없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추밀원(Privy Council)의 조언으로 진행되는 술탄의 사면만이 가능하다(브루나이 헌법 제5조 제5항).[532]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이슬람 국가 중 하나인 브루나이는 2019년 5월 절도범의 손목을 자르고 동성애자나 간통죄를 저지른 이는 투석 사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긴 샤리아 형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유엔 등 국제기구와 세계의 비난과 여론을 의식한 듯, 실제 집행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533]

한편 브루나이는 고문방지협약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았으며 2014년 유엔 인권 검토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모든 권고를 거부했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투석이나 절단, 혹은 채찍질과 같은 모든 형태의 형벌은 고문이나 그 외 잔인하고 반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모든 상황에서 금지된다. 고문과 그 외 부당한 대우는 주요 국제 인권 협약에서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브루나이는 대다수의 협약에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금지 조항은 관습적인 국제인권법

531) 이덕인, 앞의 논문, 121면.
532) 이덕인, 앞의 논문, 122면.
533) 연합뉴스, 2019.5.6., “동성애 사형 도입 브루나이, 국제사회 비난에 "집행은 안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06017200104〉 (최종검색일: 2021.5.5.)

의 보편적인 규칙으로 인정되며, 이는 모든 국가가 관련 인권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이 조항에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브루나이는 사형을 법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534]

(2) 마약범죄

브루나이 마약단속국(Norcotics Control Bureau)은 2020년 7월 29일 깜퐁 사바의 몇 집을 급습하여 마약밀매 용의자 12명을 체포하였는데 이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었다. 모두 현지인인 12명의 용의자는 두 가족의 구성원들로서 연령대는 16세부터 57까지이다. 현장 체포 당시 압수된 마약은 필로폰(syabu)으로, 17그램 시가 BND 3,000정도이며 크기가 다른 비닐봉지에 포장된 상태였다. 당시 현장에서는 마약 투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물품들도 발견되어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이들은 모두 마약법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형이 확정되면 징역, 벌금 등 중형에 처해진다.[535] 2017년 마약 관련 범죄로 새로운 사형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536]

(3) 재외국민 범죄피해

브루나이는 이슬람 왕정을 기반으로 안정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어 치안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절도 등 경제형 범죄 및 마약중독자 등에 의한 가택침입 및 절도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타국 출신 근로자에 의한 범죄도 보도되고 있다. 재외국민 범죄피해 사례는 알려진 바 없다.[537]

---

534) 국제앰네스티, 2019.3.28., "브루나이: 동성 간 성행위 투석형에 처하는 잔인한 형법 제정 예고". 〈https://amnesty.or.kr/28314/〉 (최종검색일: 2021.5.5.)

535) 주브루나이대사관, 브루나이뉴스: 2020.8.5., "마약밀매자 중에 미성년자 포함", 〈https://overseas.mofa.go.kr/bn-ko/brd/m_2294/view.do?seq=134035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최종검색일: 2021.5.5.)

536) 국제앰네스티, 2019.3.28., "브루나이: 동성 간 성행위 투석형에 처하는 잔인한 형법 제정 예고", 〈https://amnesty.or.kr/28314/〉 (최종검색일: 2021.5.5.)

537)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가/지역별 정보: 말레이시아 사건·사고.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105〉 (최종검색일: 2021.5.5.)

사. 베트남

(1) 사형제도

베트남 헌법(2001)의 경우 사형제도가 역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베트남 헌법에는 생명권에 대한 공민의 권리, 법률상 보호가 명시되어 있다(베트남 헌법 제71조). 집행 통계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정보를 국가기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현황 파악이 곤란하다. 베트남 형법 제35조는 '특히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만 사형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는 불명확하다. 범행당시나 또는 재판당시에 임산부와 36개월 이하 연령의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 또는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는 사형이 되지 않고, 임산부와 36개월 이하 연령의 아이를 양육하는 여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적용한다. 한편 특별하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형사처벌이 되지 않도록 제외할 수 있는 형법의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상태로 정신질환이 있거나 또는 자기행위 인식이 어렵고 자신의 행위를 제어할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위험한 행위를 저지른 자는 그 행위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베트남 형법 제13조 제1항). 단 자신의 인식능력이나 자신의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한정될 정도로만 질환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죄를 저지른 경우는 관련 정상이 참작되며(동법 제46조 제1항) 이에 따라 사형집행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538]

전형적인 사회주의 법체계를 따르고 있는 베트남은 강간죄와 관련하여 생명침해 결과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연령의 아동이 피해자가 된 경우이거나(동법 제112조 제3항), 13세 미만 아동과의 합의로 이루어진 성교행위(동법 제112조 제4항)에 대해서 사형적용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61% 이상의 비율로 상해가 있거나 또는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사망의 결과가 있는 경우 그리고 5억 동(VND)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재산을 빼앗은 경우 또는 특히 매우 중대한 피해를 발생한 경우(동법 제133조 제4항), 의약품 및 예방약, 식품, 식품재료 등을 가짜로 제조하거나 매매하여 특히 매우 중대한

538) 이덕인, 앞의 논문, 135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동법 제157조 제4항)에도 사형이 가능하다. 또한 재산범죄 가운데 5억 동(VND) 이상 가치에 해당할 수 있는 타인의 재산을 빼앗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매우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동법 제278조 제4항) 그리고 공무원 등이 3억 동(VND) 이상 가치가 있는 뇌물을 받거나 또는 그 밖에 특히 매우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동법 제279조 제4항)와 관련하여서도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마약관련 범죄는 일정량을 기준으로 하여 사형이 부과될 수 있다.[539]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에게 감형을 청원할 수 있다. 청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사형집행은 청원이 기각된 이후에 가능하다.(베트남 형사소송법 제258조) 베트남에서 실제로 선고된 사형에서 열명중의 한명 1/10 정도는 대통령이 감형을 하여 무기형으로 대체되고 있다. 베트남은 사형이 정치적인 의도로 일정부분 남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40]

과거 베트남은 총살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동법 제259조 제3항), 2010년 6월에 제정되기도 한 '형사판결집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방식은 총살에서 독극물주사로 대체되었다.(동법 제59조 제1항, 제181조 제1항) 이후 2011년 7월 개정형법에서도 이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바뀐 방식의 사형집행과 관련하여서는 독극물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11월로 연기 한 후 2012년 초로 다시 연기되기도 하였다. 법무부 장관에 따르면 사형집행에 요구되는 치사약물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이와 관련한 약물 전량을 유럽에서 수입해야 하므로 인권에 관심이 있는 유럽연합(EU)이 베트남에 사형폐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관련 약물의 조달이 어렵게 된 것이다. 의회는 총살형으로 다시금 돌아갈 것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며, 2013년 1월에는 법률을 개정하여 생산 가능한 독극물로 하여 사형을 집행할 것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2012년 이후에는 사형수 508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집행정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형을 집행유예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집행 불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형으로 처벌되는 범죄구성요건을 감축하고자 2009년 형법개정에는 구 형법(1999)에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성인에 대한 성폭행(베트남 형법 제111조 제3항), 사기로 타인의 재산을 탈취하는 행위(동법 제139조 제4항), 밀수행위(동법 제153조

539) 이덕인, 앞의 논문, 137면.
540) 이덕인, 앞의 논문, 137면.

제4항), 화폐와 채권위조행위(동법 제180조 제3항), 마약물질의 조직적 불법사용행위(동법 제197조 제4항), 항공기 또는 선박 등 납치행위(동법 제221조 제3항), 증뢰행위(동법 제289조 제4항), 군사무기 등 파괴행위(동법 제334조 제4항) 등 8개 범죄구성요건에 대해서 형법의 법정형 중 사형을 삭제하였고, 현행 베트남의 형법상 사형이 가능한 범죄는 21개로 줄게 되었다.[541]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2018 사형선고와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경우 2018년 85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히면서 세계 사형집행국 4위에 올랐다.[542]

(2) 마약범죄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 관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마약 유통의 거점이 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마약류를 제조, 소지, 운반, 매매, 탈취, 투약, 제공, 또는 강제하는 행위는 형사법전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특히, 일정량 이상의 마약물질을 불법으로 제조, 운반, 매매하는 경우에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은 마약방지·예방법을 통하여 마약류를 통제, 관리하고 있다[543]

베트남 법원이 2021년 1월 외국에서 몰래 마약을 들여온 6명에 대해 무더기로 사형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베트남에서는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kg이 넘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한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또 헤로인 100g 이상 또는 기타 불법 마약 300g 이상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다가 붙잡혀도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544]

(3) 재외국민 범죄피해

베트남은 안정적인 정치체제하에서 강력한 경찰 조직을 통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

---

541) 이덕인, 앞의 논문, 138면.

542) 더나은미래, 2019.4.10., "지난해 전 세계 사형집행 최소 690건…전년比 31% 급감", 〈https://futurechosun.com/archives/40828〉 (최종검색일: 2021.5.5.)

543) 세계법제정보센터, 2019.8.28., 법제동향: 마약 범죄에 대한 국가별 처벌,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pageIndex=undefined&CTS_SEQ=48385&AST_SEQ=3891&ETC=1〉 (최종검색일: 2021.5.5.)

544) 매일경제, 2021.1.14., "베트남, 캄보디아서 마약 밀반입 6명에 '무더기' 사형 선고",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1/43963/〉 (최종검색일: 2021.5.5.)

로 양호한 치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내란이나 테러 가능성은 적은 편이나, 경제 개방 정책 추진 성과로 일반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과 더불어 소규모의 강도, 절도, 주거 및 상가 침입, 소매치기 등 각종 범죄 발생이 늘어가는 추세이다.[545] 최근에는 한국인 간 살인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18년에는 호치민시에 거주하는 한 교민이 원한 관계로 한국 조직폭력배를 동원, 청부폭력을 벌이는 등 마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사건도 발생했다.[546]

베트남에 체류하는 한국인들의 범죄피해자수는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2년에 조금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최근 6년간 베트남에서 범죄피해를 경험한 한국인은 연평균 148명이다. 가장 많이 경험한 범죄피해는 절도로, 1년에 평균 28명의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절도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에는 2010년과 비교하였을 때 1.7배 증가한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겪는 범죄피해는 사기로 연평균 27.5명의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사기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가 사기임을 주목한다면, 베트남에서 한국인들 끼리 서로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폭행·상해, 행방불명, 안전사고 사망, 감금·납치, 강도도 베트남에 체류하는 한국인이 많이 겪는 범죄로 나타났다. 폭행·상해는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1년 급증한 후 2012년에 급감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폭행·상해는 절도, 사기와 함께 1년에 평균 25명 이상이 경험하는 피해로 위 세 가지 유형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행방불명은 최근 6년간 1년에 평균 1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2009년도까지는 실종 신고가 많았지만 2010년 이후로는 소재파악을 위해 행방불명 신고를 하는 한국인이 더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547]

(4) 코로나-19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메콩델타성에 거주하는 27세 베트남 남성이

545)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가/지역별 정보: 베트남 사건·사고.,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86〉 (최종검색일: 2021.5.6.)
546) 베한타임즈, 2019.6.4., "베트남, 제2의 필리핀 되지 않으려면", 〈http://www.vietha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92〉 (최종검색일: 2021.5.6.)
54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앞의 책, 161면.

1,250만 동(VND)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 남성은 2020년 1월 27일부터 2월 14일 사이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베트남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한 꽝닌성 깜파시에 거주하는 36세 베트남 남성은 SNS를 통해 '시 당국이 각 가정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5만 동(VND)을 내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려 역시 1,250만 동(VND)의 벌금형에 처해졌다.[548]

아. 미얀마

(1) 사형제도

미얀마의 헌법(2008)은 인간존엄과 반하는 형벌을 부정하지만(미얀마 헌법 제44조) 사형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적 도움과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살인을 저지른 경우(동법 제302조 이하) 그리고 일정량 이상 마약류의 소지나 또는 마약류 밀매, 수입, 수출, 제조, 유통, 판매행위 그리고 이러한 범죄의 상습범과 범죄조직 구성원, 무기나 또는 폭발물 사용 또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이용하거나 또는 공무원의 영향력을 사용하는 경우 등과 관련하여 필요적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미얀마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법 제22조, 제23조).[549]

임신한 여성과 관련하여서는 임신기간 동안에 사형의 집행을 연기하거나 또는 사형의 선고를 완화하도록 되어 있다(미얀마 형사소송법 제382조). 정신병 등 심신상실자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은 부정되는데(동법 제464조), 사형의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그 외에도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집행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550]

미얀마 헌법은 미얀마 대통령의 사면권이 규정되어 있다(미얀마 헌법 제204조). 이러한 권한은 범죄자에 선고가 이루어진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형법상 명시되어

548) 베한타임즈, 2020.4.4., "가짜뉴스 유포자 벌금형", 〈http://www.vietha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21〉 (최종검색일: 2021.5.6.)
549) 이덕인, 앞의 논문, 122면.
550) 이덕인, 앞의 논문, 122면.

있다(미얀마 형법 제54조). 2011년 5월 16일에는 대통령령은 16명 여성이 포함된 전체 657명에 대해서 종신형으로 감형하였다. 2012년 1월 3일에는 대통령령으로 사형수 33명을 종신형으로 감형하였다. 동년 8월 3일은 Phyo Wai Aung이 폭탄테러를 범하여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인하여 사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나 대통령은 사면을 하였다. 그러나 Phyo Wai Aung은 구금기간 동안 자신에게 고문이 가해지기도 하였고, 공정한 재판을 자신이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이유와 근거로 하여 무고함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사면을 거부하면서 항소를 주장하였다.[551]

2011년 1월 27일에는 미얀마는 유엔(UN)에 있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과정에서 1988년 이후 사형집행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사형폐지의 권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당시 미얀마 정부 대표단은 행정부와 자신의 관련 부처 등과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인권조약 비준을 검토하겠다고 하기도 하였지만 최종결정에는 입법부가 판단으로 결정할 것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얀마는 사형으로 인한 인명의 침해에 대해서도 보다 공식적인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구속된 정치범과 시민들에게 처해지는 처벌과 처형에 관심이 크게 집중되기도 하였다. 미국 국무부(USSD)가 2008년에 발표하기도 한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미얀마 정부나 그 대행기관들은 자의적이고 또한 불법적인 처형을 하였고, 피의자가 구금 중에 사망하는 사건도 빈번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미얀마 정부는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552]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이후 첫 사형선고가 이루어졌다. 2021년 4월 양곤 노스오칼라파에서 칼과 곤봉 등으로 장병 2명을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19명의 시민에게 미얀마 군사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553]

(2) 마약범죄

미얀마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마약을 접한다. 또한 헤로인, 암페타민 등의 '진짜 마약'뿐 아니라 본드, 물담배, 기타 향정신성 약품 등 '유사 마약'을 접하는 사람들이

551) 이덕인, 앞의 논문, 123면.
552) 이덕인, 앞의 논문, 123면.
553) VOA, 2021.4.15., "미얀마 군사재판소, 민간인 7명 사형 선고", 〈https://www.voakorea.com/world/asia/myanmar-military-tribunal-sentence〉 (최종검색일: 2021.5.7.)

많다. 택시기사들은 항상 물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피로를 마약으로 잊는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국경지대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진다. 어느 국경마을의 상점에서는 거스름돈 대신 마약용 주사바늘을 준다고 한다. 마약은 현재 미얀마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최근에도 불교 사원에서 대량의 마약이 발견되는 등 아직도 미얀마인의 생활에서 마약은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다.[554]

세계 2위 마약 생산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미얀마에서 십수톤의 마약이 발견됐다. CNN에 따르면 미얀마 경찰은 미얀마 북동부 쿠트카이 지방의 르위캄 마을을 3개월간 추적 수사한 결과 밀수를 위해 운반하려던 메스암페타민을 18톤을 찾아냈다. UN 마약범죄국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양은 수십년간 아시아에서 압수한 마약 중 최대 규모다. 이를 보관하고 있던 마약 조직원 130여명도 모두 체포됐다고 미얀마 당국은 밝혔다.[555]

(3) 재외국민 범죄피해

미얀마에서는 외국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얀마인과의 합의하에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얀마인과 공동 사업을 하다가 사업체, 수출입물품 등을 횡령당하거나, 이중계약으로 인해 오히려 사기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556]

(4) 코로나-19

미얀마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오보를 퍼뜨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미얀마 통신법 제77조를 근거로 2020년 3월 기준, 207개 웹사이트를 폐쇄했으며, 국방부도 10여 곳의 뉴스 서비스를 차단했다. 국가 긴급 상황 시 언론 보도를 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령을 코로나-19 사태에 적극 대입한 것이다. 이에 미얀마 언론은 어떤 부분

554) KOTRA 양곤무역관, 2018.10.2., "미얀마와 마약, 그리고 골든 트라이앵글,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902/globalBbsDataView.do?setIdx=444&dataIdx=169822〉 (최종검색일: 2021.5.7.)

555) 조선일보, 2020.5.18., "미얀마 시골마을서 마약 18톤 발견...아시아 최대규모",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8/2020051803664.html〉 (최종검색일: 2021. 5.7.)

556)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가/지역별 정보: 미얀마 사건·사고.,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75〉 (최종검색일: 2021.5.7.)

이 오보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만 내놨을 뿐, 여전히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557]

언로가 계속 막히자 26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뉴스 웹사이트를 대거 차단하는 등 언론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 비판 보도를 통제하는 명령을 즉시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등 18개국 주미얀마 대사들도 인터넷을 통한 언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은 미얀마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힘을 실었다. 가급적 체류 국가의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외교가의 불문율을 깨고 지원사격을 해야 할 정도로 탄압 수위가 높다는 얘기다.[558]

자. 캄보디아

(1) 사형제도

캄보디아는 아시아에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다르게도 어떠한 범죄를 막론하고 사형을 선고하거나 또는 집행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내용을 캄보디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캄보디아 헌법(1993)에서는 모든 크메르시민은 생명에 대한 권리, 개인적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과 함께 사형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캄보디아 헌법 제32조). 캄보디아 법은 어떤 개인에도 대한 물리적 학대가 없음을 그리고 모든 시민의 생명과 명예 그리고 존엄을 보장한다(동법 제38조). 이러한 헌법의 선언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특별하게 형벌규범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캄보디아 형법 제67조).[559]

그런데 이와 같은 규범화의 배경에는 20세기, 국가폭력의 형태로 크메르루주세력(Khmer Rouge)이 저지른 대학살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즉 크메르루주는 사형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저항하는 반체제인사 등 정치범과 일반국민을 숙청하였는데, 외관상으로는 합법적인 재판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

557) 한국일보, 2020.4.7., "코로나-19 혼란 악용해 언론탄압 나선 미얀마·필리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071520329629〉 (최종검색일: 2021.5.7.)
558) 한국일보, 2020.4.7.,"코로나-19 혼란 악용해 언론탄압 나선 미얀마·필리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071520329629〉 (최종검색일: 2021.5.7.)
559) 이덕인, 앞의 논문, 119면.

질은 형사재판제도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행된 집단적 살해 행위였던 것이다. 따라서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적 경험은 사형을 단순 폐지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최고규범인 헌법에 그 금지를 규정하여 추후에도 사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를 방지하고자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560]

비록 '허울뿐인 재판(sham trial)'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으나, 1979년 8월, 캄보디아는 대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된 폴포트 등 핵심 인사 5명에게 집단살해죄로 사형을 선고한 이후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사형제도 폐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9년 이후 모택동사상의 성향이 강한 사회주의체제에서 다시 입헌군주형 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된 현실은 엄밀하게 사형폐지가 과거청산과 정의회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로부터 집중되는 관심과 비판을 회피하고, 대내적으로는 향후의 국가적 폭력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과거청산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전범을 처벌하더라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려는 상호억제의 정치적 계산이 내재되어 있다.[561]

캄보디아는 아시아지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사형제도와 관련된 국제적 인권기준에 충실한 국가로써 사형을 다시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형폐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ICCPR 제2선택의정서에는 아직 서명하지 않고 있다.[562]

(2) 마약범죄

캄보디아의 경우, 2020년 6개월 동안 10,512명의 마약관련 용의자가 검거되어 2019년 8,750명보다 20퍼센트 증가했다. 내무부 마약방지국에 따르면 용의자 중 138명이 7개국 출신 외국인이었다. 당국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5,340건의 불법마약이 단속되어 2019년 4,117건보다 29.7%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258킬로그램의 마약, 17개의 소총, 812개의 저울, 1,179개의 오토바이 등이 압수되었다. 캄보디아는 불법 마약으로 사형을 당하지는 않지만 80g 이상의 마약밀매가 적발되면 무기징역형을 받는다.[563]

---

560) 이덕인, 앞의 논문, 120면.
561) 이덕인, 앞의 논문, 120면.
562) International Commiss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사형제 폐지: 각국의 29개 사례연구(제2판), 2018, 18-19면.
563) 뉴스브리핑 캄보디아, 2020.7.14.,"캄보디아 마약검거 20% 증가", 〈http://www.nbcambodia.c

(3) 재외국민 범죄피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경우, 시장이나 터미널 등 많은 인파가 밀집한 장소뿐만 아니라 도로보행 중 또는 툭툭이나 오토바이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에도 날치기, 소매치기 등의 절도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재국 명절을 전후하여 야간에는 도심지 골목길 또는 외곽지역에서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권총을 이용한 범죄행위,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캄보디아에는 불법 유통되고 있는 총기류가 많고 총기를 휴대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사소한 시비가 총격전으로 비화되는 일이 간혹 발생하고 있다. 2013년에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인해 부상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강도사건은 프놈펜(Phnom Penh), 깐달(Kandal), 깜폿(Kampot)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살인사건은 바탐방(Battambang), 프놈펜(Phnom Penh), 깐달(Kandal)과 크라체(Ktatie) 순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대부분의 살인사건은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발표되었다.[564]

캄보디아에서는 교민 간 갈등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수차례 있었으나, 현지인에 의해 우리 교민이 살해된 케이스는 지난 2000년대 초 30대 한인 여성 살해사건 이후, 2016년 총격에 의해 50대 한국인 남성이 사망한 사건이 두 번째였다. 캄보디아인 범인은 중고핸드폰 유통사업을 해온 피해자에게 빚진 돈 4만5천 달러를 갚지 않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565]

2018년에는 중고 핸드폰 관련 사업을 하던 한국인이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해 미화 6만 달러를 가지고 나섰다가 실종되었고, 그 후 2주 만에 하반신 없이 머리와 몸통만 부패한 채 발견되었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현지 경찰의 늦장 수사에 직접 발로 뛰며 시신을 찾아 헤맨 유가족들은 직접 주변 쓰레기장을 뒤져 하체 부분을 찾아냈다. 재 캄보디아 영사 관계자도 현지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간접적인 도움밖에 줄 수 없었다.[566]

---

om/archives/46994〉 (최종검색일: 2021.5.9.)

564)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가/지역별 정보: 캄보디아 사건·사고.,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259〉 (최종검색일: 2021.5.9.)

565) 재외동포신문, 2016.8.18., "캄보디아 교민 총기살해사건 범인 검거",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228〉 (최종검색일: 2021.5.9.)

566) YTN, 2019.4.5., "캄보디아서 발견된 토막 시신...한인 사업가 '의문의 죽음'", 〈https://www.yt

(4) 코로나-19

캄보디아 정보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불필요한 공포심을 자극하는 일부 페이스북 계정과 페이지 접속을 제한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계정과 페이지는 각각 25개, 22개로 이에는 '캄보디아 데일리 크메르', '리얼 뉴스', '크메르 리더스', '캄보디아 히스토리 앤드 소사이어티', '위 아 크메르', '크메르 뉴스 콤산', '크메르 히어로', '패스트 뉴스' 등이 포함되었다.[567]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프놈펜의 대학 졸업식에서 일부 사람들이 다른 질병 때문에 사망했는데도 코로나-19에 의한 것이라고 가짜 뉴스를 떠든다고 비난하면서 이들을 악의적 의도를 가진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했다.[568]

차. 라오스

(1) 사형제도

라오스의 2003년 헌법은 '생명에 대한 해로울 수 있는 모든 관료주의적 공격적인 행위를 금한다'(라오스 헌법 제6조). 또한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보호를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42조). 이와 관련한 헌법조문이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비사법적 조치에서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는 국가사법작용에 의한 사형을 명시적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다. 심각한 범죄를 범한 범죄자에게는 사형이 규정되어 있지만(라오스 형법 제32조 제1항), 한편 임신 중이거나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사형집행은 금지한다(동법 제32조 제3항).[569]

필요적 사형의 경우는 인명살상 용도로 화학적 무기를 사용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라도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켰거나(동법 제80조) 또는 형법 제146조에서 규정한 수량의 마약을 제조하거나 또는 소비, 거래, 소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항소를 포함하여 모든 구제절차를 거친 사형수의 경우에 라오스 인민대법원장

---

n.co.kr/_ln/0134_201904051852084365〉 (최종검색일: 2021.5.9.)

567) 아시아타임즈, 2020.3.19., "캄보디아, 코로나-19 가짜뉴스 철퇴… 언론계도 '환영'", 〈https://m.asiatime.co.kr/1065579238115712〉 (최종검색일: 2021.5.10.)

568) 뉴스브리핑 캄보디아, 2020.3.10., "코로나 가짜 뉴스 유포자는 '테러리스트'", 〈http://www.nbcambodia.com/archives/44942〉 (최종검색일: 2021.5.10.)

569) 이덕인, 앞의 논문, 124-125면.

은 사형선고의 정확성 검토를 하고 사형집행을 명한다. 이 명령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사형수는 사면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사면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형수가 사면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은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1년간 집행이 유예된 뒤에 진행된다(라오스 형사소송법 제107조).[570]

2010년 5월 4일에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과정에서 라오스 정부대표단은 자신의 사형제도가 "특히 마약밀매와 같은 가장 극악하고 중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법적으로 존치되어 있으나 지난 수년간 모라토리엄을 유지해왔고, 향후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형법 개정을 고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동년 12월에 개최된 유엔인권이사회 제15차 회의에서 자신의 기존 밝힌 의사와는 달리 사형폐지 권고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마약밀매처럼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한 예방은 사형제도가 매우 효과적이고 또한 이를 당장 폐지할 수 있는 상황이나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단지 라오스는 ICCPR규약 당사국으로서 현행 형사법에 있는 사형대상범죄의 범위가 해당 규약 제6조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검토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2011년 1월 27일에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는 라오스로 부터 제출받은 아동권리협약(CRC) 제2차 이행보고서에 대해 검토를 하였다. 이후 2월 4일 라오스의 국내법이 아동 사형을 금지하고 않음을 우려하면서 미성년자의 사법처리에 대해서 위원회 일반논평 제10호(2007)를 받아드리도록 요청한 바 있다.[571]

(2) 마약범죄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마약은 주로 아편이며, 전국 18개 주 중, 북서부 10개 주에서 마약이 생산되며, 특히 Oudomxay, Luang Namtha, Xieng Khouang 및 Luang Prabang 등 6개주에서 연간 생산 마약의 90%가 생산된다. 라오스 국회는 2007년 12월 라오스 최초의 마약법을 심의 통과하여 그동안 형법 제146조에 의존하던 마약범 관련 처벌을 보다 현실성 있게 구체화하였다. 최근 미얀마 및 태국 등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헤로인 및 신종 마약인 ATS(Amphetamine Type Stimulants)가 라오스를 경유하

570) 이덕인, 앞의 논문, 124-125면.
571) 이덕인, 앞의 논문, 124-125면.

여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비교적 저가인 ATS에 대한 라오스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572]

라오스 법무부가 제출한 2020년 범죄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6,209건의 범죄 중 불법 마약 거래와 관련한 범죄가 3,519건으로 가장 많은 범죄로 기록되었으며, 경찰 작전으로 암페타민정 1,617kg, 헤로인 380kg, 대마초 4,400kg, 필로폰 3,476kg 등을 압수하였으며 또 차량 145대, 오토바이 715대, 보트 2척, 총기 92정 등을 마약상과 밀매상으로부터 압수하였다.[573] 최근 해외에서 라오스인이 마약범죄에 직접 개입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범죄조직의 운반책으로 활용되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함은 물론, 사형 등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574]

(3) 재외국민 범죄피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라오스에서의 재외국민 범죄피해 유형에는 실종 및 오토바이 날치기에 의한 절도, 숙소침입, 음료수 약취유인, 사기도박 연루, 지역간 이동시 차량 내 분실, 성추행, 교통사고 등이 있다.[575]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라오스 북부 관광지 루앙프라방에서 관광 중이던 30대 한국 여성 관광객이 실종된 바 있다. 실종된 지 4일 후, 실종된 장소로부터 약 60km 떨어진 인적이 뜸한 밀림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포착되면서 납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색을 벌였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576]

또한 2015년에는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 시내에서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이 빈발

572) 주라오스대사관, 라오스내 마약문제, 2009.3.2., 〈https://overseas.mofa.go.kr/la-ko/brd/m_1887/view.do?seq=681637&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최종검색일: 2021.5.10.)

573) News Korea Philippines, 2020.12.18., "동남아 최대 마약 생산지 골든트라이앵글, 중국이 대물림?", 〈http://www.newskoreaphilippin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2〉(최종검색일: 2021.5.10.)

574) 주라오스대사관, 마약범죄 연루 주의, 2006.8.21., 〈https://overseas.mofa.go.kr/la-ko/brd/m_1871/view.do?seq=572292&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최종검색일: 2021.5.10.)

575)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가/지역별 정보: 라오스 사건·사고,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36〉(최종검색일: 2021.5.10.)

576) 연합뉴스, 2017.5.29., "라오스 관광지서 30대 한인 여성 일주일째 실종…현지경찰 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70529041751084〉(최종검색일: 2021.5.10.)

하는 가운데 폰파파오 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탄 2명이 자전거로 이동 중이던 한국 여성에게 접근하여 가방끈을 절단 후 현금 $2,400이 든 가방을 가로채 도주하였고, 부리찬 거리에서도 위와 같은 수법으로 한국 여성이 핸드폰과 현금(70만 킵) 및 여권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뺏기는 피해를 당하였다.[577]

(4) 코로나-19

라오스는 정부는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하여 엄중 대응하고 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경찰은 2020년 3월, 25세의 여성을 체포하였는데, 그녀의 혐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싼지앙 쇼핑몰에서 쇼핑하고 있다는 소문을 온라인으로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라오스 정부 보건부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여성이 게시한 이야기가 허위라고 발표하였다.[578] 그러나 라오스 정부는 2018년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사고 당시 보도를 통제해 실제 사망자와 피해자 수를 축소한 적이 있어 당국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다.[579]

카. 태국

(1) 사형제도

(가) 사형규정 법률과 현황

태국은 사형을 여전히 유효한 형벌로 운용하고, 실제로도 사형을 부과하는 54개국 중 하나이다.[580] 사형의 선고는 태국 형법 제18조(Section 18) 아래서 운용이 가능한 형벌의 하나이다. 현행의 사형 집행 수단은 독극물 주사이다.[581]

---

577)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안전공지: 라오스,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 주의, 2015.5.29.,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3845&pagenum=2&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EB%9D%BC%EC%98%A4%EC%8A%A4〉 (최종검색일: 2021.5.10.)

578) 러브인라오스, 2020.3.2., "소셜미디어에 코로나 가짜뉴스 퍼트린 라오인 체포", 〈https://www.loveinlaos.com/bbs/board.php?bo_table=b_news&wr_id=587〉 (최종검색일: 2021.5.10.)

579) 아시아투데이, 2020.2.9., "라오스 신종코로나 의심 사망자 발생…쉬쉬하는 정부에 의구심↑",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209010004849〉 (최종검색일: 2021.5.10.)

580) Amnesty, 'Death penalty in 2020: Facts and figures' (Amnesty, 21 April 2021)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21/04/death-penalty-in-2020-facts-and-figures/〉 accessed (최종검색일: 2021.7.31.)

581) Criminal Code of Thailand Section 19. Ministry of Justice regulations on the rules and

현재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103개로 형법, 군형법, 의회제정입법; 총기, 탄약, 폭발물, 폭죽, 총기유사물법(Firearms, Ammunition, Explosives, Fireworks and Imitation of Firearms Act B.E.2490), 마약법(Narcotics Act B.E.2522), 매춘 방지, 진압법(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Prostitution Act, B.E.2539)에 산재되어 있다.[582]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는 의도적 살인(태국 형법 제288조), 폭력 수반 의도적 살인(태국 형법 제289조),[583] 폭력 수반 방화죄(태국 형법 제218조), 강간살인치사죄(태국 형법 제280(2)조), 테러리즘(태국 형법 제135/1조), 강도살인치사죄(태국 형법 제339조), 공무원 부패행위(반부패조직법 제123/2조), 1급 마약밀매(마약법 제66조) 등이 포함된다.[584]

2021년 3월 23일 현재 254명의 사형 집행 대기 수용자가 있고, 그들 중 절반 이상이 마약밀매 관련 범죄자들이다.[585]

더욱이 2016년 1월에서 2019년 12월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법원은 216건에 이르는 사형을 부과했다.[586]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 건수에 비해 실제로 그 집행은 많이 되지 않았는데, 태국에서의 가장 최근의 사형 집행은 2018년 6월 18일에 있었다. 이 사건에서 범죄자는 강도살인(치사)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단을 받았다. 태국 대법원은 이 범죄자에게 사형을 부과해야 한다는 1심법원과 항소법원의 판단에 동의를 했다. 이 범죄자는 2009년에 사형이 집행된 이래로 9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첫 번째 범죄자였다.[587] 주목할만 한 것은 이 사건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면 태국은

---

methods of execution of prisoners B.E. 2646 [THA] (2003)

582) Wipaporn Natigirachord,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 case study of appropriate offenses' (2020) Kasetsart Journal of Social Sciences, 41, 576

583) It should be noted that the only available penalty of Section 289 is the death penalty.

584)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review of the policy and the situation of Death Penalty, Narcotic Crimes and enforced disappearance in Thailand including the protectio n of Human right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inal Report, 2021, 1면.

585) Department of Corrections, 'Statistics report on death row prisoners' (23 March 2021, Department of Corrections) 〈http://www.correct.go.th/executed/index.php〉 accessed 26 July 2021

586)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and Union for Civil Liberty, 'The 39th Workin g Group Meeting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Review Proces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FIDH.org, 2021) 〈https://www.fidh.org/IMG/pdf/fidh_ucl_upr_thailand_march_2021_th.pdf〉 accessed 26 July 2021

587) BBC News Thai, 'Is the death penalty still necessary?' (BBC News Thai, 19 June 1028), 〈https://www.bbc.com/thai/thailand-44534477〉 accessed 29 July 2021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고려되었을 것이다.[588]

범죄자가 항소법원과 대법원("Deka Court"로 알려짐)에 상소할 권리가 주어짐에 따라 사형이 즉시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589] 더욱이 사형수는 국왕의 사면을 탄원할 수 있다.[590] 또한 사형은 임부에게 부과되지 않으며,[591] 심신장애자[592]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593]에게도 부과되지 않는다.[594]

1935년 이래로 326명의 죄수에 대하여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가운데 319명의 죄수가 총살형에 처해졌고,[595] 7명의 죄수는 독극물 주사형에 처해졌다.[596]

태국에서 지난 2009년 이래 9년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태국 교정국은 2012년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26세 죄수에 대한 집행을 18일 방콩 교도소에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사형수는 피해자를 24차례나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친 혐의로 극형을 언도받고서 수감 중이었다. 사형집행은 약물주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태국에서는 1935년 이래 주로 총살형으로 325명을 사형에 처했다가 2003~2009년 사이에는 독극물 주사로 6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지만 교정국은 성명을 내놓으면서 중대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일깨우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사형집행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597]

태국은 2009년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제2차 인권정책기본계획(Human Rights 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태국은 이후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쉽게도 당해 연도에 2건의 사형을 집행한 것이며, 이후로 진전된 사항은 없었다.

---

588)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review of the policy and the situation of Death Penalty, Narcotic Crimes and enforced disappearance in Thailand including the protectio n of Human right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inal Report, 2021, 2면.
589) Criminal Procedure Code of Thailand Section 193 and 216
590) Criminal Procedure Code of Thailand Section 259
591) Criminal Procedure Code of Thailand Section 247
592) Criminal Procedure Code of Thailand Section 248
593) Criminal Code of Thailand Section 18 Paragraph 2 and 3
594)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review of the policy and the situation of Death Penalty, Narcotic Crimes and enforced disappearance in Thailand including the protectio n of Human right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inal Report, 2021, 2면.
595) This was abolished in 2003 and replaced by a lethal injection.
596) Thairath Online "Is the death penalty still necessary? The revision of the latest death sent ence" (Thairath, 10 January 2020), 〈https://www.thairath.co.th/news/local/bangkok/1744660〉 accessed 29 July 2021
597) 뉴시스, 2018.6.20., "태국서 9년 만에 사형집행 재개..."앰네스티 강력 반발", 〈https://newsis.com/view/?id=NISX20180620_0000341370&cID=10101&pID=10100〉 (검색일: 2021.11.15)

2011년 10월 5일에 태국은 국가별 정례인권에 대한 검토과정(UPR)에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사형이 이미 폐지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임산부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형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인권이사회는 ICCPR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은 물론이고 국가인권계획에 있는 대로 태국의 사형폐지를 위한 법률제정 그리고 마약밀매 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일정한 관례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그 외에도 사형의 감형과 사형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히 폐지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최대한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여야 함 등을 권고한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또한 2012년 3월 15일, 제19차 인권이사회 회의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기도 하였다.[598]

많은 다수의 사회여론은 사형 정당성에 대해 지지하기도 하였고 사회방위의 필요성과 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영구히 사형수가 격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2003년부터 시행된 주사로 집행하는 형이 이전의 총살형에 비해 관대한 것은 문제이며 이에 대해 비판을 하기도 한다.[599]

고의와 과실을 불문하고 생명에 대한 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았더라도 총기나 또는 폭발물을 이용하거나 또는 살해할 의도로 성인여성(태국 형법 제276조, 제277조 제3항)이나 또는 15세 미만 연령의 청소년(동법 제277조 제3항, 제280조)을 강간함으로써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특히 고문이나 또는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발생시킨 것을 포함하여 금전을 목적으로 한 약취유인(동법 제313조, 제314조), 부녀자에 대한 인신매매(형법 제283조)와 강제적으로 마약을 투여하는 행위 그리고 마약밀매 수입 또는 수출, 제조(태국 마약법 제65조)나 일정량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의 단순소지행위(동법 제66조), 뿐만 아니라 테러와 관련된 범죄로 항공기의 납치나 또는 집회나 종교적인 장소나 또는 운송자원에 대한 파괴행위(태국 형법 제218조) 그 외에도 경제관련 범죄의 일부 그리고 공무원의 뇌물수수(동법 제149조) 등에 대해서도 사형이 부과될 수 있다. 사형 확정이 된 사람은 태국 국왕의 사면 특권에 기초하여(태국 헌법 제225조) 60일 이내의 기간으로 사면청원을 할 수 있다. 청원이 접수되면 태국 교정기관은 이와 관련하여 필요서류를 작성하고 태국 교정부, 태국 법무부 장관, 태국 총리실,

598) 이덕인, 앞의 논문, 135면.
599) 이덕인, 앞의 논문, 133면.

태국 추밀원 그리고 태국 국왕에게 각각 전달한다. 국왕은 사면에 대한 여부를 자신의 재량행위로 하고, 청원이 기각되면 사형은 그대로 확정되고 다시 새로운 청원을 제기할 수 없다. 국왕에 따른 사면은 사형집행 유예가 되며 이와 관련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형집행은 정지한다(태국 형사소송법 제259조, 제267조).[600]

현행 태국의 헌법(2007)은 판결이나 또는 법률에 의한 처벌이 잔인하거나 또는 비인간적으로 처우되어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형은 모순되게 보이지만 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태국 헌법 제32조). 그러나 지난 헌법(1997)과 비교하면 미약할 수는 있지만 그 위헌 여부에 대해서 다투거나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처벌의 잔인성을 포함하여 비정상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입법재량 문제도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게 된 것이다. 변경된 조문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태국의 헌법이 사형을 명백히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해석을 법원이나 입법기관이 결정하도록 여지를 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더불어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본인이 요청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가가 제공하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이 있고 이를 헌법에서도 국가 의무로 하고 있다(동법 제40조 제7항).[601]

(나) 사형제도 존폐 논쟁

사형의 폐지는 태국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2014년의 여론 조사에서 조사 그룹에서 2374명의 표본을 추출해서 인터넷 상으로 의견을 조사해 보았다. 그 가운데 사형 존치에 대한 지지 입장이 88%에 이르렀다.[602]

2018년 Richard Foundation에 의해 사형에 대한 태국 국민들의 입장을 파악하는 조사가 행해졌다. 이 조사에서 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93.4%가 사형 존치에 대한지지 입장을 표명했고, 단지 6.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형제도에 반대하였다. 나아가 조사 대상 사람들 가운데 90.2%에 해당하는 이들이 사형의 집행에 찬성했다.[603][604]

---

600) 이덕인, 앞의 논문, 133~134면.
601) 이덕인, 앞의 논문, 134면.
602) Srisombat Chokprachaksub, Nittaya Samredpol and Namtae Bunmeesalang, '*Thai attitude s toward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 (2019) Criminal Justice System Journal, 10(3)
603) Thai PBS, 'Polls show 93.4% support the death penalty' (Thai PBS, 23 June 2018), 〈https://news.thaipbs.or.th/content/272931〉 accessed 29 July 2021

(다) 사형제도와 태국 국가인권위원회(NHRCT) 입장

2015년에 태국 국가인권위원회(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ailand, NHRCT)는 사형을 폐지할 것을 정책으로 하고, 법적 권고를 하는 내용을 정부 내각에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사형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몇몇 규정을 개정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는데, 범죄 행위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나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가 없는 범죄들에 대한 사형 규정의 제고를 제안했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내각이 새로 마련되는 법률에는 사형을 규정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이 인권을 침해하므로 종국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정부 내각에 권고했다.[605]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는 사회 일반의 여론에 달려있다고 인터뷰를 했다.[606] 나아가 2020년 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한 라디오쇼의 인터뷰에서 태국 법제도 아래서 사형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폐지는 사회 일반이 여론에 달려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태국 사회는 아직은 사형을 완전히 폐지할 수 있을 정도의 법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607][608]

(라) 사형폐지 계획과 관련법안

태국에서 사형을 폐지할 것을 고려한 첫 시도는 1936년 태국의 2대 총리 내각에서 혁명법안(the revolution of B.E.)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그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다.[609]

---

604)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review of the policy and the situation of Death Penalty, Narcotic Crimes and enforced disappearance in Thailand includ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inal Report, 2021, 3면.

605) NHRCT, Report to Propose Policy and Legal Recommendations (NHRCT, 2015)

606) Thaipost, 'The chairman of the NHRCT suggests th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s up to the society's opinion' (Thaipost, 2 September 2018), 〈https://www.thaipost.net/main/detail/16652〉 accessed 31 July 2021

607) NHRCT, 'The interview regarding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NHRCT, 3 February 2020), 〈https://www.facebook.com/watch/?v=505281310128420〉 accessed 31 July 2021

608)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review of the policy and the situation of Death Penalty, Narcotic Crimes and enforced disappearance in Thailand includ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inal Report, 2021, 3면.

최근의 사형 폐지 계획은 제2차 태국 국가인권계획(2009-2013),[610] 제3차 태국 국가인권계획(2014-2018),[611] 제4차 태국 국가인권계획(2019-2022)[612]인데, 이들 각 계획은 2008년, 2013년, 2018년에 공표되었다.[613]

2015년 4월 20일에 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폐지를 위한 정책 권고와 법적 권고를 고려한다는 정부내각 방침에 법무부장관을 주무부처 장관으로 하여 관련 다른 부처장관이 함께 서명했다.[614]

2018년에 Wissanu Krea-ngam 태국 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는 부패 문제를 규율하는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에는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그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형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을 것임도 확인했다. 그럼에도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서 사형 대신에 종신형이나 20년 징역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와 의회 관계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615]

하지만 (법제도 운용) 실제에 있어서 사형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아직 없다. 9년 동안 사형 집행이 없다가 2018년에 사형을 집행하면서 사형제도가 재조명되었ㄷ. 따라서 태국 정부가 사형제도 폐지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정책 방향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태국이 1966년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에 비준했지만 사형 폐지를 지향하는 ICCPR의 제2선택의정서에는 비준하지 않았음은 주목해야 할 일이

609) Sarunya Thepsongkro, 'The death penalty after the revolution of B.E. 2475: ideas, politics and arguments regarding the death penalty in Thailand (B.E. 2475-2499)' (2015) Silapawa ttanatham Magazine, 36(8), 77

610) Department of Rights and Liberties Protection Ministry of Justice, *The Second National Human Rights Plan* (Department of Justice 2008)

611) Department of Rights and Liberties Protection Ministry of Justice, *The Third National Hu man Rights Plan* (Department of Justice 2013)

612) Department of Rights and Liberties Protection Ministry of Justice, *The Fourth National Human Rights Plan* (Department of Justice 2018)

613)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review of the policy and the situation of Death Penalty, Narcotic Crimes and enforced disappearance in Thailand including the protectio n of Human right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inal Report, 2021, 4면.

614) NHRTC, 'Press release NHRCT praised and thanked the Thai government for consideratio n on the abolishment of capital punishment' (NHRTC, 21 April 2015), 〈http://www.nhrc.o r.th/NHRCT-Work/Statements-Press-〉

615) Matichon Online 'Wissana accepts the government's promise to the UN The new law will be free from the death penalty' (Matichon Online, 9 January 2017), 〈https://www.maticho n.co.th/politics/news_421605〉 accessed 29 July 2021

다.[616] 나아가 태국은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그 집행을 동결하자는 2016년 12월 19일, 2018년 12월 17일, 2020년 12월 16일 유엔 총회(UN General Assembly, UNGA)의 의결에 기권했다.[617]

태국에서의 최초의 인권단체인 시민자유연합(Union for Civil Liberty)은 태국 정부는 모든 죄형규정에서 사형을 철폐하고, 즉시 사형의 집행을 중단하며,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사형의 집행을 동결하자는 다음 유엔 총회(UNGA)에 찬성표를 던져야 하며, 가능한 한 사형이 형벌로 규정되어 있는 많은 범죄를 비범죄화 또는 사형을 형벌에서 삭제하고, 마약밀매범죄에서도 또한 사형을 형벌 목록에서 빼버려야 하며,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2선택의정서에도 비준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618]

국제사면위원회 태국(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은 태국 정부에 대해 위 단체와 유사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사형 집행의 즉각적인 동결이 제4차 국가인권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죄형규정에서 가능한 한 많이 사형을 형벌 목록에서 삭제할 것과 궁극적으로 사형제도의 철폐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619] 2019년에 국제사면위원회 태국은 태국 정부가 사형의 존치가 범죄 예방이나 그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비난 성명을 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성명은 태국 정부가 2018년에 사형 집행을 재개한 후에 나왔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 성명에서 국제사면위원회 태국은 사형의 집행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620] 태국 당국이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2019년을 불과 1년 앞두고 돌연 사형을 재개한데 대해 국제 인권단체 등은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621][622]

---

616) OHCHR, 'STATUS OF RATIFICATION INTERACTIVE DASHBOARD' (OHCHR, 2021), 〈http://indicators.ohchr.org/〉 accessed 31 July 2021

617)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and Union for Civil Liberty (n 6)

618) ibid

619)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2021) , 〈https://www.amnesty.or.th/our-work/death-penalty/〉 accessed 31 July 2021

620)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End the death penalty'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19 June 2019), 〈https://www.amnesty.or.th/latest/news/129/?fbclid=IwAR0pUj_k8NNVNkmL3U3kdTkDwY8KnPC0xBAQwCQCaZChpu_k1X2FY4Bsv-U〉 accessed 31 July 2021

621) 뉴시스, 2018.6.20., "태국서 9년 만에 사형집행 재개..."앰네스티 강력 반발"",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80620_0000341370〉 (최종검색일: 2021.5.11.)

(2) 마약범죄

(가) 마약범죄 관련현황

태국은 마약 생산 부문, 마약 유통 부문, 마약 사용 부문, 불법적 마약 밀매 부문 등에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마약에는 아편, 헤로인, 마리화나, 메스암페타민, 휘발물질(volatile substances), 코카인, 엑터시스(ectasis)와 몇몇 활성물질(active substances)이 있다.[623]

1979년 마약법(the Narcotics Act B.E. 2522)에 의하면 마약에는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1유형은 헤로인과 같은 중대마약이고, 제2유형은 몰핀, 코데인, 아편과 같은 일반마약이며, 제3유형은 코데인을 함유하는 액상 기침약처럼 제2유형의 마약을 함유하고 있는 약물이며, 무수아세트산(acetic anhydride)과 같이 제1유형 또는 제2유형의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이고, 제5유형은 cannabis와 같이 제1유형에서 제4유형까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마약이다.[624] 마약의 제조, 수입, 수출,[625]배포, 배포 목적의 가공,[626]가공(processing),[627] 이들 마약의 사용[628]은 처벌된다.

주목할 것은 칸나비스(cannabis)는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대개는 의학적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629] 그리고 또한 크라톰(Kratom)은 제5유형에 해당하는 마약으로서 판매할 수 없고,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겐 공여할 수 없다는 제한은 있지만 합법화되었다.[630]

2019년에 태국에서는 마약범죄 혐의로 18만 2781건의 체포사례가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18만 9841건의의 신원 확인 혐의자와 2278명의 신원불상 범죄자가 있었다. 마약범죄 관련 체포사례는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13만 8150건의 메스암페타

622)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review of the policy and the situation of Death Penalty, Narcotic Crimes and enforced disappearance in Thailand includ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inal Report, 2021, 5면.
623) Office of the Narcotics Control Board, The results of the nationwide narcotics crackdown Annual Report 2019 (Office of the Narcotics Control Board, 2020) 3
624) Narcotics Act B.E. 2522 (1979) Section 7
625) Narcotics Act B.E. 2522 (1979) Section 75
626) Narcotics Act B.E. 2522 (1979) Section 67/1
627) Narcotics Act B.E. 2522 (1979) Section 76
628) Narcotics Act B.E. 2522 (1979) Section 92
629) Narcotics Act (No. 7) B.E. 2562 (2019)
630) From 24 August 2021 onward. Narcotics Act (No. 8) B.E. 2564 (2021)

민 사례에서 약 396,567,340.06정(tablets), 2만3688건의 Ice Tablets 사례에서 약 17,504.72Kg, 1005건의 헤로인 사례에서 약 723.45Kg, 55건의 코카인 사례에서 약 41.91Kg, 6926건의 건조 칸나비스 사례에서 약 27,560.21Kg, 12,819건의 kratom 사례에서 약 93,106Kg, 682건의 ketamine 사례에서 약 92,929.94Kg, 213건의 엑터시스(ectasis) 사례에서 약 265,699.36정(tablets)이다.[631]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3억 4천 4백만정의 메스암페타민, 20,662Kg의 아이스태블릿, 2,760Kg의 헤로인 , 27만9868정의 엑스터시, 1만9475Kg의 칸나비스, 42Kg의 코카인, 1058Kg의 케타민이 태국에서 마약거래단계에서 압수되었다.[632] 이 기간 동안 마약물 압수 통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외로 수출하려다 압수된 사례건수가 총84건으로 72.08Kg의 아이스태블릿, 3만 9002정의 메스암페타민, 285.69Kg의 헤로인, 1922정의 엑스터시, 32.24Kg의 마리화나, 0.005Kg의 코카인, 11.04Kg의 케타민이었다. 수출 목적국은 17개국으로 중국, 마카오, 대만, 홍콩, 필리핀, 일본, 한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뉴질랜드, 호주, 스페인,아랍에미리트, 러시아, 영국(England), 미국, 노르웨이였다.[633] 이 기간 동안 마약 압수 통계에 의하면, 태국에서 수출되어 외국에서 적발된 사례건수는 총21건이고, 압수된 마약에는 1203Kg의 아이스태블릿, 23.5Kg의 헤로인, 392Kg의 마리화나, 2.04Kg의 케타민, 1320정의 엑스터시였다. 그 도착국에는 아랍에미리트,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호주, 뉴질랜드가 있었다. 이들 마약의 대부분은 중국과 서아프리카의 국제적 마약 밀매 연계망에 의한 것이었다.[634]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의 태국에서의 마약 밀매 동향은 케타민 거래의 증가가 특징적이다. 2021년 첫 3개월(4분의 1분기) 동안 651건의 케타민 거래가 적발되었는데, 이 가운데 607건이 고순도 케타민이었다. 44건은 케타민 함유 합성물이었고, 31건은 케타민과 아이스 혼합물, 3건은 케타민과 코카인 혼합물, 5건은 케타민과 엑스터시 혼합물, 5건은 케타민과 기타 성분과의 혼합물이었다. 흥미롭게도 케타민 함유 혼합물

631) Office of the Narcotics Control Board (n 31) 1
632) Neawna, 'The statistics of drug trafficking abroad During Oct. 20 - Jun. 21, a total of 84 cases were sent to Thailand, 21 cases' (Neawna, 7 June 2021), 〈https://www.naewna.com/local/578441〉 accessed 2 August 2021
633) ibid
634) ibid

마약은 태국에서 "케타민 밀크파워(ketamine milk power, Ya-Kay-Nom-Pong)"라는 별명으로 불리었다.[635][636]

(나) 마약범죄 관련기관과 대응협력

태국에서 범죄를 포함한 형사문제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규율하는 주된 법은 형사문제에 대한 상호협력법(the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ct B.E. 2535, 1992)이며, 이 법은 수사, 증인신문, 형사절차의 개시와 송환법(the investigation, witness interview, starting of criminal cases, and the Extradition Act B.E. 2551, 2008)을 서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왕립 태국 경찰은(the Royal Thai Police)은 INTERPOL의 회원국이고,[637] 마약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여러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러시아와의 양해각서 교환이다.[638] 나아가 왕립 태국 경찰은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과 양자간 협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가 그러한 나라들이다.[639] 왕립 태국 경찰은 기관간 태스크포스(Joint Taskforce)를 조직하여 마약범죄와 국제적 조직범죄에 대처하고 있으며, 마약통제위원회(the Office of the Narcotics Control Board)와 왕립 태국 경찰, 특수수사와 자금세탁 방지국(Department of Special Investigation and Anti Money Laundering Office), 호주 연방경찰사이의 협정이 그 예의 하나이다.[640]

---

635) Posttoday 'Office of the Narcotics Control Board reveals that over 40 cases of K-drugs and other narcotics were arrested in 2018-2021' (Posttoday, 11 January 2021), 〈https://www.posttoday.com/social/general/642482〉 accessed 2 August 2021

636)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review of the policy and the situation of Death Penalty, Narcotic Crimes and enforced disappearance in Thailand includ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inal Report, 2021, 7면

637) INTERPOL, 'Thailand' (INTERPOL, 2021), 〈https://www.interpol.int/en/ Who-we-are/Member-countries/Asia-South-Pacific/THAILAND〉 accessed 11 August 2021

638) MGR Online, 'Cabinet gives green light to MOU on Thai-Russian police against transnational crime' (MGR Online, 6 July 2021), 〈https://mgronline.com/politics/detail/9640000065688〉 accessed 11 August 2021

639) Government Public Relation Department, 'ASEAN Missions of the Royal Thai Police' (Government Public Relation Department, 15 May 2016), 〈http://www.aseanthai.net/ewt_news.php?nid=5668&filename=index〉 accessed 11 August 2021

640) DSI, 'Memorandum Cooperation between the Department of Special Investigation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OUs)' (DSI, 31 July 2020), 〈https://www.dsi.go.t

대검찰청은 마약범죄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관할하고 외국 기관과 협력하는 약물범죄 소송을 위한 특수검찰부(the Office of the Special Prosecutor for Drug Litigation)를 조직하고 있다. 마약범죄와 마약범죄인의 송환, 마약범죄에서 외국 기관과의 협력 사례에서의 형사문제에 관한 국제협력법(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 on Criminal Matters in the case of drug offences and extradition cases and co-operate with foreign organisations)에 근거해 협의하는 대검찰청은 마약단속국(as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 아시아-태평양마약국(Asia-Pacific Drug Agency, HON – LEA)과 협력한다.[641]

특별수사부(Department of Special Investigation, DSI)는 마약범죄와 투쟁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와 협력해 왔는데, 예를 들면 마약통제위원회(the Office of the Narcotics Control Board)와 왕립 태국 경찰, 특수수사와 자금세탈방지국, 호주 연방경찰 사이의 마약범죄와 국제적 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합동대책팀(Joint Taskforce)의 조직, 미국 내국 안전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태국의 이민국과 세관, 태국 법무부, 특수수사부(DSI) 사이의 국제적 범죄와 투쟁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교환,[642] DSI와 국가범죄국(National Crime Agency, NCA)의 협력 등이다.[643]

마약통제위원회(the Office of the Narcotics Control Board, ONCB)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과 협력해 왔는데, 예를 들면 태국과 베트남,[644] 태국과 미얀마,[645] 태국과 캄보디아,[646] 태국과 호주,[647] 태국과 뉴질랜드

---

h/th/Detail/ DSI-MOU-By-Time〉 accessed 11 August 2021

641) Department of Narcotics Litigation, 'Mission' (Department of Narcotics Litigation, 2021), 〈http://www.nct.ago.go.th/index.php/2013-10-10-09-23-58〉 accessed 11 August 2021

642) DSI (n 47)

643) DSI, 'DSI meeting with British police to discuss cooperation in investigations' (DSI, 3 August 2021), 〈https://www.dsi.go.th/en/Detail/1e7eaddb0504d4885e6a23b00d66fc1a〉 accessed 11 August 2021

644) ONCB, 'NACC develops cooperation betwe
en Thailand and Vietnam, focusing on cooperation in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drugs.' (ONCB, 2020), 〈https://gnews.apps.go.th/news?news=53319〉 accessed 11 August 2021

645) ASEAN-NACRO, 'ONBC meets bilateral on the 20th Cooperation on Drug Suppression in Taunggyi,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ASEAN-NACRO, 2018) 〈https://aseannarco.oncb.go.th/ewt_news.php?nid=395〉 accessed 11 August 2021

646) ASEAN-NACR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NCB heads the Thai delegation to attend

관세청 사이의 국제적 마약 유통에 대한 정보 교환의 논의[648]와 같이 태국과 상대국 사이의 양자회의가 개최되었다. 태국 마약통제위원회(ONCB)와 한국 국가정보원(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국제 마약 거래망과 그 구성원들에 의해 야기될 범죄 위협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 마약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각서를 교환했다.[649] 태국 마약통제위원회는 또한 메콩강 유역의 6개국과 협력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미얀마, 태국, 베트남이 그 협력국들이며, 이 6개국과의 사이에서 마약 통제를 위해 안전한 메콩강 유역을 위한 행동계획(safe Mekong action plan)을 운용하고 있다.[650][651]

2021년에 태국 마약통제위원회는 마약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있어서 ASEAN 구성국들과 협력 증진ㅇ르 목표로 ASEAN 산하 마약대처협력센터(Centre for Drug Cooperation, ASEAN-NARCO)를 통하여 뉴스, 정보, 지역적 마약 실태, 마약에 관한 학술정보를 교환하고, 마약 조사를 위한 정보네트워크를 발전시키며, ASEAN 마약 정보기술을 개발하고, 마약에 대한 공중의 자각을 촉구하기 위한 전향적인 공공관계(대민관계)를 설정해 나가고 있다.[652]

---

the 12th Thailand-Cambodia Bilateral Conference on Cooperation on Drug Suppression No. 12.' (ASEAN-NACRO, 7 September 2018) 〈https://aseannarco.oncb.go.th/ewt_news.php?nid=438&filename=〉 accessed 11 August 2021

647) ONCB, 'ONCB increases the capacity of verification exchanging drug samples between Thailand and Australia Under the cooperation of Taskforce Storm' (ONCB, 20 September 2018), 〈https://gnews.apps.go.th/news?news=47515〉 accessed 11 August 2021

648) MGR Online, 'ONCB discusses New Zealand customs Exchange information for transnational drug delivery' (MGR Online, 12 June 2021) 〈https://mgronline.com/crime/detail/9640000056748〉 accessed 11 August 2021

649) Ministry of Justice, 'South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meets with the NACC and exchanges a book of cooperation against drug crimes. Prepare to work together to develop solutions to drug trafficking problems on social media' (Ministry of Justice, 23 October 2020), 〈https://www.moj.go.th/view/48960〉 accessed 11 August 2021

650) ASEAN-NACRO, 'Workshop on the preparation of the 5-year Safe Mekong River Action Master Plan (2019-2023) under the Mekong Safer 6 Countries Project' (ASEAN-NACRO, 16 April 2018), 〈https://aseannarco.oncb.go.th/ewt_news.php?nid=387〉 accessed 11 August 2021

651)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review of the policy and the situation of Death Penalty, Narcotic Crimes and enforced disappearance in Thailand includ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inal Report, 2021, 8면.

652) ASEAN-NACRO, 'History' (ASEAN-NACRO, 3 August 2015), 〈https://aseannarco.oncb.go.th/ewt_news.php?nid=9〉 accessed 11 August 2021

(다) 마약범죄와 형벌 및 처우

형사처벌의 수위가 마약범죄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마약과 관련된 모든 범죄는 대개 징역형의 부과가 형사제재로 수반된다.[653] 예를 들면 제1유형의 마약 사용은 6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의 부과 또는 10,000바트에서 6만바트의 벌금형의 부과 또는 앞의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654], 제1유형의 마약과 다른 유형의 마약 사용에 대해서는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의 부과나 2만에서 10만바트까지의 벌금형의 부과 또는 앞의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655]가 형사제재로 수반된다. 암페타민이나 헤로인과 같은 제1유형의 마약 20g 이상을 가공하거나 유통의 목적으로 가공한 행위에 대한 최고 형벌은 사형이다.[656] 나아가 제1유형의 마약을 제조, 수출, 수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1백만에서 5백만바트의 벌금형[657]과 함께 종신형이 부과될 수도 있다.[658]

반면에 제5유형의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제1유형의 그것에 비해서 가볍지만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5유형의 마약을 제조, 수출, 수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만바트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고,[659] 제5유형의 마약을 가공한(processing)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만바트 이하의 벌금형 또는 앞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으며,[660] 제5형 마약의 단순한 사용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만바트 이하의 벌금형 또는 앞의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형벌로 부과될 수 있다.[661]

---

653)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review of the policy and the situation of Death Penalty, Narcotic Crimes and enforced disappearance in Thailand includ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inal Report, 2021, 9면.

654) Narcotics Act B.E. 2522 (1979) Section 91

655) Narcotics Act B.E. 2522 (1979) Section 93/1

656) Narcotics Act B.E. 2522 (1979) Section 66

657) 태국은 1979년 제정 후 2019년까지 7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친 마약법에서 마약을 5종으로 분류하고, 이를 허가 없이 소지, 판매, 수입, 수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소 1년에서 종신형에 이르는 징역 및 사형 또는 최소 1만 바트(한화 약 40만 원)에서 최대 500만 바트(한화 약 2억 원)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법제동향: 마약 범죄에 대한 국가별 처벌, 2019.8.28.,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pageIndex=undefined&CTS_SEQ=48385&AST_SEQ=3891&ETC=1〉 (최종검색일: 2021.5.11.)

658) Narcotics Act B.E. 2522 (1979) Section 65

659) Narcotics Act B.E. 2522 (1979) Section 75

660) Narcotics Act B.E. 2522 (1979) Section 76

661) Narcotics Act B.E. 2522 (1979) Section 92

현재 태국 전역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는 24만 8125명으로 태국 전체 교도소 수용자의 81.23%를 차지하고 있다.[662] 마약 관련 사범으로 수용되어 있는 자 중에서 157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 128명은 항소절차를 밟고 있고, 11명은 대법원(Deka)에 상고절차를 밟고 있으며, 18명은 사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 대기 중이다.[663]

2020년 8월에 500Kg의 아이스태블릿을 밀조하여 치앙마이에서 방콕으로 밀반입한 8명의 범죄자에 대해 치앙마이 지방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것이나[664] 2021년 1월에 유통의 목적으로 12Kg의 헤로인을 소지한 마약밀매범에게 형사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경우[665]와 같이 태국 법원이 마약밀매 관련 범죄에 대해 여전히 사형을 선고하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마약범죄자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2009년 8월 24일 이후 마약범죄자에게 사형이 집행된 최근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2009년 8월 24일 마약사범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건은 2명의 공범이 10만정의 암페타민을 소지하고 있다가 마약밀매범으로 적발되어 유죄 판단을 받은 사안이었다.[666]

형사재판의 실제에 있어서 마약범죄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범죄자들은 상소법원(항소법원과 상고법원인 Deka court)에서 대개는 그 형을 감경받는데, 예를 들면 1천 2백만 태블릿의 암페타민을 태국에 수입한 악명 높은 마약밀매범 Saisana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제1심법원이 선고한 사형을 파기하고 Saisana 측의 증언이 유효함을 근거로 그에 대한 형벌을 종신형으로 감경하였다.[667]

---

662) Department of Corrections, 'Statistic on inmates related to narcotics offences 1 August 2021' (Department of Corrections, 1 August 2021), 〈http://www.correct.go.th/rt103pdf/report_result.php?date=2021-08-01&report=drug〉 accessed 2 August 2021

663) Department of Corrections, 'Statistic of inmates with death penalty 23 June 2021' (Department of Corrections, 23 June 2021), 〈http://www.correct.go.th/executed/index.php〉 accessed 2 August 2021

664) Thairath, 'Execution for 8 drugs traffickers, 500 kg of ice, transporting big lots from Chiang Mai to Bangkok' (Thairath, 29 August 2020), 〈https://www.thairath.co.th/news/crime/1920301〉 accessed 2 August 2021

665) Thairath, '12 Kilograms of heroin' (Thairath, 17 February 2021), 〈https://www.thairath.co.th/news/crime/2034421〉 accessed 2 August 2021

666) MThai, 'Execution of 2 inmates' (MThai, 25 August 2009), 〈https://news.mthai.com/general-news/55136.html〉 accessed 2 August 2021

667) Thaipost, 'Court of Appeal upholds death sentence for Saisana and his conspirators' (Thaipost, 20 August 2020), 〈https://www.thaipost.net/main/detail/75006〉 accessed 2 August 2021

마약범죄로 기소된 자들의 유죄율과 형량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마약범죄자의 갱생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마약밀매와의 전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재산을 압수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새로운 마약범죄대책법의 마련을 위한 시도가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668]

한편 태국 정부는 2001년 마약거래범 사형수 4명과 살인범 사형수 1명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처형했으며 처형과정을 마지막 사격을 제외하고는 TV에 그대로 공개했다. 태국 법원은 2004년에는 헤로인과 메탐페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2명 중 한 명에게는 사형, 다른 한 명에게는 징역 3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669]

2018년에는 아이스맨(Iceman)이라는 악명을 가진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인이 태국 사법부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태국 대법원은 2020년 9일 라오스 마약 밀매조직 수장에 대한 무기징역형을 최종 확정했다. 주된 혐의는 2016년 9월 조직원들을 동원해 태국-라오스 우호의 다리 인근 입국심사대를 통해 120만정의 필로폰을 운반한 것이다. 양국 수사망에 오른 그는 이듬해 태국 푸켓에서 방콕 수완나품 공항으로 몰래 들어오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1심에서 사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형으로 감형됐다. 태국과 라오스 경찰은 인도차이나 최대 마약조직의 뿌리를 뽑기 위해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까지 20여개 건물을 습격해 조직원들을 대거 체포했고, 100만정 이상의 필로폰도 압수했다.[670]

(라) 마약범죄 중독치료 등

태국에서 2019년 10월 1일에서 2020년 8월 31일까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태국에는 약 1백 40만 명의 마약사용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17만 2459명의 마약사용자에 대해서만 사회복귀치료가 승인되었다.[671] 현재에 세 가지 유형의 사회 복귀를 위한

668) Thairath, 'New drug laws aims to reduce penalties and focus on rehabilitation' (Thairath, 8 June 2021), 〈https://www.thairath.co.th/news/politic/2110520〉 accessed 2 August 2021
669) 한겨레, 2004.11.1., "태국 법원, 마약 소지 영국인에 사형 선고",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7000000/2004/11/00700000020041101223304O.html〉 (최종검색일: 2021.5.11.)
670) 한국일보, 2020.12.23., "'한국에도 필로폰 대량 유통' 라오스 마약왕 종신형",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311170002719?did=NA〉 (최종검색일: 2021.5.11.)
671) Ministry of Health, Strategic plan for drug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for fiscal year 202

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1. 자발적 시스템은 마약중독자가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안정과 질서를 위한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Order)의 포고령 No. 108/2557 아래서 치료를 받는 유형인데, 이 유형의 경우 마약사용자는 범죄자로 취급받지 않는다. 2. 마약 중독 사회복귀법(the 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Act B.E. 2545, 2002)에 의한 강제적 치료인데, 마약중독자는 사회복귀센터에서 강제치료를 받는다. 3. 처벌제도인데, 범죄를 저지른 마약중독자와 교도소에 복역 중인 마약중독자로 치료를 받고, 육체적 회복을 하고, 정신적·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도록 공공보건 가이드라인 아래서 법에 의해 처우를 받는다.[672]

결국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한 조직과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마약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고,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필자의 제안이다.[673] 기술했듯이 마약에 중독된 마약범죄자의 보다 많은 수가 갱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마약통제법안의 마련을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674]

(3) 재외국민 범죄피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태국에서의 재외국민 범죄피해 유형에는 택시관련 사건사고가 있는데, 예를 들어 승차거부, 바가지(미터기 미작동, 먼길 돌아가기 등), 물건 분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019년 6월 태국인 택시 운전사는 한국인 여성 승객 두 명이 택시를 탄 뒤 미터기를 켜달라고 하자 쇠막대기로 두 사람을 때리고 스마트폰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태국 육상교통국(LTD)은 가해자에 대해 승객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승객을 목적지에 데려다주지 않은 점, 그리고 기한이 만료된 운전면허로 운전한 점 등 최소한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했다.[675]

1-2023 (Ministry of Health 2020) 9

672) ibid 9

673) ibid 29-30

674)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review of the policy and the situation of Death Penalty, Narcotic Crimes and enforced disappearance in Thailand includ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inal Report, 2021, 12면.

675) 연합뉴스, 2019.6.10., ""미터기 켜달라"는 한국인승객 폭행 태국 택시기사 구속 수사",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0051851076〉 (최종검색일: 2021.5.11.)

또한 해변 유양지 제트스키 렌탈 관련 사건 사고 유형이 있는데, 제트스키를 대여했다가 반환하는 사이에 관련업자들이 사고나 또는 여러 가지 기타 사유로 제트스키가 파손이나 손상되었고 하면서 과도한 보상비나 또는 수리비를 요구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676]

최근에는 클럽이나 또는 기타 유흥업소에서 만나게 된 여성에 의해서 수면제나 기타 여러 가지 마약 또는 마취약 등으로 의식을 잃게 되고 이러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금품을 털리거나 잃게 경우(마취강도)나 또는 어떠한 여성과 숙소를 동행한 이후 금전적으로 시비가 발생하는 사건, 기타 비싼 바가지 술값 시비 등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성 관광객들의 경우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심야에 뒷골목이나 한적한 장소 등에서 2명 이상의 오토바이 강도가 여성의 손가방 등을 낚아채 도망가거나 어떠한 둔기를 사용하여 머리 등을 가격함으로써 실신시키고 여성의 금품을 가져가는 사건도 가끔 일어난다. 어떠한 사람의 소개('보통 일반사람은 출입할 수 없는 특별한 업소' 라는 등의 말로 현혹케 함)를 받아 어떠한 귀금속가게에 출입하여 '만약에 한국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러한 귀금속은 수배는 차익이 있다'는 등 속임수에 속아 싼 귀금속류 등을 높은 가격에 구입하여 귀국 후 피해구제를 받고자 해도 소개인은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연락이 끊기고 해당 보석가게는 환불을 하지 않는 등 피해도 사건도 있다.[677]

그밖에 사건 등을 조사 또는 검문하는 과정에서 사건 무마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사전에 공모한 태국인이 야간에 유흥업소나 뒷골목 등에서 접근한 뒤 마약 등을 사라며 흥정하는 동안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 마약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하겠다며 겁을 주고 무마조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야간에 음주운전 단속 등을 이유로 차량 또는 사람을 정지시킨 뒤 압수수색을 빙자, 미리 준비한 마약 등을 차량 내 보관함 또는 호주머니에 슬쩍 숨겨놓고 마치 발견한 것처럼 해서 체포하겠다며 겁을 준 뒤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등도 종종 발생한다.[678]

---

676)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가/지역별 정보: 태국 사건·사고.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260〉 (최종검색일: 2021.5.11.)
677)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가/지역별 정보: 태국 사건·사고.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260〉 (최종검색일: 2021.5.11.)
678)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가/지역별 정보: 태국 사건·사고.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260〉 (최종검색일: 2021.5.11.)

2020년에는 태국 방콕의 한인식당 밀집지역 수쿰윗 플라자에서 한국인 간의 납치 협박을 통한 금전 갈취 범죄행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679]

(4) 인신매매와 피해자 지원정책

최근에 태국은 네 가지 유형의 국제범죄, 즉 마약밀매, 불법이주노동자, 인신매매, 자금세탁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680] 이들 범죄 가운데 불법이주노동자와 인신매매는 국제범죄의 피해자를 많이 발생시켰다. 그리하여 반국제조직범죄가담법(the Anti-Participation i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ct B.E. 2556, 2013)이 태국에서 국제조직범죄 활동을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해 2013년에 시행되었다. 그것과는 별도로 반인신매매법(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B.E. 2551, 2008)과 성매매 예방 및 진압법(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Prostitution Act B.E. 2539, 1996)도 또한 인신매매의 방지와 진압을 목표의 하나로 한다.[681]

태국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으로서 태국 헌법(the Constitutional of Thailand B.E. 2560, 2017) 제25조는 범죄피해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치료받을 권리와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보통 범죄피해자들은 상해를 당한 자의 손실, 보상, 형사사건에서 소추를 위난 지출법(the Damages for the Injured Persons and Compensation and Expenses for the Accuse in Criminal Case B.E. 2544, 2001)과 그 개정법(the amended (No.2) Act B.E. 2559, 2016)에 의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범죄피해자는 해당 형사사건의 진행 중인 소송절차에서 법정에서 검사에게 피해자 자신을 대신해서 보상을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682]

태국에서 특히 불법이주노동을 포함한 인신매매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

679) ASEAN EXPRESS, 2020.11.14., "방콕 한인타운 내 납치감금 돈 갈취…한국인 강력범죄 발생", 〈http://www.aseanexpress.co.kr/news/article.html?no=5508〉 (최종검색일: 2021.5.11.)

680) Chatchai Srimuangkanchana, 'Transnational crime and Thailand's security' (Parliament 2011), 〈https://www.parliament.go.th/ewtadmin/ewt/parliament_parcy/ewt_dl_link.php?nid=55062&filename=house2554〉 accessed 28 July 2021

681)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transnational crimes in Thailand, Final Report, 2021, 17면.

682) Criminal Procedure Code of Thailand Section 44/1

서 반인신매매법(the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B.E. 2551, 2008) 제33조는 사회 개발과 시민 안전부(th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는 식량과 피난처 제공, 법적 조력, 피해자의 원래 거주지로의 귀환 지원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불법이주노동자로서 피해를 입은 자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타이왕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과 일시적으로 취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683]

마지막으로 이 법은 인시매매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그 피해자에게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며, 그 피해자가 외국에서 타이왕국이나 그 거주지로의 귀환을 지원하기 위해 반인신매매기금(the anti-trafficking in-person fund)[684]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685] 인신매매범죄의 피해자는 또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해서 검찰(청)은 인신매매범죄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해 주도록 되어 있다.[686]

덧붙이자면 인신매매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 복귀 프로그램은 사회 개발과 시민 안전부(th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의 책임 아래 복지 보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사회 복귀 후에 피해자는 그 가족에게 돌려보내지고, 배정된 사회복지 공무원은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피해자가 더 이상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그를 추행하며 보호한다,[687] 나아가 성매매의 예방 및 진압법(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Prostitution Act B.E. 2539, 1996)도 또한 성매매의 피해자들에게 보호소와 직업계발센터를 통해서 직업 계발의 기회를 제공한다.[688]

마지막으로, 여성과 아동 피해자에 업무에 관련된 조직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협의록(the Memorandum of Agreement on Guidelines for related organizations to work on women and children victims B.E. 2542, 1999)은 또한 많은 수의 인신매

683) The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B.E. 2551 (2008) Section 37
684) ibid Section 42
685) ibid section 44
686) The Procedures for Human Cases Act B.E. 2559 (2016) Section 13 and 14
687) 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 and Welfare, *Handbook for officers in anti-human trafficking operations* (Kitjakarn 2013) 205-227
688)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Prostitution Act B.E. 2539 (1996) Section 34 and 35

매범죄가 발생하는 지역마다 인신매매 예방 및 진압 지방 운영 센터를 설치하여 인민매매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한 체계를 제공한다.[689]

앞에서 언급한 법규에 의한 규율과는 별도로 법무부 권리 및 자유 보호국(the Rights and Liberties Protection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산하에 있는 범죄피해자 치료 센터에서 범죄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법적 조력을 받을 수도 있다.[690]

실제로 반인신매매기금은 2016년에는 648명의 피해자에게 5,808,566.90바트가, 2017년에는 760명의 피해자에게 5,641,579바트가 지급되었다.[691] 반인신매매법(the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B.E. 2551, 2008) 제35조에 의한 보상액의 총계는 2016년에는 15명의 피해자에게 1,656,100바트가, 2017년에는 151명의 피해자에게 18,442,221바트가 지급되었다.[692]

국제범죄의 피해자, 특히 인신매매범죄의 피해자에게는 반인신매매법(2008년)에 의한 일반 인신매매범죄 피해자와 같은 지원이 제공된다. 기술했듯이 부상을 당한 자의 손실 및 형사사건에서 소추를 위한 보상과 지출에 관한 법(the Damages for the Injured Persons and Compensation and Expenses for the Accuse in Criminal Case B.E. 2544, 2001)과 개정법(the amended (No.2) Act B.E. 2559, 2016)에 의해 보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국제적 인신매매범죄의 외국인 피해자를 위해 반인신매매기금은 그 피해자의 본국 귀환을 위해 조성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국제적 인신매매범죄의 외국인 피해자의 본국 귀환은 사회 개발 및 신민 안전부(th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에 의해 주관된다.[693] 국제적 인신매매범죄의 피해자가 태국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태국 내에서의 일시적 체류(피해자가 태국에 불법체류를 하는 사례인 경우)를 허가할 수

689)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transnational crimes in Thailand,* Final Report, 2021, 18면.

690) Rights and Liberties Protection Department, 'About us' (RLPD, 2021), 〈http://www.rlpd.go.th/〉 accessed 31 July 2021

691)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undation (HRDF) and Anti-Labour Trafficking Project (ALT),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6-2017: Challenge on Law and Policy* (HRDF 2018) 12

692)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transnational crimes in Thailand*, Final Report, 2021, 19면.

693) The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B.E. 2551 (2008) Section 33 and 44

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694]

태국에서 국제범죄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형사절차의 진행 동안 태국 형사소송법 제13조에 의해 피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통역자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법부(대법원) 외사국은 인매매범죄 형사사선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통역자를 붙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 인신매매범죄는 국가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므로 검사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원고가 된다. 하지만 피해자는 또한 태국 형사송송법 제31조에 의거해 원고측의 일원으로서 형사절차에 참여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695]

(5) (강제)실종

(가) (강제)실종 사례와 현황

1980년에서 2018년까지 UN의 인권을 위한 고등위원회(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의 강제실종에 관한 Working Group 보고서에 의하면, 태국에서 79건의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 사례가 있었다.[696]

강제실종의 시작은 1947년의 군사쿠데타에서 광범위한 정적의 제거를 위해 납치와 살해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면 전직 Isaan 지방(북동지역)의 4명의 장관이 경찰의 구금 중에 살해되었고, 이 가운데 Tiang Sirikhan 씨는 방콕에서 체포되어 살해되었다. 그의 시신은 다른 네 사람 Chan Bunnag, Lek Bunnag, Phong Khewwichit, Sanga Prajakwong의 시신과 함께 1952년 12월 12일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화장되었고, 태국 특히 남부 국경지역의 무슬림의 종교지도자요 인권운동가인 Hayi-Sulong Tow-Meena는 1954년 8월 13일 Songkla 지역에서 경찰 조사에의 소환을 받은 뒤 의문스럽게 실종되었다.[697]

---

694) ibid Section 37

695)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transnational crimes in Thailand, Final Report*, 2021, 20면.

696)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2020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OHCHR, 2020) 15

697) Prachathai,'The history of enforced disappearance' (Prachathai, 6 June 2020), 〈https://prachatai.com/journal/2020/06/88005〉 accessed 12 August 2021

이후 1967년에는 태국은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았다. 그래서 강제실종은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하려는 자로 의심되는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정부 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기도 하였다. 공무원들에게 "그 무리를 아래로 걷어차라! 붉은 저장조 안에서 태워버려라!(kick down the hill, burn it in the red tank)"라는 임무가 부과되었고, 공산주의 활동가로 의심되는 자들은 체포되어 그 바닥에 20리터의 연료가 담겨져 있는 오일 탱크에 가둬진 다음 그 저장조를 태워버렸다. 또한 지역에 따라 마을 사람들의 일부는 공산주의자라는 의심을 받고 군부대로 끌려가 의문스럽게 실종되기 시작했다.[698]

체포되고 난 후 실종된 사람들에 대해 가족이나 친지 등이 행방을 문의하자 공무원들은 그들이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갔다고 변명했다. 이런 식의 공산주의자 박멸작전에 의해 약 3000여 명의 사람들이 살해되었지만 작전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는 없었다.[699] 세월은 흘러 1974년-1979년 사이에는 태국농민연맹(the Farmers' Federation of Thailand)의 지도자 5명이 지주가 수확량의 절반을 가져가는 소작료의 불공성을 시정하고, 토지의 농민 분배를 요구하는 농민운동을 조직했다는 이유로 강제실종되었다.[700]

1991년-1992년 사이에는 쿠데타에 반대하며 쿠데타 주도세력인 안정과 질서를 위한 국가평의회(the 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Order, NCPO)에 저항하는 민중세력의 몇몇 지도자들이 또한 강제실종되었다.[701] 그리고 1992년 5월 17일-22일까지 폭력을 사용하여 쿠데타에 저항하는 집회와 시위를 해산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20여 명의 사람들이 강제실종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강제실종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702] 1990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으로 사업가인 Muhammad Al Ruwali가 방콕 크리스천 병원(Bangkok Christian Hospital)에서 주차를 하던 중 의문스럽게 실종된 악명 높은 사건이 발생하였다.[703]

---

698)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review of the policy and the situation of Death Penalty, Narcotic Crimes and enforced disappearance in Thailand includ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inal Report, 2021, 13면.

699) ibid

700) ibid

701) ibid

702) ibid

703) ThaiPBS, 'Ending 29 years of the case of abducting and killing 'Al Ruwailee' and the life of 'Pol Lt. Gen. Somkid', the accused' (ThaiPBS, 23 March 2019) 〈https://news.thaipbs.or.th/content/278636〉 accessed 12 August 2021

이후 1997년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되었을 때 많은 수의 '제도적인' 강제실종이 발생했는데, 유명한 사례들 중의 하나는 전 무슬림 변호사클럽 회장이자 남부 국경지역의 사람들을 지원하는 인권변호사인 Somchai Neelapaijit 씨가 1997년 그의 차에서 일단의 사람들에 의해 납치되고 난 다음 강제실종되었다.[704]

2009년-2010년 동안에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연합전선(the United Front for Democracy Against Dictatorship, "붉은 셔츠를 입은 시위자들"들로 알려져 있음)의 몇몇 구성원들이 강제실종으로 보인다는 뉴스가 있었다.[705] 또 하나의 악명 높은 강제실종 사건은 2014년 5월 17일에 있었는데, Bang Kloi Bon 지방의 Karen족 지도자 Paulajee Rakchongcharoen (또는 'Billy')이 실종되었다. 실종 전에 Billy와 Bang Kloi 주민들은 그들의 주택과 재산을 철거하거나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립공원, 야생동식물보존부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의 유해는 2020년 9월 3일에 발견되었지만 검찰총장은 4명의 혐의자에 대해 살인으로 볼 충분한 증언이나 증거가 없고 상황적인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706] 가장 최근의 강제실종 사건은 안정과 질서를 위한 국가평의회(NCPO)에 의한 쿠데타가 2014년 5월 22일 발생했을 때 적어도 102명의 정치활동가들은 국내에서 도망다니거나 국내에서 추방되기 위한 강제실종이 있었다.[707]

예를 들면 Itthipol Sukpan씨와 Wuthipong Kochathamkun(또는 'Koh-Tee') 씨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도피처를 물색하던 사람들로 각각 2016년 7월과 2017년에 실종되었다. 또한 Surachai Danwattananusorn 씨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서 은신처를 물색 중이었는데, 2018년 12월 중순에 다른 두 명의 망명객 Chatchan Bupphawan 씨, Kraidet Luelert 씨와 함께 라오스의 그의 자택에서 실종되었다. 2018년 12월 말에 다른 두 명의 시신은 메콩강에서 떠다니는 상태에서 발견되었지만

704) BBC News Thai, 'From Thaksin to Prayut, the disappearance of Somchai Neelapaijit and the unanswered southern fire' (BBC News Thai, 11 March 2019), 〈https://www.bbc.com/thai/thailand-47521488〉 accessed 12 August 2021

705) Prachathai, (n 77)

706) Amnesty International Thai, '6 years anniversary of the enforced disappearance of Billy' (Amnesty International Thai, 17 April 2020), 〈https://www.amnesty.or.th/latest/blog/750/〉 accessed 12 August 2021

707)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review of the policy and the situation of Death Penalty, Narcotic Crimes and enforced disappearance in Thailand includ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inal Report, 2021, 14면.

Surachai 씨는 여전히 실종 상태이다.[708]

또 하나의 악명 높은 강제실종 사례는 2014년 안정과 질서를 위한 국가평의회(NCPO)에 의해 소환을 받고 캄보디아로 도망간 운동가인 Wanchaloem Satsaksit 씨의 실종 사건이었다. 그는 2020년 6월 4일 프놈펜 소재 그의 거주지에서 부장한 사람들에 의해 끌려간 뒤, 그 이후의 종적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709]

(나) 발리 프로세스(Bali Process) 와 총리령

총리실의 대변인은 강제실종의 예방은 현행 국가인권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 No.4)의 목표 중의 하나라고 확인하였다.[710] 태국은 인신매매 및 관련 국제범죄에 관한 Bali Process의 회원국이다.[711] 더욱이 총리는 고문과 강제실종에 관련된 사건들을 관리하는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mmittee for Managing Cases Relating to Torture and Enforced Disappearance)를 설치하기 위해 2017년 5월 23일의 총리령(the Prime Minister's Orders No. 131/2560, 2017)과 2019년 11월 15일의 총리령(the Prime Minister's Orders No. 338/2562, 2019)을 공표했다.[712] 국가위원회의 의장은 법무부장관이 맡고, 관련 정부 부서, 민간기구, 학계 출신의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가위원회의 임무는 고문과 강제실종의 의혹이나 혐의를 조사하고 추적하며, 관련 폭력이 확인되면 그 과오를 시정하고 장래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713]

---

708) BBC News Thai, 'Wanchalerm: Retracing the refugees who were "carried away" after the 2014 coup' (BBC News Thai, 6 June 2020) 〈https://www.bbc.com/thai/thailand-52946342〉 accessed 12 August 2021

709) Matichon Weekly 'Enforced disappeared of Wanchalerm Satsaksit, the latest political refugee' (Matichon Weekly, 14 June 2020), 〈https://www.matichonweekly.com/in-depth/article_314889〉 accessed 12 August 2021

710) BBC News Thai 'The government has insisted that it is serious and sincere in resolving the issue and is ready to listen to all sides after being asked by the UN to draft the Enforced Disappearance Ac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principles' (BBC News Thai, 18 July 2020), 〈https://www.bbc.com/thai/53454728〉 accessed 12 August 2021

711) The Bali Process, 'membership' (The Bali Process, 2021), 〈https://www.baliprocess.net/membership/〉 accessed 12 August 2021

712)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review of the policy and the situation of Death Penalty, Narcotic Crimes and enforced disappearance in Thailand includ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inal Report, 2021, 15면.

713) Committee against Torture, Second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Thailand under article

(다) 강제실종 방지관련 법적 대응

지금까지 태국에서는 사람에 대한 고문과 강제실종을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한 법안이 여전히 법률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다른 대안적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714] 이러한 법적 수단에는 고문과 강제실종에 관련된 사건들을 관리하는 국가위원회가 포함되고, 강제실종이 발생한 경우 앞에서 언급했듯이 태국 형법 제309조에서 제310조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복합범죄이다.[715] 나아가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적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적용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제재를 받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716]

태국이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의 회원국이 아님은 주목할 만하다. 그럼에도 강제실종이 국가경찰에 의해 제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다면 그것은 반인도적 범죄로 평가되고, 국제형사법원(ICC)에 제소되는 것도 가능하다. UN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 UNSC)는 어떠한 상황이 반인도적 범죄인지, 국제형사법원에 제소되어야 하는 사건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UN 회원국은 UNSC의 결정에 따를 것이 요구되며, 관련국이 국제형사법원(ICC)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그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717]

(라) 강제실종관련 노력과 정책

태국은 2012년 1월 9일에 모든 사람을 강제실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협정(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CED) 상의 원칙들을 수용하는 서명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7년 6월 10일에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에 국회가 비준했다. 이러한 상황 조건 아래서 태국은 국제법과 양립하는

---

19 of the Convention pursuant to the optional reporting procedure, due in 2018 (Commit tee against Torture 2021) 5

714)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review of the policy and the situation of Death Penalty, Narcotic Crimes and enforced disappearance in Thailand including the protectio n of Human right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inal Report, 2021, 16면.

715) Criminal Code of Thailand Section 309 and 310

716) Civil and Commercial Code of Thailand Section 420

717) The 101 World, '"Enforced disappeared: no bodies, no laws, no liability" with Pokpong Srisanit' (The 101 World, 19 June 2020), 〈https://www.the101.world/pokpong-srisanit-and-enforced-disappearance/〉 accessed 12 August 2021

국내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고문과 잔인하고 반인간적 또는 유린적 처우 또는 형벌에 반대하는 국제협정(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의 회원국이 됨에 있어서 태국이 얻은 교훈의 결과이다.[718]

2007년부터 이 조약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애초에는 형법이나 개정 형사절차법에서 범죄 목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려를 위한 UN 위원회에 태국의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형사법의 개정이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이 조약을 준수하고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서 태국은 2014년에도 해당 UN 위원회에서 반려되었고, 두 가지 문제가 함께 고려되었다.[719] 법무부장관은 고문과 강제실종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여 2016년 12월 27일 정부내각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 법안은 2019년 3월 4일에 의회 법제특별위원회(the Parliament's Special Committee for the deliberation of the draft Act)에 제출되어 심의되었고 국회 본회(the National Legislative Assembly)에 회부되어 최종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720] 그러나 2019년 3월 24일의 총선 때문에 2019년 3월 15일부터 입법절차는 정지되고 새로 출범할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게 되었다. 2020년 4월 23일에 그 법안은 새로 출범한 정부에 재검토를 위해서 다시 제출되었다.[721]

(6) 코로나-19

태국정부는 2020년 3월 1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학교 휴강, 체육시설 폐쇄를 시작

---

718)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review of the policy and the situation of Death Penalty, Narcotic Crimes and enforced disappearance in Thailand includ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inal Report, 2021, 16면.

719) Nareelak Phaechaiyaphum,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Division Rights and Liberties Protection Department Ministry of Justice, 'Summary of the key points from the academic seminar on "Law on the duties of the Thai state and the right to be a Thai person The Crime of Enforced Disappearance by the State: Possibilities or Vanishing Hopes' (Faculty of Law, Thammasat University 13 July 2020) 〈https://www.law.tu.ac.th/summary-seminar-forced-disappearance/〉 accessed 12 August 2021

720)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review of the policy and the situation of Death Penalty, Narcotic Crimes and enforced disappearance in Thailand includ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inal Report, 2021, 17면.

721) Committee against Torture, (n 90) 3

으로 3월 22일 방콕 시 다중이용시설 폐쇄, 3월 26일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였다. 국가비상사태 1호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가짜뉴스 전파 금지이다.[722] 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특히 코로나-19의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을 단속하고 있다. 공중 보건 부문의 내부 고발자들은 수술용 마스크와 의료 용품의 비축 및 암시장 수익을 보고한 후 징계 조치와 보복 소송의 대상이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은 활동가를 대상으로 차별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태국 인권 변호사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와 민주주의 시위에 참여한 활동가 73명이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723]

태국의 인권단체 등은 코로나 사태가 관리 가능한 수준임에도 정부가 비판 세력을 약화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도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의도와 관련하여 정부를 정치적 도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724]

또한 태국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중심지로 지목되고 있는 곳이 교도소인데, 교정시설 내 감염자만 2021년 5월 기준, 1만 명을 넘었다. 태국 교도소의 경우 그동안 포화상태라는 지적 속에 재소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제인권단체는 과밀 상태인 태국 교정시설 수감자들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면서 당국은 가벼운 죄를 저지른 이들을 석방해 과밀 상황을 신속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725]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시기 동안 태국 정부는 비상 상황에서의 공공행정에 대한 비상명령(the Emergency Decree On Public Administration in Emergency Situation B.E. 2548, 2005)을 COVID 대유행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공표했다. 이 비상명령은 본래 정부에게 코비드 대유행 상황을 잘 대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

722) 이재호, "태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Vol.3, No3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9.23., 6면.

723) Human Rights Watch, Thailand: Events of 2020, 2021. 〈https://www.hrw.org/world-report/2021/country-chapters/thailand〉 (최종검색일: 2021.5.11.)

724) 연합뉴스, 2020.7.1., "태국, 세 번째 비상사태 연장에 "코로나 때문 vs 정치적 목적"",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1079100076〉 (최종검색일: 2021.8.28.)

725) 연합뉴스TV, 2021.5.17., "'콩나물시루' 태국교도소 감염 '폭발'…하루 7천명", 〈https://yonhapnewstv.co.kr/news/MYH20210517020100038〉 (최종검색일: 2021.8.28.)

하고 2021년 7월 29일에 발효된 규제명령 제29호(the Regulation No. 29)는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는 유언비어의 유포, 배포 또는 보급이나 "비상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오도할 수 있는 왜곡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국가와 공공의 안전, 국민의 선량한 도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726] 나아가 규제명령 제29호는 인터넷 사용자들을 조사, 수사하고 온라인에서의 표현과 발언을 감시할 권한을 새로운 권력으로 정부 관계 당국자에게 부가적으로 부여하고 있다.[727]

그것은 또한 "반가짜뉴스법(anti-fake news law)"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이유로 강하게 비판받아 왔다. 그래서 다소 독립적인 언론 활동을 하는 인권을 위한 태국 변호사모임(Thai Lawyer for Human Rights, TLHR)은 규제명령 제29호의 부과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적 보호명령을 형평법원(the court of justice)에 신청하였다. 그리고 2021년 8월 6일에 형평법원은 그 명령의 신청을 인용하였다.[728] 곧 얼마 후에 총리는 규제명령 제29호를 철회하였다.[729]

규제명령 제29호와는 별도로 비상명령(the Emergency Decree)은 또한 5명 이상의 집합에 의한 시위를 금지한다.[730] 결국 정부는 비상명령을 정부 행정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정치행동을 하는 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다. 결과적으로 물리적 폭력은 또한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와 시위를 해산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면 고무총탄과 고압 물대포는 집회와 시위 참가자들에게 발사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대응으로 생각하고 있다.[731] 나아가 많은 집회

---

726)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review of the policy and the situation of Death Penalty, Narcotic Crimes and enforced disappearance in Thailand includ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inal Report, 2021, 29면.

727) The Government Gazette, 'Regulation No. 29' (The Government Gazette, 29 July 2021), 〈http://www.ratchakitcha.soc.go.th/DATA/PDF/2564/E/170/T_0001.PDF〉 accessed 27 August 2021

728) Prachachat, 'Civil court orders temporary protection The Prime Minister is prohibited from using the terms. The Emergency Decree controls the media' (Prachachat, 6 August 2021), 〈https://www.prachachat.net/general/news-733081/〉 accessed 27 August 2021

729) ThaiPBS, 'Prime Minister repeals Rule 29 to restrict media, effective Aug. 9' (ThaiPBS, 10 August 2021), 〈https://news.thaipbs.or.th/content/306823〉 accessed 27 August 2021

730) ThaiPBS 'The Government Gazette published an announcement prohibiting gatherings and gatherings' (ThaiPBS, 3 August 2021). 〈https://news.thaipbs.or.th/content/306645〉 accessed 27 August 2021

731) Matichon, 'The view of 'dissolving the mob' beyond the cause?' (Matichon, 13 August 2021), 〈https://www.matichon.co.th/politics/politics-in-depth/news_2881827〉 accessed 27 August 2021

및 시위 참가자들은 아직 학생들로 그들 중 많은 수는 이전에 체포되거나 기소된 적이 있었다.[732][733]

(7)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책무

태국 국가인권위원회(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ailand, 이하에서는 'NHRCT'라 함)는 타이왕국 헌법(the 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Thailand B.E. 2560, 2017) 12장 제6절 태국 국가인권위원회 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조직법(the Organic Act 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B.E. 2560, 2017)에 따라 설치되는 독립적 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신장과 보호를 요구하는 시민세력의 결집된 노력의 결과로 1997년 타이왕국 헌법에 따라 처음으로 설치되었다.[734]

태국 국가인권위원회(NHRCT)는 상원의 추천으로 국왕에 의해 임명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국왕에 의해 임명된 날로부터 7년의 단임 임기로 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735]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제4기 위원회이고,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5월 31일부터 임기를 개시해서 2028년 5월 24일에 임기가 종료된다.[736]

국가인권위원회의 책무는 아래와 같다.[737]

1. 인권을 침해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나 태국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국제적 인권 의무에 일치하지 않는 행위를 조사하고 보고하는 것, 그리고 인권을 침해

---

732) ThaiPBS, 'Arrest 3 leaders in front of the Myanmar embassy' (ThaiPBS, 2 February 2021) 〈https://news.thaipbs.or.th/content/300979〉 accessed 27 August 2021; ThaiPBS, 'Who was arrested and prosecuted on what charges?' (ThaiPBS, 16 October 2020) 〈https://news.thaipbs.or.th/content/297427〉 accessed 27 August 2021; BBCThai, 'Feb 13 rally: Police arrested at least 7 people after a riot in front of the Supreme Court.' (BBCThai, 13 February 2021) 〈https://www.bbc.com/thai/thailand-56052297〉 accessed 27 August 2021

733)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review of the policy and the situation of Death Penalty, Narcotic Crimes and enforced disappearance in Thailand includ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inal Report, 2021, 30면.

734) NHRCT, 'About us' (NHRTC, 2021), 〈http://www.nhrc.or.th/AboutUs/The-Commission/Background-and- History-2.aspx〉 accessed 31 July 2021

735) The Organic Act 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B.E. 2560 (2017) Section 8

736) NHRCT, (n 13)

737) 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Thailand B.E. 2560 (2017) Section 247

하거나 무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제안하고, 인권위원회가 제안한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인권위원회는 의회에 고강도의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보고하여야 한다.

2. 의회에 정책을 권고하고, 법률과 규칙의 개선을 제안을 하며, 정부 내각에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3. 인권 관련 지식의 교육, 연구, 보급을 촉진한다.
4. 인권 분야에서 정부기관과 민간단체, 기타 조직과의 협력과 조정을 촉진한다.
5. 국내에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6. 기타 법규에 의해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행사한다.[738]

(8) 정부의 인권보호 활동

(가) 경찰·검찰의 인권보호 역할

일반적으로 모든 정부 조직은 태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타이왕국 헌법(the 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Thailand B.E. 2560, 2017) 제25조에 기속된다.

경찰과 관련해서 왕립 태국 경찰은 인권에 부합하는 혐의자와 증인의 처우 및 그 자각을 촉구하기 위해 왕립 태국 경찰 인권 보장 활동계획(the Human Rights Action Plan of the Royal Thai Police B.E 2564-2565, 2021-2022)을 공표했다. 나아가 인권원칙[739]에 부합하는 방향의 경찰공무원 행동 매뉴얼은 혐의자와 증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경찰 활동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공표되었다.[740]

인권을 보호하는 검찰 역할과 관련해서 행정 각부, Ta-buang, 실국(室局), 혁신법검찰청 부문(the Renovation Act of Ministry, Ta-buang, Department, B.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No. 2) B.E. 2549 , 2006)은 2006년 9월 29일 발효되었는데,

---

738)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transnational crimes in Thailand*, Final Report, 2021, 21면.

739) NHRCT, Manual for police officers in accordance with human rights principles (NHRCT 2013)

740)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transnational crimes in Thailand,* Final Report, 2021, 22면.

제15(24)조에 규정된 국민에 대한 권리 보호와 법적 지원국(the Office of Rights Protection and Legal Assistance to the People)은 인권에 대한 지식과 국민에 대한 법적 지식의 보급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741]

나아가 검사의 형사소추에 관한 대검찰청규칙(Regulations of th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on Criminal Prosecution of Public Prosecutors (No.9) B.E. 2560, 2017)은 검사가 피의자와 피고인을 처우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아래서 그들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42]

실제에 있어서 검찰총장은 인권의 보호를 촉진하는 다른 기관들과 다양한 양해각서를 교환하는데, 예를 들면 검찰총장과 법무부 차관(the Permanent Secretary, Ministry of Justice) 사이의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평등을 구현하는[743] 정의 실현을 위한 양해각서의 교환이다. 나아가 태국 각 지역의 지방검찰청은 민권의 보호와 법적 조력 사무소(civil rights protection and legal aid office)를 두어 인권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구제를 꾀하고 있다.[744]

(나) 법무부 소속 '권리와 자유보호국'

권리와 자유보호국(Rights and Liberties Protection Department)은 법무부 산하 조직이고, 행정 각부, Ta-buangs, 실국(室局) 혁신법(the Act on Renovation of Ministries, Ta-buangs, Departments, B.E. 2545, 2002)[745]에 의해 2002년 10월 3일에 설치되었고, 이 부서의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국제적 인권의무를 준수하고 이행하

741)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transnational crimes in Thailand*, Final Report, 2021, 22면.

742)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transnational crimes in Thailand*, Final Report, 2021, 22면.

743) Dated 24 April B.E. 2562 (2019)

744) Civil Rights Protection and Legal Aid Office, 'About us' (Civil Rights Protection and Legal Aid Office, 2021), 〈http://www.lawaid.ago.go.th/index.php?option=com_flexicontent&view=items&cid=60&id=502&Itemid=3〉 accessed 1 August 2021

745) Rights and Liberties Protection Department, 'About us' (Rights and Liberties Protection Department, 2021) 〈http://www.rlpd.go.th/〉 accessed 1 August 2021

기 위한 수단과 제도를 개발하는 것이다.[746]

이 조직의 임무는 아래와 같이 3개의 주요 분야로 나뉜다.[747]

1. 권리와 자유의 신장과 갈등 관리-국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국민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며, 국민의 권리 침해 위험에서 그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에 관한 국민의 지식을 계도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며, 분쟁해결과 갈등 조정을 꾀한다.[748]
2. 권리와 자유의 보호-권리를 침해당한 자들의 권리 구제를 지원함에 있어서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피고인에 대한 보상과 비용에 관해 법에 의해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지원을 이행하는 제도와 수단을 개발함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지원을 받도록 한다.[749]
3. 인권의 보장-태국은 국제적 인권 원칙에 부응하고 부합하는 맥락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함으로써 국민들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보호받고, 개선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 인권의 표준을 설정한 국제적 인권조약의 준수와 이행을 촉진하는 국내적 법규나 실천 계획의 마련과 이행 유무에 관계없이 인권을 개선하는 수단, 제도, 법규를 마련함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한다.[750]

(9) 민간 인권단체의 역할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과 비슷하게 태국의 많은 민간단체들도 인권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751] 태국의 민간인권단체는 두 유형의 주요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첫

746)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transnational crimes in Thailand*, Final Report, 2021, 23면.

747) Rights and Liberties Protection Department, 'Main missions' (Rights and Liberties Protection Department, 2021) 〈http://www.rlpd.go.th/〉 accessed 1 August 2021

748)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transnational crimes in Thailand*, Final Report, 2021, 23면.

749)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transnational crimes in Thailand*, Final Report, 2021, 23면.

750)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transnational crimes in Thailand, Final Report*, 2021, 23면.

번째 그룹은 국제적 민간인권단체이고, 두 번째 그룹은 지역적 민간인권단체이다. 예를 들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태국에서는 1993년에 창설되어 2003년 태국 정부에 인권단체로 등록되었다.[752]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주요 업무활동은 표현의 자유의 증진, 인권의 보호, 강제실종의 해결, 사형의 폐지 등 인권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부문에서 수행된다.[753] 한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예를 들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처벌에 직면한 Hakeem al-Araibi 씨를 바레인으로 강제송환하려는 태국 정부의 조치와 같은 많은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 투쟁을 하고 있다.[754] 강제실종 사건의 경우에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태국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강제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태국의 시민활동가 Wanchalearm Satsaksit 씨의 가족이 그의 실종 경위를 조사하는 것을 돕고, 캄보디아 정부가 그의 실종 사건을 조사할 것을 촉구하였다.[755]

또 하나의 유명한 민간국제인권단체는 태국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인권감시단(the Human Rights Watch)이다. 인권감시단은 태국 정부에 등록된 인권단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태국과는 다를지라도 태국의 인권 침해 상황과 관련해서 세계에 자세하고 신속하게 알린다.[756] 예를 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당해 죽은 마약 혐의자에 대한 최근의 고문치사 사례를 전 세계에 알렸다.[757]

지역적 민간인권단체와 관련해서, 몇 개의 민간인권단체가 있는데, 그 대부분의 단체는 특정 분야의 문제에만 초점을 둔다. 주목할만 한 지역 민간인권단체로 파베나 홍사쿨라 아동여성재단(Pavena Hongsakula Foundation for Children and Women)

751)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transnational crimes in Thailand, Final Report*, 2021, 28면.

752)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Amnesty Thailand' (Amnesty, 2021), 〈https://www.amnesty.or.th/en/about-us〉 accessed 20 August 2021

753)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Our works' (Amnesty, 2021), 〈https://www.amnesty.or.th/en/our-work?ccm_paging_p=2〉 accessed 20 August 2021

754)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Thailand: Refugee footballer Hakeem al-Araibi extradition case dropped'(Amnesty, 2021), 〈https://www.amnesty.or.th/en/latest/news/693/〉 accessed 20 August 2021

755)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Urgent Action:#savewanchalerm' (Amnesty, 2021), 〈https://www.amnesty.or.th/en/get-involved/take-action/ua20〉 accessed 20 August 2021

756) Human Rights Watch, 'Thailand' (HRW, 2021) 〈https://www.hrw.org/thailand〉 accessed 20 August 2021

757) Human Rights Watch, 'Thailand: drug suspect torture to death' (HRW, 26 August 2021), 〈https://www.hrw.org/news/2021/08/26/thailand-drug-suspect-tortured-death〉 accessed 27 August 2021

은 학대받는 아동과 학대받는 여성의 인권에 초점을 두고 그 학대아동과 학대여성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그들의 불행한 숙명과 주거 없이 노숙과 방랑 생활을 하는 상황을 타개하여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고, 수입을 획득하도록 계도하고 지원하며 가난한 아동이나 불우한 아동에게 기능을 습득시켜 또한 일자리를 얻고 수입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758]

또한 인권을 위한 태국 변호사모임(Thai Lawyer for Human Rights, TLHR)은 피소되거나 체포되거나 군부나 정부에 의해 구금된 개개인에 대한 법적 조력과 소송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759] 왓 탐크라복 재단(Wat Thamkrabok Foundation)은 원래는 불교사원인데, 마약중독자의 사회 복귀와 갱생을 위해 교울과 지원을 하는 단체로 잘 알려져 있다.[760][761]

(10) 아세안과의 협력

태국은 민주주의와 친선, 회원국들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간 조직으로서 창설된 동남아국가연합(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의 회원국이다. ASEAN 회원국의 인권의 증진과 보호는 ASEAN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회원국들 사이의 정치체계의 차이, 회원국들의 인권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 ASEAN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적 기구의 부족 등이다.[762]

1967년 8월 8일에 태국 방콕에서 동남아 5개국, 즉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ASEAN 창립 5개국)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을 창설하기로 하는

---

758) Pavena Hongsakula Foundation for Children and Women, 'About us' (Pavena Hongsakula Foundation for Children and Women, 2021), 〈https://pavenafoundation.or.th/en/about-us/〉 accessed 27 August 2021

759) Thai Lawyer for Human Rights, 'About us' (TLHR, 2021), 〈https://tlhr2014.com/en /about-us-2〉 accessed 27 August 2021

760) Wat Thamkrabok, 'History' (Wat Thamkrabok, 2021), 〈https://wat-thamkrabok.org/th/history/〉 accessed 27 August 2021

761)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transnational crimes in Thaila*nd, Final Report, 2021, 29면.

762)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transnational crimes in Thailand*, Final Report, 2021, 24면.

"아세안 선언(ASEAN Declaration=Bangkok Declaration) "에 서명하기로 했다. ASEAN은 지역 평화를 증진하고, 회원국 간의 경제 협력을 촉진하며, 회원국들의 사회적, 문화적 진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1984년 1월 7일에 브루나이왕국(Brunei Darussalam)이 이 선언에 서명하고 ASEAN의 새로운 회원국이 되었다. 냉전의 종식 시기에 ASEAN은 4개국의 새 회원국들을 맞이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베트남은 1995년 7월 28일에 가입했고, 라오스와 미얀마는 1997년 7월 23일에, 캄보디아는 1999년 4월 30일에 가입했다.[763]

회원국들의 정치적 합의와 안전 보장에 의해 지지되는 ASEAN은 ASEAN 공동체 역내에서의 인권의 증진과 보호가 각 회원국의 인권의 존중과 신장을 위한 가장 의미 있는 책무 중의 하나이다.[764] 인권의 증진과 보호는 ASEAN 헌장(the ASEAN Charter)에서 인정되고, 인권 존중의 중요성은 아세안 헌장의 서문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 민주주의 원칙들에 입각해서 법의 지배와 선의의 통치(good governance), 인권의 보호와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나아가 ASEAN 헌장 제14조는 아세안은 그 역내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권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SEAN의 인권조직은 ASEAN 헌장 제14조의 의무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결정되는 사항과 조건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765]

2009년 7월 ASEAN 외무장관 회담에서 채택된 협의록(the Terms of Reference, TOR)이 작성되었을 때 아세안 정부 간 인권위원회(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ICHR)가 이 조항에 의해 인권조직으로 설치되었다. AICHR 협의록(TOR)에 이 조직(AICHR)은 아세안의 조직 구조에 있어서 인권에 관한 협의체로서의 지위와 통합과 조정을 위한 조직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아세안 각 회원국은 AICHR에서 활동할 대표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들 대표자들은 3년의 임기로 AICHR에서 일하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766] 2012년 11월에 AICHR에

763)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The Founding of ASEAN, 〈https://asean.org/about-asean/the-founding-of-asean/〉 accessed 18 August 2021

764)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transnational crimes in Thailand, Final Report, 2021, 25면.

765)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transnational crimes in Thailand, Final Report, 2021, 25면.

의해 마련된 ASEAN 인권선언(the ASEAN Human Rights Declaration, AHRD)이 아세안 역내에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골격(framework)으로서 아세안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 인권선언은 아세안 헌장에서 천명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의 준수와 이행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767]

이것은 또한 ASEAN 회원국들이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UN 헌장(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보편적 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비엔나선언과 행동 프로그램(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기타 국제적 인권선언(규약)에서 천명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를 다시 확인하고 이행하는 의미를 가진다.[768]

현재 아세안 공동체는 공동체 역내에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 AHRD와 AICHR을 가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들 제도적 수단들은 아세안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데, 아세안 공동체는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의 ECtHR과 같은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초국가적 상위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초국가적인 상위제도 없이 아세안 공동체는 AHRD에 의거해서 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나 인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할 수 없다.[769] 오늘날 AICHR은 아세안 역내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대하여 구성 회원국들을 감시하고,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AICHR은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의 ECHR의 ECtHR처럼 사법권을 가지고 법정을 운용할 수 없다.[770]

---

766)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transnational crimes in Thailand, Final Report, 2021, 25면.

767)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transnational crimes in Thailand, Final Report, 2021, 25면.

768)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PHNOM PENH STATEMENT ON THE ADOPTION OF THE ASEAN HUMAN RIGHTS DECLARATION (AHRD)', 〈http://asean.org/phnom-penh-statement-on-the-adoption-of-the-asean-human-rights-declaration-ahrd/〉 accessed 19 August 2021

769) Vitit Muntarbhorn, 'Regional Integration and Human Rights: European-Asian Reflections' in Apirat Petsiri, Jose de Sales Marques and William Roth (eds), Promoting Human Rights in Asia and Europe: The Role of Regional Integration 15-20

770) ibid, 19

그것들과는 별도로 NHRTC는 아세안 특정 조직(Specific Unit)을 설치하고, 아세안 공동체와 그 회원국들에 있어서 개개인의 인권 체계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세안 공동체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771] 아세안 인권선언(the ASEAN Human Rights Declaration)의 서명국(회원국)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아세안 인권선언은 법적인 기속력이 없으므로 태국은 UN의 9가지 주요한 인권 보장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수단 가운데 7가지를 태국 국내에서 보증함으로써 인권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태국은 UN의 위 9개의 제도적 수단 가운데 아직 2개, 즉 이주 노동자와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약(are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Family Members)과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을 아직 보증하지 않고 있다.[772] 그런데 태국은 2012년 1월 9일에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에 서명했으나 아직 까지 그 조약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773]

(11) 한국과의 인권협력

태국과 한국은 양국 사이의 인권 보호를 협력을 추구함에 있어서 여러 번의 회합을 가졌고, 여러 개의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그러한 협력에 있어서 최근의 생산적인 결과는 아래와 같다.[774]

2013년 7월 29일에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인 홍진표, 윤남근, 김성용 등 6인의 위원은 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과 태국 국가인권위원회 청사에서 만났다. 이 회합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태국 내의 탈북자 피난처(수용소)를 방문해서 그들의 생활 실태를 참관, 점검하고 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 관계자들과 일시적으로 태국의

771)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ailand, Human Rights Obligations of the ASEAN Community (NHTCT, 2017) 95-96

772)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transnational crimes in Thailand, Final Report, 2021, 25면.

773) ibid 93

774)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transnational crimes in Thailand, Final Report, 2021, 26면.

수용소에서 지내야 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를 주제로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775] 그 당시 태국 수용소에는 125명의 탈북자들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27명은 남성이고, 84명은 여성이며, 14명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이었다. 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오는 이주자들을 합당하게 처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민국과 교섭하고 있고, 탈북자들도 그러한 맥락에서 처우받는다. 주 태국 한국대사관은 탈북자들에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생활필수품이나 생활집기를 기부함으로써 탈북자들을 지원해오고 있다.[776]

2018년 6월 7일에 태국 법무부 산하 권리 및 자유 보호국(the Rights and Liberties Protection Department)은 한국 법무부 산하 인권국과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양자간 논의를 하고, 상호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이 협력 문서는 범죄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법적 조언, 변호사 선임, 재정적 지원, 심리적 치료의 제공 등에 관한 태국과 한국 당국자의 법적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777] 이 회담 후에 태국과 한국의 관계 부서는 양국의 국민에게 법적 지원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교환했다.[778]

2019년 11월 25일에 태국 총리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의 관계 기관 실무자들의 정기적 협의를 통해서 한국에서의 태국 노동자의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교환을 통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

775)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transnational crimes in Thailand*, Final Report, 2021, 26면.

776) NHRCT, 'NHRC of South Korea meets with the President of the NHRC Thailand' (NHRTC, 29 July 2013), 〈http://www.nhrc.or.th/News/Information-News/%E0%B8%81%E0%B8%AA%E0%B8%A1-%E0%B9%80%E0%B8%81%E0%B8%B2%E0%B8%AB%E0%B8%A5%E0%B8%B5%E0%B9%83%E0%B8%95%E0%B9%89%E0%B9%80%E0%B8%82%E0%B9%89%E0%B8%B2%E0%B8%9E%E0%B8%9A%E0%B8%9B%E0%B8%A3%E0%B8%B0%E0%B8%98%E0%B8%B2%E0%B8%99-%E0%B8%81%E0%B8%AA%E0%B8%A1-%E0%B8%9B%E0%B8%A3%E0%B8%B0%E0%B9%80%E0%B8%97%E0%B8%A8%E0%B9%84%E0%B8%97%E0%B8%A2.aspx〉 accessed 20 August 2021

777)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transnational crimes in Thailand, Final Report, 2021, 27면.

778) Rights and Liberties Protection Department, 'No. 273/2561, Rights and Liberties Protection Department Bilateral discussions on victim assistance and signed a cooperation agreement with the Department of Human Rights of the Ministry of Justice.' (RLPD, 8 June 2018), 〈http://www.rlpd.go.th/rlpdnew/2012-06-20-06-21-44/rlpd-pr/8766-2018-06-08-09-20-03〉 accessed 20 August 2021

교환했다. 그래서 태국 노동자가 불법적으로 한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관계 부서 사이의 정보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779]

2021년 8월 17일에 태국 사회 개발 및 시민 안전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 차관(Permanent Secretary) Patcharee Arayakul, 청소년청(the 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 청장(Deputy Director-General) Urai Nimai, 여성가족원(Department of Women's Affairs and Family Institute) 원장(Deputy Director-General) Sunee Srisangatrakullert,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이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의 총영사 하태욱을 만나러 갔다.[780] 이 만남에서 주요한 논의 내용은 태국과 한국 사이의 여행자의 Working Holiday 프로그램 문제, 여성 인권의 증진과 보호 문제였다.[781]

제2절 | 동아시아 지역 인권논의, 인권기구, 인권협력의 취약성 등

1. 동북아 지역 인권논의, 인권기구, 인권협력 관련 취약성

가. 동북아 국가 인권논의 취약성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 중국, 일본, 북한, 한국은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20세기는 물론 21세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공동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인권보호 관련 정치적 논쟁과 20세기 일본의

779) Prachachart, 'Thailand-Korea signed 3 MOUs, R&D-EEC-Solve the illegal migrants problem' (Prachachart, 25 November 2019), 〈https://www.prachachat.net/politics/news-394724〉 accessed 20 August 2021

780)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transnational crimes in Thailand*, Final Report, 2021, 27면.

781)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 'Permanent Secretary of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 together with executives Meeting with Mr. Ha Tae Wuk, Consul-General of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ailand'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 17 August 2021), 〈https://www.m-society.go.th/news_view.php?nid=31029〉 accessed 20 August 2021

주변 아시아 지역 국가에 대한 침략의 역사 북한의 국내적 억압으로 인한 탈 북민 발생과 국외적 전쟁도발 위협 및 강제실종 등의 다양한 문제 등은 동북아시아 지역 각 국가 지역주민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상시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나 오히려 중요한 중심논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의 인권보호와 관련한 취약한 공동논의를 어떻게 가능한 방식과 범위로 형성해 나가며 이어나갈 것인가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전과 인권보호 방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 중국 인권논의의 취약성

최근 미-중 간에 무역과 과학기술, 군사적 영역의 경쟁을 넘어 가치와 제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인권문제는 미중간 갈등의 핵심 의제가 되었다. 특히 미국이 자유민주국가간 자유주의 연대를 통하여 홍콩과 신장, 그리고 중국내의 각종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본격화 하면서, 인권문제는 미중 간의 세력경쟁의 핵심 내용이 되었고 동아시아 및 글로벌 영역의 안보이슈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인권문제는 주권국가로서의 중국의 내정문제로, 중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이나 개입은 그 어떤 형태로든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른바 중국의 '핵심이익'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인권문제를 담론화하여 중국과 상호 협력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은 동아시아 국가 간 인권문제를 둘러싼 협력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782]

인권과 민주주의는 현 국제질서 속에서 인류의 보편가치로 간주되고 있는데, 그러나 중국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편가치로 간주하는 것은 서구적인 기준일 뿐이고 중국은 중국의 상황에 기초하여 중국식의 인권관(이른바 민권 개념)을 확립하여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과정이나 절차보다는 어떠한 처방이나 경제적 성과 또는 결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783]

한편 중국은 또한 한 국가가 인권을 수호하는가 아닌가는 각 국의 구체적인 사정에

782) 이정남,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원, 중국 인권보호정책과 상호협력방안 자문회의, 자문의견서 2021, 1면.
783) 강수정, 이정남 편저, 『시진핑 시대 중국의 정치체제』, 아연출판부, 2021, 91면.

기초하여 이해하고 판단해야하고, 인종갈등과 빈부격차 등으로 심각한 갈등 상황에 처해있는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더 인권을 잘 실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공산당의 통치능력을 선전하면서 중국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784]

세계의 95%의 국가가 인권규약 A, B 모두를 비준하였지만 미국은 인권규약 B만을 비준하고 있고,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였다. 전쟁 사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 국가성립 후 242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불과 16년 정도였다는 점,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역량부족, 즉 미국은 베트남 전쟁 미국 군인 전사자인 5만 8천 220명 보다 미국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넘어서는 등[785] 수많은 사망자를 산출한 점 역시 미국이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타국을 비난할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주장[786]도 있다.

그런데 설사 중국이 인권문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중국의 내정으로 그 어떤 국가도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권문제를 내정으로 보고 그 어떤 국가도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은 최근 미얀마 대량학살 사태에도 불구하고, 내정간섭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군부의 반인권적인 행위를 묵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법과 제도만을 놓고 보면 다양한 영역의 인권문제에서 그다지 후진적이지 않다고도 보이는데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인권백서 뿐만 아니라 자국 스스로의 인권백서를 발행하면서 중국식 인권개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중국의 인권정책은 심각한 한계가 있다. 첫째,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조항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정치과정이 법치화, 제도화, 절차화되지 못하고 인치(人治)적 요소와 공산당의 통치노선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과 제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787]

둘째, 중국은 법치(rule of law)사회가 아닌 당치(rule of party) 사회로, 법은 권력일

784) 이정남, 『중국의 꿈과 민주주의』, 아연출판부, 2021, 13면.
785) 연합뉴스. 2020.4.29., "미국 코로나-19 사망자 수, 베트남전 전사자 넘어서",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9054500091〉 (최종검색일:2021.6.9.)
786) 강정구, 시론, "미국, 인권 시비할 자격이 있나요?", 한겨레, 2021.4.12. 27면.
787) 이정남,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원, 중국 인권보호정책과 상호협력방안 자문회의, 자문의견서 2021, 2면.

일원적으로 독점한 공산당의 통치 도구로 작동하는 수준이다.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당-정-관-민-노-농-학-병, 동-서-남-북-중 등 중국의 모든 것을 영도하는" 조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함. 공산당만이 중국의 통치권력을 장악할 수 있고, 공산당의 권력은 분할할 수 없으며, 어떤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견제나 감독받지 않으며, 오로지 공산당 스스로만이 스스로의 권력 사용을 감독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조건에서 공산당의 반인권정책이 빈번하게 발생해도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견제세력이 부재하여, 중국인민은 당이 스스로 '선한' 통치를 하지 않는 한 스스로 스스로의 인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788]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중국의 인권상황과 관련 심각한 문제를 쟁점화하기도 난감한 상황이고 중국 반체제 인사 중 일부 인권변호사가 인권문제를 제기하지만 이들은 거의 존재감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중국은 국제사회의 기타국가들과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더 나아가 동아시가 국가들이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전면적으로 상호 연대를 형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정부(관방)나 중국 공공기관 차원의 접근은 공산당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설사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국식 인권개념의 선전의 공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789]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방안을 찾고자 한다면, 인권논의를 이론적 논의를 우선 활성화하여 논의하며 가능한 실무적 차원의 논의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방법 또는 정치색이 아주 옅은 이슈로 교류하면서 간접적으로 인권문제를 다루는 방식이다.

가령 마약범죄 – 마약에 대해서 중국은 아편전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있으며 이에 강력한 대응이 우선시되기는 하지만 -, 자연재해와 재난협력, 민생문제와 직결되는 보이스피싱 등 중심적 정치체제나 경제적 이슈가 아닌 글로벌 비전통이슈, 즉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대응의 필요성이 있거나 민생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기술적 해결을 필요로 부분에서의 필요로 하는 협력을 인권협력으로 연결하면서 교류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은[790]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788) 이정남,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원, 중국 인권보호정책과 상호협력방안 자문회의, 자문의견서 2021, 3면.
789) 이정남,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원, 중국 인권보호정책과 상호협력방안 자문회의, 자문의견서 2021, 3면.
790) 이정남,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원, 중국 인권보호정책과 상호협력방안 자문회의, 자문의견서 2021, 4면.

⑵ 일본 인권논의의 취약성

일본은 중국과 달리 서구적 인권개념을 부인하거나 거부하지는 않는다. 일본은 인권논의는 정부나 당 차원의 관점과 민간 또는 시민사회 차원의 관점이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협력 관점과 일본 스스로의 동아시아 주변국가 특히 재일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위안부 문제, 강제노동 등과 관련한 관계회복 및 인권보호와 관련된 입장은 소극적인 입장이 이중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는 역시 정부의 성격에 따른 입장과 그 외 기관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기구의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나 정부차원에서 동아시아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공동논의가 취약한 점이 있고 어떠한 정부가 구성되는가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국제기구 차원이나 비영리 시민사회 단체 차원의 인권에 대한 공동인식과 공동논의의 확대는 가능하다고 보이며 국제기구 차원의 연대나 시민사회 단체 차원의 연대와 공동논의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⑶ 북한 인권논의의 취약성

북한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논의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북한과 관련한 인권논의는 미국과 중국과의 인권논의에 맞물려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과 우려가 상존하는 상태에 있으며 북핵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어 인권논의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탈북민은 중국을 포함하여 몽골과 동남아시아 각 국으로 이동하여 인신매매, 강제결혼, 강제노동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인권의 취약성은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시 동아시아 지역 인권보호 협력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논의는 단기간에 어떠한 방안이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이나 방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를 위한 장을 마련하고 경제적·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우선으로 하여 논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에 대한 인권논의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인권정책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공유

함으로써 상호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나. 동북아 인권기구의 취약성

중국은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논의를 차지하고서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나 정부 각 기관의 인권부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일본의 경우 법무성 설치법에 따라 법무성의 인권옹호국을 두고 인권침해 조사와 피해구제 및 인권침해 예방업무를 하고 있고 지방의 경우 지방 법무국과 지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791]는 점은 중국과 달리 정부가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일본 역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인권침해 관련 사안을 국가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인다. 국가차원의 인권침해 사안이나 정부차원의 인권보호와 관련한 부족한 점은 시민 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일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검찰이나 경찰의 인권침해 관련 사건으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경찰 자체적으로 인권보호와 관련한 위원회 또는 부서를 마련하고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792]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법무부 역시 인권보호와 관련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가 마련되어 있어 다른 관점에서 정부와 국가차원의 인권침해 사안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의 상황은 일정부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는 주지하다시피 역시 정부 또는 국가 차원의 독립적 국가인권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북한의 정부입장을 대변하거나 해외에서 반미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국제관계에서 일종의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데 북한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793], 장애인 권리협약에 가입한 바와 같이[794] 북한이 참여하

791) 윤지영, 『법무부의 인권옹호기능 강화방안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7, 58면.
792) 최종술, "국가경찰위원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범수·이은주·임호선 국회의원 주최, 한국행정학회·한국경찰학회,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중심으로, 2021, 55면.
793) 가입 1990년 9월 21일, 비준 1990년 10월 21일
794) 외교부, 주요 국제인권협약 가입현황, 〈https://www.mofa.go.kr/www/brd/m_3998/view.do?s

는 인권보호활동을 중심으로[795] 상호 공동의 인식과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정상적인 국가로 운영되기를 원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796] 이러한 희망을 주변국들은 일정부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국제적 관계에서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인정해 주고 그러한 부분에서 가벼운 이론적 논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인권 시민단체 관련

일본 도쿄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가 2021년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본의 우익단체가 신체적 공격의 위협이나 협박 메일 등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면서 전시회가 무산된 바 있다.[797]

반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나고야 소송지원회,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과 관련된 호쿠리쿠연락회[798] 등의 시민단체들은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참여연대,[799] 국제민주연대,[800] 휴먼아시아,[801] 인권연대,[802] 아시아인권문화연대,[803] 공감[804] 등과 같은 비영리 시민단체나 재단 등도 아시아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들 뿐만 아니라 동아시

---

eq=32607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최종검색일:2021.6.25.)

795) 북한과는 달리 미국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796) 북핵문제와 바이든 정부, 제주포럼, 2021.6.25

797) 동아일보, 2021.6.25., "도쿄 소녀상 전시회, 日 우익협박에 결국 무산", 2021.6.25.일, A28면

798) 노컷뉴스, 2021.4.5., "근로정신대 소송 돕는 日 시민단체 한국사 교과서 실려 '눈길'", 〈https://www.nocutnews.co.kr/news/5529613〉 (최종검색일:2021.6.28.)

799)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 (검색일:2021.11.7.)

800) 국제민주연대, 〈http://www.khis.or.kr/〉 (검색일:2021.11.7.)

801) 휴먼아시아, 〈http://humanasia.org/〉 (검색일:2021.11.7.)

802) 인권연대, 〈https://hrights.or.kr/〉 (검색일:2021.11.7.)

803) 아시아 인권문화연대, 〈https://asiansori.org/22〉 (최종검색일:2021.7.8.)

804)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https://www.kpil.org/thri/about-us/eng/〉 (최종검색일:2021.7.8.)

아 각국에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정보교환 및 상호교류의 영역과 범위를 확장하고 의견소통의 기회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는데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회의가 증가한 것은 국제적 소통과 교류 및 연대확장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동남아 지역 인권논의, 인권기구, 인권협력 관련 취약

가. 동남아 인권논의 취약성

동남아 국가들은 정치체제와 경제수준, 문화적 가치관 측면에서 다양성이 존재한다. 특히 정치체제와 관련하여, 필리핀의 경우 미국이 식민통치를 하는 동안 의회와 선거 등 미국의 정치제도들이 이식되었다. 그리하여 최초의 미국식 상하원 선거가 1916년에 실시되었고, 1935년부터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처럼 일찍 미국식 민주주의를 경험한 필리핀에서는 독립 이후에도 대통령제와 상하원 양원제에 기초한 미국식 민주주의가 상당 기간 유지되었다. 영국이 지배한 미얀마의 경우에도 영국의 정치제도들이 이식되어 1922년부터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독립 후에도 의원내각제에 기초한 영국식 민주주의 모델에 입각해 헌법을 만들었다. 네덜란드 식민통치 기간 중 네덜란드 정치제도를 경험한 인도네시아 역시 독립 이후 비례대표제와 의원내각제 등 네덜란드식 모델에 기초해 정치체제를 설계하였다.[805]

한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지배한 프랑스는 식민지에 자신들의 정치제도를 이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국가들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채 독립을 이루었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수립한 나라는 아직 없다. 싱가포르,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은 모두 오늘날 현재 야당이 허용되지만 선거를 통해 야당이 집권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매우 낮은 준민주주의 국가들이다. 이들은 모두 독립 이전에 서구식 의회 선거를 경험하였다. 태국은 식민 지배를 받지는 않았지만 1932년 혁명 이후 입헌군주제를 도입하여 1933년부터 의회 선거를 실시해왔다. 이처럼 오랜 서구식 민주주의 경험을 가진 나라들이지만 아직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룩하지 못하고

805) 신재혁, 유사한 역사를 경험한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왜 다양한 정치체제를 갖게 된 것일까?, SNUAC 다양성+ASIA(13), 2021.6, 〈https://diverseasia.snu.ac.kr/?p=4723〉 (최종검색일: 2021.7.24.)

있다.[806]

현실적으로 정치적 민주화가 추진되고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국민의 정치적·시민적 권리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및 각종 비정부 시민단체들의 인권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한 국내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동남아의 대다수 국가들은 권위주의체제의 억압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아직도 인권에 있어서는 열악한 상황에 머물러 있다.[807]

아세안(ASEAN)은 일찍이 1967년 창립 초기부터 인권 문제를 포함하여 정치적 사안들에 대한 외부적 간섭과 개입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불간섭 독트린'(doctrine of non-interference)을 아세안 규범으로 채택해 왔다. 즉 아세안은 전통적으로 국가 간 현안 문제를 협의함에 있어서 주권과 국가 간 평등, 그리고 국내 문제에 대한 상호 불간섭을 하나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내정불간섭' 원칙을 고수하여 왔으며, 이것은 각 국가의 인권 문제를 국내 문제로 인식하여 상호 간섭과 개입을 배제하도록 만들고 있다. 아세안의 이러한 대내외적 태도는 역내 국가 간 인권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808]

'아세안 방식(ASEAN Way)'은 현대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인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원칙을 실현함에 있어 아세안의 국내외 정치적 요인과 문화적 영향이 반영된 아세안의 독특한 의사결정방식과 이행 방식이 결합된 것을 말한다. 아세안은 '아세안 방식'에 따라 발전해 왔다.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원칙을 예외 없이 엄격히 적용하였으며, 의사결정은 협의와 합의의 원칙을 따랐다. 상대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협상보다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809] 아세안은 동 원칙에 따라 캄보디아 크메르루주의 대량 학살 사태는 무시하였으며,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1972년 계엄령 선포, 태국의 군사 쿠데타, 미얀마 군사정부의 지속과 아웅산 수치 여사 및 국민민주연맹(NLD)에 대한 군사정부의 탄압 등에 대해서도 침묵한바 있다.[810]

---

806) 신재혁, 위의 글.
807) 이동윤, "동남아의 인권정책과 지역협력: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의 사례 비교", 『21세기정치학회보』(제20집 2호), 21세기정치학회, 2010, 233면.
808) 이동윤, 위의 논문, 237면.
809) 한아세안센터·외교부, Understanding ASEAN through 4Cs, 2017, 16면.
810) 주싱가포르대사관, 싱가포르 정세: '인권에 대한 아세안의 변화된 시각' 기고문, 2020.9.21.

1993년 유엔(UN)의 '비엔나 세계인권회의'(Vienna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를 앞두고 개최된 '아시아지역인권회담'(Asian Regional Meeting on Human Rights)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은 그들의 지역협의체인 아세안을 중심으로 역내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지역적·정책적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나, 아세안이 전통적으로 지녀온 제도적·구조적 문제점과 더불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각종 장애요인들로 인해 아직도 인권 신장과 보호를 위한 지역적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811]

아세안 회원국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은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 논쟁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다. 아시아적 가치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견해에 의하면 문화는 숙명이며, 절대적 개인을 전제로 한 서구적 인권 개념과 민주주의 사상은 공동체주의에 기반을 둔 아시아적 문화와 대치되어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시아적 가치 규범과 문화를 강조한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Mahathir bin Mohamad) 전 수상이나 싱가포르의 리콴유(Lee Kuan Yew) 전 수상과 같은 정치지도자들과 일부 학자들은 서구의 인권과 민주주의 개념이 아시아에 있어서도 유효한 공통적 가치임을 강조하는 보편주의자들의 주장에 맞서 자신들의 정치적·문화적 다양성과 특수성을 주장하였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서구에 의해 주도되는 또 다른 제국주의로 규정하였다.[812]

아세안 회원국들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인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실제로는 아세안 협력에 적극적이지 않고,[813] 자신의 국가주권에 반한다거나 경제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인권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에 '인간안보'라는 관점에서 자신들의 인권협력을 검토한다.[814] 이들은 또한 식민지배를 서구 열강으로부터 받아[815][816] 민족주의나 국가주권에 대한 의식이 높으며 국제적 인권이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0/view.do?seq=132739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최종검색일: 2021.5.11.)

811) 이동윤, 앞의 논문, 228면.

812) Edward Friedman, "On Alien Western Democracy," Catarina Kinnvall and Kristina Jösson (ed.), Glob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in Asia: The Construction of Identity(London: Routledge, 2002), pp.60-61. 재인용 변창구, "ASEAN의 인권문제와 내정불간섭원칙의 딜레마", 『국제정치연구』 14(2),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1, 6면.

813) Mohamad 2002, 230-51, 재인용, 이동윤, 앞의 논문, 238면.

814) Anwar 2003, 542, 재인용, 이동윤, 앞의 논문, 238면.

나 지역적 인권의 문제를 자신의 국가주권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817] 국제인권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국가간 협약 또는 제도로써 강제하는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이지 않으며 인권과 관련한 논의를 자신들의 주권을 약화시키거나 정치적 경제적 간섭이나 지배를 위한 전략으로 보는 등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818]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997년 미얀마와 라오스, 1999년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으로 '하나의 아세안(One ASEAN)'을 실현한 동남아 국가들은 아직도 낮은 단계이기는 하지만, 지역적 차원의 주권과 개발, 인권 문제 등을 갈등적 공존으로부터 평화적 공존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세안 방식을 협의하게 되었다. 특히 1997년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쿠데타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세안은 태국과 필리핀 주도로 동남아 지역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예방적 차원으로 ① 선거 과정에 대한 직접적 지원, ② 법·행정개혁 강화, ③ 인적 자본의 개발, ④ 시민사회 및 법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적 개입'(constructive intervention)을 제안하였으며, 이것은 미얀마의 군부 통치나 인권유린 문제 등과 관련하여 태국이 제기한 '유연한 관여' 정책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권 문제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 사이의 간섭과 개입은 아직도 외교적으로 미묘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2007년 발생한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와 진압과정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과정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역내 인권 문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수행능력이 미약한 것이 아세안이 지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평가되고 있다.[819]

---

815)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식민 지배를 받았고, 특히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점에서 한국과도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독립할 때까지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고,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였으며,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미얀마는 영국 식민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는 프랑스 식민지였다(신재혁, 유사한 역사를 경험한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왜 다양한 정치체제를 갖게 된 것일까?, SNUAC 다양성+ASIA(13), 2021.6, 〈https://diverseasia.snu.ac.kr/?p=4723〉 (최종검색일: 2021.7.24.))

816)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는 대부분 프랑스법을 모델로 하여 법률의 근대화를 추진하였고, 반면 미얀마의 경우 영미법계를 근간으로 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은 프랑스 내지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대륙법계의 프랑스법 또는 영미법계의 법체계를 전수받은 경향이 크다 할 것이다. 또한 베트남, 라오스 등은 오랜 사회주의 국가로서 사회주의법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자본주의 법계를 도입하여 선진국가의 법체계 및 내용을 계수하였다. 이준표, 『메콩경제권 기업법제의 이해』, 한국학술정보(주), 2012, 25-26면.

817) Langlois 2001, 39, 재인용, 이동윤, 앞의 논문, 238면.

818) Davis 2004, 127; Foot 2005, 419-20, 재인용, 이동윤, 앞의 논문, 238면.

819) 이동윤, 앞의 논문, 239면.

나. 동남아 국가 인권기구의 취약성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민주화가 이루어진 필리핀의 경우, 1986년 마르코스 대통령의 하야 이후 새롭게 집권한 아끼노 대통령의 대통령령을 통해 대통령 산하기관으로 '인권위원회'(Presidential 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설치되었다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인권위원회(Filipino 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구성되어 제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필리핀의 인권 개선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과거 권위주의체제 시기의 인권적 침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법·규정들을 새롭게 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필리핀인권변호사연맹'(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과 다수의 인권단체들은 헌법조항에 정치활동 보장을 통하여 인권활동에 적극적일 수 있었다.[820]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지난 2001년 5월 발생한 에스트라다(Joseph Estrada) 대통령의 퇴진과 빈민 폭동, 그리고 아로요 대통령의 집권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 국내적 인권 상황이 다시금 악화되었다. 특히 필리핀은 인권위원회와 다양한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과거 독재정권 시기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이나 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달리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적·시민적 권리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여전히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1년 '9·11 테러'의 발생 직후 국제적으로 강화된 테러대응정책 분위기에 편승하여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한 필리핀 정부는 남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슬람 분리주의운동과 무장단체들을 국제테러리즘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토벌작전을 전개함으로써 다수의 인권 유린과 침해 사례들이 발생하였다.[821]

2017년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및 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필리핀 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 착수에 대하여 두테르테 대통령이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를 경고하면서 정면충돌하기도 하였다.[822] 두테르테 대통령은 2020년 7월

820) Franco 2004, 109, 재인용 이동윤, 앞의 논문, 233면.
821) 이동윤, 앞의 논문, 233면.

3일, 반테러법(Anti-Terrorism Act of 2020)에 서명하였는데, 이 법은 테러 행위를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와 민간의 시설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폭발물이나 무기의 제조 및 유통 등으로 규정하고 연설, 성명서 발표, 배너 등으로 이를 부추기는 행위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이 테러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823]

1992년 민주화가 이루어진 태국의 경우 1997년 태국 정치사상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라고 평가되는 '인민헌법'(People's Constitution)의 제정을 통해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가 설치되는 등 인권 개선을 위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2001년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집권한 탁씬 총리와 태국애국당(Thai Rak Thai Party)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마약 및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한 소탕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는 체포와 재판 없는 구금, 그리고 비사법적 처형을 강행하는 등 다수의 인권침해 사태를 유발하였다. 또한 탁씬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비판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대체함으로써 인권위원회의 초기 개혁적 성향을 크게 변질시켰다. 특히 태국의 인권 상황은 2004년 초부터 발생한 남부 국경지역의 이슬람 폭력사태를 군대를 동원하여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등 인권침해 사건들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6년 9월 군부쿠데타 발생과 헌법 정지, 그리고 2007년 새로운 헌법 제정과 선거를 통해 신정부가 구성되는 등 일련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인권 현황 또한 다시금 악화되는 상황이 표출되었다.[824] 2014년 태국의 군부 쿠데타 이후,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해야할 태국 인권위원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하다가,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정회원 자격을 박탈당했다.[825]

---

822) 연합뉴스, 2017.7.26., "두테르테, 국가인권위 폐지 경고…필리핀 인권실종 우려", 〈https://www.yna.co.kr/view/AKR20170726053000084〉 (최종검색일:2021.5.25.)

823) 참여연대, "필리핀 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테러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20.7.7.,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717025〉 (최종검색일:2021.5.25.)

824) 이동윤, 앞의 논문, 233면.

825) 연합뉴스, 2016.1.29., "군부 집권 1년 반 만에 무너진 태국의 인권", 〈https://www.yna.co.kr/view/AKR20160129103100076〉 (최종검색일: 2021.5.25.)

1998년 민주화를 맞이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수하르또 대통령이 통치하던 권위주의 체제 시기인 1993년에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 Komisi Nasional Hak Asasi Manusia)가 설치되었다. 민주화 이후에는 1999년 대통령령 제50호에 의해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그 권한과 위상이 크게 강화되어 인권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는 인권 문제의 규명을 위해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소환권이 부여되었으며, 이를 통해 과거 동티모르 학살이나 권위주의체제 시기의 각종 인권 문제와 관련된 증인들을 강제적으로 소환하여 증언을 청취할 수 있었다. 또한 1998년 민주화를 전후하여 인권운동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법률구조재단'(LBH: Lembaga Bantuan Hukum)이나 '임빠르시알'(Imparsial) 등도 인도네시아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826]

그러나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는 아직도 군부의 영향력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동티모르 학살 등 과거 권위주의체제 시기에 자행된 다수의 인권 탄압과 침해 사건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부여된 소환 및 기소권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인권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다극화된 정치세력들의 역학관계와 구조적 문제점들에 기인하여 그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필리핀이나 태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민주화 시기가 늦었던 인도네시아는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도 민주주의 이행의 과도기적 양상이 표출되고 있다. 또한 발리(Bali) 폭탄테러가 2002년 발생한 것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테러 사건 수사와 아쩨(Aceh) 지역을 포함한 많은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 진압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유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827]

다. 인권 시민단체 관련

지역협력 차원에서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한 역내 국가들의 정부가 취해 온 미온적 태도와 달리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국내외 인권 문제의 해결과 지역협력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일련의 정치개혁과

826) 이동윤, 앞의 논문, 235면.
827) Anwar 2003, 546-7; Jemadu 2004, 153; Foot 2005, 413, 재인용, 이동윤, 앞의 논문, 235면.

더불어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으로 인권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나 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 등 국제인권단체들과 연계하여 단순히 정치적 권리나 시민적 자유뿐만 아니라 아동과 여성, 빈곤, 소수종족, 지역갈등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에서 인권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인권단체들의 활발한 운동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가들의 내부적 인권 문제는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들 국가들의 인권단체들이 비교적 영세한 재정으로 소규모의 인권 홍보나 주창활동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정부와 연계된 정책 프로그램이나 활동도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인권 문제의 정책적 개선을 위한 각종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들 국가들의 정부는 시민단체들과 연계된 인권정책의 추진이나 정책적 협력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828]

비정부 영역에서 인권·시민단체들의 지역협력 및 연대활동과 관련하여 태국에 위치한 '포럼 아시아'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인권과 개발을 위한 국가 간 인권단체들의 연대와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태국 소재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인권교육자원센터,' 말레이시아의 '제3세계 네트워크'(Third World Network), 태국과 필리핀 등에 위치한 '동남아인권옹호위원회'(SEACA: Southeast Asian Committee for Advocacy) 등도 지역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동남아 지역의 인권과 민주화, 경제·사회·환경 문제 등과 관련된 인권운동과 연대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 연대활동과 인권협력을 표방하는 이들 시민단체들 역시 불충분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제인권기구의 경제적 지원과 주요 이슈들을 수용함으로써 인권운동이 특정한 방향으로 편중되는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으며, 동남아의 지역협의체인 아세안 및 각국 정부와 정책적으로 연계된 협력활동이 미약하다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829]

아세안은 지난 2007년 11월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 조인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들 사이의 협력관계가 '인민 중심으로'(people-oriented) 이루어질 것임을 재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아세안 회원국들의 시민단체연합이자 자문기구인 '아세안인민회의'(APA: ASEAN Peoples' Assembly) 조차

828) 이동윤, 앞의 논문, 240면.
829) 이동윤, 앞의 논문, 240면.

2007년의 '아세안 헌장'이 아세안 내부의 '트랙2'(Track Ⅱ)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충분하게 제도화시키지 못하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즉 '아세안 헌장'에 명기된 '인민중심'의 국가 간 지역협력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으며, 아세안 내부에서 시민단체와 연계된 정부 간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스스로가 시민단체들의 사회운동과 연대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830]

결과적으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동남아 국가들 사이의 지역협력은 각 국가들 내부의 정치구조나 경제적 환경과 연계되어 보다 강력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협의체로서 아세안이 지니는 제도적 한계 또한 동남아의 인권 개선을 위한 지역협력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체제나 민주주의 수준과는 별도로 국제인권 규범이 요구하는 내용이나 외부적 간섭 또는 일정한 압력에 순응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인권정책이나 지역협력에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동남아 개별국가들에서 다양한 인권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역시 국내 정치적 제약과 재정적 취약성에 기인하여 인권신장을 위한 획기적 성과가 미진한 상황이며, 지역협력과 연대활동을 주도하는 국가 간, 지역 단위의 인권단체들 역시 국제기구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재정적 한계와 더불어 동남아 지역협의체인 아세안과의 정책적 연계활동 부진으로 원활한 지역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831]

라. 아세안 협력 관련

1993년 태국에서 개최된 '아시아지역인권회담'에서 일본과 호주 등이 인권 문제에 대한 아세안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고 나서자, 아세안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역내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한 지역적 협력방안들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아세안은 1997년에 미얀마와 라오스, 1999년에 캄보디아가 가입하여 이른바 '아세안 10'(ASEAN ten)을 완성한 것을 계기로 역내 인권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05년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

830) 이동윤, 앞의 논문, 241면.
831) 이동윤, 앞의 논문, 241면.

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는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 제정에 합의하였다. 아세안 공동체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아세안 헌장은 현인그룹의 권고안과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 등 의견수렴을 통해 작성되었다. 아세안 헌장은 아세안의 기존 선언문, 합의문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규범, 국내 정치적 해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문서이다.[832]

아세안헌장(2007)[833]은 명시적으로 아세안 회원국들이 "기본적 자유 존중, 인권 증진 및 보호, 사회 정의 증진"을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였고, '아세안 정부 간 인권위원회'(AICHR: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설립 근거를 명시하였다(ASEAN Charter 제14조). 2009년 차암후아힌 선언(Cha-am Hua Hin Declaration on the AICHR)[834]에서 AICHR 출범을 선언하였고, 동시에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Terms of Reference)[835]을 발표하여 AICHR의 목적, 원칙, 임무, 기능, 구성 및 운영지침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이는 AICHR 운영 지침(Guidelines on the Operations of AICHR)(2012)[836]에 의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아세안은 2009년 10월 개최된 제15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동의를 거쳐 동남아 지역의 공식적 인권기구로서 AICHR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하였다.[837]

AICHR은 각 회원국 정부에 의해 지명된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와 합의에 기초하여 의사결정하고 연 2회 정기회의 개최한다. AICHR은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한 인권기준 관련된 정보 및 가치를 교육, 감시, 보급 등을 통해 아세안 국민의 인권 증진 및 보호와 근본적 자유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2012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 인권 선언(ASEAN Human Rights Declaration)[838]이 제정되었는데, 국제 인권규범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을 받아들임으로써 개인

832) 한아세안센터·외교부, 앞의 책, 18면.
833) AICHR, 〈https://aichr.org/wp-content/uploads/2019/01/ASEAN-Charter.pdf〉
834) AICHR, 〈https://aichr.org/wp-content/uploads/2020/02/Cha-am-Hua-Hin-Declaration-AICHR.pdf〉
835) AICHR, 〈https://aichr.org/wp-content/uploads/2020/02/TOR-of-AICHR.pdf〉
836) AICHR, 〈https://aichr.org/wp-content/uploads/2018/10/Guidelines_on_the_Operations_of_AICHR.pdf〉
837) 이동윤, 앞의 논문, 237면.
838) AICHR, 〈https://aichr.org/wp-content/uploads/2018/10/ASEAN-Human-Rights-Declaration.pdf〉

의 자유와 평등을 포함한 인권을 수호하고, AICHR에 지역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권한(mandate)을 부여하였다. 이 선언은 시민 평등권 및 정치적 권리 조항, 경제·문화 권리, 발전의 권리, 평화의 권리 등을 포함한 일반적 원칙들을 담고 있지만, 국제 인권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또한 여전히 아세안의 내정불간섭과 컨센서스 원칙에 따라 아세안 인권선언이 실질적으로 회원국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아세안 회원국들은 AICHR를 정부간(inter-governmental) 위원회로서 그 출범에 합의하였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시민사회단체(CSO) 및 비정부기구(NGO) 지도자들을 자국의 대표로 임명한바 있고, 해당 대표들은 시민사회와의 소통, 역내 NGO들의 AICHR 회의 참여, 인권 관련 글로벌 단체와 AICHR간의 교류 확대 등을 촉구한바 있다. 하지만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는 인권 증진에서 인권의 적극적 보호로 의제가 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상기 요구들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AICHR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라오스 출신의 저명한 운동가인 Sombath Somphone의 실종 사건, 라카인주 로힝야 소수민족 추방 사태 등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기도 하지만, 관련국들은 이와 같은 현안들이 공식적으로 협의되는 것을 막고 있다.[839]

인권에 대한 아세안의 시각이 변하였지만, 아세안은 현재까지도 인권을 외교부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아세안은 여성·아동·장애인의 권리, 인신 매매, 교육 권리, 기업의 사회 의무, 환경 보호 등에 관한 회의도 개최하고 있는바, 이에 싱가포르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도 AICHR 행사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AICHR의 설립은 인권과 관련된 9개의 UN 협약에 대한 비준과 가입의 압박이 되고 있는데, 이는 아세안 회원국들의 가입 현황이 AICHR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은 회원국별로 인권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이한바,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팔레스타인과 로힝야 난민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지속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이주노동자권리협약(ICRMW)'과 같은 UN 인권협약에 가입하는

839) 주싱가포르대사관, 싱가포르 정세: '인권에 대한 아세안의 변화된 시각' 기고문, 2020.9.21.,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0/view.do?seq=132739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최종검색일: 2021.5.25.)

것은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840]

UN 협약에 대한 가입이 당사국들이 해당 협약에 대한 의무를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데, 이는 ICRMW를 제외한 8개의 인권 관련 UN 협약에 가입한 캄보디아가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태국은 AICHR에서 인권 현안의 확대 및 심화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지만, 왕실에 대한 불경죄(lese majeste), 군사 정부 비판론자들의 실종 사건 등과 같은 인권 문제가 존재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종교적 소수 집단에 대한 보호 약화, 인도네시아 West Papua주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고문·살인·실종 사건 등의 인권 탄압 문제가 있으며, 필리핀은 AICHR에서 시민 평등권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주도적인 의견을 펼쳤지만, 자국 내 마약 밀매 혐의자 및 범죄 혐의자들에 대한 즉결 처형을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인권 탄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841]

2015년 아세안공동체 출범과 함께 사람 중심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AICHR 지원 및 협력 강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같은 해 AICHR과 시민 사회 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지침(Guidelines on the AICHR's Relations with Civil Society Organisations)[842]을 제정하여 AICHR과 시민사회단체(CSO) 간의 협력을 위한 전반적인 프레임워크 및 지침을 제공한 바 있다.[843] 2020년에는 AICHR Five Year Work Plan 2021-2025[844]을 발표하여 ASEAN 인권관련 문서의 이행 촉진,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력전략, ASEAN 회원국 및 공동체 기구를 위한 정책지원,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참여, 역량 강화 및 인식제고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845] AICHR의 최근(2018~2021) 주요

840) 주싱가포르대사관, 싱가포르 정세: '인권에 대한 아세안의 변화된 시각' 기고문, 2020.9.21.,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0/view.do?seq=132739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최종검색일: 2021.5.25.)

841) 주싱가포르대사관, 싱가포르 정세: '인권에 대한 아세안의 변화된 시각' 기고문, 2020.9.21.,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0/view.do?seq=132739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최종검색일: 2021.5.25.)

842) AICHR, 〈https://aichr.org/wp-content/uploads/2019/01/Guidelines_On_The_AICHRS_Relations_With__CSOs.pdf〉

843) AICHR, CSOs with Consultative Relationship with the AICHR, 〈https://aichr.org/csos-with-consultative-relationship-with-the-aichr/〉 (최종검색일: 2021.5.25.)

844) AICHR, 〈https://aichr.org/wp-content/uploads/2020/10/AICHR-FYWP-2021-2025-approved-at-53rd-AMM_for-web.pdf〉

845) ASEAN, 〈https://asean.org/31st-meeting-asean-intergovernmental-commission-human-rights-aichr/〉 (최종검색일: 2021.5.25.)

활동을 살펴보면, 고문 방지, 종교와 신념의 자유, 아동의 권리, 표현의 자유, 장애인의 권리, 양성평등 등 아세안인권선언의 구체적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846]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아세안은 지역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경제적 장기 회복 전략을 고려하여, '아세안 포괄적 회복프레임워크(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ACRF)'을 추진하고 있다. ACRF는 다섯 개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보건시스템 증진, 인간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인 협력과 통합을 확장하며 또한 포용적 디지털 전환과 함께 지속 가능한 복원력을 높이는 것이다.[847]

요컨대, AICHR은 그 기반이 되는 인권선언에 있어 역내 국가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인권의 상대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향후 아세안 역내 인권보호와 신장에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아세안 방식이라고 하는 상대주의에 기반한 인권의 개념과 원칙을 주장할 수 있었던 주요 근거는 인권의 개념이 타자 즉 서구의 기준이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아세안 인권선언은 아세안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원칙상 국제인권선언을 수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큰 틀에서의 역내 인권 논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권선언의 채택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상대적으로 민주화가 진전되고 인권 관련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한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개별 국가들 차원의 인권의식 향상과 제도적 개선과 병행하여 제약적이나마 지역적 차원에서의 인권논의는 회원국 간 인권상황의 격차를 좁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다수의 국제인권협약들이 이전에 선언형태에서 발전한 것을 고려할 때 아세안 인권선언 또한 최종 결과물이기보다 발전 과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848]

---

846) AICHR, 〈https://aichr.org/aichr-activities/〉 (최종검색일: 2021.5.25.)
847) ASEAN, 〈https://asean.org/storage/FINAL-ACRF_adopted_37th-ASEAN-Summit_18122020.pdf〉 (최종검색일: 2021.12.30.)
848) 프레시안, 2013.10.29., "아세안 인권선언 이후 1년: 아세안의 한계와 가능성",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111299#0DKW〉 (최종검색일: 2021.8.10.)

제 4 장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협력방안

동아시아 지역 인권침해 방지와 상호협력

김경찬·이준표

제4장

동아시아 지역 인권침해 방지와 상호협력

제1절 | 동아시아 지역 인권침해 방지과제

1. 사형제도 폐지 관련

가. 동북아 지역 국가

동북아시아 국가 즉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사형 집행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의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에 속하지만 이른바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라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일본 역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한국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8년 이래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지 않아 이른바 사형집행 정지국 또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몽골은 사형을 폐지한 국가이지만 국내적으로 사형제도 부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동북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국가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로 하나는 국내적으로 민주적인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여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국제적 또는 외교적인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한 최근 한국 정부가 2020년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찬성 표결을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방안으로는 각 국가 시민의 의견이 적절히 또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정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를 포함한 개개인들이 선거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의 의견반영 경로를 통하여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흉악범이나 중대범죄인의 출현이 사형제도 존치의 국민적 의사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러한 흉악범이나 중대범죄인을 사후적으로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나 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극형을 사용한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흉악범이나 중대범죄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막을 수 있도록 사회제도와 사회시스템 마련에 힘을 쏟을 수 있는 민주적인 정부가 구성되도록 하는 것이 순서일 수 있다. 국가에 의한 제도적인 생명박탈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부드럽고 안전하며 인권친화적인 정책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국민 역시 국가의 생명존중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며 극단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어느 한 국가의 민주적 정부의 구성은 국내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지만 또한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국제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시민단체와 개개인 역시 인근 국가의 민주적 정부구성과 민주선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여 상호협력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나. 동남아 지역 국가

사형 폐지라는 세계적 추세에 비하여 동남아 지역 내에서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동남아 국가들이 처한 다양한 정치·사회적 상황들을 고려할 때,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아세안 차원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또한 아세안이 사형폐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아세안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내정불간섭의 원칙 및 일부 아세안 회원국들이 사형제도를 인권이 아닌 국가 주권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지역적 차원에서의 사형제도에 대한 협력이 용이하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무엇보다 각 회원국의 인식 전환 및 인권에 기초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인권 관련 시민단체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849]

한국의 경우 사형폐지 운동에 있어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여러 종교, 인권,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사형폐지 운동을 이끌어 온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2020년 10월 10일 세계사형폐지운동연합(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회원 단체들과 함께하는 18번째 세계사형폐지의날(18th 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을 기념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연석회의는 18회 세계사형폐지의날을 맞아 첫 번째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21대 국회에, 세 번째로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전 세계적 흐름인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을 선포할 수 있는 정부에, 그리고 국민들께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진정한 인권 국가로 나아가자는 호소를 공동성명에 담았다.[850]

이처럼 장기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지역적 차원의 사형제도 폐지의 논의가 현실화되고 관련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인권기구나 여러 시민단체의 노력과 협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나 기타 시민단체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인권기구나 시민단체들과의 협력의 장을 만들어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된 논의를 발전시켜나가고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현실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형대체 형벌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점진적인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해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에도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사형의 대체 형벌과 관련해서는 가석방 없이 평생 복역하는 것으로 '절대적 종신형'이 있고 일정기간 복역 후에 가석방이 될 수도 있는 '상대적 종신형'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대체형벌 유형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연구 협력은 국가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

849) Adehlia Ebert, The death penalty in ASEAN: Could people be stronger than politics?, AAS YP, 2019.8.9., 〈https://aasyp.org/2019/08/09/the-death-penalty-in-asean-could-people-be-stronger-than-politics/〉 (최종검색일: 2021.5.27.)

850) 로이슈, 2020.10.10.,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18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공동성명 발표",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010101006433039 9a8c8bf58f_12〉 (최종검색일: 2021.6.14.)

다. 소결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한국은 사형집행정지,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 사형집행정지 이후의 상황과 사형수 관련 정보 및 범죄통계 등을 동아시아 각국과 서로 공유하며 논의를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국가들에게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시아의 몽골, 홍콩, 마카오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필리핀, 브루나이와 같은 국가를 위주로 국가나 지역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 역시 동아시아 사형제도 폐지논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공동논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양자 또는 다자적인 긴밀한 형사사법공조 추진과 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마약범죄 대응 관련

가. 동북아 지역 국가

마약범죄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의 마약범죄 대응관련 기관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물론 세계 각국과의 일정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협력체계를 가능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 협력방식으로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접근과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마약범죄 대응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는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 CND)와 그 산하 아·태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Asia and the Pacific, HONLAP),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INCB) 등과 협력하고 있다.[851] 한국이 마약관련 맺고 있는 국제협약으로는 1964년에 비준한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과 '1972년 개정의정서', 1978년에 가입한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 1998년 가입한 1988년

851) 2019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20, 322-327면.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이 있다.[852]

국제협력 회의로는 1989년에 창설한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nti-Dru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DLOMICO)로 2019년 제29차 회의에서 국제마약조직에 의한 마약류 밀수증가와 GHB[853] 등을 이용한 성범죄 등 관련 내용을 논의하였고,[854] 미국 연방마약단속청(DEA)이 1983년에 창설한 국제마약회의(International Drug Enforcement Conference, IDEC) 2019년 제36차에서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지로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확산되는 펜타닐 밀매내용이 공유되기도 하였으며,[855] 아·태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Asia and the Pacific, HONLAP) 2019년 제43차에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다양한 전단계 원료물질을 활용한 제조가 증가하고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상의 마약공급 차단관련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였다.[856]

아시아태평양 마약정보조정센터(Asia-Pacific Information & Coordination Center for combating drug crimes, APICC)[857]는 ADLOMICO와 아세안 마약퇴치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2년 창설된 것이다. 이는 마약범죄에 대한 정보공유와 마약퇴치 국제협력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858] APICC 사무국은 2012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3개국의 메콩강 국경연락사무소(Border Liaison Office, BLO) 마약통제 역량강화 프로젝트로 수사단속 장비를 지원하고 관련정보 교환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859] 2013년 필리핀 민다나오(Mindanao) 지역 6개 지부[860]·2014년 비사얀 제도(Visayan Group) 4개 지부[861]·2015년 루손(Luzon) 지역 7개 지부에 수사관련 장비 지원과

852) 2019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20, 327-329면.
853) gamma hydroxy butyrate, 이른바 물뽕
854) 2019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20, 330면.
855) 2019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20, 335면.
856) 2019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20, 336면.
857) APICC, Asia-Pacific Information & Coordination Center for combating drug crimes, 〈https://www.apicc.info:442/apicc/membership/login.jsp?referer=%2Fapicc%2F〉 (최종검색일:2021.6.1.)
858) 2019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20, 337면.
859) 2019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20, 345면.
860) 2019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20, 346면.

함께 최신 수사기법 전수와 정보교환을 위한 워크숍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2016년에는 필리핀 마약청(PDEA) 마약통제 역량 강화와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공동대응방안과 핫라인 강화가 논의되기도 하였다.[862]

베트남과는 2015년 베트남 마약통제 역량강화지원으로 베트남 공안부 마약통제국(Standing Office on Drugs and Crime, SODC)에 장비지원이 있었고 캄보디아와는 2016년 캄보디아 마약청(NACD) 마약통제 역량강화지원으로 역시 장비지원과 수사 노하우 전수가 있었으며 한국 국적 도피 마약사범 검거와 국내송환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863] 역시 같은 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4개국의 마약 관련 담당자를 초청하여 한국의 선진적인 마약통제 시스템과 기관방문 연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864]

라오스와는 2017년 마약통제위원회(LCDC)와 마약통제 역량강화 지원으로 라오스 국립대학과 팍파삭 직업전문학교와 함께 마약퇴치 캠패인 개최와 수사 장비지원이 있었고 같은 해 말레이시아 왕립경찰청(RMP)과 마약폐해 홍보캠패인을 함께 개최하기도 하였다.[865] 베트남의 경우도 황금 삼각지대와 메콩강 주변국으로부터 마약통제가 어려움으로 2018년 마약통제국(SODC) 마약퇴치 지원으로 장비지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퇴치 캠패인을 개최하였고 태국과는 2019년 태국 마약청(ONCB) 마약퇴치 지원 사업으로 수사장비 지원과 함께 한국으로 마약류를 공급하는 태국인과 한국인 도피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공조가 있었다.[866]

동남아시아 지역 각 국가와의 마약통제 역량가화 지원으로 마약수사관련 장비지원과 마약퇴치나 마약폐해 홍보캠패인을 실시, 마약통제 정보시스템 구축, 해당 국가와의 핫라인 강화, 수사기법 및 노하우 전수, 마약관련 정보교류, 마약 도피사범 검거협력, 한국의 선진적 마약범죄 대응시스템 소개와 관련 기관 연수 등은 매우 고무적이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남아 지역 각 국가 마약범죄 대응기관의 마약범죄 대응과 관련하여 역량을

861) 2019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20, 347면.
862) 2019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20, 348면.
863) 2019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20, 350면.
864) 2019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20, 351면.
865) 2019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20, 352면.
866) 2019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20, 354면.

강화와 관련하여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마약범죄가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조직적이며 근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지의 마약 중독자의 치료프로그램이나 재활과 관련한 어떠한 지원과 조치가 있는지, 현지 관련기관과 협동으로 시민사회 단체나 현지 마약관련 범죄인 또는 현지주민들로부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하며 마약범죄 예방교육과 함께 치료프로그램을 현지 담당기관 및 관련 기관과 복합적으로 논의하고 구상하는 것도 일정부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동남아 지역 국가

아세안 차원에서의 마약 관련 협의체에는 2015년 출범한 아세안 마약관련 장관회의(ASEAN Ministerial Meeting on Drug Matters: AMMD)가 있다.

[그림 4-1-1] 아세안 주요 회의체[867]



867) 출처: 주 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홈페이지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약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메타암페타민, 헤로인, 대마초 등을 대규모로 압수해 왔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며 수천만 달러 규모의 마약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8년 10월, 베트남에서 제6차 AMMD 회의에서는 2017년 이후 급증하는 마약압수물 및 신종 향정신성물질의 등장에 따른 도전, 인터넷과 택배를 활용한 마약유통에 주목하면서, 아세안워크플랜 2016-2025, 아세안 협력계획 2017-2019에 따른 추진사업을 점검하였다. 이 때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마약범죄에 대한 무관용원칙, 아세안의 마약청정화 재확인, 마약합법화 등 일부 마약 정책 추진을 반대하고, 관련 국가들과의 협의 및 비공식회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 및 모델(the Guiding Criteria and Modalities in Engaging External Parties for the AMMD and Its Subsidiary Mechanism)을 채택하였다.[868]

[표 4-1-1] AMMD에서 채택한 문서

◆ **Declarations and Statements**
- Statement by ASEAN at the 62nd CND High-Level Segment, Vienna, Austria, 15 March 2019
- Statement by ASEAN at the 5th Intersessional CND Meeting of the 61st CND, Vienna, Austria, 7-9 November 2018
- ASEAN Position Statement, Singapore, 20 October 2015
- ASEAN Leaders' Declaration on Drug-Free ASEAN 2015, Phnom Penh, Cambodia, 4 April 2012
- Beijing Declaration, Beijing, People's Republic of China, 18-20 October 2005
- Siem Reap Declaration, Siem Reap, Cambodia, 19 May 2005
- Bangkok Political Declaration in Pursuit of a Drug-Free ASEAN 2015, Bangkok, Thailand, 11-13 October 2000
- Joint Declaration for a Drug-Free ASEAN, Manila, Philippines, 25 July 1998
- Chairman's Statement by the 18th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the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 of Narcotic Drugs, Kuala Lumpur, Malaysia, 13 July 1985
- ASEAN Foreign Ministers Joint Statement on the International Problem of Drug Abuse, Kuala Lumpur, Malaysia, 9 July 1985
- ASEAN Declaration of Principles to Combat the Abuse of Narcotics Drugs, Manila, Philippines, 26 June 1976

◆ **Work Plans**
- The ASEAN Work Plan on Securing Communities Against Illicit Drugs 2016-2025, Singapore, 20 October 2016
- The ASEAN Work Plan on Combating Illicit Drug Production, Trafficking and Use 2009-2015, Phnom Penh, Cambodia, 29-30 September 2009

868) 주 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아세안 주요회의체, 〈https://overseas.mofa.go.kr/asean-ko/brd/m_21541/view.do?seq=7&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page=2〉(최종검색일: 2021.6.14.)

아세안 각국 장관들은 마약문제에 대한 고위관계자회의(ASOD Working Groups), 아세안공항차단태스크포스(ASEAN Airport Interdiction Task Force (AAITF)), 아세안 항구차단태스크포스(ASEAN Seaport Interdiction Task Force (ASITF)), 아세안마약협력센터(ASEAN Narcotics Cooperation Center (ASEAN-NARCO)), 아세안 마약감시 네트워크 같은 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고위관계자회의에서는 매년 아세안 회원국의 마약전문가들이 모여 예방교육, 치료 및 재활, 사법, 연구, 대안개발 등 5대 실무그룹의 활동을 검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2010년 창설된 아세안 공항차단 태스크포스는 국제공항을 통한 마약밀수 증가에 대응하여 마약 관련 아세안 사법기관 사이의 합동작전과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2016년 창설된 아세안 항구차단 태스크포스는 국제항구 및 수로체크포인트에서 비슷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2014년 마약단속기관간 협력플랫폼으로 출범된 아세안 마약협력센터는 아세안 국가의 마약단속 활동에 대한 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마약 감시네트워크는 2015년 시작되어 아세안 각국의 마약통제 포인트 업무를 조율하고 있다.

특히, 골든 트라이앵글 인접 국가들인 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은 중국과 함께 마약단속을 위한 공동노력 협정에 2019년 서명하였다. 6개국 장관급 인사들은 마약 단속을 위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협정을 통해 태국·라오스·미얀마 국경이 만나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등지에서 마약 생산 및 유통을 예방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869]

한편, 2000년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을 포함한 36개국 및 1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870] "2015년 마약 없는 아세안 건설"이라는 기치로 열린 제1회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의 산물로 중국-아세안 마약퇴치 협력체제(ASEAN and China Cooperative Operations in Dangerous Drug)가 설립되고 모든 참가자들

869) 매일경제, 2019.11.18. , "메콩강 인접 6개국, 마약 생산·밀거래 합동 단속 강화",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11/955319/〉 (최종검색일: 2021.6.14.)

870) 이 회의에는 태국 정부 및 유엔마약통제 및 범죄예방위원회(ODCCP)와 아세안이 공동 주최하였는데, 아세안 회원국 이외에도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중국, 인도, 뉴질랜드, 호주와 유럽연합(EU) 등 36개 국가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엔공업발전기구, 세계보건기구(WHO) 등 16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대표 378명이 참석하였다. 이금규, "중국의 마약퇴치를 위한 국제공조체제 연구",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7집, 법무연수원, 2012, 509면.

에 의해 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중국과 아세안은 ① 마약퇴치를 위한 협력체제 및 협력상황을 평가,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② 사회의 금독의식을 한층 강화하며, ③ 마약수요를 억제하고, ④ 마약관련 법집행사무를 더욱 강화하고, 마약생산을 근절하는 등 4개 영역에 관한 구체적인 합작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매년 연차회의에서 전년도 각각의 마약통제 영역에서의 성과를 돌이켜보고 소개하며, 다음 해의 협력계획을 제정하기로 하였다.[871] 이후 중국과 아세안은 정보교환, 합동 단속, 법집행 교육 등 마약범죄 관련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2018년 5월초 태국에서 열린 회의에서 UN 관계자와 ASEAN 10개 회원국이 국경 안보와 정보 공유를 개선하여 조직범죄를 소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의 파트너십은 베트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베트남이 라오스와의 국경에 배치한 경찰은 최근 미화 200만 달러 이상의 헤로인 등 각종 마약을 소지한 밀수범을 체포했다. 하노이 소재 VN 익스프레스 신문을 통해 2018년 3월 28일 보도된 이 사건은 3월에 적발된 마약 밀수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UNODC는 하노이에 본부를, 베트남 국경에 국경연락사무소 10개를 두고 국가간 범죄 소탕을 위해 사법 집행관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872]

그 밖에 동남아지역 내 각국의 마약 관련 기구 및 국제적인 연대가 형성된 기구는 다음과 같다. 남북아메리카 마약남용 통제위원회(CICAD: Inter- American Drug Abuse Control Commission), 위험마약군에 대한 아세안·중국 협력계획(ACCORD Plan of Action: ASEAN Plan on Drug Cooperative Operations in response to Dangerous Drugs), 미얀마 마약남용 통제중앙위원회(CCDAC: Central Committee for Drug Abuse Control), 태국 마약 통제위원회(ONCB: Office of Narcotics Control Board), 캄보디아 국립마약위원회(NACD: National Authority for Combating Drugs) 등이 그것이다.[873]

---

871) 이금규, 위의 논문, 509-510면.

872) Indo-Pacific Defense Forum, "ASEAN 회원국, 국경간 범죄 소탕을 위해 유엔과 협력", 2018. 6.8., 〈https://ipdefenseforum.com/ko/2018/06/asean-%ED%9A%8C%EC%9B%90%EA%B55%AD-%EA%B5%AD%EA%B2%BD%EA%B0%84-%EB%B2%94%EC%A3%84-%EC%86%8C%ED%83%95%EC%9D%84-%EC%9C%84%ED%95%B4-%EC%9C%A0%EC%97%94%EA%B3%BC-%ED%98%91%EB%A0%A5/〉(최종검색일: 2021.7.24.)

873) 한용섭·이신화·박균열·조홍제, 『마약·조직범죄·해적 등 동남아의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지역적 협력방안』, KIEP, 2010, 111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약퇴치를 위하여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대검찰청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는 회원국 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보공유·대응, 국제 마약퇴치 지원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간 국제협력체로서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과거 대검찰청이 주관하여 개최한 마약퇴치국제회의(ADLOMICO)와 아세안 마약퇴치 지원사업(ASEAN Project) 등 국제협력 분야를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2012년 출범한 APICC는 사무국 파견근무, APICC 웹사이트(www.apicc.info) 개설·운영, 실무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공조수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APICC 회원국 마약퇴치 지원사업으로 메콩강 국경연락사무소(BLO) 마약통제 역량강화 프로젝트, 필리핀 민다나오지역 마약청(PDEA) 6개 지부 지원사업, 필리핀 비사얀 제도 마약청(PDEA) 4개 지부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였다.[874]

2019년 11월 28일 우리나라 법무부는 최초의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향후 불법마약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에 대한 상호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875] 이번 회의는 마약, 사이버 범죄, 자금 세탁과 같은 초국가범죄 대응에 관한 한국과 아세안의 상호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는 '신남방정책'의 핵심가치인 사람(People)·평화(Peace)·번영(Prosperity)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초국가범죄 대응에 관한 한-아세안(ASEAN) 상호협력의 수준을 격상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그간 중국과 일본은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아세안(ASEAN)과 장관급 교류를 통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협력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인적·물적 교류 증가에 따라 함께 급증하고 있는 테러·마약·인신매매·자금세탁 등 초국가범죄의 긴밀한 대응을 위해 인적네트워크를 매우 중시하는 아세안(ASEAN) 지역에서 한국과 ASEAN 간 초국가범죄 및 조직적 사기 등 중요형사사건 공조수사, 범죄인인도 및 범죄수익환수 등 처리에 관한 상호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876]

---

874) 대검찰청, 2014 마약류 범죄백서, 2015.

875) 머니투데이, 2019.11.28., "'테러·마약·자금세탁' 초국가범죄, 한-아세안 공조 강화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12816368241503〉 (최종검색일: 2021.6.14.)

876) 법무부 보도자료,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단계 격상: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담(AMMTC) 최초 개최, 2019.11.28.

3. 재외국민 범죄피해 등 관련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도난·분실, 테러·납치 등 사건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등 해외질병과 관련된 피해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877] 특히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동남아 지역으로의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국가차서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무엇보다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신남방정책은 이른바 3P(People, Prosperity, Peace)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사람(People)과 관련하여,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과 쌍방향 문화교류 및 인적 역량을 강화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친구이자 동반자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신남방 지역 국민의 방한 관광객 확대, 신남방 지역과 소통하는 한국 문화를 위해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신남방 지역 학생, 교원, 공무원 대상 인적 자원 역량 강화, 한-신남방 국가 상호 간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증진 등을 추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는 아세안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와도 일맥상통한다.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ASCC)의 2025 청사진은 6대 영역으로 사람 중심성, 포용적 공동체, 지속가능성, 복원성, 역동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포용적 공동체(inclusive community)'는 아세안 사람들에게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는 사회, 여성·아동·청년·장년·노인·장애인·이민자·소수인종·취약계층 등의 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되는 사회를 의미하며, 사회안전망, 여성역량, 젠더평등, 인권보호와 증진, 기회균등, 빈곤퇴치, 보건, 질 좋은 노동, 교육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아세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러한 이슈와 주제들이 다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과 아세안공동체 간 공통적인 강조점은 쌍방향 문화교류 및 체류 국민의 권익보호 증진에 있다.[87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사건·사고의 심각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재외국민 면담 및

877) 매일경제, 2021.5.25., "재외국민 범죄피해 4년새 곱절…보호관련 법안 개선 시급",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5/503515/〉 (최종검색일: 2021.5.27.)
878) 외교부, 2018년 외교부 정책용역과제 최종보고서, 2018, 8~10면.

주재국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879] 도난, 사기 등 재산상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신고를 하면 재외공관은 해당 재외국민이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해야 하며, 재외공관은 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이 요청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재국 관계기관에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880]

또한 재외공관은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납치, 감금 등의 강력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재외국민이 요청을 하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긴급하게 국내 이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권발급 및 항공편 안내 등의 행정적 협조를 제공해야 하며, 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체포·구금 사실을 통보 받거나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동 재외국민과 접촉하여 그 신원확인 및 혐의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해야 하고,[881]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연락두절로 인한 소재파악 요청을 접수한 경우 신고자가 국내 또는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소재불명 재외국민의 인적 사항, 연락처,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와 영사협력원 및 한인단체 등의 현지 연락망을 활용하여 재외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882]

우리나라 외교부는 해외에서 사건사고 및 각종 위험에 노출된 우리 국민에게 신속한 도움을 주기 위해 **2005년 4월 1일 영사콜센터를 설립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영사콜센터는 2004년 이라크에서 우리국민이 피살당한 이후 **'전(全) 외교관의 영사화, 전(全) 공관의 콜센터화'를 모토로 연중무휴 영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2005년 '해외여행안전정보 문자서비스(SMS)', 2007년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2015년 '6개 외국어 통역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고, 2015년 10월부터 '국가별 맞춤형 안전정보 문자서비스 발송'을 개시하는 등 서비스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883] 영사콜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는 첫째, 해외 대형재난 발생 시 가족 등의 안전 확인 접수 및 현지 안전정보 안내, 둘째, 해외 사건사고 접수 및 조력, 셋째, 신속해외송금 지원, 넷째, 해외 긴급 상황 시 통역서비스(영어, 중국어, 일본어,

879)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제11조.
88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제12조.
88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제15조.
88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제18조.
883) 국회입법조사처, 외교부 영사콜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0, 5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지원, 다섯째, 여권·영사확인 등 외교부 관련 민원상담 등이다.[884]

이러한 영사콜센터가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는 주요 창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외교부와 재외공관 사이에 업무 처리가 유기적면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 체계의 정비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영사콜센터가 여권부터 실종까지 광범위한 상담 업무를 담당할 뿐 아니라 까다롭고 예민한 정보도 다루어야 할 때가 많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의 유경험자나 현지 언어가 가능한 자뿐만 아니라 '지역전문가'를 우대하여 채용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상담관은 다국어 가능자(multilingual staff)이면서 전문성(professionalism)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담 관리관(Shift Leader) 자격에는 '지역 현안에 대한 충분한 지식(good geographical knowledge)' 여부를 포함시키고 있다.[885] 또한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의 홍보노력 및 접근의 편리성도 제고되어야 하며, 사건에 대한 상담과 사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 증강도 필요하다.[886]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영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현지 사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범죄 피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영사의 경우, 사건을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영사들의 역량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한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 적극성 및 결과에도 큰 차이가 있다. 현지 경찰과 한국 경찰의 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에서 범죄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는 현지 경찰에 대한 수사 요청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했던 영사가 있는 반면 한국 경찰의 조력 요청을 거부한 영사도 있다고 한다. 외교부 보도자료(2018년 9월 4일자)에 따르면, 2019년에는 사건·사고 영사를 20명 증원할 예정이며, 상대적으로 영사조력 수요가 많은 공관에 사고사건 담담 행정직원도 3명 증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영사콜센터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물적 기반을 보강할 계획으로써, 상담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외교부에서 직접 고용하여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884) 국회입법조사처, 위의 책, 1면

885) House of Commons Foreign Affairs and Committee, Support for British nationals abroad: The Consular Service: Fifth Report of Session 2014-5, November 4, 2014, p. 20; 국회입법조사처, 위의 책, 49면

886) 홍영오·박준희·추지현·박우,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8, 198면.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양적 증원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현지 사정을 잘 알 수 있도록 영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887]

나아가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영사 및 영사콜센터가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는 현지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한-아세안, 한-메콩 정상회의 등 지역적 차원 및 개별 국가별 대화 창구를 활용하여 재외국민 범죄피해 예방 및 처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 29일 제정되어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법률 제16221호, 2019. 1. 15. 제정, 2021.1.1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외안전정보의 제공,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유실물의 처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형사절차 등 사건·사고 유형별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영사조력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관련 법적 의무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실제적인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888]

한편, 한국인의 범죄, 특히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 인도네시아의 한국 봉제업체 사장 김모씨가 2018년 10월 직원 3,000여명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잠적하면서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우려를 표명하는 등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당국에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 또는 범죄인 인도 등 대응방안을 적극 공조하라고 지시했다.

88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위의 책, 287-288면

888) 법제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0.6.25.,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59538&lawCd=0&lawType=TYPE5&currentPage=2&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최종검색일: 2021.7.20.)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인도네시아 당국이나 현지 공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내사에 착수하고,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당국과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인도네시아 주재 고용노동관을 통해 임금 체불 규모와 피해사실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유사 사례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노무관리지원반을 파견해 임금체불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지 진출 한국 기업 간담회와 노무관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월 결성된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는 2019년 12월 동남아시아 진출기업의 노무관리와 인권경영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계부처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889]

4. 코로나-19 등 안전 관련

가. 동북아 지역 국가

동북아 지역은 정치적·경제적·안보적인 이해관계가 동북아 지역 이외의 다양한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일정한 통일된 방향이나 공통된 정책을 구현하기가 어려운 지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권보호와 인권협력과 관련한 논의도 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책임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북아 지역의 지역적 협력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공감에 보다 용이하게 이를 수 있다.

이에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가 현재의 코로나-19와 관련한 문제대응을 진행해나가면서 발생하는 동북아 지역의 지역적 협력과 관련한 경험과 교류는 향후 동북아 지역의 안전과 평화협력을 위한 기초적 토대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검토,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범죄 방지 등과 관련한 공동대응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함께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요청된다.

889) 한국일보, 2019.3.7., "문 대통령 "인도네시아 한국기업 임금체불 수사, 적극 공조하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071629736440〉(최종검색일: 2021.8.10.)

나. 동남아 지역 국가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로 확장되었다. 인간안보의 개념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1994년 발표한 〈인간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체계적으로 정립했다. 대다수 사람의 불안전한 감정은 전쟁과 같은 대재앙이나 세계적 사건보다 일상생활의 걱정에서 온다고 보고, 핵무기나 전쟁의 위협보다는 인간의 생활과 존엄성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즉 물리적 폭력과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를 인정하면서도 빈곤이나 기아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에 우선순위를 부여했고 경제 안보를 중시했다. 또한 국가를 잠재적인 안보 위협으로 가정하고 안보 주체에서 국가를 배제했으며, 새로운 국제체제나 기구 형성을 선호했다.[890]

코로나-19 팬데믹의 규모와 심각성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나 고립 조치로 인한 자유의 제한 등 특정한 권리의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중보건 위협 수준에 이르고 있다. 동시에 비차별과 같은 인권 그리고 투명성 및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같은 인권 원칙들을 신중하게 고려함으로써 위기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혼란 중에 효율적인 대응을 촉진하고, 상기 범주에서 벗어나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초래하는 피해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891]

코로나-19 위기와 이에 대한 국가의 대책에서 나타나는 기본권의 제한이나 유보, 특히 취약집단들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적 배제의 문제와 관련하여, 예외적 위기상황이든 정상적 상황이든지 간에 국가의 모든 대책은 인권 발전을 지향해야 하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대책일지라도 인권의 제한이나 유보가 아니라 적극적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인권이 제한될 경우에는 제한의 최소화, 법적 근거, 민주적 과정, 한시성(상황 종료 후 즉각적 복원) 등의 지침을 지켜야 한다고 하겠다.[892]

---

890) 조경환, "인간안보 국가 어젠다와 중견 국가 외교 정책의 창", 『열린정책』 7호, 정책기획위원회, 2020, 112-12. 〈http://pcpp.go.kr/images/webzine/20201020/s34.html〉 (최종검색일: 2021.5.27.)

891) Human Rights Watch,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서의 인권 문제, 2020.3.19., 〈https://www.hrw.org/ko/news/2020/03/19/339654〉 (최종검색일: 2021.8.10.)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인간안보 아젠다는 중견 국가로서의 외교 지평을 열어갈 기회의 창이다. 그래서 지금 미·중 패권에 낀 약한 국가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중소 또는 중견 국가들에게 선택과 행동 방책 결정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국가(indicator)'라는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 동북아 역내의 다자 협의체를 주도하고 글로벌 다자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 국제 규범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다자적 규범의 출현에 '시동(initiator)'을 걸고, 협력과 연대를 '촉진(facilitator)'하며, 협력의 장소와 플랫폼을 '제공(convener)'해야 한다. 특히, 'K-방역'의 전체 메커니즘을 시스템으로 정립하여 국제적으로 전파하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외교 레버리지이다.[893]

우리나라는 2020년 11월 12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지난 3년간 신남방정책 성과를 기반으로 신남방정책의 기존 협력 프로그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방안을 발표하였다.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신남방정책이 추진된 지 3년 경과된 시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국제환경 및 신남방 지역 국가들의 협력 수요를 반영한, 향후 5년간의 새로운 신남방정책 이행전략(New Implementation Strategy)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신남방 국가들과의 보건의료 협력을 최우선 협력의제로 설정하고, 기존 개발협력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프로그램에서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보건의료 협력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전면적으로 확대·개편하여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보건협력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894] 신남방지역 국가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기 극복 및 보건의료 체계의 대응능력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신남방 지역과의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등 변화된 정책적 수요를 새롭게 반영하여 신남방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이러한 변화된 환경과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895]

---

892) 최병두, "코로나-19 위기와 방역국가: 인권과 인간·생태안보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제30권 4호, 한국공간환경학회, 2020, 45면.

893) 조경환, 위의 글, 112-125, 〈http://pcpp.go.kr/images/webzine/20201020/s34.html〉 (최종검색일: 2021.5.27.)

894) 최원기,『신남방정책 플러스: 중점분야와 추진방향』,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11.25., 1면.

895) 최원기, 위의 글, 4면.

신남방 정책 플러스와 관련한 보건의료 협력에서 가장 커다란 특징으로는 일회적 방역물품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일회적이거나 임의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이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이며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아울러 신남방 국가들이 보건의료에 대한 역량을 증진을 돕고 이를 협력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련 사업들을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더욱 협력의 필요성과 더불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또한 비대면, 온라인, 디지털 경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쌍방형 교류와 비대면, 온라인, 디지털 전환에 대해 중점적인 협력 분야로 설정하고 이들 분야에서도 먼저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면서 다양한 관련 협력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다.[896]

아세안 등 신남방 지역 국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 인적·물적 이동제한에 따른 경제활동의 위축, 그리고 취약계층 증가 등 사회경제적 격차의 확대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은 최근 코로나-19가 야기한 단기적 차원의 보건안보 위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코로나로 야기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위기를 이겨내고 아세안 경제의 복원력을 회복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출구전략(exit strategy)으로서 아세안의 「포괄적 경제회복 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를 제시하고 그 구체적 이행방안(implementation plan)을 마련한 바 있다.[897]

아세안의 「포괄적 경제회복 프레임워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5가지 전략과 분야별로 중점적인 추진과제(Five Broad Strategies and Key Priorities)를 제시한 바 있다. 그것은 의료체제의 개선과 함께 인적자원 개발을 포함한 인간안보 강화,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 추진, 포용적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성 및 복원력 증진 등이 그것이다. 더 나아가 아세안은 「포괄적 경제회복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검토하고 관련하여 아세안의 개별 회원국(AMS: ASEAN Member States)과 이른바 아세안 공동체라는 관점과 차원에서의 접근과 노력 그리고 역외 파트너 국가들의 지원과 함께 이들과 적극적 상호협력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관련하여 현재 아세안의 변화되고 있는 정책적

896) 최원기, 위의 글, 1면.

897) Asean Secretariat,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and its Implementation Plan, 〈https://asean.org/asean-comprehensive-recovery-framework-implementation-plan/〉

수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중점적인 협력 사업들을 갱신하고 다시금 조정하기도 하였다. 신남방정책 플러스 관련 7대 중점적인 협력분야와 분야별 추진과제와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세안이 「포괄적 경제회복 프레임워크」에서 보여주고 있는 5대 전략과 관련 중점 추진사업과 과제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898]

신남방정책 플러스 7대 중점적 상호협력분야 중에서 첫째, 포괄적인 보건의료 협력 둘째,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 셋째, 농어촌을 발전시키고 스마트시티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 넷째, 4차산업과 관련하여 디지털화 추진과 협력하는 사업이 포함되며 이는 아세안의「포괄적 경제회복 프레임워크」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1월 12일 화상회의에서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아세안 국가의 정상들은 한국정부가 보이는 신남방정책 플러스에 대해서 찬성하고 이후 아세안의 「포괄적 경제회복 프레임워크」와 상호협력 그리고 상생을 희망함을 표하였다.[899]

인간안보의 문제는 단지 해당 문제의 해결책 모색(problem solving)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제한과 요인의 변화를 모색하는 작업을 요구한다. 이는 인간 안보가 단지 지역적인 문제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고 관련 대응 과정에서 지역적 협력이나 지역적인 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기제로써 인간안보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900]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효율적 대응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내외적으로 신뢰를 얻는 한국 정부는 이른바 K 방역을 통해 실질적인 국제협력에 참여하는 한편 새로운 협력 기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를 갖게 되었다. 신남방정책은 마스크 외교에 그치지 않고 아세안공동체의 진전을 위해 코로나-19로 야기되는 다양한 차원의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안보 개념에 입각한 협력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양한 안보요인에 대한 구조적 제약요건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으로 동아시아 차원의 협력을 견인함과 동시에 규범을 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과 등 기타 국가와의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국익 극대화 전략이 아닌 동아시아 차원의 협력 메커니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

898) 최원기, 위의 글, 4-5면.
899) 최원기, 앞의 글, 5면.
900) 구갑우, 2004: 497, 재인용, 김형종,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신남방정책: 아세안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30권 3호, 한국동남아학회, 2020, 42면.

제도 발전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901]

동남아시아 각국의 정치, 경제 상황의 편차가 매우 심한 상황에서 보편적 인권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란 쉽지 않지만, 코로나 19를 계기로 보건을 중심으로 한 인간안보적 측면에서의 접근과 협력 논의는 향후 보편적 인권협력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 및 정부기관 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장을 적극 활용하여 코로나 19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고 확장해가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 동아시아 지역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1. 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가. 동북아 지역

동북아 지역에서 1966년 12월 16일에 채택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은 1990년 4월 10일 한국이 가입하였고 북한, 일본도 가입하였으나 중국은 서명을 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일시에 채택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은 1990년 4월 10일에 역시 한국이 가입하였고 북한과 일본 및 중국도 가입하였으나 미국이 서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902]

북한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에는 가입하였으나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강제실종협약에는 가입하고 있지 않다. 한국은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반면 강제실종 협약에는 가입추진을 하고 있고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84년 12월 27일, 인종차별철폐협약은 1978년 12월 5일, 고문방지협약은 1995년 1월 9일, 아동권리협약은 1991년 11월

901) 김형종, 위의 논문, 49면.
902) 외교부, [인권일반] [기본규범]주요 국제인권협약 가입현황, 〈https://www.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26074〉 (최종검색일:2021.7.27.)

20일, 장애인권리협약은 2008년 12월 11일에 각각 가입한 바 있다.[903]

중국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을 가입하고 있지 않은 반면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에 각각 가입하였고 일본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제외한 강제실종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고 있다.[904]

이러한 UN 인권협약의 가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하고 적절한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은 또 다른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UN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를 심의하고 평가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권고안을 거부하는 경우[905]에는 역시 어려움이 있다. 수용안의 경우도 실제로 적절히 준수되고 반영되고 있는지 역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주변 인접국가의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나. 동남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은 1982년 9월 베트남, 1986년 10월 필리핀, 1992년 5월 캄보디아, 1996년 10월 태국, 2006년 2월 인도네시아가 각각 비준하였고,[906]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은 1974년 6월 필리핀, 1982년 9월 베트남, 1992년 5월 캄보디아, 1999년 9월 태국, 2006년 2월 인도네시아, 2017년 10월 미얀마가 각각 비준한 바 있다.[907]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경우 1981년 5월 필리핀, 1982년 2월 베트남, 1984년 9월 인도

903) 외교부, [인권일반] [기본규범]주요 국제인권협약 가입현황, 〈https://www.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26074〉 (최종검색일:2021.7.27.)

904) 외교부, [인권일반] [기본규범]주요 국제인권협약 가입현황, 〈https://www.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26074〉 (최종검색일:2021.7.27.)

905) 2019년 5월 9일 북한과 관련한 제3차 UPR에서 북한은 262개의 권고안 중 132개수용, 130개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Amnesty, 북한, 그리고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https://amnesty.or.kr/campaign/north-korea-3rd-upr/〉 (최종검색일:2021.7.29.)

906) UNTC, 4.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New York, 16 December 1966,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4&chapter=4&clang=_en〉 (최종검색일:2021.7.27.)

907) UNTC, 3.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New York, 16 December 1966,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3&chapter=4&clang=_en〉 (최종검색일:2021.7.27.)

네시아, 1985년 8월 태국, 1992년 10월 캄보디아, 1995년 10월, 1997년 7월 미얀마가 각각 비준하였고,[908] 아동권리협약의 경우 1990년 2월 베트남, 1990년 8월 필리핀, 1990년 9월 인도네시아, 1991년 7월 미얀마, 1992년 3월 태국, 1992년 10월 캄보디아, 1995년 2월 말레이시아, 1995년 10월 싱가포르가 각각 협약에 비준하였다.[909]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2013년 6월 캄보디아가 비준하였고 2010년 9월 인도네시아, 2012년 1월 태국이 서명한 바 있는데[910] 동남아시아 각국이 강제실종 방지협약에 참여도가 낮다고 하겠다.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도 UN의 인권보호관련 협약에 가입하거나 비준한 상태는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역시 가입하고 비준한 인권협약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권관련 협약을 실제로 수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 법제도와 관련 국내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기관을 포함하여 정부기관과 관련 부서가 적절히 마련되고 교육되며 운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인권보호와 관련한 국제적 지원의 경우에도 우선 현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부분과 취약한 점을 반영하여 가능한 지원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권기관과 정부 인권부서의 협력

동아시아 지역에서 독립된 국가인권기구, 법무부와 검찰 및 경찰 등 정부조직의 인권부서 설립과 활동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적인 인권체계 건립과 상호협력 필요성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

908) UNTC, 8.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New York, 18 December 1979,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8&chapter=4&clang=_en〉 (최종검색일:2021.7.29.)

909) UNTC, 11.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New York, 20 November 1989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11&chapter=4&clang=_en〉 (최종검색일:2021.7.29.)

910) UNTC, 16.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New York, 20 December 2006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16&chapter=4&clang=_en〉 (최종검색일:2021.7.29.)

가. 동북아 지역

한국은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관련하여, 1993년 6월 한국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요구를 시작으로 1994~1996년 아태지역 인권워크숍과 인권대회 등을 통하여 국가인권기구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었다. 이후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인권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대선공약이 발표되었고 1998년 선출된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국민인권위원회가 포함되어 이후 많은 갈등과 논의를 거쳐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어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출범하게 되었으며 한국은 현재 GANHRI A 등급[911]으로 평가된다.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으로 설립한 해당 국가 국민의 인권보호가 100% 충실히 이루어진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부와 구별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국제사회에서의 요구도 있지만 국내적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 갈등과 논의를 거치며 민주적 정부의 구성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독립적 인권기구인 국가 인권위원회는 GANHRI[912] A등급으로 평가되는 몽골의 경우 한국과 같은 해인 2001년 2월 설립되었으며[913] 중국과 일본에도 아직 설립되어 있지 않으며 아쉽게도 많은 국가에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914]

동북아시아 지역의 인권보호를 실현과 관련된 정부기관 관련 조직과 부서도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한국은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인권보호와 관련한 직책과 부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법무부는 인권국 하에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 등을 두고 법무부 내외의 인권정책과 인권협력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수행하

---

911)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https://ganhri.org/membership/〉 (최종검색일:2021.6.11.)

912)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https://ganhri.org/〉 (최종검색일:2021.6.11.)

913) 김은경 외 12인,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운영 현황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40면.

914) 김은경 외 12인,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운영 현황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1155면, 1187면.

고 있다.

한국 검찰은 대부분 주요 지검의 검사장 직속 하에 인권보호관을 두고 주로 검찰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감독과 예방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사건관계인을 상대로 한 전화조사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검찰 직접수사 개시사건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권보호관은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대검예규),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대검예규), 압수수색기본지침(대검지침), 인권중심수사관행개선방안(대검지시),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인권수사규칙(법무부령), 영상통화업무처리 지침(대검예규), 변호인등의 신문조사참여운영지침(대검예규), 수용자소환시 인권개선방안(대검지시), 인권중심수사관행개선방안(대검지시) 등 관련 법규정을 근거로 하여 점검하고 있다.[915]

검찰의 조직으로서 인권보호부는 검찰의 주요 8개 지검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시행하는데 첫째,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둘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 등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 셋째, 경찰의 불송치 기록 송부사건의 처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916] 또한 검찰은 인권보호관련 규정으로 2021년 6월 14일부로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하고 2021년 9월 1일부로 '직접수사 개시 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외부활동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학교에서 인권보호관련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또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의 검찰과 경찰의 인권부서의 교류나 상호협력을 통한 정보교류는 법무부 인권프로그램은 통한 참여와 협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917]

일본의 경우 법무성 인권옹호국을 두고 있으나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국제사회의 인정이 잘 이루어지 않고 있고[918] 검찰이나 경찰에서 인권보호 업무와 관련한

915) 이태일, 검찰의 인권보호 조직과 역할 및 협력방향, 자문서 1면, 자문회의 2021.9.9
916) 이태일, 검찰의 인권보호 조직과 역할 및 협력방향, 자문서 1면, 자문회의 2021.9.9
917) 이태일, 검찰의 인권보호 조직과 역할 및 협력방향, 자문서 2면, 자문회의 2021.9.9
918) 윤지영·김한균·승재현·강태경, 『법무부의 인권옹호기능강화방안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7, 4면.

별도의 부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도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부서나 조직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한국의 검찰과 경찰의 인권보호 관련 부서에 대한 업무와 관련규정에 대한 소개 및 인권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상호교류와 정보교류는 동아시아 각국의 지역 인권보호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동남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설립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경우 1986년 코리아손 아퀴노노(Persident Corazon Aquino)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 인권위원회를 기반으로 하여 1987년 헌법 공표로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가[919] 독립된 국가기구로 설립되었으며,[920] GANHRI A등급으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1993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권침해 상황을 규탄하였고 국제사회의 압력과 경제제재가 있었으며 이에 대응이 필요했던 당시 수하르토(Suharto) 정권은 대통령령 제50호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으며,[921] 현재 GANHRI A등급으로 평가된다.[922]

말레이시아의 경우 1993년부터 유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논의에 참여하여 1994년 탄 말레이시아 대표가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제안하였고 이후 1998~1999년 집권여당의 야당과 인권운동가 탄압을 거친 후 국제사회의 압력이 이어졌으며 독특하게도 1999년 7월 외교부장관이 시민사회나 인권 전문가의 논의 없이 국가인권기구의 설립법안 국회상정을 선포하게된 것이며,[923] 말레이시아 국가인권위원회도 현재

---

919) Republic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n Human Rights, 〈https://chr.gov.ph/〉 (최종검색일:2021.6.11.)

920) 김은경 외 12인,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운영 현황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724면.

921) 김은경 외 12인,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운영 현황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22면.

922)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https://ganhri.org/membership/〉 (최종검색일:2021.6.11.)

923) 김은경 외 12인,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운영 현황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693면.

GANHRI A등급으로 평가된다.[924]

태국의 경우 1997년의 태국헌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과 관련한 독립적 제도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정하였고 1999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됨으로써 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이후 2006년 쿠데타로 1997년 헌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존속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GANHRI B등급으로 평가된다.[925]

미얀마는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채택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전이 있었지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심각한 법적, 정치적 조정을 필요로 하였는데[926] 현재 GANHRI B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927]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군사적 불안함으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폐지가 거론되기도 하고 쿠데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기구와 시민사회단체 등 네트워크 구축이 다양하고 다차원적으로 구축되고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소결

세계국가인권기구 연합(GANHRI, Global Allia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아시아 퍼시픽 국가인권기구포럼(APF, Asia Pacific Forum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928]에서 동아시아 국가로는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6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중국, 일본, 베트남,

924)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https://ganhri.org/membership/〉 (최종검색일:2021.6.11.)
925)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https://ganhri.org/membership/〉 (최종검색일:2021.6.11.)
926) Niki Esse de Lang,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Myanma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the Wider Regional Geo-Political Context, James Gomez·Robin Ramchara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Southeast Asia, Palgrave macmillan, 2020, 83면.
927)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https://ganhri.org/membership/〉 (최종검색일:2021.6.11.)
928)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https://www.asiapacificforum.net/〉 (최종검색일:2021.05.14.)

라오스, 캄보디아, 싱가포르, 브루나이는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지역적으로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퍼시픽 국가인권기구포럼의 회원국인 필리핀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폐지의 경고가 있기도[929] 하였고 미얀마 역시 회원국이기는 하나 미얀마 사태를 볼 때 미얀마 국가인권기구 역시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인권교육이 동아시아 지역의 토양이고 깨어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이 동아시아 지역의 농부라면 -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독립된 인권기구 설립과 상호협력 활동, 정부 부서의 인권부서 설립과 상호협력 추진은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의 뼈대가 될 수 있다.

3. 형사사법공조와 상호협력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와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형사사법공조 조약은 1998년 11월 13일 중국과 체결, 1998년 11월 17일 홍콩과 체결, 1999년 5월 31일 몽골과 체결, 2006년 1월 20일 일본과 체결하였고 2002년 3월 30일 인도네시아와 체결, 2003년 6월 3일 필리핀과 체결, 2003년 8월 25일 태국과 체결, 2003년 9월 15일 베트남과 체결, 2010년 12월 10일 말레이시아와 체결, 2019년 10월 13일 마카오와 체결, 2019년 11월 25일 캄보디아와 체결된 바 있다.[930]

범죄인인도조약의 경우 1999년 5월 31일 몽골과 체결, 2000년 10월 18일 중국과 체결, 2006년 6월 26일 홍콩과 체결, 2002년 4월 8일 일본과 체결, 2019년 10월 23일 마카오와 체결이 된 바 있다. 또한 1993년 5월 25일 필리핀과 체결, 1999년 4월 26일 태국과 체결, 2000년 11월 28일 인도네시아와 체결, 2003년 9월 15일 베트남과 체결, 2009년 10월 22일 캄보디아와 체결, 2013년 1월 17일 말레이시아와 체결된 바 있다.[931]

---

929) SBS, 2017.7.26., "두테르테, 국가인권위에 폐지 경고…필리핀 인권실종 우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1560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최종검색일:2021.5.14.)

930) 법무연수원, 2020 범죄백서, 2021, 228면.

931) 법무연수원, 2020 범죄백서, 2021, 227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이나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 라오스,[932] 브루나이, 미얀마, 싱가포르 등 몇 개의 국가의 경우도 상호 공통인식의 확대를 통한 조속한 협력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검찰과 경찰이 동남아시아 각 국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교류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과 경찰의 인권부서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검찰과 경찰 교류에 참여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933] 형사사법공조나 범죄대응 국제협력에서 단지 장비나 물자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해당 국가에 인권규범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공유는 상호교류와 범죄대응 상호협력과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중국, 일본과 몽골은 각기 동아시아 지역에서 현재에도 각기 인근 국가와 개별적인 조약과 협력을 다수 추진해 온 만큼 더 나아가 아세안을 포함하여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 협력방안 논의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4. 시민단체의 참여와 역할

가. 동북아 지역 시민단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는 인권보호활동과 인권협력체제 마련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인권관련 시민단체로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NCC 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노동인권회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 다산인권센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동성애자인권연대, 고문조작사건진상규명피해자모임, 한국동성애자단**

93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11.24., "라오스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절반이 한국인",〈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6824〉 (최종검색일:2021.10.26.)

933)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협력방식에 따라 국가별로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겠지만 현재 제도적으로 진척된 것으로 본다면 동북아시아의 경우 몽골,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가 용이한 협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체협의회, 평화인권연대, 민간인학살관련대책위원회,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국가보안법폐지범국민연대회의,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과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천주교장기수가족후원회, (사)좋은벗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평화네트워크[934] **등등 다양한 단체가 있으며 그 외에도 광주인권평화재단, 5·18 기념재단** 등 다수가 활동하고 있다.

중국의 민간단체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일본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인권상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교류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국내적인 인권체제 개선을 통해 지역적인 인권협력체제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나. 동남아 지역 시민단체

한국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사회 단체[935]와의 소통과 교류를 일정부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새롭게 만들어지고

---

934) 조한범 외 9명, 『동북아 NGO 연구총서』, 통일연구원, 2005, 323~324면.

935) 1. 미얀마(버마): 버마 변호사 위원회, 대안적 아세안 네트워크-버마, 버마 인권교육연구소, 버마 민주주의를 위한 타이 실천위원회, Karen 인권그룹, Chin 인권기구, 평화의 길 재단, 버마 민주주의 소리, 버마 캠페인-영국, Karen 전국 동맹, 국경 없는 친구들, 전 버마학생민주전선, 버마 프로젝트, 국제 사면위원회, 버마 이슈, 국제위기그룹, 자유버마연맹, Derechos 인권
2. 캄보디아: 캄보디아 아동권 보호센터, Star Kampuchaea, 크메르 민주주의연구소, Khmer Kampuchea Krom 인권과 개발협회, 가정폭력 반대 프로젝트, Cambodian 인권과 개발협회, 캄보디아 인권 특별위원회, 캄보디아 인권연구소, 인권진작과 보호를 위한 캄보디아 연맹, 캄보디아 인권보호단, Kmer Kampuchea Krom 인권협회, 캄보디아 인권센터, 캄보디아 변호인 프로젝트, 캄보디아 법률원조, 캄보디아 자유/공정 선거위원회, 캄보디아 NGO 포럼, 캄보디아 자유/공정 선거를 위한 중립위원회, 캄보디아 평화협력연구소, 이슬람 소수 종족 인권과 개발협회, 젠더지향 자원과 정보 프로그램, Agir Pour Les Femmes En Situation Precaire, Angkor 개발기구, Angkor 참여개발기구, 인권과 종교개발협회, 불교와 민주주의, 캄보디아 국경지역개발기구, 캄보디아 인권개발기구, 캄보디아 반기아/폭력아동협회, 캄보디아 보건과 인권동맹, 캄보디아 여성위기센터, 사회개발센터, 여성의 미래등불, 인권과 인적자원개발연구소, 크메르 반부패인권기구, Silaka, 사회경제근대화 기구, 도시자원센터, 도시섹터그룹, 캄보디아 여성/아동 대상 폭력 반대협회, 캄보디아 인권행동위원회
3. 인도네시아: 민중위기센터, 주민역량강화연구소, 경제와 사회 연구/교육/정보 연구소, 정의를 위한 여성네트워크, 인권보호와 법 연구 발전을 위한 기구, Rifka Annisa 여성위기 센터, 평등과 성찰적 연구를 위한 연구소, 민주주의와 권리를 위한 청년지도그룹 등 60여개
4. 라오스: Nord Sud 행동, 캐나다 자원봉사기구, 기독세계봉사 모임 (CWS), 외부 지역사회원조, 세상에 대한 관심, 라오스 컨소시엄, 라오스 인권위원회 등 10개
5. 말레이시아: 정의로운 세계를 위한 국제운동, Suram 인권보호, 여성원조기구, 변화를 위한 여성센터-페낭, 말레이시아 평화를 위한 민중동맹, 지역사회 조직가와 함께하는 사람들, 아시아 개발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등 22개

활동하는 단체와도 서로 활동을 확인하고 교류를 만들어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포럼아시아(FORUM-ASIA)와 같은 아시아의 지역의 인권단체에 한국의 몇몇 시민사회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며 활동하고[936] 있는 것은 역시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거시적으로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을 위한 역할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우선적으로 동남아시아 각 국의 국내적인 인권체제 마련과 내실화를 위해 상호협력과 지원 및 정보교류가 필요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특히 인신매매, 외국인 노동이나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등 - 모니터링되는 현안과 사건들이 국가기관, 정부 관련부서, 형사사법기관, 법무부, 출입국관리기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공유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남아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범죄대응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국의 형사사법기관 및 출입국을 포함한 법무 관련기관이 한국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6. **필리핀:** 아시아 촌락지역 인적자원 개발, 실종에 반대하는 아시아연맹, 발라이 자활센터, 정치/공치 센터, 사회연구와 행동을 위한 연구소, 농촌지역 발전과 토지 개혁을 위한 조합,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민중교육, 대안적 법률서비스를 위한 센터, 민다나오 농어촌 발전연맹, 개발 NGO 네트워크 위원회 등 73개
7. **싱가포르:** 정책사고 센터, 무슬림 전문가 협회, 싱가포르 자연보존협회, AWARE, 싱가포르 노동위원회 2
8. **타일랜드:** 민중민주주의 캠페인, 아동권보호재단, 아동매춘/포르노그라피 매매근절운동, 공공정책연구소, 법률원조센터, 아시아 개발문화포럼, 인중행동을 위한 지역사회 조직화, 삶과 사회 속의 교육을 위한 재단, 민주의 친구들, 국경없는 친구들 등 43개
9. **베트남:** 젠더연구와 지역사회개발센터, 고산지역 인간생태학 연구센터, 산악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센터, 화해와 발전을 위한 기금, 건강과 교육지원기구, 소수종족을 위한 기구 등 13개 등 (Korea NGOs' Asian Center, 동남아시아의 민주주의인권평화관련 NGO 목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Contents)

936) 한국 참여연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등 아시아 인권보호 및 협력활동, 〈https://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745640〉 (검색일:2021.11.7.)

5. 기존 동아시아 지역 관련 협력 논의

가. 평화·인권·범죄대응 관련

(1) 제주포럼과 제주인권포럼

제주포럼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2001년 출범한 포럼으로 매년 5월 경 60여개의 세션으로 개최되며 2021년 온라인 개최까지 16차례정도 개최되었다.[937] 제주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 재단 등이 주최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며 외교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등이 후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미국, 영국, 중국 등 국가의 대학과 연구소, 외교부, 국방부 등에서 근무한 학자와 실무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회 정치, 외교, 군사, 안보 등과 관련한 각 분야 지도자들이 발표하거나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938]

2021년도 제주포럼은 청년의 날 현장 참관단을 모집하고 청년이 참석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939] 향후에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도 폭넓게 참여하고 발표하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인권영역 부분을 별도로 구성하여 동아시아 지역 현안들을 함께 나누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나누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참여하고 논의를 활성화할 것으로도 보이는데, **다수의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제주인권포럼도 최근 개최**되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940] 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제주인권포럼은 인권보호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수렴하여 지역인권체제와 인권보호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주대학교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구상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937)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http://jejuforum.or.kr/m12.php〉 (최종검색일:2021.7.20.)
938) Jeju Forum Events, 〈http://jejuforum.or.kr/m21_speakers.php?day=&year=2018&key_type=&key_word=&pg=2〉 (최종검색일: 2021.7.20.)
939) 청년의 밤, 〈https://www.youtube.com/watch?v=lOYn3cEqvto〉 (최종검색일: 2021.7.20.)
940) 2021 제주인권포럼, 2021.10.28.~2021.10.29., (사)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주최·주관, Jeju 제주특별자치도 후원

동아시아 지역 국가인권협력은 동아시아 지역 국가 간의 인권보호협력과 체제마련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 내의 내실 있는 인권보호활동과 인권체제마련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국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형사사법기관, 시민사회단체가 다차원적이며 복합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어려움과 부족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지 않을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보호는 쉽게 취약해질 수 있다.

한편, 제주지역은 한국의 광주를 포함하여 인권과 평화도시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제주와 광주지역이 내실 있는 인권정책과 인권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평화의 수도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인권정책형성을 위한 논의기반을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도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5·18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광주도시는 민주주의와 인권도시로서 주목을 받으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세계인권도시포럼은 2011년부터 개최하는 국제포럼으로서 2021년 11회에 이르렀다. 본 포럼에는 인권기구, 인권단체, 인권활동가, 인권행정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며 인권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국제인권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국내외 인권도시를 확산하며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941]

광주 세계도시인권포럼은 다양한 연사들을 초청하고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도시가 국내적으로도 전국적으로 각 도시의 초·중·고·대학생들이 인권도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방문하며[942]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참여하고 광주지역의 주요 인권관련 지역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941) 인권도시 광주, 〈http://www.whrcf.org/kr/whrcf.php〉 (검색일:2021.11.10.)
942) 허완중, 지역사회 인권협력과 인권교육 현황, 문제점 및 발전방향, 자문서, 2021.9.8. 1~4면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지역 대학교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관련 문제점을 공유하며 논의할 수 있는 인권교육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구상해 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사회 인권문제를 현장감 있게 논의하는 것은 인권교육의 내실화에 매우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인권협력을 보다 의미 있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은 **동북아 지역의 범죄예방과 동북아 지역범죄 공동대응 협력**을 위해 중국 연변대학교 법학원, 길림대학교 법학원, 요녕대학교 법학원, 흑룡강대학교 법학원 및 지역 중국 검찰원과 법원 그리고 한국의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연구원,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13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주최하면서 6회 정도 개최한 바 있다.[943]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은 동북아 지역의 형사사법의 이론과 실무협력을 목표로 하여 중국과 한국의 동북아 지역의 범죄예방과 공동범죄 대응을 목표로 추진되었는데 몽골, 러시아, 일본 등과의 협력이나 북한 관련 이슈도 향후 논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944] 중국이 정치적 이슈나 지역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권관련 사항이나 지역 시민사회 참여를 중심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나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평화를 중심 주제로 하여 관련 문제와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것을 가능할 수 있으며, 한국이 해방 후 현재까지 경험한 법제경험과 축적된 법철학적 교류[945]는 중국(형사)법철학과 함께 아시아법제 교류와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 시민참여를 포함한 인권관련 쟁점 이슈들과 일정한 범죄 즉 마약범죄, 인신매매, 강제실종 등과 관련한 범죄예방 및 공동협력은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동남아 지역 국가들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적 공동논의[946]와 공동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

943) 승재현·연성진·전현욱·이승진·나주원,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XIV)』,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8, 15~60면.

944) 승재현·연성진·전현욱·이승진·나주원,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XIV)』,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8, 61면.

945) 金日秀·李穎峰, 刑法秩序中愛的含意, 元照, 2021, p.251

946) 윤정숙·승재현·이승진·나주원·정세윤·강민정,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V)』,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9, 98면.

(4) 마약퇴치 관련 국제협력

한국 대검찰청은 마약퇴치 관련 국제협력으로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하고, 아태지역 약물단속회의(ADEC), 마약위원회 회의(충), 국제마약회의(IDEC), 아태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를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중 마약대책회의도 2014년 제1차, 2015년 제2차 회의를 가진 바 있다.[947] 또한 동남아시아의 경우 아세안 마약퇴치 지원사업과 공적개발원조(ODA)의 형태로 국제 마약퇴치 지원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948]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949] 마약퇴치를 위한 노력과 지원 및 국제협력은 마약퇴치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마약범죄는 각 해당 국가의 지역사회의 경제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주민의 참여와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수렴하며 관련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관련 담당 공무원이나 실무가도 참여하여 마약범죄와 마약범죄 대응 및 마약범죄 치료, 마약범죄 관련 처벌과 사형과 관련한 인권 내용을 함께 나누고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 (Asia Pacific Parliamentary Forum, APPF)

1993년도에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의회포럼으로 자유·평화·민주주의 번영 증진, 지속 가능한 개발과 건전한 환경정책 그리고 자유무역과 투자확대, 지역의 평화와 안보문제를 위한 비군사적 협력,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보전과 발전, 정부차원의 APEC[950] 등 경제협력을 의회단계에서 협력지원, 지역의 의회지도자들의 결속 강화

947) 2019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20, 6

948) 경찰청과 인천광역시 주최로 매년 개최되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2021년도는 10월 20~22일 개최)에서 소개되며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과 장비들이 동남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범죄 대응과 범죄예방사업에도 소개되거나 협력 지원에 활용될 수 있는데 한국의 기술과 장비가 현지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 인프라나 전산 설비 상황의 여건에 따라 활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지의 상황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이해와 소통이 필요할 수 있다.

949) 2019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20, 7

950)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https://www.apec.org/〉 (최종검색일:2021.7.26.)

등을 포함하여 지역의 동질성, 지역적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951]

회원국으로는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시아 5개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 8개국, 캐나다 칠레,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등 미주 8개국, 뉴질랜드, 호주, 마이크로네시아, 피지, 마샬공화국, 파푸아뉴기니 등 대양주 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1998년 제6차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한 바 있고 2021년 제29차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한다.[952]

동아시아 지역의 초국가적 범죄대응과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협력에서도 동아시아 각 국가의 의회지도자들의 문제에 대한 공동인식과 공동논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분과로 범죄대응, 범죄예방, 인권침해 방지, 인권피해 회복 등이 각각 세부 주제별로 필요한 법적 협력 사항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한국의 국회 내부 위원회 중에서 인권위원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서 인권위원회가 별도로 마련되고 의회에서 제정되는 법에 대해 인권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은 필요하다.

유럽지역에서도 유럽의회가 처음에는 각 국내 의회에서 지명된 의원으로 하다가 이후 회원국 국민의 직접보통선거로 유럽의회의원을 뽑은 것처럼[953]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에서 의회와 의원의 역할과 지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각 국가의 의회에서 인권위원회가 설립되는 경우 동아시아 지역 (가칭) 공동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고, 국내적인 인권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적인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초국가적 규범에 대한 논의나 체제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951)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 (APPF), 〈https://www.assembly.go.kr/views/cms/assm/ndiplomacy/mseap/appf.jsp〉 (최종검색일:2021.7.26.)

952)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 (APPF), 〈https://www.assembly.go.kr/views/cms/assm/ndiplomacy/mseap/appf.jsp〉 (최종검색일:2021.7.26.)

953) 김대순(金大淳), 『유럽共同體法』, 법문사, 1988, 7면.

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1) 아셈(ASEM) 회의

1994년 싱가포르가 Asia-Europe Meeting을 제안한 ASEM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중심적 주제로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연결 고리의 부재로 이를 이어주는 역할과 아시아와 유럽 두 지역 사이의 관계를 강화를 위하여 아세안과 EU 및 동북아 한중일 3국이 동의하여 아시아-유럽 정상회의가 1996년 방콕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18년 제12차 브뤼셀 정상회의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는 비공식적 협력체(Informality),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 다중심 협력(Dual focus on high-level and people-to-people), 동등한 파트너십(Equal partnership)을 특징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ASEM 사무국이 없다는 점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3대 협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954]에서 포괄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적 화해를 포함한 인권협력이나 인권협력이 정치, 경제와 동등한 차원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논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두만강 포럼 등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협력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2008년부터 개최하는 두만강포럼과[955] 한국, 1992년 유엔개발계획(UNDP)에 의해 제시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하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reat Tumen Initiative, GTI)은 동북아 지역 개발협력과 평화구축을 위한 것 지역적 협력으로 볼 수 있다.[956]

이러한 지역의 지역적 협력은 유럽의 경우 라인강 유역 3국의 협력과 같은 예에서 일정한 시사점을 찾아 볼 수도 있는데 역시 역사적 맥락과 관련국들의 역학관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을

954)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 (Asia Europe Meeting), 〈https://www.mofa.go.kr/www/wpge/m_3933/contents.do〉 (최종검색일:2021.7.8.)
955) 두만강 포럼 (Tumen River Forum), 〈https://www.chey.org/Kor/conferences/ConferencesContentsForumView.aspx?seq=80&board=16&subseq=18#none〉 (최종검색일:2021.7.27.)
956) 김남국 외 지음, 『유럽의 역사화해와 지역협력,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수립에 대한 함의』, 이학사, 2019, 77면.

것이다. 라인강 상류의 지역적 협력의 특징을 구분해 보면 1956년~1975년까지는 민간 중심의 초국경적 협력을 중심으로 하였고 1975년~1991년까지는 정부 사이의 협력을 통한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며 1989년 이후는 EU 차원에서 지역 사이의 협력 프로그램이 도입(Interregional Cooperation Programme, INTERREG)되어 진행된 것이다.

이러한 유럽지역의 지역적 협력이 동북아 지역의 상황과 관련하여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라인강 상류지역에서 중앙정부차원, 지방자치단체차원, 민간단체 차원, EU 차원 등 다층적 협력체계로 진행된 점[957]과 초국경 의회를 조직하였다는 점[958] 등은 특색으로 볼 수 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협력방식에서도 두만강 지역 관련 협력은 참고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외에도 접경지역의 협력방식은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적용과 시도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UN 협력기관 관련

UN (Uninted Nation)과 관련하여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에 UN을 협력하는 기구로서 UNPNI (Institutes of the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기구가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범죄예방과 범죄대응 및 형사사법과 관련한 업무지원과 상호협력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에 관한 지역적 협력을 일정부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UNPNI 기구로는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KICJ) 태국 TIJ (Thailand Institute of Justice), 중국 북경사범대학교 (Colleage for Criminal Law Science of Beijing Normal University, CCLS), 일본 유나페이 (United Nations Asia and Far East Institute for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UNAFEI)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호주 AIC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미국 NI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스웨덴 라울발렌베리 인권·인권법 연구소 (RAOUL Wallenberg

957) 김남국 외 지음, 『유럽의 역사 화해와 지역협력,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수립에 대한 함의』, 이학사, 2019, 69~72면.
958) 김남국 외 지음, 『유럽의 역사 화해와 지역협력,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수립에 대한 함의』, 이학사, 2019, 75면.

Institute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핀란드 HEUNI (European Institute for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ffiliated with the United Nations) 등의 기구도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의 상호협력 업무나 동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인권협력 업무를 일정부분 진행해 오고 있으므로, 개별 국가차원에서의 정치적·경제적·안보적·문화적 입장 차이와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적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유엔 협력기구와의 다양한 방식의 지원협력 확대를 구상해 볼 수 있다.

라. 인권기구 관련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국가인권기구는 모든 국가가 설립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동북아시아에서 몽골과 한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다. 한국은 다행히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정부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959] 아시아 지역에서 격년으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PF)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국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거나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있다[960]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의견이나 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국제적인 교류로 진행하고 있는 협력이외에도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는 국가나 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국가와도 다각도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국의 국내적인 인권보호 상황과 체계 및 인권침해 상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점검과

959) 최근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APF 국가인권기구연합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것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0.9.9.) 역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더 많은 역할과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다 더 독립적이고 분권적이며 개방적인 형태로 변모하며 국내적으로나 국제적, 아시아 지역적으로 취약한 상황과 조건에 있는 개인을 위해 보다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의 더 포용적이며 전략적인 협력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도 하다.

960) APF는 총 25개국으로 정회원국 16개국, 준회원국 9개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 정회원국: 대한민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팔레스타인, 몽골, 네팔, 뉴질랜드, 아프가니스탄, 카타르, 사모아, 동티모르, 스리랑카, 필리핀,
- 준회원국: 방글라데시, 이라크, 몰디브, 오만, 태국, 키르키즈스탄, 바레인, 카자흐스탄,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0.9.9.)

협력방식에 대해 지역적으로 단편적인 점검과 확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 및 훈련과 양성이 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은 경제대국이고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정부와는 다른 의견이나 관점에서 인권협력을 논의하기가 매우 취약하고 국가를 넘어선 지역적 인권협력을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다차원적인 협력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관점이나 견해를 제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인권담론과 인권논의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장을 열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미·중 인권논의와는 별도로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협력 논의는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지역평화와 안전의 관점에서 상호협력의 의제나 쟁점도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 국가 인권논의에서 중국의 견해와 입장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그 활동과 독립성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필리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가장 먼저 한 국가이기도 한데[961]-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각 국가별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활동과 경험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입장이나 견해도 해당 정부가 어떠한 정치적 입장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인권보호나 인권협력과 관련한 정책이나 법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 또는 지역적 인권협력과 인권정책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학술단체, 변호사 단체,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개개인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단체나 개개인은 국가 또는 정부기관과 함께 약자와 소수자 등 인권보호에 취약한 개인이나 집단 또는 단체에 관한 분산된 내용을 모으고 정리하며,[962] 혹은 국내적인 논의에

96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엮음,『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20년사』, 한울, 2014, 83면.

962) 마키노 에이지(牧野英二),『오키나와 지역 마이너리티의 복잡성과 과제 –동아시아 마이너리티

장애와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또한 지역적으로 상호공유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절차와 기반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권보호와 인권협력에 정부의 정책이나 입장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적어도 민주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어떠한 정부를 가지는가는 또한 어떠한 시민이며 어떠한 개인인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민주적이지 않은 국가의 경우는 주변국가나 인근국가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는데, 주변을 보살피고 지원과 협력에 소홀히 하는 경우 불행하고 불안한 역사가 반복되며 평화를 해치는 사건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 인권보호 협력을 위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기관으로서 법무부, 검찰, 경찰, 이민국이나 출입국부서,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이 해당 안건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학술단체, 시민단체, 변호사단체, 청소년 및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며 교육과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동아시아 인권·형사법무 교육·연수 프로그램

동아시아 지역은 역사인식의 상이함과 영토분쟁, 정치와 외교 및 안보의 이해관계와 복합적 역학관계 등은 평화롭고 협력적인 동아시아 지역 국가형성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증오와 불신 그리고 갈등과 대립의 과거 역사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불행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963]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공동의 역사인식 및 안정적인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유럽 지역의 역사에 대한 공동인식과 화해 및 교육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인식전환과 상호협력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고,[964] 유럽지역의 인권보호 또는 형사법무관련 기관과 단체가 동아시아

연구의 새로운 사유방식, 동아시아 마이너리티 사회와 타자표상』, 동아시아연구총서 제6권, 박문사, 2019, 107면.

963) 김남국 외 지음, 『유럽의 역사 화해와 지역협력,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수립에 대한 함의』, 이학사, 2019, 12면.

지역의 상호협력 논의에 참여하여 경험과 지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국가적으로나 지방 자치단체 또는 비정부기관이나 단체의 역할과 활동을 다양한 차원에서 상호협력과 연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제주 4·3 평화재단, 제주 4·3 연구소, 5·18기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업무지원단 등은 물론이고 국내외 다양한 인권보호 단체나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의 협력방안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965]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협력은 국가기관 차원의 상호협력,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상호협력, 지방정부차원의 상호협력, 인권보호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상호협력 등 다양한 차원의 상호협력이 복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각기 다른 차원에서 상호협력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다른 층위에서 상호협력에 부족한 점과 어려운 점을 보완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권보호 프로그램, 인권침해 방지 프로그램, (청소년·국가기관·일반인 등) 인권 교육프로그램, 인권피해 사례 발굴 프로그램, 인권피해 회복 프로그램, 인권피해 보상 프로그램, 형사사법 기관 협력프로그램, 출입국 관련 기관협력 프로그램, 동아시아 지역 국회입법 상호협력 프로그램 등 인권과 형사법무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과 연수 및 논의 프로그램이 구상될 필요가 있다.

이에는 정부 지도자와 형사법무 등 관련 업무인은 물론이고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입법가, 이론가, 실무가, 시민사회 단체 등이 인권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에서부터 주제별, 쟁점별 사례와 사안 및 문제점에 대해 폭넓게 참여하고 발표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참여의 주체와 범위는 각 국가별 또는 개인별 상황에 따르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상호연대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는 온라인 교육이나 메타버스[966] 등을 통한

964) 김남국 외 지음, 『유럽의 역사 화해와 지역협력,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수립에 대한 함의』, 이학사, 2019, 11면.

965) Forum Asia, 참여연대 등 국내외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협력사항을 세부분야별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으로 연결된 우리, 참여연대 제27차 정기총회 자료집, 2021.3.6. 63면.

966) 온라인과 메타버스의 활용이 교육의 보편성을 확대하고 증가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체계에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이들에 의해 조종되거나 감시될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논의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수 있지만 새로

교육자료 등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대면교육과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인권 네트워크 구성의 활성화도 요청되며, 개발지원 정책에서 인권협력 관련성을 높이는 것도 지속적인 상호신뢰와 상호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요청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상 또는 온라인상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각 관련기관이 상시로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가는 조정되거나 변동될 수 있고 참여도는 처음부터 기대에 못 미치거나 양호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각 국가와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가 가능한 영역과 부분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론분야만 참여하는 경우, 실무분야 중 검찰만 참여하는 경우, 연구분야 중 마약 또는 보건(방역)분야만 참여하는 경우 등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선호하는 영역에서부터 논의를 이어가고 넓혀 갈 필요가 있다.

1월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을 중심으로 2월에는 말레이시아, 미얀마, 한국을 중심으로 3월에는 필리핀, 베트남 한국을 중심으로 4월에는 브루나이, 싱가포르, 한국을 중심으로 5월에는 라오스, 캄보디아, 한국을 중심으로 6월에는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개별 사안별 쟁점을 재검토하고 협력방안을 구상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로 협력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제주지역이 평화도시와 인권도시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온라인 등을 통하여서도 관련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각 국가별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하고 참여가 필요하거나 가능한 국가기관, 법무부를 포함하여 정부 각 기관, 의회, 검찰이나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대학이나 연구기관, 참여가 가능한 시민사회단체 등이 세션별, 주제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국이 진행하고 있는 인권교육과 인권정책 및 인권관련 쟁점과 취약한 점을 상호공유 및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교육과 관련한 국제적 흐름과 동향 중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서도 각 정부는 정부 간 기구와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의 지원을 받으며 인권과 상호이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촉진해야 하는 것[967]으로 강조하고 있다.

운 기술에 대한 문제점과 취약점에 대해서도 동시에 검토되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 및 인권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가 점검하고 활동한 사항, 법무부와 검찰 및 경찰이 추진하고 있거나 개선하고 있는 사항, 그 외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이 추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항, 국회나 지방의회의 법률관련 점검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사항과 협력사항, 대학이나 연구단체의 체계나 조직 등 관련 문제점과 연구사항, 변호사 단체의 점검사항이나 문제의식,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사항과 요청사항 등이 주제별로 제시되고 종합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제는 연구 앞부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아시아 인권관련 주제는 매우 다양하여 본 연구에서 모두 다루는 것은 어려우며 향후 개별연구에서 주제별 내용별로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완성된 네트워크나 협의체를 처음부터 제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문제에 대한 공동논의와 공동인식 그리고 공동대응과 관련한 협력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으며 작은 부분에서의 진척된 협력은 보다 넓은 범위의 규범형성에 기여할 수 있고 이는 법률적·조직적인 협력체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관련 내용은 범위와 내용에서 논의와 조정이 가능하고 기존 활동 기관의 업무와 상호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968] 대략적으로 제시하여 본다면,

-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인권침해관련 역사적 사례의 공유와 발굴 및 현장 지역 탐방과 교육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태국, 미얀마, 중국, 일본, 한국은 광주, 제주, 거창, 산청·함양, 노근리, 여순 등 각 국가의 인권침해 지역과 장소/ 각 지방자치단체 협력)

-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인권침해관련 반성과 명예회복 프로그램과 인권교육
-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인권침해관련 명예회복과 치유/용서 프로그램
- **동아시아 지역 역사 공동교육과 교육연수 프로그램**

(동아시아 지역 역사 공동인식과 공유[969], 한국에서는 2012년부터 동아시아사가

967) 법무부,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적 동향,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중 인권교육 관련 부분, 제82항, 2011, 제9면.

968) 변종필, 동아시아 인권협력의 취약점 개선과 협력전략 및 방향, 자문서 4면, 2021.8.27.

969)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 국제 관계의 변동으로 읽는 동아시아 역사』, Humanist, 2012, 5~7면.

정식교과목으로 개설 사용됨[970], 동아시아 각 국의 참여 활성화와 각 국의 언어와 영어로 번역활용, 동아시아 지역 인권교재 개발 등)

-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인권침해 관련 긴급 현안과 쟁점
-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계획
-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인권관련 국회 (의회, 인권위원회), 지방의회의 역할과 협력 및 향후계획
-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인권관련 법무부, 법무연수원, 출입국관리청의 역할과 협력 및 향후계획
-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검찰의 역할과 상호협력 및 향후계획
- (검찰의 인권관련 지적사항 및 규정의 개선사항, 인권부서 정립과 활동 그 외 국가기관과의 협력사항 공유, 국제협력관련 실무상 어려운 점, 필요사항 공유 등)
-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경찰의 역할과 상호협력 및 향후계획
- (경찰의 인권관련 지적사항 및 규정의 개선사항, 인권부서 정립과 활동 그 외 국가기관과의 협력사항 공유, 국제협력관련 실무상 어려운 점, 필요사항 공유 등)
-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변호사 단체의 역할과 상호협력 및 향후계획
- 동아시아 지역 대학, 연구기관의 인권, 평화관련 연구공유와 논의

(각 주요 대학의 인권센터,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한국 외국어 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전북대학교 동남아 연구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 연구소, 전남대학교 아시아 문화연구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제주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 형사법·인권법 연구자 참여 등)

-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인권·평화 옴부즈퍼슨(Ombudsperson) 지정임명
  (희망자에 한함, 화평과 인간애 등 품성, 임기, 활동사항 보고, 정보교류 등)
- 동아시아 지역 유엔협력기구의 협력방안과 공동계획
  (KICJ, TIJ, CCLS, UNAFEI, AIC, NIC, RAUL Wallenberg, HEUNI 등)
-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과 상호협력[971] 및 향후계획

970)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2, 테마로 읽는 사람과 교류의 역사』, Humanist, 2012, 5면.

971) 지역 내 국가의 NGO와 국가기관의 협력 필요성과 관련하여 김동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 동아시아 지역 초국가적 범죄 현황과 대응협력 및 인권보호
  보이스피싱 범죄, 부패범죄, 인신매매, 성매매, 범죄인 인도, 수형자 이송 등
- 동아시아 지역 노동/환경 관련 범죄 현황과 대응협력 및 인권보호
  (미등록 외국인, 난민, 외국인 노동자, 플라스틱, 미세먼지, 황사, 방사능 오염수 등)
- 동아시아 지역 법제 공동연구와 대응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성 인권규범, 국회 인권위원회의 공동 인권규범, 범죄수익 몰수와 환수, 법무부 법무협력, 검찰 형사사법공조, 경찰 형사사법공조 등)
- **동아시아 지역 인권교육원 검토**[972]
  (협력 가능한 단체 참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동아시아 지역 인권교육, 연수, 프로그램 관련 계획과 구상 및 실천, 인권과 평화관련 다양한 주체 참여, 제주·광주 지역 등 평화인권 도시에 설립/분원 등 검토)
- 동아시아 지역 인권법원[973]

동아시아 지역 인권법원과 관련하여 지역 인권체제가 충분히 논의되고 협력이 진척되어 완숙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과 실천이 필요할 수 있다.

미래세대의 참여와 미래세대를 위한 인권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인권의 역사적 과제이기도 하다. 적절한 인권교육과 인권의식을 갖춘 미래세대는 인권이 단지 어떠한 분과에서 주장하거나 견제 또는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떠한 이념이나 이익에 편중되지 않으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균형감 있게 살펴보고 어떠한 국가나 사회집단의 정책을 넘어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나가기 위해 열린 자세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 현황과 과제, 세계화와 인권발전』, 오름, 2004, 48면.

972) 동아시아 인권교육은 처음부터 모든 분야의 쟁점을 다룰 수는 없겠지만 동아시아 인권교육과 동아시아 인권침해 방지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십시일반 역할을 분담하며 필요한 내용을 상호소통하며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한국의 인권관련 국가기관, 정부의 인권관련 부서, 인권관련 시민사회 단체, 초·중·고·대학을 포함한 학술단체와 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외국의 국가 및 정부 관련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문제에 대한 공동인식과 공동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973) 이혜영, 『아시아·태평양인권법원 설립 전망과 과제 –지역별 인권법원 설립 경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8, 3면 참조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과제는 현재성 과제이기도 하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과제이며 토양을 개선하고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974] 더욱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974) 유년시절부터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적절히 받으며 건강한 공동체내에서 삶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독재자와 폭군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 인권보호를 위한 향후 과제

김 경 찬

제5장

동아시아 지역 인권보호를 위한 향후 과제

제1절 | 동아시아 인권선언

1. 어려움과 아쉬움

세계인권선언이 오랜 시간 많은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세계 몇몇 국가들은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논의를 계속하여 이어가고 있듯이 동아시아 인권선언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역사와 상황, 여건과 어려움을 어떻게 담아내며 동아시아의 인권신장을 위한 어떠한 형식으로 협력을 추진할 것인지 상호논의가 필요하다.

혹자는 동아시아 인권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관점을 제시하기도 하며 세계인권선언과 특별한 차별화된 내용의 필요성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가에 의구심을 표하기도 한다. 과거 1997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정부 단체 차원의 인권선언이나 아시아 인민헌장 등이 만들어지기도 하였고[975] 1998년에는 아시아의 1백 50여개의 시민단체와 민간단체가 4년간에 걸쳐 마련한[976] 아시아 인권헌장이 광주에서 선포되기도 하였다.[977] 아시아 인권선언과 인권헌장에서는 아시아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에 대한 책무 그리고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것임을 확인하면서 인권이 흥정의 대상이 될

975) 국가인권위원회, AFP, 국제인권 및 국제인권제도 -국가인권기구 매뉴얼, 2013, 160면
976) 인권운동 사랑방, 1998.4.15., "'아시아 인권헌장' 5월 광주서 선포", 〈https://www.sarangbang.or.kr/hrdailynews/61107〉 (최종검색일: 2021.9.13.)
977) [부록 3] 1998년 아시아 인권헌장 참조

수 없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978]

1990년 후반 당시 이러한 아시아의 인권선언이나 인민헌장, 아시아 인권헌장은 비정부 단체, 시민사회 단체, 민간단체 등이 선도적으로 뜻을 모으고 선도적으로 제시한 것은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지만 정부나 국가차원의 기관이나 부서의 -물론 국가인권독립기구들이 당시에 없는 국가가 상당수 있었지만[979]- 참여하고 연대가 부족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2001년 활동하기 시작한 아시아 지역 국회의원 협회는 아시아국회의원평화협회가 아시아 민족 인권헌장의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독립적이지 않은 아시아 인권위원회를 제안하기도 하고 재판에 대한 언론의 보도단속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등의 문제로 비판을 받기도 한 바 있다.[980]

과거 한국의 광주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아시아 인권헌장을 발표하기도 한 있고,[981] 일부단체는 아시아 사회헌장[982] 제정을 촉구하는 등 (동)아시아 인권에 대한 선언적이고 결의를 담은 문헌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 다양한 주체의 참여확대 필요성

현재로서는 동아시아 인권선언이 1990년대 후반 비정부 단체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면 동아시아 인권선언에 대해서는 우선 참여가 가능한 정부기관이나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등이 참여하고 시민사회 단체 또는 희망하는 사람은 개인의 자격으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인권선언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의 기준보다 하향하지는 않되 동아시아 각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인권 보호와 관련 있는 의미 있는 사건과 내용으로 구성

978) 최의철·홍관희·김수암,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1-06, 통일연구원, 2005, 181~182면.
979)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의 국가 독립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5일 출범, 〈https://www.humanrights.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5001001002〉 (최종검색일: 2021.9.13.)
980) 최의철·홍관희·김수암,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1-06, 통일연구원, 2005, 183면.
981) [부록 5] 아시아 인권헌장
982) 통일뉴스, 2017.7.15.,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아시아 사회헌장' 제정을 촉구한다. 이장희 역사NGO포럼 이사장",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437〉 (최종검색일: 2021.5.6.)

하여 함께 기억하고 공유하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에는 일부 국가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만이 참여하는 형태가 아닌 우선 참여가 가능한 정부나 국가기관 또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등이 가능한 협력과 연대를 확대하고 참여하는 선언으로 하여 기존의 아시아 인권선언과 인권헌장을 재검토하여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인다.

더불어 한번에 성취하는 동아시아 인권선언의 어려움에 지나치게 천착하기 보다는 우선 참여가 가능한 단체나 기구 또는 개인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공감을 이어나감으로써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제2절 | 동아시아 인권체제

1. 현실적인 어려움

동아시아 인권 체제로 동아시아 인권위원회, 인권협약, 인권법원 등이 장기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동아시아 국가 중 일부 국가는 정치체제나 민주주의 체제의 상이함, 이념적 입장과 인권에 대한 관점과 이해의 차이로 동아시아 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인권 체제는 현재로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강대국으로 인식되는 중국의 경우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논의, 인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법절차 미비 등으로 현실적으로 지역적 연대를 선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20세기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역사적 과오에 대해 한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의 공동인식과 역사공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아올 필요가 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며,[983]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미국의 경계심을 간과하기

983) 미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공동체가 정치적·경제적으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인권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마고사키 우케루, 『미국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다.[984]

동남아시아 각 국의 인권보호 정책이나 인권침해 관련 취약한 부분도 현재로서는 일관된 방향이나 정책을 손쉽게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아세안의 협력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인권규범이나 인권보호조직을 비교적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한 공동인식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여러 가지 시도들

아시아 지역의 지역적 차원의 인권 체제 마련을 위한 시도들은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는데 태국 방콕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위한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설치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등의 국가인권행동계획 채택 및 필리핀 태국, 일본 등의 국가인권교육계획 마련 그리고 한국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미얀마, 홍콩, 몽골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이 그것이다.[985]

한편 국가인권기관들의 포럼인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의 경우 1996년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가 중심이 되어 시작한 바 있다. 한국은 2002년 11월에 정회원국으로 참여하여 2004년, 2019년 서울에서도 개최한 바 있으며 정회원 16개국[986]과 준회원국 9개국[987]이 참가하고 있다.[988]

이는 아시아·태평양이라는 큰 범주에서 접근하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 국가로 한국,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이 정회원국이고 미얀마, 태국 정도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어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참여도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연대라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일 수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

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일본의 사례, 1945~2012년』, 메디치, 2012, 357~358면.

984) 김성한, 『동아시아 공동체와 미국,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동아시아 연구원, 2010, 87면.

985) 최의철·홍관희·김수암,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1-06, 통일연구원, 2005, 182면.

986) 호주,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요르단, 네팔, 몽골, 팔레스타인, 뉴질랜드, 카타르, 필리핀, 동티모르, 사모아, 스리랑카, 한국

987) 방글라데시, 바레인, 카자흐스탄, 이라크, 미얀마, 몰디브, 태국, 오만, 키르키즈스탄

988) 국가인권위원회, APF(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설명자료,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boardtypeid=24&boardid=7603298〉 (최종검색일:2021.6.24.)

각국에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지위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989]는 물론이고 캄보디아나 베트남, 라오스, 브루나이 등과 같이 독립적 국가인권기구가 없거나[990] 각국 정부기관의 인권보호관련 부서나 별도로 마련되어[991] 있지 않은 국가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다 이들 국가를 제외하기 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적 인권보호 협력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권보호가 매우 취약한 국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개선될 수 있지만 인근 국가와의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만들어 간다면 훨씬 더 많은 진전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국가의 지역인권기구 설립방안으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국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992] 인권위원회나 헌법재판소가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아세안·한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 등[993]이 제시되어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 역시 한 번에 세팅하거나 구성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법과 전략 및 노력과 실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실천과 방법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국가인권행동계획, 국가인권교육계획,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와 정부기관의 국가인권담당 부서, 인권보호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 등이

---

989) Niki Esse de Lang,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Myanma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the Wider Regional Geo-Political Contex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Southeast Asia, James Gomez·Robin Ramcharan, palgrave macmillan, 2020, p.83

990) 국가인권위원회, 다른 나라 국가인권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list?boardtypeid=104&menuid=001008003002&searchcategory=%EC%95%84%EC%8B%9C%EC%95%84%20%C2%B7%20%ED%83%9C%ED%8F%89%EC%96%91%EC%A7%80%EC%97%AD〉(검색일:2021.11.11.)

991) 한국 검찰과 경찰은 인권보호관련 조직과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 각 국가에서 검찰과 경찰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직과 부서 및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 가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위해 필요하다.

992) 동아시아 23개국의 조약비준 현황과 관련하여 백태웅, 『아시아인권공동체를 찾아서, 지역인권체제의 발전과 전망』, 창비, 2017, 114면.

993) 박경철·이상경, "아시아 지역의 인권보장 현황과 인권보장기구 설립방안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15, 69~74면.

국가마다 국내적으로 그 존재유무는 물론이고 실질적 활동 정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적인 상호교류를 통한 연대는 저조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능한 영역과 방법으로 작은 실천을 이어가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각국에서 다소 미약하거나 부분적 또는 불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권보호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 UN 차원의 국제협력도 일정부분 필요하지만 -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능한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사전적인 인권보호 예방과 교육활동을 포함한 지역적인 국가적인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권보호 관련 행동계획, 교육계획, 정부기관 활동, 독립 인권기구 활동, 시민단체 등 비영리단체 활동 등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부분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며 함께 검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온·오프라인 플랫폼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인권협력과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부분과 동아시아 인권체제 구성은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이끄는 형태나 방식보다는 강대국이나 중소국가들이 주체적으로 다각도로 상호협력하고 개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성 체제가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생명보호와 관련이 있는 사형제도 그리고 범죄예방 및 범죄대응과 관련한 마약범죄, 강제실종, 재외국민 범죄 피해,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관련 문제점과 협력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시작으로 하여 더욱 다양한 분야와 쟁점으로 논의를 확대하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협력내용과 협력방식 역시 각 국가와의 현실적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시도와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감으로써 우선 경험과 제도에 대한 인식과 공유를 확대해 나간다는 개방적 자세가 요구되며 관련 방안에서 어떤 성급한 결정을 내리거나 지향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도 있다.

중기적 또는 단기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이에 앞서 언급한 **동아시아 인권·형사법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련 상호논의와 상호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 지역 인권네트워크의 역할과 함께 인권보호 협력을 위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우선 가능한 영역범위와 방법으로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 거시적인 차원에서 동아시아 인권체제의 담론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기 보다는 - 물론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 구체적으로 사형제도 폐지, 마약범죄 대응과 인권보호, 강제실종 방지, 재외국민 범죄피해 방지, 코로나-19 방역 협력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와 사안에 대해 가능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논의하며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호논의와 상호협력방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이나 직접적인 방안으로는 동아시아 인권형사법무정책 프로그램 그리고 동아시아 인권교육(연수)원을 통하여 상호논의와 상호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각 국가의 의회는 물론 각 국가마다 상황이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규범을 논의하고 법규범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 한국의 인권위원회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지만 한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각국의 의회가 인권위원회를 마련하고 자국의 법제와 조직이 인권적인지 다시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인권규범을 내실 있게 논의하고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의회 인권위원회의 역할은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인권협력과 동아시아 인권체제와 공동의 인권규범을 형성하는데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인권보호와 침해방지를 위한 공동인식과 공동논의가 참여가 가능한 국가인권위원회, 각국 정부의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관련기관, 보건복지부, 외교부,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상호협력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더하여 동아시아 각국 의회의 인권위원회와 인권적 규범논의의 활성화도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각 국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나 정부 각 기관의 인권부서가 없는 경우도 많고 지방정부나 지방도시의 내실 있고 현실적인 인권정책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의회의 인권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국가가 많기도 하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가능한 국가기관과 정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와 의회가 가능한 범위와 방법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공동인식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동아시아 각국의 의회에서부터 먼저 인권위원회와 관련한 논의를 확대하고 심화시키며 국가의 의회사이 또는 국가기관이나 정부부서 또는 관련 단체들의 참여와 상호협력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이상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거나 설정하기에는 또한 각 국가의 현지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및 상호교류가 필요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 어떠한 뚜렷한 인권청사진을 한 번에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일 수 있다. 우선적으로 지역 국가 다양한 채널로 상호논의와 상호교류를 확대하면서 관련 연수와 교육 등 프로그램을 통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는 가능하다면 **동아시아 지역 인권교육원 설립**도 검토하고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중)기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이에 앞서 언급한 동**아시아 인권·형사·법무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의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동아시아 인권결의문, 인권선언, 인권의회, 인권위원회, 인권헌장, 인권협약, 인권법, 인권법원 등 인권체제 논의가 보다 무르익으며 평화와 안전 및 인간 삶의 조건이 한층 더 개선되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

김 경 찬

제5장

결론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권보호 과제가 같은 관점에서 공동의 과제로 추진하거나 진행하는 것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 내외적으로 국가마다 다른 입장과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제기나 동아시아 지역도 상당히 큰 지역적 범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 거버넌스 형성 역시 많은 곤란함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권보호와 인권협력이 어떠한 다양한 이유와 원인으로 어렵다거나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협력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좋은 이웃과 선한 친구가 되지 않으며 불안과 침략, 억압과 욕망을 매개로 다른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또는 인권이라는 인간의 의무를 방기 또는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침해 사건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건들은 어느 한 국가 내적으로 적절히 다루어지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밝혀지지 못한 채 묻혀버리는 사건도 다수 존재한다.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건들은 물론 다양한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 정부와 국가의 민주성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데 동아시아 각 국가가 민주국가의 국가구성과 체제가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나은 민주적인 정부와 국가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역시 어느 한 국가의 내적인 노력만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주변국과 지역 내의 국가들의 상호협력과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듯이 민주적이지 못한 국가와 정부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더 나은 민주적 국가의 형성은 훌륭한 민주적인 지도자의 출현과 역할도 중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 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시민사회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적이지 못한 국가는 지도자나 시민사회 모두 취약한 경우가 많을 수 있으며 주변국들은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더 나은 민주적인 지도자가 나오고 더 나은 민주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의견은 국회에서 인권위원회 마련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관련 정책과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과 노력들은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고 안전한 지역과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형성해 줄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생명 보호와 관련이 있는 사형제도, 가장 오래되고 근절되기 어려우며 국제적 범죄실태가 심각한 마약범죄 그리고 마약범죄 대응과 관련한 사형제도, 국가적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강제실종 문제 그리고 재외국민 범죄피해를 포함하여 최근 보건안전과 관련한 코로나-19와 관련한 안전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와 범죄 역시 초국가적 마약범죄나 강제실종과 같이 지역적 협력이 매우 요청되는 것이며 관련 원인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대응과 관련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 각국의 관련 법제와 현황에 대한 검토는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에서 현황과 경험 및 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현황과 경험 및 관련기구를 포함한 제도개선 사항은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논의되며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중요한 현안일 수 있지만 형사법 영역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공동의 인식과 공동대응 필요성을 공감하는 기회와 기초적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는 지속적인 시행착오는 물론이고 미봉책이나 표면적인 범죄 대응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다루게 된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 추진이 매우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하거나 인권협력의 시급성에 의문을 가지며 한국의 문제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보다 시야와 관점을 넓히고 미리 준비와 협력적 대응을 구상하지 않으면 다양한 형태의 인권 취약

성이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다시금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에서 포용의 중요성, 새로운 방식의 정치체제 및 법에 대한 소통과 공감[994]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와 비영리 단체 및 독립적 인권기구 그리고 각 개인들의 다차원적인 상호협력이 요청된다. 동아시아 지역의 독립적 인권기구가 없는 국가에는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며 독립적 인권기구가 있는 국가도 개별적 인권 보호 쟁점과 가치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기에 공감과 공동인식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법무부나 형사사법기관의 경우도 인권부서가 없는 국가는 설립될 수 있도록 개발협력 지원이나 형사사법기관이 상호협력을 지원하고 교육프로그램도 공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내실 있는 인권보호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국의 광주, 제주 등 일부 도시들은 자신의 도시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도시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인권보호가 요청되는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현장의 목소리와 필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 시민사회 단체 간의 정보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아래로부터의 내실 있는 동아시아 지역 인권체제 건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공감과 협력 필요성은 협력의 긴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영역부터 시작하여 협력 영역과 범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단기간의 거시적 거대목표보다는 작은 목표와 실천의 지속과 함께 작은 신뢰가 지속적이고 누적되며 새로운 형태로 모색되고 구축[995]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자와 이론가 중심의 이론과 실무영역의 구분으로 상호협력을 위해 참여가 가능하고 필요한 영역에 우선 참여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부담감을 덜면서 공감과 인식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협력방식에서는 온라인 방식의 확대와 소통과 연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서구의 보편적 인권이나 시민사회의 인권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인권의 특수

994) 제주포럼, 유럽의 경험에 대한 동북아에의 함의, 2021.6.26.,〈https://www.youtube.com/watch?v=sjBvj1Lhif8〉(최종검색일:2021.6.29.)

995) 제주포럼, 유럽의 경험에 대한 동북아에의 함의, 2021.6.26.,〈https://www.youtube.com/watch?v=sjBvj1Lhif8〉(최종검색일:2021.6.29.)

성과 전통사회의 민권개념에서 논의한다는 점에서 인권상황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우려와 염려를 표현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에 대해 인권은 정치, 경제, 안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목적 또는 안보적 목적으로 인권을 도구로 활용하여 어느 특정 국가를 공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서구사회는 아시아에서 인권을 주장하는 것에 앞서 먼저 서구사회의 발전이 아시아 지역 국가에 대해 과거에 저지른 약탈이나 침략을 통한 경제적 토대 위에 있음을 스스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996]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각 국가별 제도와 현황 차이를 고려하여 사안별 개별적 협력방식과 더불어 아세안차원의 협력에 참여하고 고찰하는 방식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협력과 연대를 기존의 조약과 업무협약, 상호교류, 지원과 관련하여 이어오고 있는 관계를 정보의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각국은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서구의 보편적 인권개념과 인권논의를 내정간섭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히 강압적 또는 비판적 인권접근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소통과 지원, 배려와 상생의 관점에서의 논의가 요청되며, 한국은 역사적으로 타국을 침략하거나 약탈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한국의 인권협력은 협력을 이끌어 나가거나 참여를 독려하기에 장점이 있다.

인권논의는 보편성을 존중하고 지향할 필요가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 현실적인 특수성을 배려하며 문제점에 대한 공격보다는 상호이해와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인식 확대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국의 인권보호와 관련한 정책과 논의를 배제하기보다는 참여를 독려하고 오히려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권협력에서 개별 인권 보호영역과 분야별로 우선 가능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작은 목표와 실천이 순차적으로 진행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에는 상호 공감과 정보교류를

---

996) 서구의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에 대한 과오,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에 대한 과오,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과오 이외에도 동아시아 지역 국가가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에게 범한 수많은 과오에 대해 다시금 조명하고 논의하며 공동으로 성찰할 기회를 폭넓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과정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 역사를 공동으로 인식하는 과정이 요청된다.
이는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배상하거나 보상하는 것을 넘어서 가해와 피해가 미래세대에게 반복되지 않으며 독재국가, 군국주의 등 비민주적인 국가의 의사결정을 물론이고 국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인간의 생명과 기본적 삶을 위한 환경과 조건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기회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각 국가와 지역 인들에게 현저히 부족하였고 이에 매우 필요할 수 있다.

포함하여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아시아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아시아 인권교육원도 검토하고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는 동아시아 인권보호 관련 단체, 정부 기관, 인권기구, 시민단체, 학생과 청소년 미래세대 들도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며 문제와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코이카[997]의 국제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국가들이 독립적 인권기구나 정부의 인권부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와 관련하여서도 일정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할 수 있으며 공적개발협력(Official Development Assitance, ODA)과 관련하여 해당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각 지역 주요 시민사회단체와도 교육협력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권 시민단체의 국제적 협력 확대와 연대 그리고 정보교류는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인권보호에 중요한 요소이다.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의 시민단체는 민주적인 정부가 형성되고 구성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시민사회는 정부나 국가정책의 비인권적 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의회 인권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반영으로 인권정책의 법제화와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적으로 인권보호를 위해 취하는 정책이나 노력, 국제조약 가입에도 시민사회단체는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형사사법기관을 포함한 정부 기관 국제교류에 참여를 통해 인권의 실태에 대한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일정부분 필요할 수 있다. 범죄대응과 범죄예방을 포함하여 더 나은 인권국가와 동아시아 지역인권체제 역시 형사사법기관, 정부기관 또는 국가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활동하며 교류하고 소통하는 형태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21세기는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기술의 개발과 인권보호 및 안전의 과제를 함께 접목하여 다룰 필요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활용은 21세기 민주국가 소통과 교류 및 구성에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수단이 되고 있고 초국가적 질병 예방과 안전보호 등에도 인공

997) KOICA, 〈https://www.koica.go.kr/sites/koica_kr/index.do〉 (검색일:2021.11.11.)

지능 기술이 활용이 요청되고 있으므로 한국의 기술력과 인권의식은 동아시아 인권보호 협력지원과 관련한 체계를 새롭게 구상하고 추진해 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이 현재로서는 매우 요원하고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국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무부와 형사사법기관,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각각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서 평화와 안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현재 형성된 관계와 협력에서 더 나아가 인간의 생명과 자유의 가치를 인식하며 어떠한 강자나 강대국의 편에 서기보다 약자를 배려하고 약소국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서로 연락하고 관심으로 안부를 묻는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몇 차례 언급한 동아시아 지역 인권·형사·법무 프로그램과 동아시아 인권교육(연수)원을 구상하고 제안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배려와 작은 실천의 노력이 축적되어 나간다면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종교, 언어, 체제, 문화, 정치, 경제의 상이함은 장애나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과 특수성이 어떻게 보편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함께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새로운 모델로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성숙한 인권국가로 나아가는 길은 스스로 좋은 이웃 친구나라가 되어 동아시아 지역의 어려운 국가와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적절히 받지 못하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지역인의 손을 잡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에 발생한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평화와 안전, 자유와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주춧돌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21세기가 지나면서 2050년 이후는 아시아의 세기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998] 아시아의 시대가 단지 부강한 아시아, 기술이 발달한 아시아, 생산력이 많은 아시아의 개념을 넘어 또한 아시아 지역이 서구 국가의 하나의 시장이거나 또는 비판적 대상에만 머물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아시아 지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주제어: 동아시아 인권협력, 동아시아 평화협력, 형사사법공조, 동아시아 인권선언, 범죄예방, 사형, 마약범죄, 강제실종, 코로나-19

998) 김준연, "동아시아학 교육의 현황과 전망", 김수미 외 9명,『동아시아학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305면.

참고문헌

1. 국내자료

경찰청, 2019 경찰통계연보, 2020.

국가인권위원회, APF, 국제인권 및 국제인권제도-국가인권기구 매뉴얼, 2013.

국회입법조사처, 외교부 영사콜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0.

대검찰청, 2014 마약류 범죄백서, 2015.

대검찰청, 2019 마약류 범죄백서, 2020.

대검찰청, 2020 마약류 범죄백서, 2021.

법무부 보도자료,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단계 격상: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담(AMMTC) 최초 개최, 2019.

법무부,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적 동향,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중 인권교육 관련 부분, 제82항, 2011.

법무연수원, 2020 범죄백서, 2021.

외교부, 2018년 외교부 정책용역과제 최종보고서, 2018.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절도 등 범죄피해 유의 안내, 공지사항, 2020.

강수정, 이정남 편저, 『시진핑 시대 중국의 정치체제』, 아연출판부, 2021.

강정구, 시론, "미국, 인권 시비할 자격이 있나요?", 한겨레, 2021.

권영준, "계약관계에서의 신뢰보호", 『법학』 제52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권오신, 『필리핀』, 동남아학 총서 5,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8.

권태웅, "미국의 입법절차와 사법심사", 법제처, 2007.

김남국 외 지음, 『유럽의 역사화해와 지역협력,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수립에 대한 함의』, 이학사, 2019.

김대순, 『유럽共同體法』, 법문사, 1988.

김동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권: 현황과 과제, 세계화와 인권발전』, 오름, 2004.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2.

김성한, 『동아시아 공동체와 미국,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동아시아 연구원, 2010.

김율, “둔스 스코투스의 의지이론 (I)”, 『철학사상』 제 28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8.

김율, “둔스 스코투스의 의지이론 (II)”, 『철학』 제 98호, 한국철학회, 2009.

김율, “의지운동의 원인에 대한 둔스 스코투스의 이론”, 『철학사상』 제70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8.

김은경 외 12인,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운영 현황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

김은경, “유럽연합 시민권의 법적 개념과 의미”, 『유럽연구』 제17권, 한국유럽학회, 2003.

김익수·곽도원, 『동북아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경쟁과 협력구도』, 아연협동연구시리즈 1, 아연출판부, 2021.

김준연 외 5명, 『동아시아 시대의 리더십』,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김준연, “동아시아학 교육의 현황과 전망”, 김수미 외 9명,『동아시아학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김학노,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의 구성주의적 재구성”, 『한국정치연구』 제9권,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999.

김한균/신동일, 『유럽 형사사법 통합정책, 형사사법 지역협력체계구축 비교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5.

김형종,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신남방정책: 아세안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30권 3호, 한국동남아학회, 2020,

라지브 나라얀 박사. 아순따 비보 까바에르, 사형제 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 2018.4.26.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파리원칙 25주년 기념자료집, 2018.

마고사키 우케루,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일본의 사례, 1945~2012년』, 메디치, 2012.

마키노 에이지(牧野英二), 『오키나와 지역 마이너리티의 복잡성과 과제 –동아시아 마이너리티 연구의 새로운 사유방식, 동아시아 마이너리티 사회와 타자표상』, 동아시아연구총서 제6권, 박문사, 2019.

바트체첵,『몽골의 마약류범죄의 실태와 통제방안』,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박경철·이상경, "아시아 지역의 인권보장 현황과 인권보장기구 설립방안에 관한 고찰",『헌법학연구』제21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15.

박기갑,『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법문사, 1988.

박찬운,『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 한울, 2009.

백태웅,『아시아인권공동체를 찾아서, 지역인권체제의 발전과 전망』, 창비, 2017.

변종필, 동아시아 인권협력의 취약점 개선과 협력전략 및 방향, 자문서 4면, 2021.

변창구, "ASEAN의 인권문제와 내정불간섭원칙의 딜레마",『국제정치연구』14(2),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1.

북핵문제와 바이든 정부, 제주포럼, 2021.6.25

석인선,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에서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법학논집』제19권 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소병국,『동남아시아사, 창의적인 수용과 융합의 2천년사』, 책과 함께, 2020.

승재현·연성진·전현욱·이승진·나주원,『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IV)』,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8.

신동일,『빈딩의 규범이론』,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염재호, "국가정책과 신제도주의",『사회비평』제11권, 나남출판사, 1994.

오주현, "민관협력사업과 시민사회(CSO)의 참여: 몽골사례에서의 시사점",『국제개발협력』2012권 1호, 한국국제협력, 2012.

유재수,『세계를 뒤흔든 경제대통령들』, 삼성경제연구소, 2013.

윤정숙·승재현·이승진·나주원·정세윤·강민정,『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V)』,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9.

윤지영,『법무부의 인권옹호기능 강화방안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7.

윤지영·김한균·승재현·강태경,『법무부의 인권옹호기능강화방안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7.

이경재, "형이상학: 아리스토텔레스 vs 토마스 아퀴나스",『중세철학』제6권, 한국중세철학회, 2000.

이금규, "중국의 마약퇴치를 위한 국제공조체제 연구",『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제27집, 법무연수원, 2012.

이덕인, “동남아시아의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제24권 제4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3.

이동윤, “동남아의 인권정책과 지역협력: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의 사례 비교”, 『21세기정치학회보』(제20집 2호), 21세기정치학회, 2010.

이명석,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제36권 4호, 한국행정학회, 2002.

이문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와 그 헌법적 한계”, 『한양법학』, 제75집, 한양대학교, 2021.

이병규, “헌법의 본질, 다양성 그리고 그 가치”, 『법학논고』 제33집, 경북대법학연구원, 2010.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 제9개정판, 일조각 2003.

이재승 외, 『지역협력의 조건: 초기 유럽통합의 재고찰과 동북아시아에의 함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이재호, “태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Vol.3, No3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이정남, 『중국의 꿈과 민주주의』, 아연출판부, 2021.

이정남,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원, 중국 인권보호정책과 상호협력방안 자문회의, 자문의견서 2021.

이준일, 『인권법』, 홍문사, 2019.

이준표, 『메콩경제권 기업법제의 이해』, 한국학술정보(주), 2012.

이태일, 검찰의 인권보호 조직과 역할 및 협력방향, 자문서 1면, 자문회의 2021.

이평래, “코로나 19가 몽골의 사회 및 경제에 미친 영향”, TURKIC-ALTAIC ECONOMIC BELT/ISSUE PAPER, AUGUST 2020.

이혜영, 『아시아·태평양인권법원 설립 전망과 과제 –지역별 인권법원 설립 경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8.

장준오·이완수·최호림·홍석준,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피해 실태와 보호방안 -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4,

정서용,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국제법』, 박영사, 2011.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조너선 닐, 『미국의 베트남 전쟁: 미국은 어떻게 베트남에서 패배했는가』, 책갈피,

1992.
조한범 외 9명, 『동북아 NGO 연구총서』, 통일연구원, 2005.
진행남, “갈등해결에 있어서의 공공외교의 역할”, 제주평화연구원, 『2013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제도화: 동아시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 활성화 방안』, 오름, 2013.
참으로 연결된 우리, 참여연대 제27차 정기총회 자료집, 2021.
최병두, “코로나-19 위기와 방역국가: 인권과 인간·생태안보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제30권 4호, 한국공간환경학회, 2020.
최병욱, 『동남아시아. 전통시대』, 산인 개정판, 2018(초판 2006).
최원기, 『신남방정책 플러스: 중점분야와 추진방향』,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
최은석, “중국과 대만의 분단상황 관리법제 분석. 양안관계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통일문제연구』 제59호, 평화문제연구소, 2013.
최의철·홍관희·김수암,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1-06, 통일연구원, 2005.
최종술, “국가경찰위원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범수·이은주·임호선 국회의원 주최, 한국행정학회·한국경찰학회,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중심으로, 2021.
하연섭,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진화와 정책연구”, 『행정논총』 제44권 제2호, 서울대학교 2006.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엮음,『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20년사』, 한울, 2014.
한아세안센터·외교부, Understanding ASEAN through 4Cs, 2017.
한용섭·이신화·박균열·조홍제, 『마약·조직범죄·해적 등 동남아의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지역적 협력방안』, KIEP, 2010.
한인섭, “1951년 거창사건 형사재판의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 국제 관계의 변동으로 읽는 동아시아 역사』, Humanist, 2012.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2, 테마로 읽는

사람과 교류의 역사』, Humanist, 2012.
허완중, 지역사회 인권협력과 인권교육 현황, 문제점 및 발전방향, 자문서, 2021.
허일태, “동아시아의 사형제도 현실과 미래,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저스티스』 통권 제158-3호, 한국법학원, 2017.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의견표명 및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8.
홍영오·박준희·추지현·박우,『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8.

Brinkley(황혜성 등 역),『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휴머니스트, 2019.
Chaudhuri(임민자 역),『유럽 이전의 아시아. 이슬람의 발흥기로부터 1750년까지 인도양의 경제와 문명』, 심산출판사, 2011.
Honneth(강병호 옮김),『인정. 하나의 유럽사상사』, 나남, 2021.
Honneth(이행남 역),『비규정성의 고통. 헤겔의 법철학을 되살려내기』, 그린비, 2017.
International Commiss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사형제 폐지: 각국의 29개 사례연구(제2판), 2018.
Korea NGOs’ Asian Center, 동남아시아의 민주주의인권평화관련 NGO 목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Mariko NAKAMURA, “일본의 인권보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인권침해방지 협력, -사형, 마약범죄, 강제실종, 코로나-19 등을 중심으로-”, 자문서, 1면, The Cooperation of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East Asia, 2021.8.20. Zoom 화상회의. 2021.
Popper(이한구 역),『열린사회와 그 적들』, 민음사, 2006.
Rawls(장동진 번역),『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2016.
Scott(이상국 옮김),『조미아,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 동남아시아 산악지대 아나키즘의 역사』, 삼천리, 2015.
Sell(남희섭 옮김),『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 후마니타스, 2003.
Sieber(김한균 등 역),『세계화의 새로운 도전: 유럽형법의 미래. 유럽형사사법체계의 목표와 모델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전세계적 위험사회에서 복합적 범죄성과 형법. 막스플랑크 외국 및 국제형법 연구소의 연구현황』,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2011.
Starr(이은정 옮김), 『잃어버린 계몽의 시대. 중앙아시아의 황금기, 아랍 정복으로부터 티무르시대까지』, 길, 2021.

2. 해외자료

Aarnio, Denkweise der Rechtswissenschaft. Einfhrung in die Theorie der rechtswissenschaftlichen Forschung, Springer, 1979.
Alter, Establishing the Supremacy of European Law: the Making of an International Rule of Law i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Amelya Gustina, The situatio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Kore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onesia, 2021, Final Report, 2021.
Baldick, Animal and Shaman. Ancient Religious of Central Asia,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2.
Berman, Law and Revolution I: The Formation of the Western Legal TraditionHarvard University Press, 1990(reprinted).
Berman, Law and Revolution II: The Impact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s on the Western Legal Tra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reprinted).
Berman, Law and Revol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Bertold, Turkestan Down tot he Mongol Invasion, 3rd Edition, Bibb Memorial Trust 1977.
Bosworth, The Ghaznavids. Their Empire in Afghanistan and Estern Iran 994-1040,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63.
Britz, Grundrechtsschutz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den Europischen Gerichtshof, EuGRZ, 2015.
Carl Schmitt, Politische Theologie. Vier Kapitel zur Lehre von der Souvernitt, 4.Aufl., Duncker & Humblot(1922), 1985.
Chafee, Colonial Courts and the Common Law, in Essays in the History of Eary American Law 53 D. Flaherty ed. 1969.

Chapin, Criminal Justice in Colonial America 1606-1660,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83.

Committee against Torture, Second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Thailand under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pursuant to the optional reporting procedure, due in 2018 (Committee against Torture 2021).

Cryer/Friman/Robinson/Wilmshurst,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Procedure, 3r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Dehouss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he Politics of Judicial Integration, MacMillan, 1998.

Denton/Endicott/Gmes/Hooker, Malaysia and Original People. A Case Study of the Impact of Development on Indigenous Peoples, Cultural Survival Studies in Ethnicity and change, Allyn & Bacon, 1997.

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 and Welfare, Handbook for officers in anti-human trafficking operations (Kitjakarn 2013).

Diamond, Guns, Germs, and Steel,

Dollinger, Die Hanse, Krner, 1966.

Draper, "Grotius' Place in the Development of Legal Ideas about War", in: Bull/Kingsbury/Roberts, Hugo Grotiu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Edward Friedman, "On Alien Western Democracy," Catarina Kinnvall and Kristina Jösson(ed.), Glob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in Asia: The Construction of Identity(London: Routledge, 2002)

Frankopan, The Silk Roads. A New History of the World, Bloomsbury, 2016.

Frau, Vlkerrechtlich determiniertes Strafrecht. Zur internationalen Dimension deutscher Staatszielbestimmungen, Der Staat 5.3 Bd. Heft 4, 2014.

Gobel/Naughton, Law Enforcement in Colonial New York: A Study in Criminal Procedure, 1944.

Haas, Beyond the Nation States. Functionalis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4.

Hacking, On Sympathy: With Other Creatures, Tijdschrift voor Filosofie, 63/2001.

Harari, Sapiens. A Brief History of Humankind, Harper Collins, 2014.

Hawking/Mlodinow, The Grand Design, Bentam, 2012.

Heitmeyer/Imbusch(Hrsg.), Integrationspotenziale einer modernen Gesellschaft. Analysen zu gesellschaftlicher Integration und Desintegration, 1.Aufl., VS Verlag fr Sozialwissenschaften, 2005.

Holland, Dominion. How the Christian Revolution Remade the World, Basic Books, 2019.

Honneth, Kampf um Anerkennung. Zur moralischen Grammatik sozialer Konflikte, Suhrkamp, 1992.

Hoohe/Marks, "Multi-Level Governance in the European Union", in: Nelson/Stubb(ed.), The European union. Readings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European Integration, Lynne Rienner Publishers, 2014.

House of Commons Foreign Affairs and Committee, Support for British nationals abroad: The Consular Service: Fifth Report of Session 2014-5, November 4, 2014.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undation (HRDF) and Anti-Labour Trafficking Project (ALT),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6-2017: Challenge on Law and Policy (HRDF 2018).

Hume, "A Treaties of Human Nature,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Norton, The Foundation of Morality in Hume's Treaties", in: Norton/Taylor(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Hum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Ifdhal Kasim, 2022, Komnas HAM dan Tantangannya Dewasa Ini, Jurnal HAM Digitas: HAM dan Realitas Transisional, Elsam, Jakarta,

Imbusch/Rucht, "Integration und Desintegration in moderen Gesellschaften", in: Heitmeyer/Imbisch(Hrsg.)

Kaiafa-Gbandi, "Recent Developments in Criminal Law in the EU and Rule-of-Law deficits", in: Schnemann(Hrsg.), Ein Gesamtkonzept fr die europische Strafrechtspflege, Carl Heymanns Verlag, 2006.

Karraker, The Seventeenth-Century Sheriff: A Comparative Study of the Sheriff in England and the Chesapeake Colonies, UnivofNorthCarolinaPr, 2018.

Koskenniemi, The Gentle Civilizer of Nations: The Rise and Fall of International Law 1870-196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Liszt, Rechtgut und Handlungsbegriff in Bindingschen Handbuche, in: ders., Strafrechtliches Aufstze und Vortrge, 1905.

Lively, Landmark Supreme Court Cases. A Reference Guide, Greenwood, 1999.

May, Ancient Legal Thought. Equity, Justice, and Humaneness from Hammurabi and the Pharaohs to Justinian and the Talmu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Mendelson, Sangha and State in Burma. A Study of Monastic Sectarianism and Leadership, Cornell University Press, 1975.

Miller, Globalizing Justice. The Ethics of Poverty and Power,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Ministry of Health, Strategic plan for drug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for fiscal year 2021-2023 (Ministry of Health 2020)

Mnch, "Elemente einer Theorie moderner Gesellschaften. Eine Bestandsaufnahme", in: Heitmeyer(Hrsg.), Was hlt die Gesellschaft zusammen?, 1997.

Mnch, Globale Dynamik, lokale Lebenswelten. Der schwierige Weg in die Weltgesellschaft, 1998.

Mnch, Nation and Citizenship in the Global Age. From National to Transnational Civil Ties, Palgrave, 2001.

Mnch, Offene Rume. Soziale Integration diesseits und jenseits des Nationalstaats, 2001, 25, 154 (Dritte Moderne).

Nazim, The Life of Times of Sultan Mahmud of Ghaz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NHRCT, Manual for police officers in accordance with human rights principles (NHRCT 2013)

NHRCT, Report to Propose Policy and Legal Recommendations (NHRCT, 2015)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in Ethics and Politics, 1932, reprinted by Westerminster PR, 2013.

Niki Esse de Lang,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Myanma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the Wider Regional Geo-Political Context, James Gomez·Robin Ramchara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Southeast Asia, Palgrave macmillan, 2020.

Office of the Narcotics Control Board, The results of the nationwide narcotics crackdown Annual Report 2019 (Office of the Narcotics Control Board, 2020)

Oliver/Hilgenberg, A History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America, 3rd Edition, Carolina Academic Press, 2018.

Paul, The Seljuq Conquests of Nishapur. A Reppraisal, Iranian Studies vol. 38, 2005.

Radbruch, Der handlungsbegriff in seiner Beduetung fr das Strafsystem, 1904.

Sarunya Thepsongkro, 'The death penalty after the revolution of B.E. 2475: ideas, politics and arguments regarding the death penalty in Thailand (B.E. 2475-2499)' (2015) Silapawattanatham Magazine, 36(8)

Schünemann(Hg.), Ein Gesamtkonzept fr die europische Strafrechtspflege, Carl Heymanns Verlag, 2006.

Singer, "A Utilitarian Defense of Animal Liberation", in: Pojmaned., Environmental Ethics, Stamford, 2001.

Singer, The Expanding Circle. Ethics and Sociobiology, Farrar Strauss and Giroux, 1982.

Srisombat Chokprachaksub, Nittaya Samredpol and Namtae Bunmeesalang, 'Thai attitudes toward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 (2019) Criminal Justice System Journal, 10(3)

Stemmer, Normalitt: Eine ontologische Untersuchung, De Gruyter, 2008.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e review of the policy and the situation of Death Penalty, Narcotic Crimes and enforced disappearance in Thailand includ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inal Report, 2021.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ailand, Human Rights Obligations

of the ASEAN Community (NHTCT, 2017)

Vambery, History of Bokhara, Arno Press, 1973(digitalized in 2012 by Cornell University Press).

Vitit Muntarbhorn, 'Regional Integration and Human Rights: European-Asian Reflections' in Apirat Petsiri, Jose de Sales Marques and William Roth (eds), Promoting Human Rights in Asia and Europe: The Role of Regional Integration 15-20

Vogel, "Die Zukunft der europischen Integration auf dem Gebiet der Strafrechtspflege", in: Schnemann(Hrsg.).

Walzer, Arguing About War, Yale University Press, 2004.

Weiler, The Community System: the Dual Character of Supernationalism, Yearbook of European Law 267, 1981.

Weitzer R. Human trafficking and contemporary slavery[J]. Annual review of sociology, 2015, 41: 2015.

Wendt,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3, 1987.

Williams, The Ethos of Europe. Values, Law and Justice in the EU,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Wipaporn Natigirachord,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 case study of appropriate offenses' (2020) Kasetsart Journal of Social Sciences, 41.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2020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OHCHR, 2020)

检察机关依法惩治新型毒品犯罪典型案例[N]. 检察日报,2021-06-26(002).

裘树祥,马跃忠."失踪"本质及失踪人口的公安治理[J].中国人民公安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5,31(05):2015.

国家禁毒委召开深入推进"902"专项行动视频会议 坚决打击芬太尼类物质等新型毒品犯罪[J].上海化工, 2020,45(06):56.

金日秀·李穎峰, 刑法秩序中愛的含意, 元照, 2021.

大爬와 岩温龙의 고의적 살인, 마약 밀수 및 밀매에 대한 사형 재심리의 형사판결서

董玉庭,黄大威.吸毒刑事立法政策研究[J].贵州民族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15(06):2015.

梁根林.刑事一体化视野中的刑事政策学[J].法学，2004.

李钢,薛淑艳,马雪瑶,周俊俊,徐婷婷,王皎贝.中国失踪人口的时空格局演变与形成机制[J].地理学报,2021,76(02)：2021.

梅传强,徐艳.毒品犯罪的刑罚适用问题思考——兼论毒品犯罪限制适用死刑[J].甘肃政法学院学报,2006(03)，2006.

梅传强,伍晋.毒品犯罪死刑控制的教义学展开——基于122份二审死刑判决书的实证研究[J].现代法学,2019,41(05)，2019.

梅传强,张喆锐.论贩卖毒品罪既遂标准的模糊化认定[J].河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44(03)，2019.

杨立新,刘洪林.刑事附带民事诉讼的基础理论问题[J].国家检察官学院学报,2013,21(06):2013.

广东省人民检察院课题组.毒品的司法认定[J].中国检察官，2021

温建辉.唯物史观下的刑事政策范式[J].新疆社会科学，2021.

王烨捷. 新型毒品种类和数量呈上升趋势[N]. 中国青年报，2021-07-14(004).

王天民.毒品犯罪案件中特情侦查的程序控制——以4322件案例为样本的分析[J].政法论坛，39(02)，2021.

外國人の受入れと日本社會，高宅 茂·瀧川修吾，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平成20年

袁林,王力理.毒品犯罪死刑配置的理性思考[J].东岳论丛,2010,31(02)

阴建峰·侯撼岳，“중국마약범죄 형사정책과 쟁점”，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2021.

阴建峰·侯撼岳，“중국인신매매 범죄의 규제와 기제”，북경사범대학교법학원 자문회의자료，2021.

任娇娇.我国禁毒刑事政策重刑化之反思与重构[J].长江论坛，2019.

张子荣.国家治理现代化视野下的公安治理探析[J].中国行政管理,2016(05):3026.

张耻之의 마약 밀매에 대한 사형 재심리의 형사 판결서

转引自张爱宁.论强迫失踪罪——兼评《保护所有人免遭强迫失踪国际公约》[J].环球法律评论,2009,31(02):2009.

转引自赵国玲,刘灿华.毒品犯罪刑事政策实证分析[J].法学杂志，2011.

程雷.诱惑侦查的程序控制[J].法学研究，37(01)：2015.

赵秉志,阴建峰.论中国毒品犯罪死刑的逐步废止[J].法学杂志,2013,34(05)，2013

赵翠生.清末和民国时期禁毒政策考略[J].北京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2.

曾军,熊姿．坚持罪刑均衡 破解毒品犯罪“轻罪重罚”[N]．检察日报，2021.

陈兴良.刑事法治视野中的刑事政策[J].江苏社会科学，2004.

参见童德华,任殷浩.基于毒品犯罪行为方式的死刑限制——兼论选择性罪名中的行为关系[J].警学研究,2020(01)，2020.

参见劳东燕.刑事政策与功能主义的刑法体系[J].中国法学,2020(01)：2020.

参见林晓萍.毒品亚文化与福建省青少年群体性吸毒行为及其预防教育对策[J].福建论坛(人文社会科学版),2016(11)：2016.

参见陈宇.东南亚非法移民治理中的“安全化”问题——以“巴厘进程”为中心的研究[J].学术论坛,2020,43(06):2020.

参见陈雨禾：《论犯罪化过程的阶层化构造——从社会危害性到法益侵害性的进阶》，载《犯罪研究》2014.

胡江,于浩洋.新中国70年来毒品犯罪刑事政策的变迁与完善——从“打击”走向“治理”[J].广西社会科学，2019.

3. 기타 자료[999]

(1) 지면기사

동아일보, 2021.6.25., “도쿄 소녀상 전시회, 日 우익협박에 결국 무산”, 2021.

(2) 인터넷 기사

경향신문, 2020.12.13.,“정부,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추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131712011〉

국민일보, 2021.02.21.,“대만, 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자에게 ‘징역 3년 이하’ 추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266475&code=6113

999) 인터넷 자료의 최종접속일 등은 본문 각주 참조.

1811&cp=nv〉

국민일보, 2021.05.30.,“의료용 대마 연구·개발 팔 걷은 농진청, 수입산 대체 목표로 작년에 착수, 2025년 세계 시장 62조 규모 예상”,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3927&code=11151400&cp=nv〉

국민일보, 2021.07.13.,“빠른 조치로 실종 초등생 찾았다…대전경찰 대응 눈길”, 〈http://m.kmib.co.kr/view.asp?arcid=0016050166〉

국제앰네스티, 2017.08.22.,“인도네시아: 경찰에 사살된 마약범죄 용의자 최소 60명 이상으로 급증”, 〈https://amnesty.or.kr/22196/〉

국제앰네스티, 2019.03.28., “브루나이: 동성 간 성행위 투석형에 처하는 잔인한 형법 제정 예고”. 〈https://amnesty.or.kr/28314/〉

글로벌비즈, 2019.01.06.,“말레이시아 사형폐지 검토…김정남 암살범 2명 공판 등 영향 미칠 듯”,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90106082547563 39ecba8d8b8_1/article.html?md=20190106083829_R〉

나우뉴스, 2021.05.24.,“인터폴 “중국 등지서 생산된 ‘가짜 백신’ 전 세계 유통 우려”,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24601009&wlog_tag3=naver#csidx1aec058cbcde3bf839129e1c8376af1〉

노컷뉴스, 2011.10.14.,“북-중 접경지역…"북한산 마약 밀매 성행"”, 〈https://www.nocutnews.co.kr/news/883539〉

노컷뉴스, 2021.03.03.,“"백신이 뇌 조종·치매 유발"…정부, 가짜뉴스 대응키로”, 〈https://www.nocutnews.co.kr/news/5509329〉

노컷뉴스, 2021.04.05., “근로정신대 소송 돕는 日 시민단체 한국사 교과서 실려 '눈길"', 〈https://www.nocutnews.co.kr/news/5529613〉

뉴스1, 2021.03.01.,“[전문]문대통령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日참여 검토…北 참여 기대”, 〈https://www.news1.kr/articles/?4226325〉

뉴스1, 2021.09.01.,“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4차 화상회의 개최…"코로나-19 협력 강화"”, 〈https://www.news1.kr/articles/?4420651〉

뉴스브리핑 캄보디아, 2020.03.10., “코로나 가짜 뉴스 유포자는 ‘테러리스트’”, 〈http://www.nbcambodia.com/archives/44942〉

뉴스브리핑 캄보디아, 2020.07.14.,“캄보디아 마약검거 20% 증가”, 〈http://www.nbcambodia.com/archives/46994〉

뉴스핌, 2021.03.09.,“비대면 인증수요 커지는데…본인확인기관 지정, 시작부터 '삐끗'”,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309000977〉

뉴시스, 2018.06.20., “태국서 9년 만에 사형집행 재개..."앰네스티 강력 반발", 〈https://newsis.com/view/?id=NISX20180620_0000341370&cID=10101&pID=10100〉

뉴시스, 2018.06.20., “태국서 9년 만에 사형집행 재개..."앰네스티 강력 반발"”,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80620_0000341370〉

뉴시스, 2021.10.14.,“WHO, 코로나 기원 조사 새 자문단 구성…"마지막 기회"”,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4_0001613144&cID=10101&pID=1010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11.24., “라오스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절반이 한국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68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8.18.,“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시동…몽골에 진단키트 지원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지원체제 사업 일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1770〉

더나은미래, 2019.04.10., “지난해 전 세계 사형집행 최소 690건…전년比 31% 급감”, 〈https://futurechosun.com/archives/40828〉

동아일보, 2019.05.25.,“마약에 빠진 북한… ‘동네마다 얼음 파는 집’”,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525/95690028/1〉

동아일보, 2020.05.21., “싱가포르, 화상서비스 ‘줌’으로 마약사범에 교수형 선고”,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521/101154300/1〉

동아일보, 2021.06.28.,“실종 경보’ 메시지 15분 만에…70대 치매 노인 찾았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28/107679321/1〉

로이슈, 2020.10.10.,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18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공동성명 발표”,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01010064330399a8c8bf58f_12〉

매일경제, 2019.11.18. , “메콩강 인접 6개국, 마약 생산·밀거래 합동 단속 강화”,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11/955319/〉

매일경제, 2020.02.28.,“코로나 공포에 휩싸인 日…가짜뉴스에 놀라 화장지 사재기”,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2/210744/〉

매일경제, 2020.12.13.,“형제복지원 한 풀리나…법무부, 강제실종협약 가입 위한 법 개정작업 본격화”,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2/1278074/〉

매일경제, 2021.01.14., “베트남, 캄보디아서 마약 밀반입 6명에 '무더기' 사형 선고”,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1/43963/〉

매일경제, 2021.05.25., "재외국민 범죄피해 4년새 곱절…보호관련 법안 개선 시급",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5/503515/〉

매일경제, 2021.06.02.,“아시아계 경찰까지 공격당했다…美 혐오범죄 극성”,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6/530300/〉

머니투데이, 2019.01.30., “'마약과의 전쟁' 필리핀, 12세부터 형사처벌 추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13014171668545〉

머니투데이, 2019.11.28., “'테러·마약·자금세탁' 초국가범죄, 한-아세안 공조 강화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12816368241503〉

머니투데이, 2021.10.16., “"中 우한이 아니라고?"…라오스 박쥐서 코로나-19 유사 바이러스 발견”,〈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1601083765099〉

문화일보, 2021.06.15.,“ICC, 두테르테 ‘마약전쟁 살인’ 조사착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61501071239308001〉

베한타임즈, 2019.06.04., “베트남, 제2의 필리핀 되지 않으려면”, 〈http://www.vietha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92〉

베한타임즈, 2020.04.04., “가짜뉴스 유포자 벌금형”, 〈http://www.vietha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21〉

보아코리아, 2021.01.28.,“북한 자의적 구금·납치·강제실종 DB' 구축...한국·스위스 인권단체들 참여”,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social-issues/nk-abductee-database〉

비마이너, 2018.01.05.,“실종 후 사망한 장애인, 신원 감식결과 나오기도 전에 화장돼, 대구 동부경찰서와 동구청, 사망자 외삼촌과 연락도 했지만 '무연고자'로 화장 처리, DNA 감식 결과 확인 열흘 앞두고 시신 발견 2주 만에 진행...비판 거세”,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47〉

사이드뷰, 2021.01.27.,“ ‘쓱’ 사라지는 사람들… 실종자 향한 대책 시급”, 〈https://www.sid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05〉

서울경제, 2021.01.27., “인도네시아, 코로나 '가짜 확인서'유통에 몸살 ..."5만 5,000~7만원에 판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F2QRKWO〉

시사저널 1650호, 2021.05.29., “,‘위안부’ 이어 ‘난징대학살’도 부정하는 일본”,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658〉

아시아경제, 2020.02.11.,,“마약 팔면 사형인 나라에서…대마커피는 합법?, 마리화나 재배 통제불능상태, 인니 아체주서 합법화 법안 발의, 커피 해외수출법안도 함께 마련”,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21111350746942〉

아시아타임즈, 2020.03.19., “캄보디아, 코로나-19 가짜뉴스 철퇴… 언론계도 '환영'”, 〈https://m.asiatime.co.kr/1065579238115712〉

아시아투데이, 2020.02.9., “라오스 신종코로나 의심 사망자 발생…쉬쉬하는 정부에 의구심↑”,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209010004849〉

연합뉴스, 2016.01.29., “군부 집권 1년 반 만에 무너진 태국의 인권”, 〈https://www.yna.co.kr/view/AKR20160129103100076〉

연합뉴스, 2017.05.29., “라오스 관광지서 30대 한인 여성 일주일째 실종…현지경찰 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70529041751084〉

연합뉴스, 2017.07.26., “두테르테, 국가인권위 폐지 경고…필리핀 인권실종 우려”, 〈https://www.yna.co.kr/view/AKR20170726053000084〉

연합뉴스, 2019.05.06., “동성애 사형 도입 브루나이, 국제사회 비난에 "집행은 안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06017200104〉

연합뉴스, 2019.06.10., “"미터기 켜달라"는 한국인승객 폭행 태국 택시기사 구속 수사”,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0051851076〉

연합뉴스, 2019.06.21., “필리핀서 끊이지 않는 한인 피살사건 이유와 대책은”,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1139600084〉

연합뉴스, 2019.07.15., “말레이인 사형수만 '표적집행' 논란…싱가포르 "동등한 법 적용"”,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5076000076〉

연합뉴스, 2019.07.23.,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사형제 부활 추진…국회 통과할 듯”,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3086200084〉

연합뉴스, 2019.07.23.,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사형제 부활 추진…국회 통과할 듯”,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3086200084〉

연합뉴스, 2019.10.02., “정부 막강권한 싱가포르 '가짜뉴스법' 발효…언론자유 위축 우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2086700076〉

연합뉴스, 2020.04.05.,“"콜센터 연결에 이틀·6일 걸려 검사"…일본 코로나-19 대응 허술”,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5021300073〉

연합뉴스, 2020.07.01., “태국, 세 번째 비상사태 연장에 "코로나 때문 vs 정치적 목적"“,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1079100076〉

연합뉴스, 2020.07.03., “인도네시아 마약사범 100명 사형선고…경찰청장 "속히 집행되길”,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3081800104〉

연합뉴스, 2020.07.28.,“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사형제 부활 재추진”,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8080900084〉

연합뉴스, 2021.01.31.,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 공식 사망자만 6천 명 초과”, 〈https://www.yna.co.kr/view/AKR20210131028100084〉

연합뉴스, 2021.03.04., “경찰,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집중 단속”,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4069700004?input=1195m〉

연합뉴스, 2021.03.12., “말레이 "코로나 가짜뉴스 유포자 징역 3년"…비상법 발효”,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2080100104〉

연합뉴스, 2021.05.25.,“"재외국민 범죄피해 4년새 곱절…보호관련 법안 개선 시급”,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5138300371〉

연합뉴스, 2021.05.25.,“외국민 범죄피해 4년새 곱절…보호관련 법안 개선 시급”,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5138300371〉

연합뉴스, 2021.05.30.,“미국 곳곳 대마 합법화…마약탐지견 줄줄이 '실직'”, 〈https://www.yna.co.kr/view/AKR20210530008300009?input=1195m〉

연합뉴스, 2021.10.19.,“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코로나-19 대응인력 공동훈련 논의”,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9122800530〉

연합뉴스. 2020.04.29., “미국 코로나-19 사망자 수, 베트남전 전사자 넘어서”,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9054500091〉

연합뉴스TV, 2021.05.17., “'콩나물시루' 태국교도소 감염 '폭발'…하루 7천명”, 〈https://yonhapnewstv.co.kr/news/MYH20210517020100038〉

의협신문, 2020.01.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첫 확진자 발생”,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009〉

인권운동 사랑방, 1998.4.15., "'아시아 인권헌장' 5월 광주서 선포", 〈https://www.sarangbang.or.kr/hrdailynews/61107〉

재외동포신문, 2016.8.18., "캄보디아 교민 총기살해사건 범인 검거",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228〉

전라일보, 2020.12.16., "대마 규제가 풀려야 한다",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15363〉

조선비즈, 2020.08.25.,"방통위 "코로나 가짜뉴스, 공무집행방행죄로 처벌",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5/2020082501662.html?form=MY01SV&OCID=MY01SV〉

조선일보, 2015.01.06., "한국인 마약범 1명… 中, 또 사형집행",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06/2015010600260.html〉

조선일보, 2015.01.06.,"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정부당국 인도조치 요구…中 '불가능하다'", 〈http://www.mediapen.com/news/view/43541〉

조선일보, 2020.05.18., "미얀마 시골마을서 마약 18톤 발견...아시아 최대규모",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8/2020051803664.html〉

조선펍, 2018.06.01.,"성인 실종자 통합관리 시급하다, 국과수 보관 3600건 신원불상 DNA의 주인은?",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nNewsNumb=20180629166&nidx=29167〉

코리안프레스, 2017.12.11., "말레이시아, 마약사범에 대한 의무사형 철회한다", 〈http://www.koreanpress.net/detail.php?number=3229&thread=22r13〉

코리안프레스, 2020.02.06., "말레이시아, 코로나바이러스 가짜뉴스 유포자 5명 체포", 〈http://koreanpress.net/detail.php?number=3706&thread=22r01〉

탑데일리, 2021.08.05.,"日, 한국이 의도적으로 경기 방해?...사실은 혐한 가짜뉴스",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112698〉

통일뉴스, 2017.07.15.,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아시아 사회헌장' 제정을 촉구한다. 이장희 역사NGO포럼 이사장",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437〉

프레시안, 2013.10.29., "아세안 인권선언 이후 1년: 아세안의 한계와 가능성",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111299#0DKW〉

한겨레, 2004.11.01., "태국 법원, 마약 소지 영국인에 사형 선고", 〈http://legacy.ww

w.hani.co.kr/section-007000000/2004/11/00700000020041101223304 0.html〉

한겨레21, 2009.08.27.,“사형은 민주주의 기초에 반하는 행동”,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5625.html〉

한겨레21, 2017.07.12.,“인도네시아의 반세기 금기어 ‘1965년 대학살’”,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43848.html〉

한국일보, 2019.03.07., “문 대통령 “인도네시아 한국기업 임금체불 수사, 적극 공조하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071629736440〉

한국일보, 2020.04.07., “코로나-19 혼란 악용해 언론탄압 나선 미얀마·필리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071520329629〉

한국일보, 2020.06.26.,“2020 마약리포트,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해 달라" 합법화 요구 높지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62514400 00004〉

한국일보, 2020.12.23., “'한국에도 필로폰 대량 유통' 라오스 마약왕 종신형”,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311170002719?did=NA〉

한국일보, 2021.05.24.,“코로나 '가짜뉴스'에 벌금 1억2000만 원…中 맞선 대만의 반격”,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241020000162 7?did=NA〉

ASEAN EXPRESS, 2020.11.14., “방콕 한인타운 내 납치감금 돈 갈취…한국인 강력범죄 발생”, 〈http://www.aseanexpress.co.kr/news/article.html?no=5508〉

BBC News Korea, 2018.11.17. “킬링필드: 캄보디아 전범재판소, ‘킬링필드’ 집단학살 인정”, 〈https://www.bbc.com/korean/news-46241935〉

BBC News Thai ‘The government has insisted that it is serious and sincere in resolving the issue and is ready to listen to all sides after being asked by the UN to draft the Enforced Disappearance Ac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principles’ (BBC News Thai, 18 July 2020), 〈https://www.bbc.com/thai/53454728〉

BBC News Thai, ‘From Thaksin to Prayut, the disappearance of Somchai Neelapai jit and the unanswered southern fire’ (BBC News Thai, 11 March 2019),

〈https://www.bbc.com/thai/thailand-47521488〉

BBC News Thai, 'Is the death penalty still necessary?' (BBC News Thai, 19 June 1028), 〈https://www.bbc.com/thai/thailand-44534477〉

BBC News Thai, 'Wanchalerm: Retracing the refugees who were "carried away" after the 2014 coup' (BBC News Thai, 6 June 2020), 〈https://www.bbc.com/thai/thailand-52946342〉

BBCThai, 'Feb 13 rally: Police arrested at least 7 people after a riot in front of the Supreme Court.' (BBCThai, 13 February 2021), 〈https://www.bbc.com/thai/thailand-56052297〉

JTBC, 2019.08.13., "한·일 갈등에 늘어나는 가짜뉴스의 악순환…'돈'과도 연결",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65131〉

KBS NEWS, 2019.10.29., "글로벌24 현장: 인도네시아, 사형집행 재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12692〉

MBC, 2016.10.27.,"[단독] 북중 접경 지역 밀무역 기승 "마약도 거래"", 〈https://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149323_30244.html〉

MBN뉴스, 2021.01.09.,"중국 "'코로나 가짜뉴스' 유포하면 벌금 최대 8천만 원", 〈https://www.mbn.co.kr/news/world/4394236〉

News Korea Philippines, 2020.12.18., "동남아 최대 마약 생산지 골든트라이앵글, 중국이 대물림?", 〈http://www.newskoreaphilippin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2〉

news.mn, 2020.03.30., "Mongolia punishes fake news spreaders by Criminal Law", 〈https://news.mn/en/791544/〉

SBS, 2017.07.26., "두테르테, 국가인권위에 폐지 경고…필리핀 인권실종 우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1560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Thai PBS, 'Polls show 93.4% support the death penalty' (Thai PBS, 23 June 2018), 〈https://news.thaipbs.or.th/content/272931〉

ThaiPBS 'The Government Gazette published an announcement prohibiting gatherings and gatherings' (ThaiPBS, 3 August 2021), 〈https://news.thaipbs.or.th/content/306645〉

ThaiPBS, ‘Arrest 3 leaders in front of the Myanmar embassy’ (ThaiPBS, 2 February 2021), 〈https://news.thaipbs.or.th/content/300979〉

ThaiPBS, ‘Ending 29 years of the case of abducting and killing ‘Al Ruwailee’ and the life of ‘Pol Lt. Gen. Somkid’, the accused’ (ThaiPBS, 23 March 2019), 〈https://news.thaipbs.or.th/content/278636〉

ThaiPBS, ‘Prime Minister repeals Rule 29 to restrict media, effective Aug. 9’ (Thai PBS, 10 August 2021), 〈https://news.thaipbs.or.th/content/306823〉

ThaiPBS, ‘Who was arrested and prosecuted on what charges?’ (ThaiPBS, 16 Octo ber 2020), 〈https://news.thaipbs.or.th/content/297427〉

Thaipost, ‘Court of Appeal upholds death sentence for Saisana and his conspirato rs’ (Thaipost, 20 August 2020), 〈https://www.thaipost.net/main/detail/75 006〉

Thaipost, ‘The chairman of the NHRCT suggests th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s up to the society’s opinion’ (Thaipost, 2 September 2018), 〈https://www.thaipost.net/main/detail/16652〉

Thairath Online “Is the death penalty still necessary? The revision of the latest death sentence” (Thairath, 10 January 2020), 〈https://www.thairath.co.th /news/local/bangkok/1744660〉

Thairath, ‘12 Kilograms of heroin’ (Thairath, 17 February 2021), 〈https://www.th airath.co.th/news/crime/2034421〉

Thairath, ‘Execution for 8 drugs traffickers, 500 kg of ice, transporting big lots from Chiang Mai to Bangkok’ (Thairath, 29 August 2020), 〈https://www.t hairath.co.th/news/crime/1920301〉

Thairath, ‘New drug laws aims to reduce penalties and focus on rehabilitation’ (Thairath, 8 June 2021), 〈https://www.thairath.co.th/news/politic/21105 20〉

VOA, 2021.04.15., “미얀마 군사재판소, 민간인 7명 사형 선고”, 〈https://www.voakor ea.com/world/asia/myanmar-military-tribunal-sentence〉

YTN, 2019.04.05., “캄보디아서 발견된 토막 시신…한인 사업가 '의문의 죽음'”, 〈http s://www.ytn.co.kr/_ln/0134_201904051852084365〉

(3) 웹사이트 및 웹페이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북한 세계 3위 사형집행국”, 〈https://www.voakorea.com/archive/death-sentences-report-118785524〉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2015.12.08. “몽골: 역사적인 표결 통해 마침내 사형제도 폐지”, 〈https://amnesty.or.kr/12152/〉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2021.04.30., “잔혹성과 불공정성 – 북한의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https://amnesty.or.kr/41133/〉

[말레이시아] 마약사범에 대한 의무 사형 철회한다, 〈https://blog.naver.com/shua1525/221161959027〉

외교부, [인권일반] [기본규범]주요 국제인권협약 가입현황, 〈https://www.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26074〉

2018, 2019, 2020년 마약류 월간동향,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s://www.spo.go.kr/site/spo/ex/board/View.do〉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https://www.kpil.org/thri/about-us/eng/〉

국제민주연대, 〈http://www.khis.or.kr/〉

내각부(内閣府), 기본적 법제도에 관한 여론 조사(「基本的法制度に関する世論調査」(図２）, 〈https://survey.gov-online.go.jp/r01/r01-houseido/zh/z02.html〉

국가인권위원회, 다른 나라 국가인권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list?boardtypeid=104&menuid=001008003002&searchcategory=%EC%95%84%EC%8B%9C%EC%95%84%20%C2%B7%20%ED%83%9C%ED%8F%89%EC%96%91%EC%A7%80%EC%97%AD〉

두만강 포럼 (Tumen River Forum), 〈https://www.chey.org/Kor/conferences/ConferencesContentsForumView.aspx?seq=80&board=16&subseq=18#none〉

러브인라오스, 2020.3.2., “소셜미디어에 코로나 가짜뉴스 퍼트린 라오인 체포”, 〈https://www.loveinlaos.com/bbs/board.php?bo_table=b_news&wr_id=587〉

법무부 보도자료, 2020.11.18.,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jsessionid=3MxT8posUfgdzj_LuWD8Dj-ZkL2RvUXMs1M5bJIt.wizard-12-gf5c7?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MzOTg3JTJGYXJ0Y2xWaWV3LmRvJTNG〉

법제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0.6.25.,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59538&lawCd=0&lawType=TYPE5&currentPage=2&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사형 제도 재개에 대하여, ON REINSTATING THE DEATH PENALTY, 〈https://jargaldefacto.com/article/%EC%82%AC%ED%98%95-%EC%A0%9C%EB%8F%84-%EC%9E%AC%EA%B0%9C%EC%97%90-%EB%8C%80%ED%95%98%EC%97%AC〉

세계법제정보센터, 2019.8.28. , 법제동향: 마약 범죄에 대한 국가별 처벌,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pageIndex=undefined&CTS_SEQ=48385&AST_SEQ=3891&ETC=1〉

신재혁, 유사한 역사를 경험한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왜 다양한 정치체제를 갖게 된 것일까?, SNUAC 다양성+ASIA(13), 2021.6, 〈https://diverseasia.snu.ac.kr/?p=4723〉

아시아 인권문화연대, 〈https://asiansori.org/22〉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 (Asia Europe Meeting), 〈https://www.mofa.go.kr/www/wpge/m_3933/contents.do〉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 (APPF), 〈https://www.assembly.go.kr/views/cms/assm/ndiplomacy/mseap/appf.jsp〉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가/지역별 정보: 라오스 사건·사고.,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36〉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가/지역별 정보: 말레이시아 사건·사고,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105〉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가/지역별 정보: 말레이시아 사건·사고,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56〉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가/지역별 정보: 미얀마 사건·사고.,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75〉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가/지역별 정보: 베트남 사건·사고.,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86〉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가/지역별 정보: 싱가포르 사건·사고,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134〉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가/지역별 정보: 캄보디아 사건·사고.,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259〉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가/지역별 정보: 태국 사건·사고,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260〉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가/지역별 정보: 필리핀 사건·사고.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181〉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가/지역별 정보: 필리핀 사건·사고.,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252〉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안전공지: 라오스,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 주의, 2015.5.29.,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3845&pagenum=2&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EB%9D%BC%EC%98%A4%EC%8A%A4〉

외무성(外務省),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국내에서의 대응(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問題―国内における取組)」, 〈https://www.mofa.go.jp/mofaj/a_o/na/kp/page1w_000084.html〉

외무성(外務省),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정부가 인정한 납치 피해자(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問題―政府認定の拉致被害者」, 〈https://www.mofa.go.jp/mofaj/a_o/na/kp/page1w_000081.html〉

제주포럼, 유럽의 경험에 대한 동북아에의 함의, 2021.6.26.,〈https://www.youtube.com/watch?v=sjBvj1Lhif8〉

인권도시 광주, 〈http://www.whrcf.org/kr/whrcf.php〉

인권연대, 〈https://hrights.or.kr/〉

Amnesty, 전 세계 사형 현황, 〈https://amnesty.or.kr/campaign/2020-death-sentences-executions/〉

조경환, "인간안보 국가 어젠다와 중견 국가 외교 정책의 창", 『열린정책』 7호, 정책기획위원회, 2020, 112-12., 〈http://pcpp.go.kr/images/webzine/20201020/s34.html〉

주 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asean-ko/inde

x.do〉

주 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아세안 주요회의체, 〈https://overseas.mofa.go.kr/asean-ko/brd/m_21541/view.do?seq=7&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page=2〉

주라오스대사관, 라오스내 마약문제, 2009.3.2., 〈https://overseas.mofa.go.kr/la-ko/brd/m_1887/view.do?seq=681637&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

주라오스대사관, 마약범죄 연루 주의, 2006.8.21., 〈https://overseas.mofa.go.kr/la-ko/brd/m_1871/view.do?seq=572292&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

주브루나이대사관, 브루나이뉴스: 2020.8.5., "마약밀매자 중에 미성년자 포함", 〈https://overseas.mofa.go.kr/bn-ko/brd/m_2294/view.do?seq=134035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주싱가포르대사관, 2011.1.11., 새소식: 한국인 폭행 피해 유의 당부,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11934/view.do?seq=1149622&srchFr=&amp%3Bsr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

주싱가포르대사관, 싱가포르 정세: '인권에 대한 아세안의 변화된 시각' 기고문, 2020.9.21.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0/view.do?seq=132739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

amp;company_nm=&page=1〉

외교부, 주요 국제인권협약 가입현황, 〈https://www.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2607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국가인권위원회, APF(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설명자료,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boardtypeid=24&boardid=7603298〉

참여연대, "필리핀 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테러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20.7.7.,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717025〉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

청년의 밤, 〈https://www.youtube.com/watch?v=lOYn3cEqvto〉

한국 참여연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등 아시아 인권보호 및 협력활동, 〈https://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745640〉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의 국가 독립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5일 출범, 〈https://www.humanrights.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5001001002〉

휴먼아시아, 〈http://humanasia.org/〉

11 FACTS ABOUT HUMAN TRAFFICKING[EB/OL]., 〈https://www.dosomething.org/us/facts/11-facts-about-human-trafficking#fn3,/〉, 2021-08-16.

Adehlia Ebert, The death penalty in ASEAN: Could people be stronger than politics?, AASYP, 2019.8.9. 〈https://aasyp.org/2019/08/09/the-death-penalty-in-asean-could-people-be-stronger-than-politics/〉

ADPAN welcomes Mongolia's decision abolish death penalty in law, 〈https://worldcoalition.org/2015/12/18/adpan-welcomes-mongolias-decision-abolish-death-penalty-in-law/〉

AICHR, 〈https://aichr.org/aichr-activities/〉

AICHR, CSOs with Consultative Relationship with the AICHR, 〈https://aichr.org/c

sos-with-consultative-relationship-with-the-aichr/〉

Amesty International Japan, 〈https://www.amnesty.or.jp/en/〉

Amnesty International Thai, '6 years anniversary of the enforced disappearance of Billy' (Amnesty International Thai, 17 April 2020), 〈https://www.amnesty.or.th/latest/blog/750/〉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Amnesty Thailand' (Amnesty, 2021), 〈https://www.amnesty.or.th/en/about-us〉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End the death penalty'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19 June 2019), 〈https://www.amnesty.or.th/latest/news/129/?fbclid=IwAR0pUj_k8NNVNkmL3U3kdTkDwY8KnPC0xBAQwCQCaZChpu_k1X2FY4Bsv-U〉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Our works' (Amnesty, 2021), 〈https://www.amnesty.or.th/en/our-work?ccm_paging_p=2〉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Thailand: Refugee footballer Hakeem al-Araibi extradition case dropped'(Amnesty, 2021), 〈https://www.amnesty.or.th/en/latest/news/693/〉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2021) 〈https://www.amnesty.or.th/our-work/death-penalty/〉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Urgent Action:#savewanchalerm' (Amnesty, 2021),〈https://www.amnesty.or.th/en/get-involved/take-action/ua20〉

Amnesty, 'Death penalty in 2020: Facts and figures' (Amnesty, 21 April 2021),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21/04/death-penalty-in-2020-facts-and-figures/〉

Amnesty, 2019.7.8.,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의 살인적인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유엔의 조사가 시급하다", 〈https://amnesty.or.kr/29490/〉

Amnety, 북한, 그리고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https://amnesty.or.kr/campaign/north-korea-3rd-upr/〉

Apa Guna Deklarasi HAM ASEAN?", 〈http://www.setarainstitute.org/id/content/apa-guna-deklarasi-ham-asean, dapat dilihat di:〉, 〈http://www.alumni.u

nair.ac.id〉

APICC, Asia-Pacific Information & Coordination Center for combating drug crimes, 〈https://www.apicc.info:442/apicc/membership/login.jsp?referer=%2Fapicc%2F〉

Asean Secretariat,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and its Implementation Plan, 〈https://asean.org/asean-comprehensive-recovery-framework-implementation-plan/〉

ASEAN, 〈https://asean.org/31st-meeting-asean-intergovernmental-commission-human-rights-aichr/〉

ASEAN-NACRO, 'History' (ASEAN-NACRO, 3 August 2015), 〈https://aseannarco.oncb.go. th/ewt_news.php?nid=9〉

ASEAN-NACRO, 'ONBC meets bilateral on the 20th Cooperation on Drug Suppression in Taunggyi,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ASEAN-NACRO, 2018), 〈https://aseannarco.oncb.go.th/ewt_news.php?nid=395〉

ASEAN-NACRO, 'Workshop on the preparation of the 5-year Safe Mekong River Action Master Plan (2019-2023) under the Mekong Safer 6 Countries Project' (ASEAN-NACRO, 16 April 2018), 〈https://aseannarco.oncb.go.th/ewt_news.php?nid=387〉

ASEAN-NACR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NCB heads the Thai delegation to attend the 12th Thailand-Cambodia Bilateral Conference on Cooperation on Drug Suppression No. 12.' (ASEAN-NACRO, 7 September 2018), 〈https://aseannarco.oncb.go.th/ewt_news.php?nid=438&filename=〉

ASEAN-NACRO,'The secretary-general of the ONCB heads the Thai delegation to attend the 12th Thailand-Cambodia Bilateral Conference on Cooperation on Drug Suppression No. 12.' (ASEAN-NACRO, 7 September 2018) 〈https://aseannarco.oncb.go.th/ewt_news.php?nid=438&filename=〉 accessed 11 August 2021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https://www.asiapacificforum.net/〉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https://www.apec.org/〉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PHNOM PENH STATEMENT ON THE ADOPTION OF THE ASEAN HUMAN RIGHTS DECLARATION (AHRD)', 〈http://asean.org/phnom-penh-statement-on-the-adoption-of-the-asean-human-rights-declaration-ahrd/〉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The Founding of ASEAN, 〈https://asean.org/about-asean/the-founding-of-asean/〉

Australian and British police to share their DNA databases, This article is more than 6 years old, Deal will bypass Interpol and might be extended to include US and Canadian forces,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14/nov/06/australian-and-british-police-to-share-their-dna-databases〉

Chatchai Srimuangkanchana, 'Transnational crime and Thailand's security' (Parliament 2011), 〈https://www.parliament.go.th/ewtadmin/ewt/parliament_parcy/ewt_dl_link.php?nid=55062&filename=house2554〉

Civil Rights Protection and Legal Aid Office, 'About us' (Civil Rights Protection and Legal Aid Office, 2021), 〈http://www.lawaid.ago.go.th/index.php?option=com_flexicontent&view=items&cid=60&id=502&Itemid=3〉

Department of Corrections, 'Statistic of inmates with death penalty 23 June 2021' (Department of Corrections, 23 June 2021), 〈http://www.correct.go.th/executed/index.php〉

Department of Corrections, 'Statistic on inmates related to narcotics offences 1 August 2021' (Department of Corrections, 1 August 2021), 〈http://www.correct.go.th/rt103pdf/report_result.php?date=2021-08-01&report=drug〉

Department of Corrections, 'Statistics report on death row prisoners' (23 March 2021, Department of Corrections), 〈http://www.correct.go.th/executed/index.php〉

Department of Narcotics Litigation, 'Mission' (Department of Narcotics Litigation, 2021), 〈http://www.nct.ago.go.th/index.php/2013-10-10-09-23-58〉

DSI, 'DSI meeting with British police to discuss cooperation in investigations' (DSI, 3 August 2021), 〈https://www.dsi.go.th/en/Detail/1e7eaddb0504d4

885e6a23b00d66fc1a〉

DSI, 'Memorandum Cooperation between the Department of Special Investigation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OUs)' (DSI, 31 July 2020), 〈https://www.dsi.go.th/th/Detail/ DSI-MOU-By-Time〉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https://ganhri.org/〉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https://ganhri.org/membership/〉

Government Public Relation Department, 'ASEAN Missions of the Royal Thai Police' (Government Public Relation Department, 15 May 2016), 〈http://www.aseanthai.net/ewt_news.php?nid=5668&filename=index〉

Human Rights Watch, 'Thailand: drug suspect torture to death' (HRW, 26 August 2021), 〈https://www.hrw.org/news/2021/08/26/thailand-drug-suspect-tortured-death〉

Human Rights Watch, 'Thailand' (HRW, 2021), 〈https://www.hrw.org/thailand〉

Human Rights Watch, Philippines: Events of 2020, 2021, 〈https://www.hrw.org/world-report/2021/country-chapters/philippines〉

Human Rights Watch, Philippines: Events of 2020, 2021. 〈https://www.hrw.org/world-report/2021/country-chapters/philippines〉

Human Rights Watch, Thailand: Events of 2020, 2021. 〈https://www.hrw.org/world-report/2021/country-chapters/thailand〉

Human Rights Watch,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서의 인권 문제, 2020.3.19., 〈https://www.hrw.org/ko/news/2020/03/19/339654〉

Indo-Pacific Defense Forum, "ASEAN 회원국, 국경간 범죄 소탕을 위해 유엔과 협력", 2018.6.8., 〈https://ipdefenseforum.com/ko/2018/06/asean-%ED%9A%8C%EC%9B%90%EA%B55%AD-%EA%B5%AD%EA%B2%BD%EA%B0%84-%EB%B2%94%EC%A3%84-%EC%86%8C%ED%83%95%EC%9D%84-%EC%9C%84%ED%95%B4-%EC%9C%A0%EC%97%94%EA%B3%BC-%ED%98%91%EB%A0%A5/〉

INTERPOL, 'Thailand' (INTERPOL, 2021), 〈https://www.interpol.int/en/ Who-we-are/Member-countries/Asia-South-Pacific/THAILAND〉

Jeju Forum Events, 〈http://jejuforum.or.kr/m21_speakers.php?day=&year=2018&key_type=&key_word=&pg=2〉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http://jejuforum.or.kr/m12.php〉

KOICA, 〈https://www.koica.go.kr/sites/koica_kr/index.do〉

KOTRA 양곤무역관, 2018.10.2., "미얀마와 마약, 그리고 골든 트라이앵글,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902/globalBbsDataView.do?setIdx=444&dataIdx=169822〉

Malaysia: Reform or repeal laws that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https://www.article19.org/resources/malaysia-reform-or-repeal-laws-that-restrict-freedom-of-expression/〉

Matichon Online 'Wissana accepts the government's promise to the UN The new law will be free from the death penalty' (Matichon Online, 9 January 2017), 〈https://www.matichon.co.th/politics/news_421605〉

Matichon Weekly 'Enforced disappeared of Wanchalerm Satsaksit, the latest political refugee' (Matichon Weekly, 14 June 2020), 〈https://www.matichonweekly.com/in-depth/article_314889〉

Matichon, 'The view of 'dissolving the mob' beyond the cause?' (Matichon, 13 August 2021), 〈https://www.matichon.co.th/politics/politics-in-depth/news_2881827〉

MGR Online, 'Cabinet gives green light to MOU on Thai-Russian police against transnational crime' (MGR Online, 6 July 2021), 〈https://mgronline.com/politics/detail/9640000065688〉

MGR Online, 'ONCB discusses New Zealand customs Exchange information for transnational drug delivery' (MGR Online, 12 June 2021), 〈https://mgronline.com/crime/detail/9640000056748〉

Ministry of Justice, 'South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meets with the NACC and exchanges a book of cooperation against drug crimes. Prepare to work together to develop solutions to drug trafficking problems on social media' (Ministry of Justice, 23 October 2020), 〈https://www.moj.go.th/view/48960〉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 'Permanent Secretary of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 together with executives Meeting with Mr. Ha Tae Wuk, Consul-General of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ailand'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 17 August 2021), 〈https://www.m-society.go.th/news_view.php?nid=31029〉

Modern Slavery [EB/OL].,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big-issues/labour-rights/modern-slavery/〉, 2021-08-16.

MThai, 'Execution of 2 inmates' (MThai, 25 August 2009), 〈https://news.mthai.com/general-news/55136.html〉

Nareelak Phaechaiyaphum,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Division Rights and Liberties Protection Department Ministry of Justice, 'Summary of the key points from the academic seminar on "Law on the duties of the Thai state and the right to be a Thai person The Crime of Enforced Disappearance by the State: Possibilities or Vanishing Hopes' (Faculty of Law, Thammasat University 13 July 2020) 〈https://www.law.tu.ac.th/summary-seminar-forced-disappearance/〉

Neawna, 'The statistics of drug trafficking abroad During Oct. 20 - Jun. 21, a total of 84 cases were sent to Thailand, 21 cases' (Neawna, 7 June 2021), 〈https://www.naewna.com/local/578441〉

NHRCT, 'About us' (NHRTC, 2021), 〈http://www.nhrc.or.th/AboutUs/The-Commission/Background-and- History-2.aspx〉

NHRCT, 'NHRC of South Korea meets with the President of the NHRC Thailand' (NHRTC, 29 July 2013), 〈http://www.nhrc.or.th/News/Information-News/%E0%B8%81%E0%B8%AA%E0%B8%A1-%E0%B9%80%E0%B8%81%E0%B8%B2%E0%B8%AB%E0%B8%A5%E0%B8%B5%E0%B9%83%E0%B8%95%E0%B9%89%E0%B9%80%E0%B8%82%E0%B9%89%E0%B8%B2%E0%B8%9E%E0%B8%9A%E0%B8%9B%E0%B8%A3%E0%B8%B0%E0%B8%98%E0%B8%B2%E0%B8%99-%E0%B8%81%E0%B8%AA%E0%B8%A1-%E0%B8%9B%E0%B8%A3%E0%B8%B0%E0%B9%80%E0%B8%97%E0%B8%A8%E0%B9%84%E0%B8%

97%E0%B8%A2.aspx〉

NHRCT, 'The interview regarding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NHRCT, 3 February 2020), 〈https://www.facebook.com/watch/?v=505281310128420〉

NHRTC, 'Press release NHRCT praised and thanked the Thai government for consideration on the abolishment of capital punishment' (NHRTC, 21 April 2015), 〈http://www.nhrc.or.th/NHRCT-Work/Statements-Press-〉

OHCHR, 'STATUS OF RATIFICATION INTERACTIVE DASHBOARD' (OHCHR, 2021), 〈http://indicators.ohchr.org/〉

ONCB, 'NACC develops cooperation between Thailand and Vietnam, focusing on cooperation in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drugs.' (ONCB, 2020), 〈https://gnews.apps.go.th/news?news=53319〉

ONCB, 'ONCB increases the capacity of verification exchanging drug samples between Thailand and Australia Under the cooperation of Taskforce Storm' (ONCB, 20 September 2018), 〈https://gnews.apps.go.th/news?news=47515〉

Pavena Hongsakula Foundation for Children and Women, 'About us' (Pavena Hongsakula Foundation for Children and Women, 2021), 〈https://pavenafoundation.or.th/en/about-us/〉

Posttoday 'Office of the Narcotics Control Board reveals that over 40 cases of K-drugs and other narcotics were arrested in 2018-2021' (Posttoday, 11 January 2021), 〈https://www.posttoday.com/social/general/642482〉

Prachachart, 'Thailand-Korea signed 3 MOUs, R&D-EEC-Solve the illegal migrants problem' (Prachachart, 25 November 2019), 〈https://www.prachachat.net/politics/news-394724〉

Prachachat, 'Civil court orders temporary protection The Prime Minister is prohibited from using the terms. The Emergency Decree controls the media' (Prachachat, 6 August 2021), 〈https://www.prachachat.net/general/news-733081/〉

Prachathai,'The history of enforced disappearance' (Prachathai, 6 June 2020), 〈https://prachatai.com/journal/2020/06/88005〉

Prominent Blogger Nguyen Ngoc Nhu Quynh sentenced to 10 years in prison, 〈https://www.omct.org/en/resources/urgent-interventions/prominent-blogger-nguyen-ngoc-nhu-quynh-sentenced-to-10-years-in-prison〉

Ratification Status for Japan,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reaty.aspx?CountryID=87&Lang=EN〉

Republic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n Human Rights, 〈https://chr.gov.ph/〉

Rights and Liberties Protection Department, 'About us' (Rights and Liberties Protection Department, 2021), 〈http://www.rlpd.go.th/〉

Rights and Liberties Protection Department, 'About us' (RLPD, 2021), 〈http://www.rlpd.go.th/〉

Rights and Liberties Protection Department, 'No. 273/2561, Rights and Liberties Protection Department Bilateral discussions on victim assistance and signed a cooperation agreement with the Department of Human Rights of the Ministry of Justice.' (RLPD, 8 June 2018), 〈http://www.rlpd.go.th/rlpdnew/2012-06-20-06-21-44/rlpd-pr/8766-2018-06-08-09-20-03〉

Thai Lawyer for Human Rights, 'About us' (TLHR, 2021), 〈https://tlhr2014.com/en /about-us-2〉

The 101 World, '"Enforced disappeared: no bodies, no laws, no liability" with Pokpong Srisanit' (The 101 World, 19 June 2020), 〈https://www.the101.world/pokpong-srisanit-and-enforced-disappearance/〉

The Bali Process, 'membership' (The Bali Process, 2021), 〈https://www.baliprocess.net/membership/〉

UNTC, 11.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New York, 20 November 1989,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11&chapter=4&clang=_en〉

UNTC, 16.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New York, 20 December 2006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16&chapter=4&clang=_en〉

UNTC, 3.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New

York, 16 December 1966,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3&chapter=4&clang=_en〉

UNTC, 4.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New York, 16 December 1966,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4&chapter=4&clang=_en〉

UNTC, 8.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New York, 18 December 1979,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8&chapter=4&clang=_en〉

Vietnam: Reform Criminal Law to Respect Rights, 〈https://www.hrw.org/news/2016/10/18/vietnam-reform-criminal-law-respect-rights〉

Wat Thamkrabok, 'History' (Wat Thamkrabok, 2021), 〈https://wat-thamkrabok.org/th/history/〉

WHAT IS ENFORCED DISAPPEARANCE?, 〈https://trialinternational.org/topics-post/enforced-disappearance/〉

WHAT IS HUMAN TRAFFICKING [EB/OL]., 〈http://www.notforsalecampaign.org/what-is-human-trafficking/?gclid=EAIaIQobChMIh5TOlKSw8gIVgVVgCh18KwC6EAAYASAAEgL9OvD_BwE,/〉, 2021-08-16.

What is modern slavery?[EB/OL]., 〈https://www.antislavery.org/slavery-today/modern-slavery/〉, 2021-08-16.

2020中国毒品形势报告（全文） [EB/OL]., 〈https://mp.weixin.qq.com/s/-7n5RqCN7_3iQgUe_owF6w?〉,

公安部：儿童失踪信息紧急发布平台"团圆系统"找回率达98.1%[EB/OL]., 〈https://baijiahao.baidu.com/s?id=1694267691702434607&wfr=spider&for=pc,〉2016-04-15/2021-08-16.

教授制贩丧尸药："3,4-亚甲二氧基甲卡西酮" [EB/OL]., 〈https://www.xianjichina.com/news/details_32627.html〉,2017-04-14/2021-08-16.

大力实施"清源断流"战略 深入推进"净边"专项行动 [EB/OL]., 〈https://baijiahao.baidu.com/s?id=1689657429194965469&wfr=spider&for=pc〉,2021-01-23/2021-08-16.

罗沙.全国法院三年多来一审审结拐卖妇女儿童案件超2800件[EB/OL].,〈https://baijiahao.baidu.com/s?id=1620794957557575875&wfr=spider&for=pc,〉2018-12-25/2021-08-16.

刘岚.最高人民法院印发《全国部分法院审理毒品犯罪案件工作座谈会纪要》[EB/OL].,〈https://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08/12/id/337664.shtml〉, 2008-12-22/2021-08-16.

李凛."互联网+反拐"助力全国"打拐"专项行动[EB/OL].,〈http://www.chinadaily.com.cn/dfpd/2009-11/27/content_9061970.html〉,2016-04-15/2021-08-16.

浙江高院发布毒品犯罪司法大数据 [EB/OL].,〈https://www.163.com/dy/article/GH98OOL4051497V6.html〉,2021-01-23/2021-08-16.

走中国特色毒品问题治理之路打赢新时代禁毒人民战争 [EB/OL].,〈https://baijiahao.baidu.com/s?id=1645886323089996608&wfr=spider&for=pc〉,2019-09-28/2021-08-16.

中国已判处多名外国罪犯死刑，罪有应得[EB/OL],〈https://www.163.com/dy/article/GH9O8EJU05128EJD.html〉,2021-08-13/2021-08-16.

最高人民法院：拐卖儿童犯罪分子重刑率高于60%[EB/OL].〈http://www.chinadaily.com.cn/dfpd/2009-11/27/content_9061970.html〉2009-11-27/2021-08-16.

最高人民法院关于拐卖妇女儿童犯罪案件的三起典型案例 [EB/OL].,〈https://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11/12/id/893.shtml〉,2011-03-24/2021-08-16.

致敬缉毒英雄们，愿天下无"毒"！ [EB/OL].,〈https://new.qq.com/omn/20200627/20200627A08U9P00.html〉,/2021-08-16.

通报全国公安机关禁毒工作新成效[EB/OL].,〈https://www.mps.gov.cn/n2254536/n2254544/n2254552/n7946755/index.html〉,2021-06-24/2021-08-16.

陕西：将符合条件的被拐卖受害人纳入社会救助范围[EB/OL].,〈https://www.sanqin.com/2021-08/04/content_9166603.html〉, 2021-08-04/2021-08-16.

黄歆尧等.中国铁腕禁毒打击新型合成毒品[EB/OL].,〈https://baijiahao.baidu.com/s?id=1670304141897432563&wfr=spider&for=pc,〉

黄歆尧等.中国铁腕禁毒打击新型合成毒品[EB/OL].,,〈https://baijiahao.baidu.com/s?id=1670304141897432563&wfr=spider&for=pc,〉

Д.ЖАРГАЛСАЙХАН, 2018.1.3., “사형 제도 재개에 대하여”, 〈https://jargaldefacto.com/article/%EC%82%AC%ED%98%95-%EC%A0%9C%EB%8F%84-%EC%9E%AC%EA%B0%9C%EC%97%90-%EB%8C%80%ED%95%98%EC%97%AC〉

(4) 웹문서

약물난용대책추진회의「제5차 약물 난용 방지 5개년 전략」(薬物乱用対策推進会議「第五次薬物乱用防止五か年戦略」, 2018., 〈https://www.mhlw.go.jp/content/11120000/000339984.pdf〉

약물난용대책추진회의,「제5차 약물 난용 방지 5개년 전략」(薬物乱用対策推進会議,「『第五次薬物乱用防止五か年戦略』follow up 」, 2019., 〈https://www.mhlw.go.jp/content/11120000/000544239.pdf〉

일본변호사연합회,「死刑制度の廃止を求める要請書」〈https://www.nichibenren.or.jp/library/pdf/document/opinion/2020/opinion_201023.pdf〉

AICHR, 〈https://aichr.org/wp-content/uploads/2018/10/ASEAN-Human-Rights-Declaration.pdf〉

AICHR, 〈https://aichr.org/wp-content/uploads/2018/10/Guidelines_on_the_Operations_of_AICHR.pdf〉

AICHR, 〈https://aichr.org/wp-content/uploads/2019/01/ASEAN-Charter.pdf〉

AICHR, 〈https://aichr.org/wp-content/uploads/2019/01/Guidelines_On_The_AICHRS_Relations_With__CSOs.pdf〉

AICHR, 〈https://aichr.org/wp-content/uploads/2020/02/Cha-am-Hua-Hin-Declaration-AICHR.pdf〉

AICHR, 〈https://aichr.org/wp-content/uploads/2020/02/TOR-of-AICHR.pdf〉

AICHR, 〈https://aichr.org/wp-content/uploads/2020/10/AICHR-FYWP-2021-2025-approved-at-53rd-AMM_for-web.pdf〉

ASEAN, 〈https://asean.org/storage/FINAL-ACRF_adopted_37th-ASEAN-Summit_18122020.pdf〉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and Union for Civil Liberty, 'The 39th Working Group Meeting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Review Proces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FIDH.org, 2021) 〈https://www.fidh.org/IMG/pdf/fidh_ucl_upr_thailand_march_2021_th.pdf〉

The Government Gazette, 'Regulation No. 29' (The Government Gazette, 29 July 2021), http://www.ratchakitcha.soc.go.th/DATA/PDF/2564/E/170/T_0001.PDF〉

《全球人口贩运问题报告内容提要》(2009)，[EB/OL]，〈https://www.unodc.org/documents/human-trafficking/Executive_summary_chinese.pdf〉，2021-08-16.

Abstract

The network construc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co-operation for the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related with criminal policy in East-Asia

Kim, KyoungChan[1)]·LEE, Joonpyo·Syn, Dongyiel·Amelya Gustina·
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This study began] with the aim of constructing a network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East Asian countries and devising criminal policy cooperation plans for East Asian countries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Also this study was performed to overcome the situation of weak human rights protection in East Asia and lay the foundation for continuous development through smooth mutual exchange as well as protecting and respecting each other as humans in a peaceful, free and safe environment.

It is often suggested that each country in East Asia recognizes and views human rights,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in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and environment, as well as culture, religion, language, ideology, legal system, government and state composition. This is linked to critical or skeptical opinions or arguments in the stabl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r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East Asia.

Despite the fact that universal human rights aimed at the United State (UN) have been presented as basic standards for respect and protec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World War I and World War II, problems,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of uncomfortable relations between East Asian

1) Research fellow, Ph.D.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Justice, KICJ

countries in order for universal human rights to be realized in each country in East Asia, problems,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due to inconvenient relations between countries in East Asia and various interests or differences in international interests and positions are discuss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recognize and embrace related problems and limitations rather than maintaining a critical or skeptical view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situation or conditions of each country in East Asia or sticking to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In addition, although it may be difficult, we tried to find possible way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in each country in East Asia, discuss, conceive, participate, and suggest ways to cooperate.

The network for human rights cooperation in East Asia can be conceived in a complex, overlapping, and multidimensional manner, not in just one network method. Cooperation measures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require roles and efforts from various organizations or organizations, including related state agencies, government agencies, local government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on-profit organizations, academic and research institutes, and lawyers organizations.

The task of protecting human rights and preventing human rights violations may be personal tasks, but first of all, it is a national task and also a task that requires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citizens. Also it is related to the democracy of the government composition method as well as the method of national composition. Since the political systems, state systems, and ideological systems of each state in East Asian region are very different, it is necessary to share systems and experiences related to democracy and expand opportunities and time for mutual exchange rather than unilaterally criticizing with any typical standards for democracy.

It would be desirable for any country or government in East Asia to make its

own efforts and policie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but there may be countries and governments that do not or feel difficult. Therefore, cooperation and mutual exchange between the state and the government to protect human rights and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may be necessary, and collecting opinions, communicating, and participating in healthy civil society may be necessary and helpful.

In the case of state agencies, various state agencies in each country in East Asia are closely related to human rights protection work, but first of all, the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s important and can play many roles. Of course, the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cannot always play the best or best role. Nevertheless, i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that it can voice checks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the state or government may commit and present opinions different from the government's position to prepare policies or legal systems to protect human rights.

In the case of state agencies, various state agencies in each country in East Asia are closely related to human rights protection work, but first of all, the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s important and can play many roles. Of course, the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cannot always play the best or best role. Nevertheless, i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that it can voice of checks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the state or government may commit and present opinions different from the government's position to prepare policies or legal systems to protect human rights.

Among the countries in East Asia, Korea, Mongolia, Indonesia, Malaysia, the Philippines, Thailand, Myanmar, and Hong Kong have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depending on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each country, o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does not play a big role. However, since the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can produce opinions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s position, it is a very important state agency in human rights cooperation in East Asia, and countries without an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eed cooperation to establish it.

In Japan, for exampl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 human rights advocacy bureau in the Ministry of Justice as a government agency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its citizens, but it is vulnerable to presenting opinions on human rights protection at a different level from the government's voice. This leads to a national limit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s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crimes related to Japanese military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the 1930s and 1940s were later revealed and discussed in the 1990s, that is, 50 to 60 years later, and can be said to be a continuous task today—[2] and human rights violations related to forced labor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beyond the government's position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otection cooperation.

Therefore, countries with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in each country in East Asia need to share and provide their experiences and knowledge so that countries that do not have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can have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In addition, It would be helpful tha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each country in East Asia can share their experiences, efforts, and achievements so that their governments can have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by sharing opinions, communicating, and cooperating with each other.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what specific procedures and measures each country in East Asia ha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Various government agencies can be applied in a broad sense, but in particular, the ministry of justice,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perform tasks directly

2) Jeong Jin-sung, sexual slavery in the Japanese military,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ing Cultural Center, 2016, p. 35.

related to civil rights protec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so it is important whether they have organizations and department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within themselves.

Of course, even if their role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cannot be said to be very satisfactor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in Korea have their own organizations and department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prepare guidelin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Efforts and achievement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prosecution and police in the past, as well as the past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Korea, can be valuable source for human rights cooperation in East Asia.

There are many countries in East Asia that do not have organizations and department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within prosecutors and police. Even if the korean government agency lacks experience and system related to human rights protection, it is worth discussing the vulnerabilities and problems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sharing them in relation to human rights protection laws.[3)]

This can help promote mutual cooperation to protect human rights in East Asia.

In the case of China, talks on human rights between the U.S. and China are fiercely progressing, and in the case of China, they are wary of politicizing and meansing human rights. Theoretical arguments and perspectives on human rights protection, including the issue of economic subordination of underdeveloped countries in the process of realizing universal human rights, are worth sufficiently reviewing and considering.

---

3) Related regulations are presented in the appendix, such as the prosecution's guidelines for the opera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s, the inspection instructions of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s to prosecution's direct investigation cases, police human rights protection rule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investigation rules.

China is very interested in Eurasia's “One Belt and One Road”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for economic exchang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joint discussions on human rights protection between China its neighboring countries are necessary.

In addition, China was criticized a lot in the early stages of the outbreak of COVID-19, but the fact that it has shown certain results in related quarantine and safety measures and is conduc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can be partially positively evaluated.

Therefore, China's mutual cooperation to protect human rights in East Asia is expected to discuss or expand mutual cooperation in theoretical discussions and dialogu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COVID-19 quarantine and safety, and academic cooperation and exchange to improve the national legal system.

Mongolia has experience in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system in East Asian countries. Of course, Mongolia has a voice by some group of its people to revive or maintain the death penalty domestically. Mongolia's experiences and achievements are worth sharing and a good precedent for countries like Korea that are making great effort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but have not yet abolished it, or most countries that currently maintain it in East Asia.

It can be said that few countries in East Asia clearly present the value of respect for their lives. This appears as a national punishment, the death penalty, and if the state justifies and institutionalizes life infringement, it may be vulnerable to large-scale and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genocide or forced disappearance committed by the state or government. There is also a contradiction in realizing and teaching revenge by using the people as hostage of the value of justice.

Since most countries in East Asia have the death penalty, they may be vulnerable or insensitive to various ways and for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various fields in the future, and may not be active in efforts to protect human rights at the government or state level. Accordingly, mutual cooperation between East Asian countrie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s requested, and mutual cooperation to continuously abolish the death penalty needs to be promoted.

Mongolia has already abolished the death penalty nationwide, so in East Asia, Mongolian state or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cooperate with Korea on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Korea may also be able to cooperate with a number of lawmakers, political partie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lawyers' organizations, academic organizations and scholars in favor of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n the case of Japan, lawyers' organization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cademic organizations, or scholars in favor of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system will be able to gather opinions and carry out solidarity for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system and human rights protection in East Asia.

If cooperation or solidarity for human rights protection at the national or government level is difficult or hard, cooperation and solidarity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can also be an effective method. There is a painful experience of experiencing many difficulties related to national human rights violations as in Gwangju and Jeju, Geochang,[4] Sancheong, Hamyang, and Nogunji areas of Korea,[5] and various efforts and attempts are being made to overcome them.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policies and efforts to restore the honor of the Korean government, compensation for damages,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improve related organizations, and collect opinions and discussions below. These policies and contents can be good content that constitutes practical content in the composition of the entire human rights

---

4) Han In-seop, 1951 Geochang Case Criminal Trial Review,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Volume 44, No. 2, 2003, p. 179.

5) In addition, certain investigations and reviews may be required along with local citizens for large-scale massacres that have not been identified or publicized so far.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ing in the region need to be programmed so that related content can be shared locally and nationwide and history education can be conducted.

cooperation network and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r mutual cooperation in East Asia, and can play a certain role and help in cooperation between local cities in addition to government-level cooperation. In addition to this region,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investigate and review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by soldiers or states that have not been identified historically.

Human rights violations in various ways committed by countries occurring in each country in East Asia may be difficult to directly protect human rights or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It is necessary to seek mutual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o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the region where the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occurred in various ways.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s discovered and investigated in each region can help enhance human rights protection capabilities nationwide. The systematic investigation and composi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each region can also be used as the contents of human rights protectio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in East Asia.

Crimes that occur internationally in East Asia include drug crimes, voice fishing(phishing) crimes, corruption crimes, (forced) disappearance, concealment of criminal proceeds, human trafficking, prostitution, and terrorist crimes. There are limitations in that this study cannot deal with all of these various problems and crimes occurring in East Asia, and follow-up studies can be conducted by detailed topics and areas in future studies and tasks.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drug crimes, disappearances, and damage to overseas citizens. For this reason, drug crimes are the oldest and least eradicated crimes, have the nature of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s, and are easy to jointly recognize problems, so international joint responses and mutual cooperation are the most receptive and empathize with the need for cooperation. In addition, as the movement and exchange of population increase for economic, cultural, and political reasons in East Asia, most countries in East Asia are exposed to

the risk of disappearance and overseas citizens crime, requiring mutual cooperation between East Asian countries and citizens.

Regarding the safety of the East Asian region, numerous people have lost their lives or are threatened with safety due to the recent outbreak of COVID-19 since 2020. Safety is the most fundamental to human rights protection, and infections spreading internationally are inevitable for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ake news or hate crimes that occur in this regard are representative area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ooperation for preven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s required institutionally and educationally.

In reality, each country in East Asia does not have an appropriate human rights protection or human rights infringement supervisory department in state organizations or government agencie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In addition, it is regrettable that it is not easy to express, collect, and convey various opinion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each country in East Asia.

Furthermore, mutu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between som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East Asia are achieved, but mutual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East Asia have been affected by COVID-19, but they are not active and also difficult.

Establishing human rights-related departments or human rights protection education in countries or governments in East Asia can be of some help to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program to support developing or undeveloped countries in East Asia. Support and education need to be conducted appropriately for the local situation while collecting and reflecting local opinions, including material support, on matters needed locally.

Reviewing and reflecting institutional situations in Northeast Asia and Southeast Asia and existing cooperative situations with Korea may be very different, so seeking ways to cooperate by individualizing them by case by case may be

necessary as a way to increase ease of mutual cooperation and expand future co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protection agencies or departments of the state or government, human rights protection education, and human rights protection training programs target government agencies o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Northeast Asia and Southeast Asia. One way to review is to partially support human rights protection-related departments of related research institute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operation Organization in each country in East Asia, the Korean Human Rights Commission or the Korean Criminology and Justice Institute (KICJ).

Differences in language, religion, culture, race, ideology, and legal systems and differences in economic, political, security, and military purposes or interests in relation to mutual cooperation to protect human rights and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in East Asia are recognized as obstacles. It also continuously raises or discusses the difficulties, impossibilities, and inconveniences of realistic and specific cooperation in relation to human rights cooperation in East Asia.

It is well known that macro-level mutual cooperation or mutual solidarity to protect human rights or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in East Asia may be difficult to proceed with any single effort or project. Therefore, it may be necessary to gradually expand discussions and mutual cooperation, focusing on areas where mutual cooperation is possible and areas where it is necessary, urgent, and empathy is possible.

Not only offline mutual cooperation and mutual solidarity, but also online mutual cooperation and mutual solidarity—Using some of the metabuses that are drawing a lot of attention recently—[6]can be used in one way.

---

6)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ocal situation and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metabuses ma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ituation in East Asian countries with low technology, but it can have a negative effect, but it may be necessary to actively collect local opinions, participate and discuss coope ration plans.

It is pointed out that online cooperation and mutual solidarity have difficulty in sufficient intimacy or information exchange due to lack of direct contact and meeting with each other, and that human rights education or human rights protection activities may be formally biased. In addition, it is true that many of the countries in East Asia have difficulties in universal use or limitations in manpower due to their lack of Internet or online utilization.

Nevertheless, mutual exchanges using the Internet and online continue to expand, focusing on possible places, regions, and targets, while also conducting inspections on places, regions, and targets that are unable to participate or alienated.

Education and training to protect human rights, cooperate to protect human rights, and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in East Asia need to be reviewed offline and online, that is, online and offline advantages, disadvantages, and limitations, and overcome problems.

In addition to 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criminal justice organiza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Justice, prosecutors, and police,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is also important. There are various committee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separate human rights committee. I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can be properly formed in each country in East Asia, members of each national council will benefit from more democratically collecting the will of the people on regional issues and issues in East Asia. In addition, it can be of great help in establishing a mutual cooperation system, organization, agreement, or norm of human rights norms locally in East Asia.

In addition, if government agencies in East Asian countries have related regulations, including human rights-related departments, such as laws and rules on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it can also help to realize them practically.

Therefore, various related organizations need to cooperate so that departments can be established for countries that do not have government agencies or human rights-related departments in each East Asian country. The contents of the korean prosecution and police human rights protection regulations attached in the appendix (will be provided later), could also be one way for government agencies from East Asian countries to communicate, exchange, share, and continue discussions.

It can be said that Korea is somewhat ahead of the human rights policy in East Asia, but it is very regrettable that the national assembly does not have a human rights committe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each country in East Asia are necessary for mutual cooperation in human rights protection in East Asia. Thi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a human rights cooperation system, organization, and regional norms in East Asia, and can be said to be necessary and requested.

In the case of the East Asian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participation of participants, including countries, parliament, government agencies, local governments, local councils, lawyer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rather than presenting the final version at once,

Formally,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be proposed and made in a form that properly reflects various historical major cases and special contents in East Asia, from resolutions to declarations and charters.

It can be said that the human rights system in East Asia is also difficult to form any completed form of human rights system at once. Therefore, it is also important for criminal justice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parliament, government's ministry of justice, prosecution, polic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local council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lawyers, and individuals to continue cooperation. In addition, programs related to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training, human rights cooperation,

and forums for human rights discussions can be organized in various online and offline forms.

Of course, it may be impossible or difficult for most countries, government agencies, council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participate from the beginning, but it will be able to be expanded as it proceeds to the extent, content, and method possible.

Although Korea may not be said to have excellent human rights protection or human rights policies domestically, it has made considerable development among countries in East Asia and is pushing for improvement through many discussions. Criminal justice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r other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Assembly (needed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committee),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in Gwangju and Jeju (needed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regional humanrights cooperation),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ctive participation in human rights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government and East Asia) can participate in human rights cooperation programs and training in East Asia.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KICJ), Thailand Institute of Justice (TIJ), The College for Criminal Law Science of Beijing Normal University of China (CCLS), UNAFEI in Japan, Australia's Australian Institute of Crime (AIC), th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C), Sweden's Laul Wallenberg Institute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HEUNI (European Institute for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ffiliated with the United Nations) in Finland are wonderful partners as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UNPNI, UN Program Network Institute)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East Asia.

KICJ aims to strengthen mutual cooperation with the organizations above

including criminal justice agencies such as police, research institutes and professional researchers, local governments, human rights and peac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cluding lawyer organizations.

In addition,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KICJ) want to promote and activate East Asian cooperation programs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east Asia and Southeast Asia with criminal justice agencies such as prosecutors, police, universities, various research institut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uman rights cooperation programme including training course and Human Rights Education Institute of East Asia in Korea could be useful for the Network construc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co-operation for the prevention of human rights in East Asia

Keyword: The Cooperation of Human Rights in East Asia, The Cooperation for Peace in East Asia, The Mutual Assistance of Criminal Matters,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East Asia, Crime prevention, Death Penalty, Drug Crime, Enforced Disappearance, Covid-19

부록

부록1 | 검찰의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대검 예규 제1202호, 인권감독담당관] [2021. 6. 14. 시행]

제정 대검 예규 제1202호, 2021. 6. 14.

제1장 총칙

1조(목적)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검찰청 보고) 인권보호관(차장검사를 두지 않은 지청은 인권보호담당관을 말한다)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각 10일까지 분기별 인권업무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인권감독담당관)에게 보고한다.

제3조(비밀의 엄수) 인권보호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4조(유관기관과 교류·협력) 인권보호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은 검찰의 인권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에 관해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규정 등에 의한다.

제2장 인권보호관의 배치 및 직무

제6조(인권보호관의 배치 등)①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각급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②대검찰청은 인권정책관을 인권보호관으로 한다.

③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를 인권보호관으로 배치하고, 그 외의 지청은 지청장을 인권보호관으로 한다.

제7조(인권보호관의 직무 등)①대검찰청 인권정책관은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에 관하여 각급 검찰청 소속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통할·감독한다.

②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인권보호관은 인권보호업무에 관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을 직접 보좌한다.

③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인권보호수사규칙」제70조에 따른 인권보호에 관련된 사항(인권 관련 제도의 개선, 인권개선에 필요한 실태·통계 조사, 인권교육,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배사항에 대한 시정 등)

2.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 소관 예규·지침·지시 등의 이행 등 점검에 관한 사항

3. 검찰업무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처리·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지침 및 다른 지침·지시 등에서 인권보호관의 업무로 정한 사항

제8조(직원배치)각급 검찰청의 장은 인권보호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는 등 그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장 인권보호담당관의 지정 및 직무

제9조(인권보호담당관의 지정)①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장은 소속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 이외의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제10조(인권보호담당관의 직무)①인권보호담당관은「인권보호수사규칙」제71조에 따라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보좌한다.

②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속 검찰청의 장이 지정하거나 인권보호관이 위임한 사항

2.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1조 제2항의 '상담업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 지침 및 다른 지침·지시 등에서 인권보호담당관의 업무로 정한 사항

제4장 인권보호관 회의 및 인권간담회

제11조(인권보호관 회의)①대검찰청 인권정책관은 분기별로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에 배치된 인권보호관 및 대검찰청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한다.

②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은 제1항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인권보호관은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분기별 주요 활동상황 등을 발표하고, 각급 검찰청의 인권업무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제12조(인권간담회) 인권보호관(차장검사를 두지 않은 지청은 인권보호담당관을 말한다)은 매 2개월에 1회 이상 피해자지원 담당관, 양성평등 상담원 및 민원전담관 등 소속 청의 인권 관련 업무 담당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과 함께 '인권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제5장 인권센터

제13조(인권센터의 설치) ① 대검찰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실(차장검사를 두지 않은 지청은 인권보호담당관실을 말한다)에 '○○고등(지방)검찰청 인권센터' 또는 '○○지청 인권센터' 등의 형태로 제작한 명패를 부착한다.

② 대검찰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민원실 또는 그 검찰청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이하 '민원실')에 인권센터 신고 접수·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고등(지방)검찰청 인권센터 신고 접수·상담' 또는 '○○지청 인권센터 신고 접수·상담' 등의 형태로 제작한 명패를 부착한다.

제14조(홍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인권센터의 위치 및 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청사입구, 복도, 민원실, 엘리베이터, 휴게실 등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비치한다.

부 칙〈2021. 6. 14.〉

제1조【시행일자】 이 지침은 2021. 6. 14.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대검 예규 폐지】이 지침의 시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검 예규를 폐지한다.

1. 「인권감독관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1120호)
2. 「검찰청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1196호)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록2 |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

[시행 2021. 9. 1.] [대검찰청예규 제1226호, 2021. 9. 1., 제정]
대검찰청(인권감독담당관), 02-3480-296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관의 점검 절차를 정하여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검사(수사과·조사과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직접수사 업무에 관여하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은 반드시 이 지침에 따른 인권보호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이 별도로 배치되지 않은 검찰청(부치지청 및 단독지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인권보호관의 점검항목) ①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소속 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수사단계에서 '인권보호에 관한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1.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의 청구
2. 출국금지 및 정지와 그 연장의 요청, 통지유예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 제1호 공소제기의 결정

② 제1항의 '인권보호에 관한 법령 등'이라 함은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과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수사단계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지시 등을 말하며, 그 예시는 별지 1호 기재와 같다.

제4조(인권보호관의 점검절차) ① 지검 및 차치지청의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순차협조 등의 방식으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한다.

1. 기관장 결재사항 : 차장검사 결재 후 점검

2. 차장검사 전결사항 : 부장검사 결재 후 점검(단, 차장검사와 인권보호관이 해당 점검사항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결재선을 상향하여 기관장의 결재에 따른다)

② 고검의 인권보호관 점검절차는 제1항에 따르되 부장검사가 배치되지 않은 점 등 청별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보호관 점검은 별지 2호 '직접수사 개시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결과' 양식에 따른다.

제5조(인권보호관의 점검방법) ① 수사검사는 제3조의 각 단계에서 제4조의 순서에 따라 해당 사건기록과 함께 단계별 작성서류에 대하여 인권보호관에게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인권보호관은 제3조의 점검을 위하여 수사검사 또는 중간결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기타 자료의 제출

2. 질문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답변

3. 그 밖에 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인권보호관은 제3조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수사보안에 유의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인권보호관의 점검기한) ① 인권보호관은 제3조의 각 항목을 점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점검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의 청구 : 2~3일

2. 출국금지 및 정지와 그 연장의 요청, 통지유예 : 1~2일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 제1호 공소제기의 결정 : 3~5일

② 인권보호관은 점검대상사건의 복잡성, 기록 분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관장의 승인 하에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점검결과서의 보존 등) ① 인권보호관은 제4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결과서를 제4조 제1항의 최종 결재가 완료된 다음 인권보호관실에 3년간 보존한다. 다만 해당 사건이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된 경우에는 그 사건의 공소시효, 민사상 시효, 징계시효가 모두 만료될 때까지 보존한다.

②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8조(점검누락 사안에 대한 대검보고 및 사후점검) ① 인권보호관은 소속 청 검사의 이 지침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점검 요청을 누락한 사안이 있는 경우 누락 경위, 인권침해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검찰청 인권감독담당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에 따른 점검업무는 인권보호관에게 전속하며, 인권보호관의 부재로 인해 인권보호관이 점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이 제3조 각 호의 진행단계 이후라도 사후점검을 통해 기관장 등에게 점검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 ① 이 지침에 따른 인권보호관의 점검 및 보고 절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관장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 따른 인권보호관의 점검 및 보고 절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검사는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그 이견을 해소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지시·규정 등과의 관계) ①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수사절차 및 처분 등을 대검찰청 주무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기관장의 판단으로 이 지침에 따른 인권보호관의 점검을 생략하거나 점검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2020. 5. 29.자 대검찰청 지시('출국금지 관련 인권개선 표준화 방안' 시행)에 따른 인권보호관의 KICS 시스템(출국금지관리) '순차협조' 결재와 이 지침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점검은 병존한다.

③ 2020. 10. 12.자 대검찰청 지시['인권중심 수사관행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1차)' 시행계획 전파]의 '압수수색 분야(반부패부)' 중 인권보호관(舊인권감독관)의 의견제시 및 결재 부분은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점검으로 대체한다.

④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관의 점검 절차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규정이나 지시 등에 의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 7. 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1226호, 2021. 09. 01.〉

제1조(시행일자) 이 예규는 2021. 9. 1.부터 시행한다.

부록3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을 의미한다.
2. "인권침해"란 경찰관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사담당자"란 인권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제3조(설치)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1. 인권과 관련된 경찰의 제도·정책·관행의 개선
2.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의 시정
3.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규약 감독 기구·국가별 정례인권검토의 권고안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4.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인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교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 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에서 인권 분야에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그러한 단체로부터 인권위원으로 위촉되기에 적합하다고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

제6조(위촉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② 위촉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고,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입건 전 조사·수사 중인 사건에 청탁 또는 경찰 인사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으로 정기회의에 3회 불참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감사, 수사 또는 조사, 재판 등을 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사안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특정 위원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위원의 제척사유 유무, 기피사유 유무에 대해서 심사한다. 이 경우 제척사유가 있거나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심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촉 일자가 빠른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촉 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월 1회, 시·도경찰청은 분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① 간사는 의안에 대한 자료 수집, 조사 연구, 각 위원과의 연락, 회의의

소집 통지, 개최 준비, 회의록 작성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경찰청 : 인권보호담당관
2. 시·도경찰청 : 피해자보호계장 또는 소관 업무 계장

제14조(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조치) ① 제4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이하 '권고등'이라고 한다)을 받은 청장은 그 권고 등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권고등의 내용을 이행할 경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권고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권고등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면을 토대로 이행 계획 또는 불수용 이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청장에게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제15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협조해 줄 것을 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안건과 관련 있는 경찰관등의 위원회 출석
2. 안건과 관련 있는 자료 및 의견의 제출
3. 경찰 관련 시설의 방문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인권교육

제18조(인권교육계획의 수립) ① 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인권교육의 방법) 경찰관등은 대면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론식, 참여식 교육을 권장한다.

제20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경찰관등은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인권의 개념 및 역사의 이해
2. 인권보장의 필요성 및 범위의 이해
3. 인권보호 모범 및 침해 사례
4. 인권 정책 및 관련 법령의 이해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의 의무

제4장 인권영향평가

제21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경찰청장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치안 행정이 구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
2.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3. 참가인원, 내용, 동원 경력의 규모, 배치 장비 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사전에 청문, 공청회 등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정책 및 계획

제22조(평가의 기준)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 법률유보의 원칙
2.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불문법원칙
3. 적법절차의 원칙
4. 그 밖에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 및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의 존재 여부

제23조(평가 절차)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 해당 안건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하기 60일 이전
2. 제21조제1항제2호: 해당 사안이 확정되기 이전
3. 제21조제1항제3호: 집회 및 시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기한에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자문 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4조(점검) 인권보호담당관은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인권진단

제25조(진단사항)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단하여야 한다.

1.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2. 인권교육 추진 현황
3.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

제26조(방법) 진단은 대상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관찰, 서류 점검, 면담, 설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방문 진단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처리

제27조(비밀 엄수 및 절차준수) ① 조사담당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조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및 관계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조사담당자는 진정인등에게 법령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적법절차를 지키며, 피진정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진정인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진정을 조사하는 동안 진정인등에게 처리 과정과 결과를 친절하게 안내하고 설명하여, 진정인등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진정의 접수 및 처리) ① 인권침해 진정은 문서(우편·팩스 및 컴퓨터 통신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전화 또는 구두로 접수 받으며, 담당 부서는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로 한다.

②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은 진정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찰청장이 직접 조사를 명하거나 중대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 또는 인권침해의 단서가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 관서 또는 부서가 특정되거나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사무가 확인될 경우에는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에 접수된 진정을 이첩할 수 있다.

제29조(진정의 각하) ①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1.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진정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으로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모두 완성된 경우

5.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기간의 경과 등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종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진정이 익명(匿名)이나 가명(假名)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경우

8. 기각 또는 각하된 진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진정한 경우

9. 진정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관계자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진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되는 경우

1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서의 내용과 같은 사실을 이미 조사 중이거나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진정인의 진정 취소를 이유로 각하 처리된 사건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진정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제30조(조사의 촉탁) ① 제28조제3항에 의해 사건을 이첩 받은 경찰청 소속 국·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조사 촉탁서를 기록에 첨부하여 관련 부서의 장에게 사건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촉탁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여 1개월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촉탁한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조사기간이 1개월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 조사의 진행 경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협조 요청) 조사담당자는 피진정인을 포함한 경찰관등에게 사건 조사를 위하여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 제출
2.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3. 사건 관련 장소에서의 현장조사
4. 그 밖에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2조(물건 등의 보관 등) ① 조사담당자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피진정인 또는 참고인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 중 사건 조사에 필요한 물건은 보관할 수 있다.

② 조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자에게 내주고 사건기록에 그 물건 등의 번호·명칭 및 내용, 제출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제출받은 물건에 사건번호와 표제, 제출자 성명, 물건 번호, 보관자 성명 등을 적은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 조사담당자는 제출자가 보관 중인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있다.

1.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출한 물건이 있는 경우
2.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물건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33조(사건의 분리 및 병합) 조사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수사 개시로 인한 조사중단) 조사담당자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검찰 등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종결하거나 해당 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다만,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 절차는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다.

제35조(조사중지) ① 조사담당자는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건 해결과 진상 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조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조사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건 표지에 새롭게 사건을 재개한 사유를 적고 즉시 조사를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제36조(진정의 취소) ① 진정인은 진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분명히 밝힌 취소장(전자우편 등 전자문서 형식의 취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이 경찰관등에게 구두로 진정의 취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원 등이 대신 작성하여 진정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취소조서를 취소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전화로 진정취소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전화통화 보고서를 취소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유치인이거나 기타 시설 수용자인 경우에 진정을 취소하거나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려면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취소장을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손도장을 포함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진정의 기각)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진정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할 수 있다.

1.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진정 내용이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따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3. 진정 내용은 사실이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8조(인용 및 구제조치) ①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련 부서에 그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발 또는 수사의뢰

2. 인권침해 행위 중지 및 기타 적절한 조치

3.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이나 법률구조 등 안내

4. 인권침해 행위를 한 당사자나 책임자에 대한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5. 인권침해 사실과 관련된 제도 개선

②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인권침해의 의심이 있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련 부서에 그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의료·식사 및 옷 등의 제공

2. 유치장소의 변경

3.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명령

4. 인권침해 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찰관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5.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조치는 함께 할 수 있다.

④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지시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즉시 지시 내용을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자문)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 진상조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40조(사건 결정의 통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결정내용과 그 사유를 적어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결정사항 및 그 사유를 적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통지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3항에 따라 진정을 이첩하는 경우
2.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3. 제34조에 따라 조사를 중단하거나 이첩한 경우
4. 제35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5. 제37조에 따라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6. 제38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제41조(기록 등의 열람·복사) 진정인은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담당관실에 청구할 수 있다.

제7장 진상조사단

제42조 (진상조사단의 구성) ① 경찰청장은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해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인권침해의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진상조사단 구성에 대하여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② 진상조사단은 경찰청 차장 직속으로 두고 진상조사팀, 실무지원팀, 민간조사자문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단장은 경찰청 소속 경무관급 공무원 중에서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④ 단장은 진상조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장 및 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3조 (진상조사팀의 구성 및 임무) ① 팀장은 경찰청 소속 총경급 중에서 단장의 의견을 들어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② 팀원은 인권·감찰·감사·수사 등의 분야에서 조사경험이 있는 경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파견 받은 조사관으로 구성하되, 팀원 수는 대상사건의 관련자 수와 조사범위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정한다.

③ 진상조사팀은 관련자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한다.

④ 제3항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실무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① 팀장은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으로 하고, 팀원은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② 실무지원팀은 진상조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상조사단 및 진상조사팀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45조 (민간조사자문단의 구성 및 임무) ① 민간조사자문단은 '인권분야 전문가 인력풀'에 포함된 사람 중에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의 '인권분야 전문가 인력풀'은 인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구성한다.

1. 사회학·법학 등 인권분야에 관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조사대상 사건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 단원의 결격,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민간조사자문단은 조사팀의 조사현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조사팀의 조사활동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조사활동 등에 참여한 자문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 (운영기간) 진상조사단은 원칙적으로 구성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 (결과발표) ① 단장은 대상사건에 대한 사건의 진상, 원인분석 및 그에 따른 조치의견 등을 포함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② 단장은 진상조사 결과 발표 전 조사결과에 대해 경찰위원회와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록4 |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보호의 책무) ① 검사는 피의자, 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이하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② 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검찰청법」 제46조에 따라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수사서기관 등 수사업무 종사자(이하 "수사업무종사자"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제3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는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또한 같다.

제4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5조(공정한 수사) ① 검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가입 정당, 소속 기업, 사회단체, 그 밖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③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분이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하거나 소속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상급자는 사건을 재배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수사의 비례성) 검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해서는 안 된다.

제7조(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임의수사의 원칙) ①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를 활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②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제9조(수사지휘를 통한 인권보호) 검사는 수사업무종사자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바로잡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수사업무종사자의 의무) 수사업무종사자는 이 규칙에서 검사의 의무로 규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제11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검찰청의 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검찰총장 또는 법무연수원장이 대검찰청 또는 법무연수원 등에서 인권보호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인권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적용 범위)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가 수사절차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1절 수사의 착수

제13조(내사·수사의 착수) 검사는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사·수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4조(내사·수사의 종결) 검사는 내사·수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고,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내사·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제15조(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①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중요 수사 관련 보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및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 없이 충실하게 보고해야 한다.

1.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4.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 상당 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5.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6. 범죄수사·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운영에 참고될 사건

제17조(출국금지 등의 억제) 검사는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나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제2절 체포·구속

제18조(체포·구속의 최소화) 체포·구속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체포의 남용 금지) 체포는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20조(불구속수사 원칙)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소명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한다.

2. 범행의 성격, 예상되는 선고형량, 피의자의 성행, 전과,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 또는 그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제21조(구속영장 재청구)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 조사를 실시한 후 신중하게 재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2조(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인권침해가 의심되거나 그 밖에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를 면담·조사해야 한다.

제23조(체포·구속 시의 준수사항)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체포·구속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2. 피의자에게 체포·구속하는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체포·구속되는 피의자가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4조(체포 등의 신속한 통지) ①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죄명, 체포·구속한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와는 별도로 체포·구속하여 인치(引致)한 즉시 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다만, 공범의 도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체포·구속 당시 제1항 전단에서 정한 사람에게 이미 통지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25조(지명수배의 신속한 해제) 검사는 지명수배자를 검거 또는 인수하였거나 지명수배자가 검찰에 자진출석하는 등 지명수배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제26조(구속의 취소) 검사는 구속 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취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7조(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 ① 검사는 구속기간 이내라도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② 검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제28조(구치시설 확인) 검사는 검찰청 안에 설치된 구속피의자등의 구치시설에 대해 체포·구속장소 감찰을 할 때 해당 시설이 수용자의 인권과 건강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3절 압수·수색·검증 등

제29조(압수·수색영장 청구 시의 유의사항) ① 압수·수색·검증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② 검사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에 압수·수색할 물건이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압수·수색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아닌 자의 신체·물건·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제2항의 자료 외에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제30조(압수·수색 시의 준수사항) 검사는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압수·수색의 대상자에게 압수·수색하는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을 알려주고,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압수·수색의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2.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주간에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취지가 기재된 영장에 의하여 야간에 할 수 있다.

3. 압수·수색의 대상자, 변호인, 그 밖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4.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압수·수색은 수사상 필요한 목적을 달성한 즉시 신속하게 종료해야 하고, 불필요하게 장시간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수사에 필요한 물건만을 압수하고, 다른 물건이 압수 대상물과 섞여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가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한다.

7.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수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8. 검사는 압수물 반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압수·수색 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9. 회계장부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등은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으면 신속히 돌려주어야 하며, 장기간의 압수로 영업 등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제31조(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압수·수색 대상자(「형사소송법」 제121조 및 제123조에 따른 참여인을 포함한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거나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할 수 있다.

제32조(신체의 수색·검증) ① 검사는 대상자의 신체를 수색·검증하는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소·방법 등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②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검증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제33조(변사체 검시·부검) 검사는 변사체를 검시하거나 부검하는 경우에는 변사자나 유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유족의 장례 절차에 불필요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34조(금융계좌추적) 검사는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자와 유효기간은 혐의 유무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2.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청 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제35조(통신제한조치 등의 최소화)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입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제36조(압수한 물건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 ① 압수한 물건은 적절하게 보관·관리되어야 하고, 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에만 활용되어야 한다.

②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직무 외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4절 피의자신문

제37조(출석 요구)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의 필요성,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 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를 고려해야 한다.

2. 피의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다.

3. 출석 요구 방법, 출석 일시 등을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가 출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주요 죄명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5.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체나 그 대표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우편을 통한 진술 등을 활용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6. 피의자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다. 특히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제38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검사는 조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고 진술거부권고지확인서에 피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기록에 첨부한다.

제39조(변호인의 접견·교통 보장) ① 검사는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보장해야 한다.

② 체포·구속된 사람을 소환하였거나 조사하고 있는 중에도 제1항의 접견·교통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40조(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 ① 검사는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검사는 피의자나 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③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2항의 참여를 불허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 검사가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제41조(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해야 한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42조(피의자의 조사)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피의자가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2.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의 다른 사건이나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3.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4.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피의자등 사건관계인 모두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을 권유할 수 있다.

5. 검사는 피의자가 출석했으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의자가 조사장소

에 도착하고 떠난 시각, 그 사이 조사장소에서 있었던 상황 등을 별도의 서면에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6. 피의자가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수기로 메모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현출(現出)된 타인의 진술 등 공범의 도피, 증거인멸, 수사기밀 누설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

제43조(구속피의자등의 조사) 검사는 구속된 피의자 등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건관계인(이하 "구속피의자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구속피의자등에게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하여 변호인이나 가족 등의 접견·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구속피의자등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장시간 검찰청 안에 설치된 구속피의자등의 구치시설 등에 대기시키거나 조사를 하지 않고 구금시설로 되돌려 보낼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3. 관할지역 외의 구속피의자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이송하거나 출장·공조수사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대질 조사나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감(移監)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4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서의 열람만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 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조사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요청하고(변호인이 총조사시간을 초과한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검사가 체포시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에 따른 시한을 말한다] 내에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조사를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5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는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검사는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소속 검찰청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하고(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검사가 체포시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에 따른 시한을 말한다] 내에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심야조사 허가 내역을 대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월별로 보고해야 한다.

제46조(소년에 대한 특칙) ① 검사는 소년(「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서의 열람만을 위하여 소년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과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 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조사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과 법정대리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요청하고(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도 이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검사가 체포시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에 따른 시한을 말한다] 내에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조사를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7조(휴식시간 부여 등) ① 검사는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피의자가 조사 도중에 휴식시간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조사 중인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다른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8조(자백의 증명력 판단 시 유의사항) ① 검사는 피의자의 자백이 경험법칙에 위배되는 등 합리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백하게 된 경위를 살펴 그 신빙성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

② 공범의 진술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 증명력 판단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제5절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제49조(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 ①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사실관계나 양형(量刑)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② 검사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공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법원에 증인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0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검사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이송 등 처분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이 피해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보 제공으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제51조(2차 피해 방지) 검사는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의 비밀을 존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충분히 고려한다.
2.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는다.
3. 피해자가 피의자나 그 가족 등과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대기실에서 머물도록 하는 등 분리조치를 한다.

제52조(피해자 등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검사는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1.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제53조(전용조사실 이용 등) ①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충격이나 불안감, 수치심 등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용조사실을 이용한다.

②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하여 보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영상 녹화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촬영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한쪽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④ 제2항의 경우 검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영상 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54조(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 ①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규정된 특정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신고자나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할 때의 동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피해자 등이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나 방청인이 퇴정(退廷)하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5조(피해자의 권리 고지와 유익한 정보 제공) ① 검사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법정에서의 진술권, 처분결과에 대한 정보 요청권 등 피해자의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검사는 압수물 환부·가환부, 배상명령, 형사재판상 화해, 범죄피해자구조, 교통사고피해자보상 등 해당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한다.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피해자지원센터나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 한다)의 위치와 연락처 등 피해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 자료를 비치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6조(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 ① 성폭력·가정폭력(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하고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한다.

3. 피해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피해자에게 친절하고 온화한 태도로 질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이나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저속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5.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 비디오테이프 등을 말한다)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록과 분리·밀봉하여 수사기록 끝에 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의 보호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성폭력등 범죄에 대하여 전담검사를 지정·운영하고, 성폭력등 범죄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수시로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57조(피해자·참고인의 조사)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의 필요성,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 해당 사건 수사와의 관련성 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②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다.

③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여 조사한 후 동일인에 대해 재차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려 사항 및 재차 출석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④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또는 출석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출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⑤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한 진술서, 녹음·녹화 조사, 공조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⑥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⑦ 녹음·녹화 조사제와 시차제 출석 요구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출석 요구나 장시간 대기를 방지하며,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건 당자사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⑧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을 조사할 때에는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고,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절 소년·장애인·외국인

제58조(소년에 대한 조사) ①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하여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을 조사하고 피의자의 비행 원인을 진단한 후 그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여 피의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나이, 지적 능력, 심신상태 등을 이해하고 조사에 임해야 하며,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해야 한다.

제59조(구속의 억제 등) ① 소년에 대한 구속수사는 당사자의 심신이나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특히 신중해야 한다.

② 소년인 피의자가 체포·구속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그 사건을 조사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0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①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장애인인 피의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에 대하여 안내해 준다.

제61조(외국인에 대한 통역)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한다.

제62조(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통신) ①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재 본국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통신할 수 있고, 체포·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체포·구속된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7절 사건의 처분 및 공판

제63조(사건의 결정) 검사는 사건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였는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또는 사건의 발단이나 경위 등을 살펴 억울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피의자가 관련 사건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병합 수사나 재판을 받지 못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한다.

3. 불기소사건을 재기(再起)한 사건이나 이송된 사건은 신속히 종국 처분을 한다.

4. 수사 결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제64조(고소·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 검사는 고소·고발사건을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고소·고발이 취소되지 않은 사건은 처분 전에 고소·고발인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다만, 불기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고소·고발사실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건 기록으로 확인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불기소 결정서는 사건관계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처분결과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을 사용하고 사실과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65조(고소·고발사건의 각하) 검사는 사건을 각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에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

제66조(사건의 종국적·근원적 해결)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송 등의 처분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1.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한다.

2.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참고인의 진술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꼭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3.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이나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그 외의 증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발견된

후에 재차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참고인에 대한 소재수사를 한다.

5. 공조수사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은 참고인이 관할구역 밖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이송하지 않는다.

② 동일 또는 관련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에는 사건의 이송 등 병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7조(공판) 검사는 공소제기 후나 공판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기소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다.

2. 피해 회복 여부 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소제기 후의 사정까지 구형에 반영하여 적정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상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인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68조(형사보상제도의 안내) 검사는「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제3장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제69조(인권보호관의 지정 등) ① 수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②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검사로 한다.

1.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2.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3.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 지청장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인권보호관은 소속 검찰청의 장을 직접 보좌한다.

④ 대검찰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6. 9.]

제70조(인권보호관의 직무) 인권보호관은 인권 관련 제도의 개선, 인권 개선에 필요한 실태 및 통계 조사, 인권교육, 심야조사의 허가와 이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등 인권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71조(인권보호담당관의 직무) ①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보좌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제70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제72조(인권침해 신고의 처리절차) ①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 규칙 위반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내사사건이나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한다.

②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사건의 수리와 그 처리상황 등을 감독해야 한다.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불이익 금지)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74조(인권보호 제도의 안내) 각급 검찰청의 장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수사절차에서 갖는 권리와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의 구제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비치하고, 이 규칙 중 장시간조사 제한, 심야조사 제한, 휴식시간

부여 등 주요 내용을 정하여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75조(인권에 관한 의견 청취)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향상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나 각종 인권단체의 권고, 그 밖의 일반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인권에 관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인권보호·향상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검찰시민옴부즈맨 제도, 검찰시민모니터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한다.

제4장 보칙

제76조(위반행위에 대한 보고) ① 인권보호관(제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권보호관은 제외한다)은 소속 청의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가 이 규칙을 위반하여 현저하게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6. 9.〉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6. 9.〉

1.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의 장: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2.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의 장: 소속 청의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의 제1항의 위반 사항

제77조(교육) 법무부장관은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의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78조(시행세칙)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부록5 | 아시아 인권헌장[7)]

전 문

오랜 세월동안 특히 식민통치 시절 아시아 민중들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 전반을 침해당하는 고통을 받아 왔다. 오늘날에도 아시아의 많은 지역주민들이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으며, 많은 집단들이 증오와 적의를 품는 분열로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평화와 인간의 존엄은 모든 개인, 단체들이 서로 평등하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갖고 있음이 인정되고 보호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아 민중들은 점차 깨닫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그리고 다가오는 후손들을 위하여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수행함으로써 평화와 인간의 존엄을 획득할 결의를 보이고 있다.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평화가 보장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세상에서 살기 위한 아시아 민중들의 소망과 열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시아 민중은 이 헌장을 채택한다.

헌장의 배경 설명

1-1. 인권과 자유를 위한 아시아인들의 투쟁은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시민사회를 짓밟는 억압에 대항하여 투쟁하였고, 식민주의자들이 가한 정치적 압제에 대항하여 투쟁하였으며,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해왔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권리에 대한 재확인이 더욱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아시아는 급속한 변화의 시기를 경과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사회구조, 정치제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아시아의 전통적 가치들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정치권력과 경제기구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개발과 과학기술에 의해서도 위협을 받고 있다.

1-2. 특히 경제가 시장 경제화되고 세계화되면서 사적 부문과 공적 부문, 국가

7) 이는 아시아 1백 50여개 민간단체에 의해 4년간 준비되어 1998년 5월 광주에서 선포된 것으로 향후 이를 다시금 동아시아 각국에서 우선 참여가 가능한 정부 또는 국가기관, 학자, 시민사회단체, 변호사단체 등이 함께 공동논의를 거쳐 수정된 아시아 인권선언을 만들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문과 국제 세계간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으며, 빈곤층과 소외된 사람들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아시아 민중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가지 가치있는 요소들을 위협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인간성을 파괴하고 있고, 시장경제가 물질 위주의 가치관을 조장하고 있으며, 아시아 민중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공동체적 질서를 해체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대대로 이어온 가정과 토지로부터 추방당하면서도 이에 대한 그 어떤 보호책을 갖지 못하는 공동체들도 있다. 지금 아시아 노동자들은 대대적인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 최소한의 생존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며, 항상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들의 권위와 노동법까지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1-3. 아시아의 성장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특정 집단이 넘쳐나는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전면적인, 빈곤의 심화가 공존하고 있다. 다수의 아시아 민중들의 건강과 영양과 교육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끔찍한 수준에 있다. 동시에 귀중한 자원이 군비증강으로 낭비되고 있는데, 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기 구매자이다. 아시아 정부들은 생산의 증대와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의 천연자원은 가장 무책임하게 고갈되고 있으며, 환경은 너무 악화되었고 그 결과 심지어 가장 부유한 층조차도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골프장 건설이 빈곤층과 소외된 계층의 보호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1-4. 아시아 민중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극단적인 민족주의, 왜곡된 이데올로기, 인종 차이, 여러 종교적 근본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분규와 폭력에 의해 고통 받았다. 폭력은 정부와 시민 사회의 특정 집단에 의해 자행되었다. 대다수 대중들의 개인의 안전과 재산 보호, 공동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민중들이 살아온 공동체가 대규모로 해체되면서 난민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1-5. 정부는 자신들에게 엄청난 권력을 부여해왔다. 그들은 민중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법률을 제정해왔고, 외국인 회사나 단체와 공모하여 국가 자원을 약탈하였

다. 부패와 족벌 체제가 만연하고 있으며, 공적이든 사적이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많은 국가에서 권위주의는 시민의 권리와자유를 박탈하는 국가 이데올로기로 부상하였다. 그들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아시아의 종교적, 문화적 전통에 적합하지 않는 서구 사상이라고 비난한다. 대신에 그들은 권위주의를 위장하기 위해 "아시아적 가치"라는 허위 이론을 장려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 지역들 가운데 유독 아시아만이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 공통의 공식 헌장이나 지역 기구가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1-6.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인권이 공적으로 무시되고 경멸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아시아 민중들의 자각은 커지고 있다. 아시아 민중들은 그들의 빈곤과 정치적 무기력, 그리고 자유와 권리의 부활 간에 모종의 연관이 있음을 깨닫고 있다. 그들은 정치 경제 제도가, 경제정의와 정치 참여, 그리고 책임성과 사회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선 인권과 자유의 틀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또한 많은 사회 운동체들이 아시아 민중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수행해오고 있다.

1-7. 인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추상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다. 인권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공정하고, 인간적이며, 애정있는 사회의 초석을 제공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제도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인권을 존중하는 제도는 우리 모두가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므으로써 우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며, 우리 자신의 예술적 충동을 표현할 수 있도록 준다. 인권을 존중하는 제도는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후손과 그들이 물려받을 환경에 대해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것은 우리의 제도와 정책이 갖는 가치와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일반 원칙

2-1. 우리는 구체적인 권리들과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절차들로부터 이들 권리 속에 깔려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고 실행할 때 이들 권리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원칙들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아래에 논의되는 몇몇 원칙들은 우리 인권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믿는 공공정책의 기본 틀을 제공할 것이다.

2-2. 우리는 〈인권에 대한 일반 선언〉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문화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기타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국제기구를 지지한다. 인권은 보편적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에 따라서 사회 내에서 형성되는 인간 관계의 방식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만 문화적 전통이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권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국가의 관계 그리고 각 개인과 집단이 태어나면서 갖는 존엄성에 관련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권과 자유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며, 특정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어떤 권리를 묵살하여도 좋다고 제안하는 것은 오류라고 우리는 믿는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 경제적 필요와 열망은 파편화되거나 분리될 수 없는 것 즉 상호 의존적인 것이다. 시민적, 정치적, 문화적 권리는, 그것을 발휘하고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물질적 부의 추구와 획득은, 정치적 자유가 박탈되고, 자신의 개성을 계발하고 표현할 기회를 상실당하고, 문화적 토론을 비롯한 여타의 담화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

2-3.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며 분해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인권들이 향유되고 있느냐, 중시되고 있느냐는 사회, 경제, 문화적 맥락에 의해 좌우된다. 인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와 정책의 기초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권의 추상적 규정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광범위한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는 특정

집단들의 상태를 조사하여 아시아적 상황에 맞도록 인권을 구체화해야 한다. 오직 아시아적 특수성에 맞도록 인권을 규정하고 실행할 때에만 인권의 향유가 가능하다.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 아시아는 전 세계적인 인권옹호 운동에 기여할 수 있다.

2-4. 아시아 전역에 만연 해 있으며 심지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에서조차도 빈곤은 인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다. 빈곤은 개인, 가족, 공동체들이 누려야할 인권을 박탈하고 매춘, 아동 노동, 노예적 노동, 장기 판매, 신체 절단(거지가 되기 위한 방편)을 촉진한다. 빈곤 속에서는 그 어떤 존엄성도 실현될 수 없다. 아시아 국가들은 평등지향적인 발전 전략을 통하여 빈곤을 추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권 옹호의 책무

2-5. 인권 옹호의 책임은 국제적이면서 국내적이다. 국제사회는 인권의 실행을 안내해주는 여러 가지 규범과 제도에 동의해 왔다. 아시아 민중들은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조처를 지지한다. 국가마다 갖는 주권을 빌미로 국제 규범을 회피하거나 국제기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주권은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2-6. 반면에 국제적 책임을 앞세워 특정 국가를 선별적으로 응징하거나 징벌해서는 안되며, 다른 나라의 인권을 무시하고 특정 국가의 인권을 특권화해서도 안 된다. 인권을 침해하는 몇 가지 근본적인 요인들은 국제정치, 경제, 질서의 불평등에 있다. 세계 질서의 과감한 변화와 민주화는 인권의 전 지구적 향유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평등하다는 논리가 정당하다면, 국제사회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적 복지를 향유하도록 노력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나아가 전 세계에 걸쳐 자원과 기회를 보다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노력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2-7. 인권 신장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동시에 경제, 사회, 정치, 문화의 정당한 발전을 위한 개별 국가와 개별 민족의 권리가 범지구적 과정(global process)에 의해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각 국가는 다양한 집단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고,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개방된 정치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정부는 인권 신장과 인권 보호의 중요한 열쇠이다.

2-8. 국제사회와 국가가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지구화의 과정에서 계속 약화되고 있다. 사회 경제적 정책 및 활동을 통제하는 힘이 국가 차원에서 기업 차원으로 이동해간 것이다. 국가는 소수의 금융기관과 기업에 볼모로 잡혀 있다. 그리하여 소수 부자들의 부를 증대시켜 주면서 다수 민중들에게는 엄청난 비참함을 강제하는 근시안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한다. 노동자, 여성, 원주민의 인권 침해를 비롯한 다수의 인권 침해 사례가 기업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기업들이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인권 단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

2-9. 경제개발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 우리는 기업들의 탐욕과 수탈에 대항하여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하여 GNP의 성장만큼 삶의 질이 퇴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학기술은 인간을 해방시키는 도구가 되어야지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자연 자원은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지는 책임을 고려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연 자원의 일시적인 관리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 자원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따라서 우리는 자연 자원의 책임 있는, 공정한, 공평한 사용에 연대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도 안 된다.

인권

3-1. 우리는 여러 국제기구들이 채택한 인권 조항을 모두 지지한다. 그것들을 여기에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권리들은 총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나아가 개별 인권 조항들을 적절히 추구하려면, 이들의 토대가 되는 아래 조항들의 전체적 개념 틀에 의거할 필요가 있다.

생명권

3-2. 모든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권이다. 나머지 권리와 자유는 생명권으로부터 나온다. 생명권은 단지 육체적 혹은 동물적 생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누리는 데 필수적인 四肢와 여타의 재능 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생명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권리, 즉 생계권, 주거권, 교육권, 환경권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들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현실 속에서 생명권을 제대로 향유하기란 불가능하다. 국가는 영아 사망의 예방, 영양 실조와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시설의 확충 이외에도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 제공과 적절한 예방책을 통해 평균 수명을 늘려야 한다. 국가는 초등교육을 무상의무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3-3. 지금도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는 전쟁, 민족 분규, 문화 종교적 억압, 정치의 부패, 환경오염, 실종, 고문, 공적 사적 테러, 여성 학대, 여타의 집단 폭력 행위로 수천명의 무고한 생명을 잃는 재앙이 계속되고 있다.

3-4.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쟁과 민족분쟁에 대한 선전, 증오와 폭력의 선동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나 국제적 차원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금 지되어야 한다.

3-5. 국가는 고문, 실종, 감금사, 강간, 성적 학대 등의 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워 야 하는 책임이 있다.

3-6. 생명에 대한 자의적 침탈은 있을 수 없다. 국가는 범죄나 테러에 의한 생명 침탈행위를 예방하고 처 벌해야할 뿐 아니라, 국가에 소속한 보안 조직들에 의해 자행되는 자의적 실종사와 살인도 막아야 한다. 한 개인이 국가 기구나 공직자들에 의해 생명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엄격히 통제하고 제한하는 법률 이 제정되어야 한다.

3-7. 모든 국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라면 사형은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사형선고로 생명을 잃기 전에 개인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불편부당한 법정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법정 대리인을 자신의 손으로 선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변호를 준비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 무죄 추정의 원칙 하에서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형 집행은 결코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대중에게 전시되어서도 안된다.

평화권

4-1. 모든 개인은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갖는다. 그리하여 자신의 육체적, 지적, 도덕적, 정신적 능력을 충분 히 계발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종류의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아시아 민중들은 전쟁과 내전으로 인하여 커다란 곤란과 비극을 체험하고 있다. 전쟁과 내전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신체를 훼손시키며,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지방 내지 다른 나라로 떠나게 만들고, 많은 가족을 해체시키고 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전쟁과 내전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삶 혹은 평화적 생활을 갈구하는 그 어떤 희망 도 거부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국가와 시민사회가 심하게 군사화되어 모든 문제가 폭력에 의해 결정되 고 정부나 군부가 가하는 그 어떠한 위협이나 공포로부터 시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4-2. 국가는 법률과 질서를 유지하는 책무를 진다. 이 책무는 폭력 사용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 가운데 실행되어야 하며, 인도주의적 법률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에 의해 확립된 여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모든 개인과 집단은 경찰과 군대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국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 리가 있다.

4-3. 평화롭게 살 권리가 보장되려면, 국가와 기업과 시민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의 정치 경제 사 회적 활동들이 모든 국민의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안전만큼은 존중해야 한다. 국민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과의 관 계에 있어서도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억압과 착취 그리고 폭력에 기대지 않고 사회 속에 내재하는 모든 가치 있는 요소들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와 희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

4-4. 파시스트의 침략과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지배에 맞서 투쟁하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은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투쟁 속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주권의 보전과 강대국의 내정 불간섭 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당하게 강조했다. 그러나 외세의 강점 위협에 대항하여 주권을 보전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 때문에 개인의 안전과 평화로운 생활의 권리를 박탈하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외자 유치가 인권 탄압의 변명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국가는 국민의 개인적 안전을 국제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국제사회에 책임을 질때만 보증된다.

4-5. 국제사회는 아시아의 전쟁과 내전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외국 국가들은 아시아의 각종 집단들을 대리자로 내세워 전쟁을 부추겨왔고, 이들 내전에 개입된 집단과 정부에게 무기를 공급하였으며 이 무기 판매 로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국가의 개발 정책과 국민의 복지에 써야 할 막대한 공공자금을 무기 구입에 유용한 것이다. 군사기지를 비롯한 여러 군사 시설(흔히 외세의)은 인근 지역에 거주 하는 주민들의 사회적, 육체적 안전을 위협해왔다.

민주주의를 누릴 권리

5-1. 식민지배를 비롯한 근대적 제도의 발전은 아시아의 많은 정치 집단의 특성을 심각하게 변화시켰다. 국가의 책임과 국가 업무에 대한 국민의 참여에 대한 전통적인 체제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정부에 대한 관계 가 근본적으로 변하였다. 시민은 단순한 통치대상이 된 반면 정부의 힘은 더욱 막강해졌다. 식민지의 법률과 행정부의 권위주의적 습성과 양식이 독립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국가는 부패와 민중 억압의 원천이 되었다. 국가의 민주화와 인도주의화는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5-2. 발전과 국민의 복지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국가는 인간적이어야 하고 공개적이어야 하며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는 당연히 포용력있고 다원적인 제도를 지향해야 한다. 그래야 만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타인을 설득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소수자의 권리가 존중 받을 수 있다. 국민은 국가의 업무에 참여해야 하며 인종차별이나 종교차별 혹은 성적 차별 없이 선거에 참 여할 수 있어야 하고 여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적 정체성과 양심의 자유를 지킬 권리

6-1 생명권은 한 인간이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물질적 정신적 조건들을 포함한다. 그런 데 한 인간의 의미 있는 삶이란 개인적인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타인과 함께 하는 공동체적 차원에 토대를 둔다. 아시아적 전통은 공동의 문화적 가치를 중시한다. 문화적 가치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몰고 오는 압 력에 대하여 개인과 집단이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급속한 변화의 시기일수록 문화적 가치는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문화적 가치는 자부심과 안전의 원천이다. 다른 지역에도 많이 존재하지만 아시아에는 그 들의 문화가 위협을 받고 무시받는 위기에 처한 공동체들이 많다. 따라서 아시아의 국민과 정부는 자신의 다양한 공동체들이 이어온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여야 한다.

6-2 아시아 문화가 갖는 다양성은 인권의 보편성과 대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처럼 인간의 보편적 규범을 풍부하게 해준다. 동시에 우리 아시아인들은 인권이라고 하는 보편 적 원리에 위배되는 문화적 특징들을 없애나가야 한다. 우리는 가부장적 전통에 근거한 낡은 가족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여러 문화적 전통에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가족 규범을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성적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종교 교리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또한 신분이 나 인종, 직업, 출신 여타의 것들에 기초하는 인간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각각의 문화 속에 존재하는 상호 관용과 상호 협력과 연관된 모든 가치들을 고취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집단이나 강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을 희생시키는 관행들을 중지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적 또는 민족적인 연대를 강 화시켜야 한다.

6-3. 독실한 종교인이 많은 아시아에서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특히 중요하다. 종교는 빈곤과 억압 하에 서 안락과 위안의 원천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1차적 정체성을 종교에서 찾는다. 그러나 종교적 근본주의는 분열과 분규의 원인이기도 하다. 종교적 관용은 개종의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이 양심의 자유를 향유하는데 필수적이다.

발전과 사회 정의에 대한 권리

7-1. 모든 개인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우리 모두는 교양과 지식을 누릴 권리, 음식과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주거와 의료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모든 개인과 집단들은 과학 기술의 발전과 세계 경제성장의 성과를 공유할 권리가 있 다. 7-2. 개인과 국가에 있어서의 발전은 경제적 발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풍부한 잠재력의 실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은 예술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와 자신의 문화적 정신적 재능을 계발할 자유를 갖는다. 동시에 그것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나아가 그것은 국가 가 강대국의 압력과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자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8-1. 아시아의 국가들은 위에서 논의한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틀 내에서 공공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한 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 공동적 삶을 위한 공정하고 인도적인 환경을 만들고 사회정의를 실현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원인이나 또 다른 이유들 때문에 약하고 침해당하기 쉬운 특정한 집단들이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권리를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보호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러한 몇몇 집단들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겠지만 이들 이외에도 차별과

억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집단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들 중에는 내전이나 정부 정책이나 경제적 곤란 때문에 국내와 국외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국가와 사회는 그동안 소수 집단과 원주민에게 관대하지 않아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자주 침해되었다. 대부분의 우리 사회는 여전히 동성연애자들을 차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커다란 고통과 비참함을 안겨주고 있다. 농촌과 어촌의 많은 집단들이 가혹한 수탈을 당하고 있으며, 지주나 기업가들에 의해 항상적인 생계위협을 당하고 있다. 우 리는 이러한 모든 집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사회, 경제적 환경 개선에 국가와 사 회가 최우선적인 가치를 둘 것을 촉구한다.

여성

9-1. 대부분의 아시아 사회에서 여성들은 차별과 억압하에서 고통받고 있다. 여성에 대한 억압의 원인은 역사, 그리고 현재의 사회, 경제체제 양자 모두에 있다.

9-2. 가부장제의 뿌리는 체계적이며 그 구조는 계층, 문화, 카스트, 인종의 울타리를 넘어 모든 제도, 관행, 사회규범, 관습법, 종교, 가치를 지배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억압은 여러 형태를 취하지만 성적 노예, 가정 폭력, 인신 매매, 강간의 형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성들은 공적, 사적 영역에서 공히 차별당하 고 있다. 많은 사회집단들의 무장화가 늘어나면서 무장분규가 일어날 때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이 증대 해 왔다. 이러한 폭력에는 윤간, 강제노동, 인종차별, 납치, 가정으로부터의 추방이 포함된다. 무장 분규에서 의 여성 희생자들은 그들에게 자행된 전쟁 범죄에 대한 재판이나 명예회복, 배상이나 보상을 거의 받지 못 한다. 따라서 윤간은 전쟁범죄이며, 인간성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9-3. 고용 분야와 일할 권리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취업 기회에 대한 권리, 직업 선택의 권리, 고용안정, 동등한 보수,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권, 건강보호와 안전한 근로 조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생식기능에 대한 보호와 임신 여성의 위험한 노동으로부터의 특별 보호책이 필요하다.

여성은 차별과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성적 건강, 산모로서의 건강을 보호할 완전한 권리를 가 져야 하며, 성적 건강, 산모로서의 건강 보호에 관한 정보와 안전한 출산을 위해 필요한 과학 기술 정보에 대해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

9-4. 가정의 가부장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성의 권리 침해를 보호할 법적 조항은 거의 없다. 공적 법률에 보장된 여성의 권리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사회의 정치적, 공적 생활에 대한 여성의 충분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적극적 조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국가 권력기구, 경제분 야, 농지와 토지소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은 필수적이다.

아동

10-1. 여성과 마찬가지로 아동에 대한 학대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아동 노동, 성적 노예, 아동의 음란물 출연, 아동 매매, 매춘, 장기 판매, 마약 판매의 강요, 가정에서의 육체적. 성적. 심리적 학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아동들에 대한 차별, 아동에 대한 종교 개종의 강요, 무장분규 에 의한 아동 또는 가족 전체의 추방, 아동차별, 퇴폐적 환경 등이다. 더욱 많은 아동들이 도시의 거리로 내 몰리고 있으며, 가족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후원을 박탈당하고 있다.

10-2. 시골 지역의 광범위한 빈곤, 열악한 교육 환경, 사회적 고립은 아동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원인들 이다. 강제 노동, 구걸행위에서의 아동 이용,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등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착취와 학대가 만연하고 있다. 남아선호 사상에 의한 여자 영아의 사망과 여성 음부 절단이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 널리 자행되고 있다.

10-3. 아시아 국가들은 아동을 보살피고 최소한의 생계 수단과 거주지를 제공하는 데 처참히 실패했다. 우 리는 아시아 국가들이 '아동 권리에 대한 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사회가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감시의 책임을

맡고, 'UN 협약'을 각국의 사회적 조건에 맞추어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국가에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한다.

장애인

11-1. 전통적으로 아시아 사회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을 잘 돌봐왔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의 가치와 구조들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조직들의 압력하에 장애인들에게 점점 배타성을 보이게 되었다. 장애인들은 교육에의 접근, 고용, 주거에 있어서 심한 차별을 겪고 있다. 장애인들은 그들에 대한 편견과 그들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법률 조항의 부재 때문에 인간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상당한 능력은 정 당하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임금의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승진의 전망도 없다. 장애인들은 보호 와 배려를 통해 자신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해주는 법률 조항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 법률조항을 통해서 장애인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11-2. 장애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냉담한 태도를 보면 분명해진다. 그들은 총체적 차별의 희생자들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문명사회는 이 환자 들 역시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고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문명사회는 그들이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고, 편견, 차별, 박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줄 것이다.

노동자

12-1. 아시아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는 전통적인 생존 방식을 해체하였고, 많은 시골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파괴하였다. 그들을 비롯한 많은 집단들이 대체로 제조업의 임금 노동자로 전락해가고 있으며, 비참한 조건 하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불공정한 노동법 때문에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 결성, 단체협상의 기본적인 권리가 대부분 부정되고 있다. 그들의 임금은 매우 낮고, 근로조건은 대 부분 처참하고 위험하다. 세계화는 노동자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킨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자주 외국 기업이나 금융기관과 공모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12-2. 노동자들 중에서도 특히 열악한 집단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그들은 대부분 가족과 떨어진 채 외국 에서 착취당하고 있다. 그들은 해당 국가의 법률을 이해하지 못하며, 법에 호소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은 내국인 노동자들이 누리는 권리와 노동조건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 그들은 적절한 숙박시설, 건강보호,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혹사당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들은 인종 차별과 외국인 혐오로 고통 받고 있다. 파출부들은 많은 모욕을 당하고 있으며 때로는 성적 학대도 당한다.

학생

13-1. 아시아의 학생들은 식민통치에 맞서 투쟁했고, 민주화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투쟁했다. 사회 변화를 향한 두려움 없는 헌신의 대가로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폭력과 억압을 받아왔다. 그들은 여전히 폭동 진압 작전,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과 작전의 주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학생들은 학문의 자유, 표현과 결사의 자 유에 대한 권리를 빈번히 묵살당하고 있다.

죄수와 정치범

14-1. 죄수와 정치범에 관련된 국제 규범처럼 많은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없다.

14-2. 임의동행, 구금, 투옥, 학대,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징벌은 아시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정치범과 죄수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한다. 그들은 충분한 음식과 건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대화, 가족의 후원이 금지돼 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죄수들이 같은 방에 투옥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남자, 여자, 아동들이 분리되지 않은 채 인접한 방들에 수용된다. 감방은 대부분 과밀 되어 있다. 감금사도 흔 히 발생한다. 죄수들은 변호인 접견을 빈번히 거절당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누리지 못한다.

14-3. 아시아의 국가들은 재판 없이 구속하기 위하여 행정력을 동원한다. 국가는 정치적 반대자를 체포하고 억류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사용한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정적으로 제한해 왔고, 이러한 제한에 의해서 사상의 자유, 신념과 양심의 자유가 금지되어 왔던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인권의 실행

15-1.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헌법에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 문서들을 비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들에 쓰여진 '권리'와 국민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비참한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국민과 거주민들의 인권을 충족시키는 조처를 긴급히 취해야 한다.

실행을 위한 몇가지 원칙

15-2.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15-2a. 인권은 국가, 시민사회, 기업체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다. 이 집단들이 자행하는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 집단들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윤리적 기초와 윤리적 가치를 강화해야 하며,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책임감을 고취시켜야 한다.

15-2b. 인권을 신장하고 실행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지만, 사회의 모든 집단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들이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비롯한 여러 권리를 향유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정부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비정부기구들이 해야하는 명백하고 정당한 역할이 있다. 그들은 권리 의 식을 함양시키고, 인권의 기준을 만들며, 정부를 비롯한 여타 집단들이 이 인권 기준을 보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률가, 의사 같은 전문 집단들은 권력의 남용을 막고 인권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들의 직업적 전문성 과 연관된 특별한 책임이 있다.

15-2c. 인권은 내전 상황에서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고, 평화시에는 신장된다. 따라

서 국가와 모든 조직은 사회적, 민족적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하며, 관용과 화합을 장려해야 한다. 마찬가지 이유로 모든 국가 는 분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15-2d. 민주적인 관행, 국민적 동의에 기초하는 관행이 추구되면 인권은 신장된다. 따라서 모든 국가와 조 직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비롯한 여타의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런 민주적 관행을 장려해야 한다.

15-2e. 아시아에는 제한이 심하고 억압적인 사회적 관습과 관례 때문에, 특히 신분과 성, 종교와 관련된 관습들 때문에 개인과 집단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인권의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관습과 관례들은 즉각 개혁되어야 한다. 이 개혁은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15-2f. 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신장하기 위해서, 시민사회 내에서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기 구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서 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운동 단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민운동 단체 가 확립되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필요하다.

15-2g. 기업체의 수탈적 관행을 엄격히 단속하여 노동자, 소비자, 대중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권을 위한 체제 강화

15-3a. 인권에 대한 법률적 틀을 만드는 것은 필수적이다. 모든 국가는 헌법에 인권보장 조항을 포함시켜 야 한다. 이 인권보장 조항은 헌법개정에 의해 삭제될 수 없도록 헌법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국가는 인권에 관한 국제 협약들을 비준해야 한다. 국가는 인권에 관한 국가적,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자국의 법률과 행정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는 모든 조항, 특히 식민지 시대부터 전해 내려 오는 위반 조항들을 폐지해야 한다.

15-3b. 인권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일반 대중, 국가기구, 시민사회 단체들 사이에 고취되어야 한다. 인권에 관련된 국가적, 국제적 제도에 대한 인식도 더욱 고양되어야 한다. 모든 개인과 집단들은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 행정당국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선 법적, 행정적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비공식민간기구(NGO) 들이 인권을 감시하고 관찰하기 위해 단체 상호간 국내적 국제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상호관계를 전진시킬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인권 보호를 위한 사법적, 행정적 결정 사항은 국내와 아시아 전역에 널리 알려 져야 한다. 정부기구, 비정부기구, 교육기관들은 인권의 내용과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기 위하 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15-3c. 많은 경우 인권 침해는 감금 상태에서나 보안 조직에 의해 자행된다. 이러한 인권 침해는 보안 조 직들이 자신들에게 허용된 권력의 한계를 무시하거나, 상부의 명령이 위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 발생 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 교도관, 무장 군인들은 인권 규정에 대해서 반드시 연수를 받아야 한다.

인권 집행을 위한 기구

15-4a. 사법부는 인권 보호의 중요한 기관이다. 그들은 인권 침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증언을 듣고, 인권 침해에 대해 보상하고, 인권 침해자를 처벌할 권한을 갖는다. 사법체계가 강력하고 잘 조직되어 있을 때만 사법부는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유능하고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인간의 권리 와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성 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임명권이 사법기관에 있어야 하며, 이들의 신분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사법기관은 종교, 지역, 성, 사회 계층에 따른 상이한 집단들의 특성을 공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이는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이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외받는 여성,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집단, 사회의 하층민들이 성의있는 국가의 배려에 의해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하며, 필요한 교육을 거쳐 자신의 법적 권한에 대한 의식을 높여야 한다. 오직 이러한 조처를 통해서만 아시아 전통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해온 사회적 약자들이 삶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15-4 b. 변호 업무도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법정에 접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법률구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법정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칙들을 개정하여 더욱 자유로운 법정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법정을 이용할 수 없는 개인과 집단들을 대신 해서 사회단체나 복지단체가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어야 한다.

15-4c. 모든 국가는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기구들은 권리를 침해당한 희생자들이 편리하고, 우호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인권기구들은 사법기관이 다하지 못한 역할을 보충해 주는 기능을 할 것이다. 인권 기구들은 특별한 권한을 누릴 수 있다. 그들은 인권 규범을 집행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도울 수 있다. 그들은 인권에 관한 정보를 알릴 수 있고,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술을 조사할 수 있으며, 사건 당사자 간의 화해를 위해 중재할 수 있다. 또 그들은 행정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 인권을 실행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그들은 독자적으로 혹은 대중의 고소에 입각하여 활동할 수 있다.

15-4d.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민의 양심에 호소하는 '시민재판'을 통해 인권의 실행을 도울 수 있다. 인권 단체는 인권보호의 책임이 정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들은 판결 시 법적 조항들에 제한받지 않으며, 따라서 인권의 도덕적, 정신적 기초를 널리 알리 는 일을 도울 수 있다.

인권 옹호를 위한 지역 기구

16-1. 인권옹호는 지방적 국가적 차원, 지역적 세계적 차원 등 모든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각 차원의 기구들은 각기 특별한 권한과 기능을 가진다. 인권보호의 1차적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따라서 인권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일은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능력을 키우는 일에 두어야 한다.

16-2. 아시아 국가들은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 지구 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국가간 인권 협약이 맺어져야 한다. 이 협약은 국가 차원의 민간기구, 지역 차원의 민간기구들의 상호 협력 속에서 열리는 국제포럼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이 협약은 인권실현을 방해하는 갖가지 장애물들을 비롯한 다양한 아시아적 현실을 다루어 야 된다. 동시에 이 협약은 국제적 규범과 기준에 완전히 부합해야 한다. 또 이 협약은 국가기구를 비롯한 각종 집단, 기업들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 사례를 포함해야 한다. 이 협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인권위원회 혹은 인권법정이 설립되어야 한다. 이 인권위원회 혹은 인권법정은 모든 민간기구와 여타의 사회단체들에 개방되어야 한다.

부록6 | 동아시아 인권·평화 옴부즈퍼슨(Ombudsperson) 회원 가입신청서

Membership Application for Ombudsperson
for Human Rights and Peace in East Asia
(EAHPOP: East Asia Human Rights & Peace Ombudsperson)

성명 Name	(signature)
국적 Nationality	
회원번호 Membership Number	20 - - - Year-Nationality-Affiliation-Number
이메일 E-mail	
전화 Telephone	
소속 Affiliation	
활동영역 Activity Area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자기소개 Self Introduction	
가능한 언어 Language (1, 2, 3)	1. 2. 3.
가능한 협력과 연대 Possible Cooperation and Solidarity	

연구총서 21-A-08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협력방안

발 행 | 2021년 12월
발 행 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 행 인 | 하 태 훈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j.re.kr
정 가 | 10,000원
인 쇄 |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I S B N | 979-11-91565-17-1 9336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제 및 복제를 금함.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협력방안

The network construc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co-operation for the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related with criminal policy in East-Asia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06764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T. 02-575-5282 www.kic.re.kr

93360
9 791191 565171
ISBN 979-11-91565-17-1